www.mof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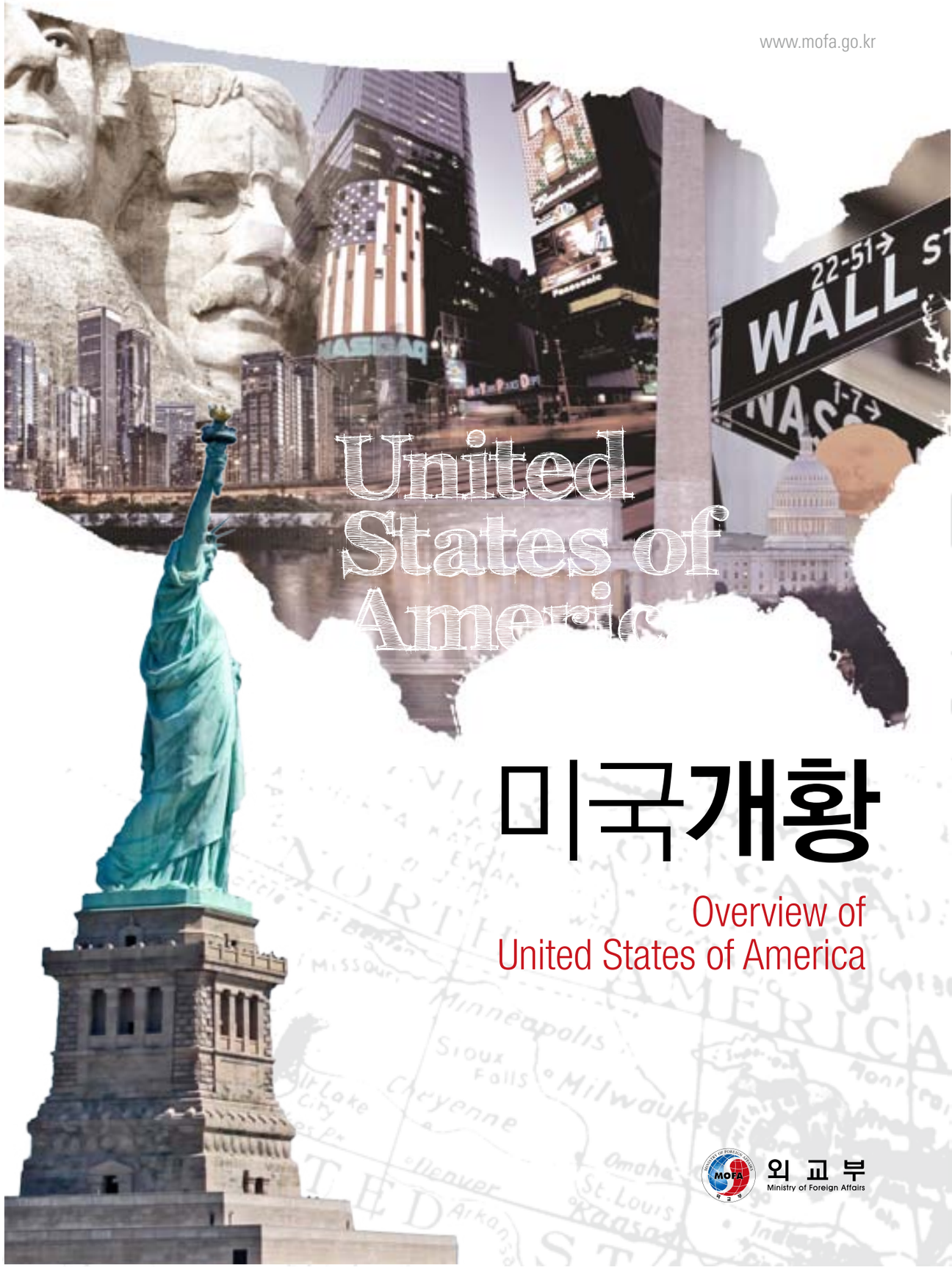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개황

Overview of United States of America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미국개황

Overview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개관 4

PART 1 역사 7
Chapter 1 건국이념 8
Chapter 2 미국역사 9
Chapter 3 미국헌법 23

PART 2 정부 29
Chapter 4 연방의회 30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41
Chapter 6 연방사법부 66

PART 3 정치 제도 75
Chapter 7 선거제도 76
Chapter 8 정당제도 85
Chapter 9 연방제도 93

PART 4 정책 99
Chapter 10 대외정책 이념 100
Chapter 11 대외정책 방향 및 기조 104
Chapter 12 국방정책 110
Chapter 13 경제 · 통상정책 117
Chapter 14 국내정세 122

PART 5 사회 · 문화 127
Chapter 15 사회 · 문화 일반 128
Chapter 16 종교 132
Chapter 17 교육 133
Chapter 18 예술 135
Chapter 19 스포츠 136
Chapter 20 미국 민권운동 139

PART 6 한 · 미 관계 145
Chapter 21 한 · 미 관계 약사 146
Chapter 22 한 · 미 정상회담 일지 150
Chapter 23 정치 · 안보 분야 153
Chapter 24 경제 분야 166
Chapter 25 사회 · 문화 분야 172
Chapter 26 한인 이주 역사 184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86

부록 228
Ⅰ 미국헌법 229
Ⅱ 수정헌법 243
Ⅲ 미국 13개주의 만장일치 선언 255
Ⅳ 미국의 역대 대통령 & 부통령 259
Ⅴ 기타 행정 조직 263
Ⅵ 역대 주미대사 및 미국지역 공관 현황 293
Ⅶ 재미 우리 교민 현황 296
Ⅷ 한국 주재 미국 공관 297
Ⅸ 역대 주한 미국 대사 297
Ⅹ 미국 방문 기본 정보 298
Ⅺ 미국비자 299
Ⅻ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305
XIII 참고문헌 314

미국개관

Overview of
United States of America

01 일반

국명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수도	Washington, D.C.
면적	982만 6,675㎢ ('14년) - 세계 3위, 한반도의 약 45배)
위치	서경 66°57′~ 124°44′ / 북위 25°7′~ 49°23′
기후	북위 40°선을 중심으로 한 溫帶에 위치,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남북의 위도차가 24°나 되는 대륙인만큼 氣候의 차이가 심함.
인구	약 3억 189만명 ('14년) - 백인(79.9%), 흑인(12.9), 아시아계(4.4%), 원주민(1.2%), 기타(1.6%)
종교	개신교(51.3%), 카톨릭(23.9%), 몰몬(1.7%), 유태교(1.7%), 불교(0.7%), 이슬람(0.6%), 기타(16.1%), 무교(4%) ('07)
언어	영어 - 식자율 99%('13년)
교육지수(UN)	0.971('08), 세계12위
공휴일	New Year's Day(1.1) / Martin Luther King Day(1월 셋째 월요일) Presidents Day(2월 셋째 월요일) / Memorial Day(5월 넷째 월요일) Independence Day(7.4) / Labor Day(9월 첫째 월요일) Columbus Day(10월 둘째 월요일) / Veterans Day(11.11) Thanksgiving Day(11월 넷째 목요일) / Christmas(12.25)
국가표어	"우리는 神을 믿는다"(In God We Trust)

미국국기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는 1776년 독립선언 후 1777년 6월 14일 정식으로 제정
George Washington 미국 초대 대통령은 이 국기를 "별은 하늘을, 적색은 모국인 영국을, 적색 바탕을 가로지르는 흰색 줄은 모국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한다"고 설명
성조기의 적색 및 흰색의 13개 줄은 독립할 때의 주의 수, 50개의 별은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현재 주의 수를 상징

02 정치

정부형태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Barack Obama (2009년 1월 1기 취임 / 2013년 1월 2기 취임)
의회	상 · 하 양원제 상원 : 100석(임기 6년) / 하원 : 435석(임기 2년)
주요정당	공화당(Republican Party) 민주당(Democratic Party)
독립일	1776년 7월 4일
UN가입일	1945년 10월 24일

미국상징

American Bald Eagle
(1782년 지정)

국기에 대한 맹세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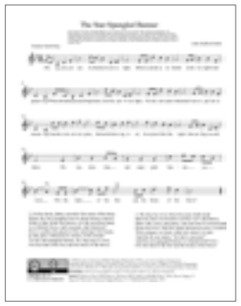

미국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
(Francis Scott Key)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er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ed glare, the bombs bursting in air,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at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03 군사력

세계 1위의 군비지출국	6,820억달러('12년) - 중국(1,660억), 러시아(907억), 영국(608억), 일본(593억), 한국(317억)('12년)
세계 1위의 무기수출국	280억 달러, 세계무기거래액의 30%('12년) - 2위는 러시아 100억 달러 - 프랑스(45억), 영국(40억), 독일(30억)
GDP에서 군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4.4%('12년) - 한국 : 2.7%, 중국 : 2.0%, 일본 : 1.0%
병력	현역병력수: 1,429,995명 - 중국(2,285,000명)에 이어 세계 2위 - 한국 : 687,000명 예비군 병력수: 850,880명

※출처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Yearbook 2013

04 경제

국내총생산(GDP)	16조 7천억달러('13년), 세계 1위 - EU(15조 8천억), 중국(13조 4천억), 일본(4조 7천억), 한국(1조 7천억)
1인당 국내총생산	52,800달러('13년)
실질경제성장률	1.6%('13년)
실업률	7.3%('13년)
소득불균형 지수 (지니계수)	45('07년), 세계 41위 - 한국 : 31.1('11년), 세계 109위
연간 수출액	1조 5,750억달러('13년), 세계 3위 - 한국 : 5,573억달러('13년)
연간 수입액	2조 2,730억달러('13년), 세계 2위 - 한국 : 5,166억달러('13년)
정부예산(지출)	2조 7천 7백억달러('13년)
경제원조액	경제원조(ODA) 312.6억달러('12년) - 영국(138.9억), 독일(129.4억), 프랑스(120.2억), 일본(106억), 한국(15.9억)

※ 출처 : CIA World Factbook, 미 상무부, OECD, 한국은행

미국개황 Overview of United States of America

US History

PART 1

역사

Chapter 1 건국이념

Chapter 2 미국역사

Chapter 3 미국헌법

Chapter 1

건국이념

자유주의(liberalism) 이념은 미국의 건국과정에서 주요한 이념적 지표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지며, 오늘날 많은 이들은 미국을 자유주의 사회의 전형으로 간주

- 미국의 건국이념으로서 정치, 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특정 가치와 이러한 가치가 구현되는 제도를 발달

정치영역에서 제한정부론(limited government), 폭정의 방지를 위한 대의제도, 정부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및 연방제도를 구현

- 국가권력은 국민들의 동의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고 그 권력은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국가적 위기상황 등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결코 행정부와 대통령으로 비대한 권력이 집중되게 하지 않으려는 제도적 토대 형성
- 권력의 집중을 통한 폭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에 의한 의회정치를 구현하고, 정부권력을 여러 부처 혹은 각급 수준의 정부에 나누어주는 방식 채택
- 이를 위해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수준에서 정부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부로 분할되었으며, 각급 부처는 헌법상 보장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구현

경제영역에서 자유주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 구현에 기여했으며, 가능한 한 공적부문을 배제하려는 경향

- 미국은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주의 국가 등의 경우처럼 국가주도형 계획경제를 시도하지 않았고, 국가의 대규모 경제개입을 우려하는 경향이 강한 편
- 또한 미국은 사부문 중심주의(privatism)가 강해서 국가비상시기를 제외하고 공사연계형 국가경영체제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
-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이나 국가가 자본을 대규모로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 등의 개념은 미국에서 다소 생소

이처럼 미국의 자유주의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왔으며,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적 삶을 약속하면서 혁명적 이념을 부인하고 강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건국 이후 사회의 안정화와 보수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Chapter 2

미국역사

식민지 시대

가.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

- 1492년 콜럼버스가 서인도제도에 상륙하여 신대륙(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에 소개한 이후 16세기 유럽 각국은 남아메리카를 시작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지 건설에 주력

콜럼버스의 미국 발견(1492년)

나. 영국의 식민지 건설

- 영국은 1607년 버지니아 주에 영국 최초의 식민지인 제임스타운(James Town) 건설에 성공
- 1620년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하여 네덜란드에 가 있던 청교도 일파(Pilgrim Fathers)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號(Mayflower)를 타고 1620년 12월 21일 지금의 매사추세츠州(Massachusetts)에 상륙하여 플리머스(Plymouth) 식민지 건설. 한편 청교도들의 신권위주의적인 체제에 반대하는 다른 종교인들은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코네티컷(Connecticut) 등 식민지 건설
- 이후 1733년까지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13개 식민지 건설

메이플라워號(Mayflower)

독립혁명과 미국의 건국

18세기 카리브 해역에서의 영 · 불간 식민지 영토 분쟁에서 촉발된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 하면서 파리조약(1763.2.10) 체결. 이를 계기로 프랑스는 캐나다, 5대호, 미시시피강 상류지역을 영국에게 양도

가. 독립혁명의 배경

1) 영국 정부의 식민지 정책 집행의 문제점

17세기 중엽 영국은 내전 및 명예 혁명과 같은 국내 혼란과 지리적 원거리로 인하여 효과적 식민지 정책 집행에 각종 문제점 발생하기 시작

※ 당시 미국 식민지는 영국 정부가 직접 지배한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체제 또는 영국왕이 수여한 특허장(charter)을 통한 일종의 봉건적 소유 지배 형태로 운영

2) 18세기 미국 식민지들의 자치 욕구 확대

18세기 미국 식민지들은 경제성장을 이루며 자치를 확대하고 있었던 바, 이를 억압하려는 영국 정부와 마찰 발생

Chapter 2 미국역사

3) 영국 정부의 무리한 재정정책

18세기 중엽 영국은 제국의 팽창과 오랜 전쟁으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설탕조례(Sugar Act 1764)와 인지조례 (Stamp Act 1765) 등 세금을 식민지에 부과. 이에 1765년 5월 버지니아 식민지의회는 '대의권 없는 과세(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식민지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과세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결의안 통과

또한 영국에서 수입되는 종이, 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타운쉔드 법령(Townshend Acts, 1767)으로 야기된 영국과 식민지와의 분쟁은 5명의 보스턴 시민이 사망하는 "보스턴 학살"(1770.3.5)로 발전

영국 식민지 재정 정책의 실패(보스턴 차(茶) 사건: Boston Tea Party)

- 1773년 영국은 미국 식민지의 상인에 의한 차 밀무역을 금지시키고 동인도회사에게 독점권을 부여
- 1773년 12월 16일 식민지 자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격분한 보스턴 시민들은 반(反)영국 급진파인 새무얼 애덤스(Samuel Adams)의 지휘로 항구 안에 정박 중인 동인도회사의 선박을 습격하여 342개의 차 상자를 깨뜨리고 그 안의 차를 모조리 바다로 던짐(보스턴 차(茶)사건(Boston Tea Party))
- 영국정부는 이 사건으로 식민지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보스턴항 봉쇄 법안을 제출하고 군대를 주둔시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스턴 시민들은 이를 거절하고 더욱 단결하여 대항
- 매사추세츠 의회 하원도 이에 동조하여 '혁명정부'의 모체를 구축
- 이 사건은 결국 영국 정부와 미 식민지간 1775년 4월 19일 무력충돌의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미국 독립혁명의 직접적인 발단이 됨

보스턴 차 사건을 묘사한 석판화 (1846년)

나. 독립혁명

- 1775년 4월 보스턴 서쪽의 콩코드(Concord)에 파견된 영국군의 일부가 식민지 민병과 충돌한 사건을 무마하려는 영국과 식민지간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영국과 미 식민지간 전쟁 촉발
- 1775년 5월에 소집된 식민지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는 버지니아州(Virginia) 출신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영국을 상대로 독립 선포
- 과거 영국과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패배한 프랑스, 에스파니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이 참전, 미 식민지군을 후원함에 따라 식민지군에 유리한 전황 전개

독립선언

독립선언문

-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 13개 식민주 대표들이 모여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기초한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채택, 공포
-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은 종결되고, 영국은 미국의 완전한 독립을 승인

독립선언문 요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양도할 수 없는 행복추구권, 자유권, 생명권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국민에 의해 교체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음을 명시

다. 미합중국의 탄생

- 연방헌법의 제정 : 강력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 1787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필라델피아 에서 55명의 대표가 모여 제헌회의가 개최되었고, 연방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안이 채택. 이 헌법은 곧 각 주에 회부되어 13개의 주 중 9주가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헌법으로서의 효력 발생
- 새 헌법에 따라 1789년 연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789년 4월 30일 독립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 수립

Chapter 2 미국역사

영토 확장

- 1783 독립 당시 13개주로 출발
- 1803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Louisiana)를 구매, 국토규모를 2배로 확장
- 1819 스페인으로부터 할양받은 플로리다(Florida)는 이후 미국의 27번째 주가 됨
- 1845 에스파니아 지배하에 있던 텍사스(Texas) 지역은 1835년 미국인 이주자들이 독립하여 텍사스 공화국을 세움. 1845년 미국에 병합되어 28번째 주가 됨
- 1848 캘리포니아(California) 지역을 매수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와 교섭하였으나 실패 후 미국-멕시코 전쟁을 거쳐 캘리포니아, 유타(Utah) 등을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확보
- 1853 대륙횡단 철도건설을 위해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개즈덴 구매(Gadsden Purchase)를 추진하여 아리조나(Arizona), 뉴멕시코(New Mexico) 합병
- 1867 태평양에서 미드웨이 군도를 획득하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Alaska)를 구매 (720만불)
- 1898 하와이(Hawaii)를 합병하여 현재의 국토 모습 형성
- 1912 태프트(William Taft) 대통령에 이르러 대륙 48개주가 정식으로 성립하였으며, 1959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 때 현재와 같은 50개주 성립

남북전쟁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은 1863.1.1 노예해방령을 선포하고 전쟁에 승리했으나, 1865.4.14 노예해방 반대론자 존 윌크스 부스(John Wilkes Booth)에 의해 암살 당함

가. 남북전쟁의 원인과 배경

- 남부지방에서는 노예를 통해 면화를 재배하고 이를 영국으로 수출하는 산업형태를 가진데 비해, 북부와 동부는 제조업과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
- 새로운 州들이 연방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노예제 채택여부가 쟁점화
- 1830년대 노예해방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나. 남북전쟁의 발발과 경과

- 노예제도에 대한 남북간 의견대립이 팽배한 가운데,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반대론자인 링컨이 북부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1861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
- 남부 7개주가 이에 반발하며 분리독립 선언, 노예제를 인정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제퍼슨 데이비스(Jefferson Davis)를 남부 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대통령으로 선출
- 1861년 4월 남부의 섬터 요새(Fort Sumter) 공격으로 내전 시작
- 우수한 공업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1865년 4월 26일 북부의 승리로 전쟁 종결
- 전쟁 종결이후 북부자본 중심으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

Chapter 2 미국역사

산업화와 경제성장

미국 제8 · 9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

가. 제국주의와 먼로 독트린

- 19세기 팽창주의에 따른 영토확장의 움직임 속에 미국은 제국국의 열강에 대항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우월성 강조 시도
- 1823년말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과 독립 직후의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대한 유럽으로부터의 간섭에 대처하기 위하여,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 천명

먼로주의의 내용

①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② 유럽의 미국 대륙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③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건설 배격의 원칙

나. 산업화

- 남북전쟁 이후 미국사회는 급속한 경제혁명을 거침
-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업의 기계화를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지원으로 기업이 활성화, 독점 기업 등장, 1890년 후반부터 금융자본 활성화
-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Theodore Roosevelt)은 대기업을 견제하고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혁신주의적 정책을 추진

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등장

- 1914년 7월 28일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중립을 선언했으나, 독일 잠수함의 미국 기선 루시태니아(Lusitania) 호 격침을 계기로 참전
-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된 이후,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민족자결의 원칙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창설을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상원의 인준거부로 인해 국제연맹 가입 실패
-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경제적 성장을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대국으로 도약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 설립 법안에 서명하는 루스벨트 대통령

라. 대공황과 뉴딜정책

-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만성적 공급 과잉 및 실업상태가 지속
- 1929년 10월 24일 미국 주가가 대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각 부문에 급속도로 파급되어, 제반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경제활동의 마비 상태를 야기
-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한 뉴딜(New Deal) 정책을 시행하여 국가통제 정책을 도입하고, 빈민구제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

※ 1-3차에 걸친 뉴딜 정책의 결과 미국은 대공황의 시급한 위기를 넘기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며, 노동조합 결성 및 소외집단의 지위가 향상되는 사회, 정치적 발전을 달성

뉴딜정책

- 뉴딜정책은 일차적으로는 대공황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나 더 나아가서는 재차 이러한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것
- 정부 권력이 독점 시장에 개입, 동종(同種) 산업간에 규약을 만들게 함으로써 관리해 나가고 농산물 과잉상태는 정부의 통제에 의한 생산 감소로 개선

마. 제2차 세계대전과 얄타 체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 미국이 대공황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1939.9.1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1941.12.7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미국 참전
- 연합국의 승리가 명백해지자,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은 1945.2.4-11 얄타회담을 통해 전쟁 수행과 전후처리문제, 국제연합 창설 등에 관해 합의. 1945.8.15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증대

Chapter 2 미국역사

냉전과 반공운동

트루먼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에 서명하는 모습

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동유럽권을 장악한 소련의 위협을 크게 인식하고 전후 소련과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노력
-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행정부는 세계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기 위해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수립, 1947년 3월 공산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원조를 약속하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선포
- 한국 전쟁에 참전
  -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자 미국은 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 남한의 방어를 위해 참전 당시 미국내에는 전쟁의 목표를 둘러싸고 전쟁의 승리를 추구하는 보수세력과 남한영토의 보존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가진 제한전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진보세력이 대립

나. 마샬 계획과 나토의 성립

- 미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제원조를 제의하는 마샬계획(Marshall Plan)을 수립
- 1949년 4월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서방국가들간의 군사동맹을 추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12개국으로 구성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창설

다. 반공운동과 매카시즘

-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보수세력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크게 인식, 격렬한 반공운동을 전개
- 1947년 공산주의자 색출과정을 통해 미국인 간첩 활동사실이 알려지면서 1950년 9월 23일 국가보안법인 매캐런법(McCarran Act) 제정
- 미국 위스콘신주(州)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매카시(Joseph Raymond McCarthy)는 진보주의적인 민주당 행정부에 반대하며,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폭탄적인 발언을 시작으로 과격한 반공운동을 주도. 그의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중국의 공산화와 잇달아 발생한 한국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민으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았으나, 군부를 중심으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954년 12월 상원에서 매카시의원에 대한 견책 결의가 통과되면서 영향력 상실

미국의 번영과 풍요한 사회

가. 1950년대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안정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행정부는 자유방임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복지국가이론을 수용, 민권신장에 관심

나. 민권 운동의 강화

-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을 중심으로 인종차별 철폐 운동 본격화
  - 1960년대 진보주의적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권운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뿌리깊은 인종차별 관습의 철폐에는 오랜 시간 소요

다. 진보주의 정책의 만개

-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약소민족의 근대적 국민국가 창설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을 인정, 빈곤을 없애기 위한 경제원조를 추진. 이에 따라 평화식량계획 (Food for Peace Program)과 평화봉사단(Peace Corps) 창설

Chapter 2 미국역사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 1962년 9월 쿠바가 「소련-쿠바 무기원조협정」을 체결하여 소련의 미사일을 도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조치를 단행. 소련과의 전쟁 위기는 소련의 철수로 마무리. 이 사건을 계기로 1963.8.5 핵전쟁 방지를 위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TTST, 일명 모스크바조약)이 체결
-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케네디의 진보적인 정책을 이어 받아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개혁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빈곤퇴치, 의료보호 및 교육분야 등에서 활발한 입법활동 전개
- '통킹만 사건'으로 1965년에 시작된 베트남전쟁이 확대되면서 미국내의 반전 움직임이 강화되어 반체제 운동으로 발전. 빈곤층과 흑인 등 소수자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과격한 흑인민권운동과 급진적인 학생운동이 이어짐

링컨과 케네디의 평행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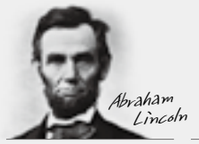

	링컨과 케네디의 평행이론	
1846년	1. 둘은 100년 간격으로 같은 해에 하원 의원에 당선	1946년
1860년	2. 둘은 100년 간격으로 같은 해에 대통령에 당선	1960년
메리 토드	3. 둘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24세의 여성과 결혼	재클린 부비어
	4. 둘은 같은 요일(금) 부인 앞에서 암살	
앤드루 존슨(1808)	5. 둘의 후계자의 이름이 같고, 후계자가 100년 간격으로 같은 해에 출생	린든 B.존슨(1908)
	6. 둘을 암살한 범인은 재판 없이 사살	
포드 극장	7. 둘의 암살 장소는 포드와 연관	포드 차
아들들의 이름	8. 둘은 로버트, 에드워드라는 친족 보유	동생들의 이름

흑인해방운동 지도자, 마틴루터킹

침례교회 목사 장남으로 태어난 마틴 루터 킹은 1948년 모어하우스대학 및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의 신학교를 졸업. 그 동안에 비폭력 저항과 인종 차별 철폐 및 식민지 해방 등을 주창한 간디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보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음. 그는 1954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침례교회 목사로 취임하고, 재직 2년째인 1955년 12월, 시내버스의 흑인 차별대우에 반대하여 5만명의 흑인들이 벌인,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을 지도하여 1년 후인 1956년 12월에 승리를 거둠. 그 이후 그리스도교 지도회의를 결성하고 1968년 4월 테네시주 멤피스시 흑인 청소부 파업을 지원하다가 암살당하기까지, 비폭력주의에 입각,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시민권을 얻기 위한 '공민권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 1964년 노벨평화상 수상

데탕트에서 대테러전까지

가. 닉슨과 키신저 외교

- 존슨 행정부와는 달리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행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유방임주의를 추구
- 국제외교관계에서 강대국중심의 세력균형 외교 추진
  - 1971년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
  - 1970년 2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통해 베트남 철수 명시
-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사임

닉슨 대통령과 저우언라이 중국 공산당 총리(1972)

Chapter 2 미국역사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나. 카터의 대외정책

- 1976년 미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시기에 선출된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자원보존을 정부개입주의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지기반의 약화와 낮은 국민적 신뢰도로 정책수행에 어려움
- 대외정책에서는 인권정책을 강화하였으나, 이란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시아파 세력 주도의 1979년 11월 미국인 인질사건발생 및 미군에 의한 구출작전 실패로 카터와 미국의 위신이 추락, 국민들은 카터 행정부를 비난하고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날드 레이건

다. 보수주의의 부활

- 1981년 취임한 로날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금을 줄임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를 추진. 이는 재정적자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수반
-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국가적 위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산주의 팽창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군비를 확충
- 1980년대의 보수적 분위기에서 1988년 공화당 후보 조지 부시(George H.W.Bush)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레이건 노선을 승계
  - 국가 재정적자 증가 및 경제상황 악화 지속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은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소련의 개혁 · 개방으로 촉발된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의 국제적 위신 상승

미국의 제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라. 클린턴과 진보주의

- 1992년 지속적인 경제침체 해결에 대한 기대로 정부개입과 복지국가 노선을 추구하는 빌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 대통령이 당선
- 클린턴 대통령은 소수인권과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고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등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을 초래
  -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 · 하원을 장악하였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호황에 힘입어 2차 대전 이후 민주당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
- 외교정책 목표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대를 표방하고 이를 위해 인권신장 비확산, 테러문제 해결에 주력
  - 탈영전기 대의개입을 자제하면서도 코소보사태 개입, 핵문제 관련 북한과 합의, 대 이라크 제재 주도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

마. 부시행정부와 대테러전

- 냉전의 종식이후, 국제적 규모의 테러가 빈번해지면서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항공기를 활용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대테러전을 본격 수행
-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축출(2002.12)하고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축출 (2003.5)하는 등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진행. 대테러전 차원에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
-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한 미국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자차원에서의 다면적 무역자유화 추구

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가운데 2008.11.4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후보가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
- 오바마 대통령은 2009.1.20 취임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 역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등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
- 또한, 적극적 · 전향적 대외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및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설정을 위해 노력
- 오바마 대통령은 2012.11.7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2013.1.20 집권 2기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

오바마 대통령 취임선서(2013.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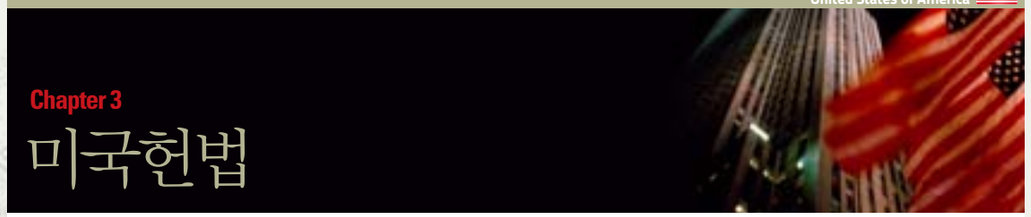

Chapter 3

미국헌법

헌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 설탕조례(1764), 인지조례(1765), 타운쉔드 법령(1767) 등 영국의 각종 세금 부과에 대한 반발로 인해 식민지의 대영국 단결 초래
- 대의권 없는 과세에 대한 반발을 넘어서 영국의 식민지 통치 자체에 반대하는 움직임 대두
- 1774.9.5-10.26 1차 대륙회의에서 '권리 및 결심 선언(Declaration of Rights and Resolves)' 초안 작성
  - 식민지의 청원권, 배심원에 의한 재판권, 상비군으로부터의 자유,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에서의 대의권 요구
- 식민지의 요구에 대한 영국의 거부로 긴장 고조
  - 1775.4.19 매사추세츠州 렉싱턴(Lexington) 및 콩코드(Concord)에서 전투 발발
- 1775.5.10 2차 대륙회의 소집
  - 미국은 조지 워싱턴을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 전쟁 방지를 위한 마지막 노력 으로 '올리브 가지 청원(Olive Branch Petition)'을 영국으로 보내 적대행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영국의 거부로 전쟁 분위기 고조

헌법 제정 과정

1776.7.4 독립선언
독립선언서에서 만인의 평등, 행복추구권, 자유 및 생명권 등 규정

1777.11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채택
중앙정부 및 연합의회 실질적 권한 결여

1787.5 제헌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개최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55인 참석

1787.8 제헌회의에서 대타협(Great Compromise) 달성
상원에서 각 주의 동등한 대표권 인정, 하원에서는 인구비례의 대표권 인정

1787.9.17 미국 헌법 완성
임기, 선출방식 등 대통령(President) 관련 사항 포함
헌법제정회의 참석자 41명중 39명 서명

Chapter 3 미국헌법

1787.12.7 ~1790.5.29
13개 州 헌법인준 의결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뉴저지, 조지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뉴 햄프셔, 버지니아,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順

1791.12.15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 불리는 수정헌법 10개조 확정

1795.2.7 ~1992.5.7
수정헌법 제 11~27조 비준

헌법 서명

미국 헌법의 의의

미합중국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인 동시에 최고법으로서, 정의, 자유 및 인민주권 등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사상 명시. 전문(Preamble)에서 영국 식민지였던 느슨한 연합이 아닌 강력하고 독립적인 미합중국이 존재함을 표현 암시

Chapter 3 미국헌법

헌법의 구조 및 내용

구조

- 헌법 : 전문(Preamble), 7개 조(Article), 21개 항(Section)
- 수정조항(Amendment) : 27개 조항

※ 제1~10조(권리장전) :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의 권리 보호

상세 내용(부록 참조)

전 문	더욱 완전한 연방 형성 및 정의 확립을 위한 미합중국 헌법 제정을 선언
제1조(입법부)	상 · 하 양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의 권한 및 의원 선출방식 규정
제2조(행정부)	행정권을 보유한 대통령의 선출방식, 임기, 권한 및 의무 규정
제3조(사법부)	연방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설치 및 사법권 범위 규정
제4조(州)	주간의 상호신뢰와 존중, 주시민의 他 주에서의 권리, 주의 미합중국 가입 등 상호관계 규정
제5조(헌법수정)	헌법 수정 방법 및 절차 규정
제6조(미합중국)	헌법과 미합중국 법률이 최고법임을 선언, 연맹규약하의 조약, 채무 및 계약은 미합중국이 계승함을 규정
제7조(헌법인준)	헌법인준 위해 9개 주의 찬성이 필요함을 규정
수정 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 및 청원의 자유
수정 2조	무기휴대의 권리
수정 3조	개인 주거지 내의 군대 숙영 금지
수정 4조	불합리한 체포 및 수색의 금지
수정 5조	피의자의 권리보장, 이중처벌 금지 및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수정 6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정 7조	민사재판에 있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정 8조	과다한 보석금이나 벌금 및 가혹하고 비상식적 형벌 부과 금지
수정 9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시민이 향유할 권리
수정 10조	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부여되지 아니한 권한은 주나 국민이 보유
수정 11조	사법권의 한계
수정 12조	대통령 및 부통령 투표 분리
수정 13조	노예제도 폐지
수정 14조	시민권(citizenship) 및 시민의 권한
수정 15조	인종, 피부색 등에 따른 투표권 제한 금지
수정 16조	소득세 과세
수정 17조	상원의원의 직접선거
수정 18조	주류의 제조, 판매, 운반 및 수입 금지 : 금주령(the Prohibition)
수정 19조	여성 참정권(Women's Suffrage)
수정 20조	대통령 및 부통령 임기 만료 시한, 의회 개회 시한 : "lame duck amendment"
수정 21조	18조 폐지(repeal)
수정 22조	대통령 3선 금지
수정 23조	District of Columbia(D.C.)의 대통령 선거시 선거인 임명권
수정 24조	인두세 등 세금미납을 이유로한 선거권 제한 금지
수정 25조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
수정 26조	투표권자 기준 연령 18세로 확대
수정 27조	상 · 하 양원 의원의 자체적 보수 증가 금지

Chapter 3 미국헌법

헌법 주요 원칙

1) 연방주의(federalism)

• 정부권력을 중앙정부와 각 州가 나누어 갖는 연방제도(federal system)로 중앙정부 권력의 원천은 州가 아닌 국민임을 명시

2)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 국가권력은 입법부(법률제정), 행정부(법률집행), 사법부(법률해석)에 배분되어 있고, 동 3개 기관은 헌법상 동등하며 상호 독립적

3)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 권력 분립을 보완. 어느 부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

※ 견제와 균형 개념은 의회의 상 · 하양원간, 그리고 연방정부와 州정부 간에도 적용 가능

※ 각 부의 권한은 다른 2개의 부의 견제를 받게 됨에 따라 권력의 균형 도모

견제와 균형 방법

❶ **행정부 → 의 회** : 법률안 제안 서명, 거부권, 특별회기 요청, 조약 체결

❷ **의 회 → 행정부** : 상원의 공무원 임명 인준 및 조약 승인, 정부기관 설치 및 폐지, 대통령 탄핵, 거부권 재의결, 조사권 발동

❸ **의 회 → 사법부** : 위헌결정 번복을 위한 헌법 수정, 연방판사의 임명 인준 및 탄핵, 대법원 등의 정원 결정

❹ **사법부 → 의 회** : 법률의 위헌 결정

❺ **사법부 → 행정부** : 행정 집행의 위헌 결정, 조약 해석

❻ **행정부 → 사법부** : 판사 임명, 재판결과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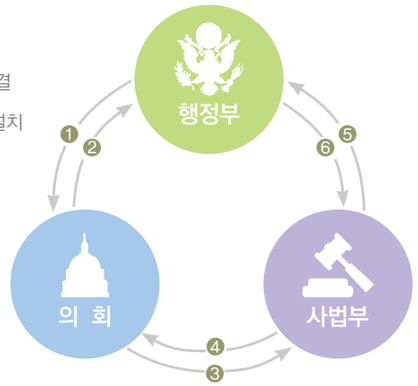

헌법수정

• 미국의 헌법은 현재까지 27번 수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5번 수정

-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는 헌법제정 당시 빠져있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미국 초대의회가 개원하면서 포함시킨 것이며, 수정 18조는 금주법으로 나중에 수정 21조에 의해 무효화

Chapter 3 미국헌법

1) 수정 절차

• 헌법이 개정(수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정안의 제안(proposal) 및 비준(ratification) 필요

• 헌법 제5조에 헌법 개정방법 2가지 명시

① 상 · 하 양원의 각각2/3 이상 찬성에 의한 개정

② 주 의회 2/3 이상 찬성에 의한 제헌회의 소집 · 개정논의(현재까지 선례 없음)

2) 사회적 변화에 따른 헌법수정

• 수정헌법의 내용은 미국 사회의 변화와 연관

- 참정권 관련, 수정헌법 15, 19, 26조를 통해 참정권이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21세 이상 백인남성'에서 흑인, 여성, 그리고 18세 이상으로 확대

- 흑인에 대한 차별 문제 관련, 수정헌법 13, 14, 15조 3개 조항은 노예제 금지, 흑인들에 대한 시민권 및 투표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전쟁 결과를 반영하며, 수정헌법 24조는 참정권에 있어 여전히 차별받고 있던 흑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부여

최근 헌법수정 논의 주요사례

1) 총기 휴대의 권리 관련 헌법내용

• 2012.12.14 초등학생을 비롯해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네티컷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의 총기참사를 계기로 미국 내 총기규제 찬반론이 재점화

- 특히 미국 수정헌법 제2조 무기 휴대의 권리 조항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 총기 소유를 헌법으로 보장

- 반면, 총기 소유 지지자들은 총기 소지와 휴대는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 기본권이며 천부인권이라고 주장

• 총기소유의 자유가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은 미국 내 뿌리깊게 박혀 있고 규제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총기를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는 쉽지 않은 문제

• 또한 미국총기협회(NRA : National Rifle Association) 등의 반대 로비로 인해 총기 보유를 제한하는 입법 작업은 매번 실패

[미국총기협회(NRA :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총기협회(NRA)는 수정헌법 2조의 규정, 즉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중요한 가치로 신봉하는 그룹과 스포츠와 사냥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기 판매와 소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굳건하게 지위를 유지

- 420만여 명의 회원과 본부에 3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산의 상당부분을 공화 민주당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기부

- 2001년 포춘(Fortune)지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을 연방의회 의원, 의회 보좌진, 백악관 보좌관 대상 설문조사 통해 선정한 결과 미국총기협회가 87개 단체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강력한 로비스트와 자원이 풍부한 정치활동 단체, 전국의 풀뿌리 조직으로 성장

• 2012년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사건을 비롯한 최근 일련의 총기 사건으로 인한 총기 규제 논쟁 관련, NRA는 총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무장경비를 세우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총기 휴대의 권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중

2) 대통령 자격 규정 관련 헌법수정

•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출생에 의한 시민권자이면서 35세 이상이고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 필요

• 출생에 의한 시민권자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은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이던 건국 초기 상황과 연계

- 영국 태생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우려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만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고 못을 박은 것

• 출생 관련 자격은 이민자의 증가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어 전근대적이며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헌법수정 논란도 진행중

US Government

PART 2

정부

Chapter 4 연방의회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Chapter 6 연방사법부

Chapter 4

연방의회

개관

- 미국의 정치제도 설명시 대통령 중심제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실제 미국 정치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정부 기관은 의회
  - 입법권을 갖는 의회에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미국이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정당뿐만 아니라 이익집단 등이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대의회활동이 중요
  - 대통령 역시 주어진 권한을 갖고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예산 배정이 필요
- 이러한 이유로, 삼권분립에 기초한 미국 정치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세 개의 정부 구성요소 중 첫 번째 구성요소(the First Branch)가 의회로 간주
- 따라서 미국의 정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가 구성되어 어떻게 운영되며, 그 안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법안이 마련되는지 이해 필요
  - 의회에서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는 정당, 이익집단, 대통령, 일반 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
  - 따라서 의회의 조직과 운영 및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행위자와 의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자들 자체에 대한 이해도 선행 필요

미국 의회의 특징

- 세계 선진 민주국가 중 미국만큼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나라는 없음. 미국 헌법 창시자들도 헌법 제1조에 의회를 규정함으로써 의회가 3권분립의 정점에 있음을 규정
- 미국 의회(Congress)는 상 ·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 건국과정에서 주의 대표성에 관한 큰 주와 작은 주간의 대타협의 산물로 탄생

미국 의회의 특징

- 각 주는 상원(Senate)에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반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의 차이를 인정
- 상원의원은 현재 직선을 통하여 선출되지만 1913년 이전에는 주 의회에서 선출하였으며, 상원의원 정원은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1/3을 다시 선거
- 1789년 당시 하원의원 수는 65명이었으나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하원의원 수가 점차 늘어나다가 1929년 법률로 하원의원 정원을 435명으로 확정

- 의회 선거는 짝수 해의 11월 첫째주 월요일이 지난 다음 화요일에 있고 새로운 의회는 다음 해 1월에 구성. 매 의회는 2년간 활동하는데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년간의 의회 기간중 1년차를 제1회기(First Session)라고 부르고, 2년차를 제2회기(Second Session)라고 부름
- 1789년 제1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 2013년 제113대 의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1845년 미 의회에서 정 · 부통령 선거일자를 법률로 위와 같이 규정한 이래, 대통령, 연방 상 · 하원, 주지사, 시장, 주의회 선거 등을 같은 날 시행)

의회 조직

가. 지도부

● 상원

- 헌법은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President)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통령은 주요 의전행사 외에는 상원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며 투표권도 없으나,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 한해 결정투표권(casting vote) 행사

- 부통령 부재시에는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상원 회의를 주재하는바, 임시의장직은 주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음. 현 임시의장은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의원(민/버몬트)
- 상원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이며, 각 당의 원내총무(Whip)가 이들을 보좌. 현 다수당 대표는 해리 리이드(Harry Reid) 의원(민/네바다), 소수당 대표는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의원(공/켄터키). 현 다수당 원내총무는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 의원(민/일리노이), 소수당 원내총무는 존 코닌(John Cornyn) 의원(공/텍사스)

● 하원

- 하원의장(Speaker)은 매 의회 초에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지명되어 하원 본회의에서 자동 선출되는데, 하원 업무를 총괄 · 감독하고 공식적으로 하원을 대표하며, 대통령 유고시 계승서열 2위가 됨. 현 하원의장은 존 베이너(John Boehner) 의원(공/오하이오)
- 하원의장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하원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로, 하원의장과 함께 의회운영에 책임을 짐. 현 다수당 대표는 에릭 켄터(Eric Cantor) 의원(공/버지니아)이며, 소수당 대표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민/캘리포니아)
- 각 당의 원내총무(Whip)는 모든 의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요 법안의 투표시 사전 표점검으로 당정책을 관철시키는 등 원내활동의 윤활 유와 채찍 역할을 겸하고 있음. 현 다수당 원내총무는 케번 맥커시(Kevin McCarthy) 의원(공/캘리포니아). 현 소수당 원내총무는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의원(민/매릴랜드)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2013.5.8)

Chapter 4 연방의회

나. 위원회

- 위원회(committee)는 의회 활동의 중심축을 이루며, 입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위원회의 종류

①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	의회의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법안을 기초하고 수정하여 본 회의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하는 기능을 담당 – 113대 의회의 경우, 상원에 20개, 하원에 21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음
②특별위원회(special or selct committee) :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특별조사 ·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
③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	상 · 하원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현재 4개의 합동위원회(경제, 조세, 도서관, 출판)로 구성
④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 :	상 ·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⑤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	하원에만 있는 제도로서 100명으로 구성

하 원	상 원	합 동
농업위	고령화위*	양원협의회
세출위	농업 · 영양 · 산림위	경제위
군사위	세출위	도서관위
예산위	군사위	인쇄위
교육 · 노동위	은행 · 주택 · 도시위	조세위
에너지 · 상업위	예산위	
재무위	상업 · 과학 · 교통위	
외무위	에너지 · 천연자원위	
국토안보위	윤리위*	
행정위	환경 · 공공사업위	
정보위**	재무위	
법사위	외교위	
천연자원위	보건 · 교육 · 노동 · 연금위	
감독 · 정부개혁위	국토안보 · 정부위	
규칙위	인디언위***	
과학기술위	정보위*	
중소기업위	법사위	
윤리위	규칙 · 행정위	
교통 · 인프라위	중소기업	
향군위	향군위	
세입위		
(전체위)		

*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명칭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상설특별위원회

- 하원의원의 경우 약 2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 정도의 소위원회에 소속되는데 반해, 숫자가 적은 상원의원의 경우 3-4개의 상임위원회와 약 7개의 소위원회에 소속
- 단1석이 많은 경우라도 다수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장악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주도권행사
  - 2000년 선거 결과 2001년 구성된 107대 의회에서는 상원 의석 수가 공화, 민주 양당간에 50:50으로 동수가 되었으나 상원의장인 Cheney 부통령이 casting vote를 행사하여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 모든 위원장직을 차지하였으며, 다만 양당이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예산을 균등 배분키로 합의

의회내 비공식 조직들

이러한 비공식 조직의 대표적인 예로는 하원의 민주당 연구모임(Democratic Study Group)을 들 수 있는데, 이 단체는 1959년 보수적인 남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자유주의적 정책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조직으로는 공화당 연구 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가 있다. 1970년대 조직되었으며, 공화당의 보수적인 정책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초당파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구성되는 조직도 있다. 각 인종별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조직이 예인데, 예로 히스패닉 의원총회(Congressional Hispanic Caucus)는 히스패닉계 의원들이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이다. 성격상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지만, 민주당 소속 여부가 구성원이 되는 주요 기준이거나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 단체는 아니다. 비슷한 성격의 단체로 흑인 의원총회(Congressional Black Caucus)가 있는데, 아프리카계 의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이해관계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계의 이해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계 의원총회(Congressional Asia Pacific American Caucus)도 있다.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양당 의원총회(Bipartisan Disabilities Caucus)나 재난 복구 및 대처 양당 특별 조사 모임(Bipartisan Working Group on Disaster Recovery and Response)과 같이 명칭부터 정당별 이해관계를 초월한 점을 밝히고 있는 조직도 있다. 상원의 경우 1985년 법률로 설립된 국제 마약 통제 의원총회(Senate Caucus on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가 정당별 이해관계를 초월한 의원들 모임의 예이다. 이 의원총회는 상원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원총회로서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한 명씩 두 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두고 있다.

출처 :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의회의 입법과정

가. 법안제출

1) 제안절차

- 법안 제안자가 법안 또는 결의안을 의회 서기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Hopper라고 부르는 상자에 투입함으로써 제출
- 제출된 법안은 제출자 이름과 함께 접수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정부인쇄소(GPO)에서 인쇄
- 의장은 법안의 번호와 건명만을 낭독하고 토론없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
- 법안은 상 · 하원 어느 곳에나, 양원에 동시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 가능

2) 제안자

- 상원에서는 인원제한 없이 공동제안 가능.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내에서 공동제안 가능

3) 법안의 종류

- 공익법안(Public Bills) : 일반법안, 정부재정에 관계되는 법안으로서 대부분 행정부처로부터 제안
- 사익법안(Private Bills) : 주로 지역 및 개인에 관계되는 법안으로서 교량 건설 법안, 특정인에 대한 특허 법안 등이 해당

4) 법안의 제출형식

- 법안(Bill) : 하원에서는 "HR", 상원에서는 "S"로 표시. 상 · 하원 통과후 대통령 서명에 의해 법률로 확정되며, 일반적인 목적의 법제정시 사용
- 합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 하원에서는 "HJ", 상원에서는 "SJ"로 표시. 법안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한정된 목적 또는 특수목적의 법 제정시 사용
- 공동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 하원에서는 "H Con Res", 상원에서는 "S Con Res"로 표시. 양원 통과가 필요하나 대통령의 승인은 불요. 의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회 내부문제(내부예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확정되지도 않고 법률에 대한 영향도 별무
- 결의안(Resolution) : 하원에서는 "H Res", 상원에서는 "S Res"로 표시. 상 · 하원중 하나만 통과되며, 보통 각 원의 내부문제 또는 각 원의 의사(sense of congress)를 표시할 때 사용

나. 위원회 심의

- 정부관계기관 의견 청취 :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접수후 정부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의한 청문회 개최 및 심의
- 소위원회 보고 : 소위원회는 법안심의후 상임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하거나 또는 수정을 제안
- 본회의 건의여부 투표 :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 건의를 본회의에 상정할 지의 여부를 투표로써 결정
- 보고서 작성 : 보고가 결정되면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최초의 법안제출자가 보고서를 작성. 이에 소수견해가 있으면 이를 보고서에 수록. 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법안 소개, 위원회 활동 요지, 항목별 분석, 토의과정, 법안에 의한 현행 법안의 변화, 개인 · 소수 또는 추가 견해의 순으로 작성
- 규칙위원회 심의(하원의 경우) :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대부분은 규칙위원회에 회부, 분류되어 본 회의에 송부
- 간사(Floor Manager) 선정 :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한 반대를 봉쇄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각 정당은 담당법안 심의 간사격인 간사를 선정. 간사는 반드시 서열에 의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법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본 회의 심의에 있어 숙달된 의원을 선정 하는 것이 상례

다. 본회의 심의

1) 의사일정 : 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한 법안은 의사일정에 상정

하원의 의사일정

-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Union Calendar) : 이 의사 일정에는 모든 세입 및 세출법안과 직 · 간접으로 금전 및 재산에 관계되는 성격의 모든 법안이 상정 되며, 여기에 상정된 안건은 그 순서에 구분없이 즉각 처리
- 본회의 의사일정 (House Calendar) : 세입 및 세출 법안을 제외한 모든 공법안이 여기에 상정
- 인정 의사일정 (Corrections Calendar) : 주요 현행법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안건이 상정
- 사법안 의사일정 (Private Calendar) : 개인이나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안 등이 상정

상원의 의사일정

- 상원에는 조약과 임명동의를 위한 "Executive Calendar" 하나만 존재

2) 토론

하원에서의 토론

-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우선처리를 위한 특별규칙 요구결의안을 규칙위원회에 제출
- 규칙위원회는 해당안건의 처리방식을 결정, 본회의에 보고. 일반토론이 끝난 후 안건이 조목조목 낭독되며, 이 때 수정동의가 나오면 수정안에 대한 찬 · 반 토론을 실시

상원에서의 토론

- 제출된 안건이 시급하거나 중요할 경우에는 만장 일치 또는 다수투표에 의해 조속 처리. 상원에서의 토의는 무제한인바, 때로는 소수파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Filibuster)을 통해 법안통과를 저지(재적 3/5 찬성에 의해 "토론종결(Cloture)"가능)

3) 표결

- 제3회독 및 최종표결 : 수정안에 대한 표결후 제3독회에서는 법안의 낭독없이 제목만 낭독하고, 제3회독 후에는 토론없이 법안 전체에 대한 표결을 실시

법안의 표결 방법 5가지

- **구두투표** (Voice Vote)
- **기립투표** (Standing Vote, Division Vote)
- **투표검사인** (Teller) **사용방법**
  정족수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실시하며, 의원들이 의장석 앞을 지나면서 투표하는 것으로 총 투표 결과만 발표
- **투표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하는 방법** (Recorded Vote)
  정족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하며,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각 의원의 투표시 그 결과가 전면의 전광판에 기록되는 동시에 의사록에 자동적으로 기재
- **호명기록 투표** (Roll Call Vote)
  Yea와 Nay에 의한 구두투표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 사용

- 상원의 표결방법 : 구두투표 (Voice Vote), 기립투표 (Standing Vote, Division Vote), 호명기록 투표(Roll Call Vote)
- 표결정족수 : 헌법개정,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재의결, 조약의 비준 동의, 탄핵재판 판결 등은 2/3이상 찬성, 그 이외의 모든 법안은 단순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

라.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

1) 양원협의회의 필요성

양원 중 어느 한 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타원에 송부. 만약 타원이 극히 부분적인 수정을 하고 동 법안을 제출한 원이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송부. 그러나 양원이 상호간 차이점에 대하여 완전합의를 보지 못할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원협의회에서 법안을 심의

2) 양원협의회의 구성

양원협의회는 법안을 취급하는 위원회의 중진의원들로 구성. 보통 각 원에서 지명된 3-9명의 의원들로 구성. 단, 양원협의회의 임무는 토론을 통한 이견 조정에 있으므로 양원간 대표의원수가 반드시 동수가 아니어도 무방

3) 법안 심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양원이 일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입법조항을 삽입 불가. 협의회에서 양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기까지는 통상 수일 내지 수주일이 소요

4) 보고서 채택

협의회의 참석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건의가 포함된 보고서를 준비. 이 때 양원 참석자들은 보고서에 대한 설명문을 준비해야 하며, 이 보고서와 설명문은 양원에서 문서로 인쇄된 후, 양원에 제출 및 승인 필요

마. 대통령 서명 및 거부권 행사

1) 대통령 서명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각 원의 서기에 의해 등록되어 서기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송부. 대통령은 송부된 법안에 10일 이내에 서명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동 법안은 법률로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

2) 대통령의 거부권 (veto)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위시한 모든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 가능. 다만 법안의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부분 거부권은 행사 불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안에 이의서를 첨부, 발의한 의원에게 다시 돌려줌. 환부를 받은 원은 대통령의 이의를 의사록에 수록후 본회의 표결에 회부. 표결이2/3의 찬성을 얻으면 이의서와 함께 타원에 회부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현황
(괄호안은 의회에서 2/3이상 찬성으로 재가결된 횟수)

- 트루먼 : 250(12)
- 아이젠하워 : 181(2)
- 케네디 : 21(0)
- 존슨 : 30(0)
- 닉슨 : 43(7)
- 포드 : 66(12)
- 카터 : 31(2)
- 레이건 : 78(9)
- 부시 : 46(1)
- 클린턴 : 37(2)
- 부시 : 12(4)
- 오바마 : 2(0)

타원에서 재심결과 역시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이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 이때 양원의 표결은 호명표결 방식으로 행해지며, 찬 · 반 투표자의 성명이 의사록에 기재

Pocket veto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10일 이내에(일요일, 휴일 제외) 서명을 하지 않고 시일을 지연하고 있는 도중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하게 되면, 그 법안은 대통령의 정식 거부권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폐기

폐회로 인한 veto

상원이나 하원 중 一院만을 통과한 법안이 他院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이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 一院에서 통과된 법안은 완전히 폐기

3) 법안의 법률확정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또는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veto에 대한 재표결이 있은 후 법률로서 확정. 법안은 공익법안 또는 사익법안으로서 매 회기(2년)내의 일련번호를 부여.(예 : Public Law 36, 91th Congress 또는 Private Law 21, 90th Congress)

연방 예산 심의

가. 연방예산 집행절차

- 미 연방정부의 예산은 행정부에 의한 예산편성과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이 집행, 운영되며 결산을 통해 예산 회기가 종결
- 매 회계 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9월 30일에 종료

나. 행정부의 예산편성

- 행정부의 각 기관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 계획을 수립
- 동 예산은 연방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출
- 백악관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을 수정한 후 하나의 예산안으로 통합하여 의회에 제출

다. 예산의 구성

미국과 영국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도 법률의 형식으로 처리하며, 의회에서는 예산승인(authorization) 절차와 재정지출(appropriation) 절차로 분류

- 승인절차에서는 정부기관의 운영이나 개별 사업을 승인하며, 195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연방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승인되었으나, 1960-70년대 이후 전비(베트남전) 및 행정부 감시 강화(워터게이트 등)의 목적으로 매년 승인 절차과정을 거치는 형식으로 변경
- 재정지출 절차의 경우 ①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형태, ②긴급구호나 재난지원과 같은 돌발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형태, ③회계년도 개시일이 지나도 재정지출을 받지 못한 사업을 위한 갱신 프로그램 형태로 구분

연방예산은 크게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의무적 지출(Mandatory Spending)로 구분

- 재량적 지출: 매년 재정지출 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일반적인 정부 사업비용 등이 이에 해당
- 의무적 지출: 세출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개별 법률에 의해 지출이 정해진 예산으로 사회복지,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 예산 및 국채 이자 등이 이에 해당

라. 의회의 예산안 심의

심의 일정

01	2월 첫째 월요일 限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
02	예산안 제출 후 6주 限	상 · 하원 각위원회, 각원 예산위원회에 예산평가 보고서 제출
03	4. 15 限	상 · 하원 예산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채택
04	5. 15	하원, 세출 예산 심의 개시
05	6. 10 限	하원 세출위원회, 13개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서 작성
06	6. 30 限	하원, 13개 세출 예산안 통과
07	7월	상원, 하원 통과 세출 예산안 심의
08	7.15 限	대통령, 수정 예산안 제출
09	8 ~ 9월	상원, 세출예산안 심의 통과 ※ 상 · 하원 통과 세출예산안이 상이할 경우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 작성
10	9.30 限	대통령 서명으로 예산 성립 ※ 9.30 까지 모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잠정지출 결의안 (Continuing resolution) 채택
11	10.1	회계연도 시작

Chapter 4 연방의회

의회의 예산심의 기구

-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예산위원회는 상 · 하 양원에 공히 설치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는 예산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 편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순환직인데 비해, 상원 예산위 위원들은 영구직이기 때문에 상원 예산위가 하원 예산위보다 더 큰 영향력 보유
-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세출위원회는 상 · 하 양원 공히 설치되어 있으며, 산하에 분야별 13개 소위원회를 보유. 세출위원회는 예산을 확정하며 계수조정 작업을 맡고 있어 권한이 막대
-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의회 예산국은 연방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제출한 예산을 분석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그 밖에 양원의 예산위원회를 보조하고 기타 위원회 및 위원들에게 예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

※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하원에만 있으며, "대표없이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라는 역사적 전통에 따라 미 헌법은 조세권을 미 하원에만 부여(1조 7항)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상원 재무위에 비해 권한이 막강(단, 예산심의 · 집행절차에는 불관여)

입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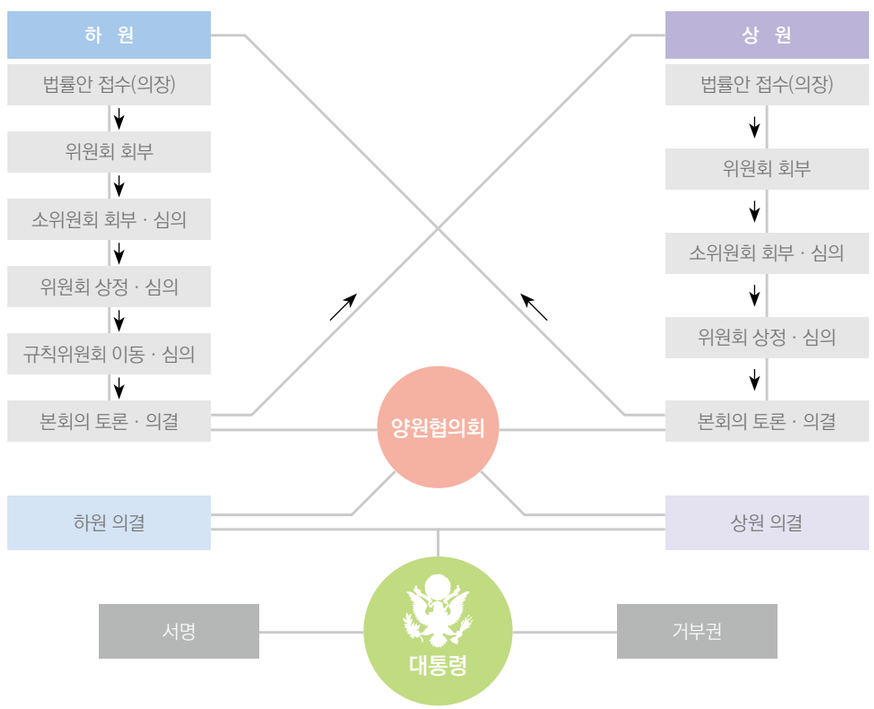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개관

-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식민지 시대에 그 모국이었던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반동으로, 영국적 정치질서와 단절된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하는 데서 출발
  - 즉, 의회정치제가 영국의 오랜 정치적 전통과 경험적 산물에 의해 발전된 데 비해, 대통령제는 미국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치 ·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인위적이고도 의식적으로 고안된 제도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미 관료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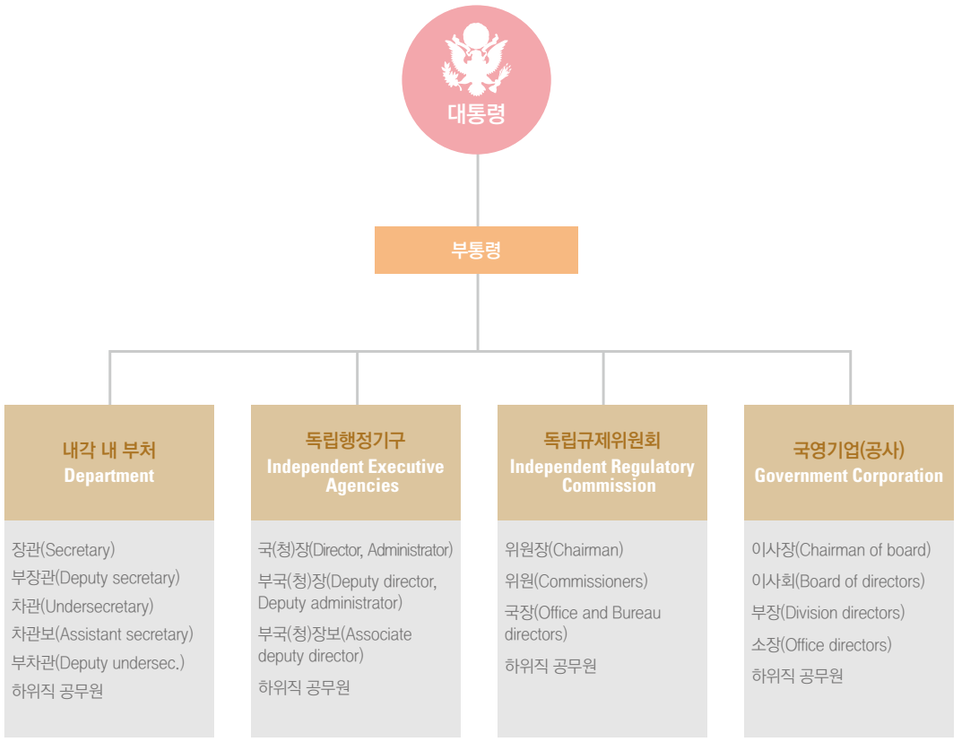

출처 :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 이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 정착된 대통령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는 조직 및 기능상에서 서로 분리되어 최대한 독립성 유지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고 두 권력주체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독주 방지, △행정부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집행권력의 일원적 구성이 특징이며 부통령제를 보유, △의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를 양원제로 구성하여 하원을 상원이 견제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에 균형 유지 등이 주요 특징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제의 장단점

대통령제의 장점

- 대통령제에서는 각료의 임면권을 갖는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임기를 갖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안정된 행정부 유지
- 정책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개인의 책임과 권한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므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 효율적인 국정 운영 가능
- 대통령제에서의 정부의 수반은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강력한 민주적 정통성 확보
-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이 분명하게 독립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안전장치 존재

대통령제의 단점

-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러한 1인을 선출하게 됨으로써 승자독식의 경쟁구조를 성립시키며, 특히 선거에서 오직 한 후보와 정당만이 승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패자로 남겨져 갈등 상황 발생 가능
- 승자독식의 경쟁구조 때문에 정치적 경쟁이 최다득표의 가능성이 많은 사회적 쟁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경쟁과 동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자들의 권익이 다소 경시되거나 정치 무대에서 제대로 대변되기 힘들 가능성
-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과 의견 불일치가 지속될 경우 정치체제 전반의 심각한 교착상태 발생 가능
- 대통령제에서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적 리더십 발생 가능

대통령 호칭의 어원

미합중국 헌법(1787)이 최고 집행자에 대한 호칭을 따로 정해두지 않음에 따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당시 취임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자 자유의 수호자이신 높으신 각하(His High Mightines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otector of Their Liberties)"라 선서키도 하였으나, 이러한 명칭은 군주제의 느낌을 풍긴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차후 "Mr.President"로 변경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헌법 제2조에서 대통령의 집행권(Executive Power) 규정

1) 공직임명권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장관, 대사, 대법원판사 등 정부 고위관리 임명(군대 포함, 7만 5천명을 상회하는 공직자의 임명권 보유). 대통령 권위 손상을 우려, 상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고위관료, 특히 내각구성을 위한 장관 지명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존중(대통령이 인준이 어렵다고 판단시 지명 자진 철회)

2) 의회소집권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의회에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발표하는 바, 이를 위해 상원, 하원 또는 상 · 하원 모두 소집할 수 있는 권한 보유. 의회가 연중 소집되는 오늘날 견제와 균형을 위한 상징적 의미 불과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3) 거부권

- 의회 제정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 보유
- 거부권 행사 의사 표시만으로도 의회의 입법활동에 영향

4) 항목별 거부권(Line-item Veto)

- 특히 세출법안에서 항목별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1998년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아 항목별 거부권 효력 상실

5) 조약체결권

- 외국 정부와의 조약체결
- 외국 대사의 신임장 접수
- 역사적으로 상원은 대통령이 제출한 조약안의 약 70% 비준
- 상원, 조약안의 비준 이전에 수정안 요구 가능
- 대통령은 상원의 비준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이용

※ 대통령은 행정협정을 통해 외국정부와 비밀스럽고 민감한 문제에 관해 상원을 거치지 않고 조약체결 가능
(1900년 이후 상원의 비준을 요하는 일반 조약 보다 훨씬 빈번히 사용, 대통령의 외교부문에서의 역할 더욱 공고화)

6) 최고 사령관(Commander in Chief)

- 대통령은 육 · 해 · 공군의 최고 사령관
- 선전포고권은 의회가 보유
- 1973년 의회는 전쟁수행법(War Powers Act)을 제정하여 의회의 동의 없는 대통령의 미국 군대 적지 파견이 불가하도록 규정(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 의회는 재가결 후 통과)한바 있으나, 동법의 합법 · 위법 연구에 대한 대통령-의회간 갈등 지속

7) 사면권

-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하는 바에 따라 사면(pardon)과 형 집행정지(reprieve) 승인(grant) 가능
-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범죄에 대해 전적으로 사면권 행사 가능
- 정치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포드, 카터, 부시 대통령 등이 무리한 사면으로 재선에 낙선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 권한의 변천

초기 대통령 (1789년 ~ 1803년)	대통령의 위상 확립 및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영향
의회 주도시대 (1804년 ~ 1900년)	리더쉽 약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가권력 및 국정운영 중심이 의회에 집중
현대적 대통령 (1901년 ~ 1945년)	활발한 대의회 및 대국민 활동으로 많은 업적 달성
영웅적 대통령 (1945년 ~ 1963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미국의 최강국 반열 등극, 핵무기의 사용결정권 보유 등으로 인해 미국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로 등장
황제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t) (1963년 ~ 1974년)	미국의 월남전 개입으로 대통령의 권능 확대 및 남용
황제적 대통령 이후 (1974년 ~ 현재)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균형 추구

각 기관의 주요 견제 기능

의회

1. 대통령에 대한 견제
(1) 대통령의 원하는 법안 통과 거부권
(2)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의결권
(3) 대통령 탄핵권
(4) 대통령 임명 거부권(상원에 해당)
(5)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 거부권(상원에 해당)

2. 연방법원에 대한 견제
(1) 하급법원의 관할권 및 수의 변경
(2) 판사 탄핵권
(3)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에 대한 거부권

대통령
(1)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
(2) 연방판사에 대한 임명권

법원
(1) 의회 법안에 대한 위헌판결권
(2) 대통령 및 행정부서 행위에 대한 위헌판결권 및 법적 권한 금지권

출처: Wilson and Diulio(1995)

역대 주요 대통령의 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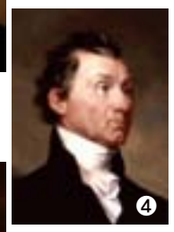

❶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初代)

연방주의당, 1789-1797년간 在任 / 연방정부 우월성 및 행정부의 권위 확립 / 오늘날의 내각제도(cabinet system) 기초 확립 / 외국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지위 실현 / 헌법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중립선포권을 대통령의 권한화/많은 추종자들의 연임 요구에도 불구, 8년 재임기간 만료 후 퇴임

❷ 존 애덤스(John Adams, 2代)

연방주의당, 1797-1801년간 在任 / 지도력의 빈곤으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간의 대립 야기, 정당의 출현 초래

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3代)

민주-공화당, 1801-1809년간 在任 / 정당을 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정립에 활용, 대통령의 입법자로서의 역할 신장 /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국토 두 배 이상 확장

❹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5代)

민주-공화당, 1817-1825년간 在任 / 고립주의 정책인 먼로 독트린을 통해 ①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② 유럽의 미국 대륙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③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건설 배격 원칙 주장

❺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7代)

민주당, 1829-1837년간 在任 / 최초의 강력한 전국적 지도자 / 최초의 보통사람 (common man) 출신 대통령으로써 서부의 개척자 정신과 인류 평등주의적 신념 강조

❻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6代)

공화당, 1861-1865년간 在任 / 남북전쟁시 막대한 권능 행사, 헌법에 기초하여 의회 초월 / 게티스버그 연설(Gettysburg Address)에서 만인의 평등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강조

❼ 율리시즈 그랜트(Ulysses Grant, 18代)

공화당, 1869-1877년간 在任 / 남북전쟁 당시 북부 총사령관 출신으로 대통령 당선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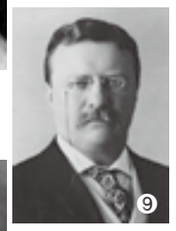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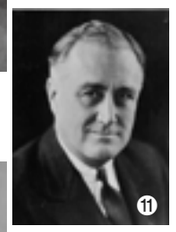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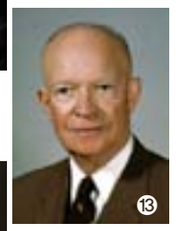

❽ 그로버 클리브랜드(Grover Cleveland, 22代 및 24代)

민주당, 1885-1889년간 및1893-1897간 在任 / 2선 대통령 / 23代 대통령은 벤자민 해리슨(Benjamin Harrison) / 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거부권 빈번히 사용

❾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26代)

공화당, 1901-1909년간 在任 / 러 · 일전쟁 당시 중재를 담당해서 포츠담 강화조약 체결하는 등 외교 · 국방에서 탁월한 지도력 발휘 / 연임 후 제3당 소속 후보로 출마, 낙선

❿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28代)

민주당, 1913-1921년간 在任 / 1차 세계대전시 철도운영권, 수출규제권, 공장징발권, 연료통제권, 교통정책 결정권 등 많은 권능 행사 /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창설

⓫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32代)

민주당, 1933-1945년간 在任 / 의회의 입법행위 통제 위해 거부권 활용, 광범위한 공직임명권 행사, 연방정부의 거대한 관료제도 확립, 경기부양정책인 뉴딜(New Deal) 추진, 2차 세계대전시 국가위기 타개 등 국내외 정책 및 입법과정에 영향력 행사 / 라디오를 통해 국민과 직접대화 (노변정담)하는 등 현대 홍보 기법 최초 실행

⓬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33代)

민주당, 1945-1953년간 在任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신속하게 미군 파병

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34代)

공화당, 1953-1961년간 在任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지휘, 연합군의 2차 세계대전 승리에 결정적 역할

⓮ 존 케네디(John Kennedy, 35代)

민주당, 1961-1963년간 在任 / 국가정책 결정시 과단성 있고 강력한 모습 과시 / 1963.11.22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저격당해 암살

⓯ 린든 존슨(Lyndon Johnson, 36代)

민주당, 1963-1969년간 在任 / 케네디 대통령이 피살되자 대통령직을 승계, 1964년 선거에서 재선 / 베트남전에 미군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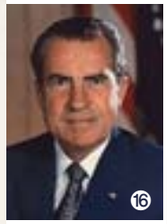

⑯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37代)

공화당, 1969-1974년간 在任 /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발표 / 중국과 대화, 대소련 데탕트 추구 /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으로 결국 사임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

1972.6 닉슨의 재선을 도모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 후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

⑰ 제럴드 포드(Gerald Ford, 38代)

공화당, 1974-1977년간 在任 / 닉슨 대통령 사면 / 유일하게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⑱ 지미 카터(Jimmy Carter, 39代)

민주당, 1977-1981년간 在任 /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발효 등 성과 / 국제분쟁 중재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2002년)

⑲ 로날드 레이건(Ronald Reagan, 40代)

공화당, 1981-1989년간 在任 / 미국 국민에 의해 "the Great Communicator" 및 "the Gipper"라는 애칭 부여받음 / 그레나다 침공, 리비아의 카다피 본부 폭격 등 일련의 군사작전 성공으로 대통령의 위상 확립/연방정부의 최소한의 간섭정책인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도입

⑳ 조지 부시(George Bush, 41代)

공화당, 1989-1993년간 在任 / 걸프전 승리, 구소련 붕괴 등 외교군사 부문에서 많은 성과 / 경기침체 탈피 실패로 재선에서 패배

㉑ 윌리엄 클린턴(William Clinton, 42代)

민주당, 1993-2001년간 在任 / 새로운 세대의 국가지도자 / 최저 실업율과 물가안정으로 대표되는 장기 호황 유지

㉒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43代)

공화당, 2001-2009년간 在任 / 플로리다 주의 수개표 재개 명령 관련 분쟁으로 우여곡절 끝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 당선(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최초 父子 대통령) / 2001.9.11 테러사건 이후 대테러전 전개 /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축출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㉓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44代)

민주당, 2009-현재 / 미국 최초의 흑인 대선후보 및 대통령 /'희망(hope)과 변화(change)'를 주창, 1908년 이래 최다 투표율(64%)로 당선 / 2009.1.20 취임(2013.1.20 재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이색 기록

1.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 대통령은 단 한명이 있는데 1857년부터 4년간 재임했던 15대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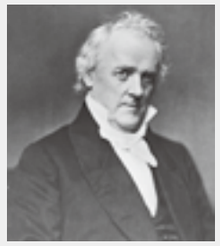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

2. 반면 총각으로 백악관에 들어와 결혼한 대통령 역시 단 한명이 있는데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49세의 노총각일 때 21세의 처녀와 백악관 블루 룸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프랜시스 여사는 최연소 퍼스트 레이디 기록

클리블브드 대통령과 프랜시스 여사 결혼식 모습

3.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내 연속 재선이 아닌 한번 물러났다가 두 번째 당선돼 한 인물이 두 번의 대통령 댓수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록

4.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은 익히 알려진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 43세에 선출

☞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최연소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지만 역대 최연소 미국대통령 기록은 전임 대통령의 암살로 42세에 부통령에서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은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5. 2대 대통령 아버지 존 애덤스 대통령에 이어 아들이 대통령이 돼서 최초의 부자 대통령 기록을 갖고 있는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돼 하원의원을 지낸 유일한 기록

☞ 두 번째 부자(父子) 대통령 기록을 갖고 있는 아버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하와이 진주만 피습 직후 대학진학을 미루고 미 해군에 입대해 18세에 해군조종사가 됨으로써 최연소 해군 조종사라는 이색 기록

6. 대통령 재임 중 과속통지서를 받은 대통령도 한명이 있는데 18대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우마차가 과속하는 바람에 티켓을 받아 20달러의 벌금을 낸 진기록

백악관

- 백악관(White House)은 1800년에 완성되어 제2대 존 애덤스 대통령 이래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
- 1814년 영국과의 전쟁으로 불탄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흰색으로 칠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백악관(White House)이라 불리기 시작해 루스벨트 대통령부터 공식 명칭 부여
- 1950년대 트루먼 대통령 때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때 영부인 재클린 여사가 내부 인테리어를 대폭 수정

가. 백악관 구조

- 백악관은 가운데 중앙관저(Executive Residence)를 중심으로 서쪽의 웨스트윙(West Wing)과 동쪽의 이스트윙(East Wing)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 백악관의 총 면적은 약 5,100㎡(약 1,550평)이며 132개의 방으로 구성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1) 웨스트윙(West Wing)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오벌오피스, 루스벨트룸, 국무회의실 등이 해당

오벌오피스(Oval Office)

오벌오피스(Oval Office)

- 대통령의 집무실로서, 타원형의 방 모양으로 인해 '오벌오피스(Oval Office)'라고 불리며, 백악관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
  - 대통령마다 자신의 취향으로 방을 꾸미지만 △대리석으로 된 벽난로 선반, △천장의 대통령 문장 그리고 △대통령 책상 뒤에 놓인 성조기와 대통령기 등은 그대로 유지
    -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마틴 루터 킹, 링컨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및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을 새긴 타원형의 카페트로 바닥을 장식
  - 오벌오피스의 책상(Resolute Desk)은 1880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19대 헤이스 대통령에게 보낸 선물로서, 북극에서 난파된 영국 해군의 Resolute호를 미국이 찾아 돌려주자 감사의 뜻으로 배의 목재를 이용해 제작
  - 오벌오피스의 책상은 케네디 대통령 때 처음 사용되었으며, 케네디 대통령 사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으로 옮겨져 카터 대통령 때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재직한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및 포드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사용

오벌오피스의 책상(Resolute Desk)

루즈벨트룸(Roosevelt Room)

루즈벨트룸(Roosevelt Room)

- 일반적으로 백악관 직원들이나 정부 관리들의 회의실로 사용되며, 이 밖에 정부의 새 각료 발표 장소로도 사용
- 내방객들이 오벌오피스에 들어가기 전 잠시 대기하는 장소로도 이용
  - ※ 웨스트윙을 만들고 확장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및 프랭클린 루즈벨트 두 대통령을 기리며 1969년 닉슨 대통령이 이 방의 이름을 지었으며, 두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화 소장
  - ※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수여된 명예 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과 노벨평화상(Nobel Peace Prize) 소장

국무회의실(Cabinet Room)

국무회의실(Cabinet Room)

- 정부 각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로서, 대통령은 로즈 가든을 등진 테이블 한가운데에 착석

외교 접견실(Diplomatic Reception Room)

차이나룸(China Room)

레드룸(Red Room)
블루룸(Blue Room)
그린룸(Green Room)

- 과거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있으며, 대통령은 자신의 영감과 통치 성향을 반영하는 사람의 초상화를 선택
  ※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기존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및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초상화에 더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초상화를 추가

로즈가든(Rose Garden)

- 아담한 크기의 정원으로서, 백악관을 방문한 외국의 정상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로 자주 이용
- 평소에도 대통령이 중요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곳으로 자주 사용되며, 백악관 내빈들과 기념 사진 촬영을 하는 곳으로 유명
  ※ 1913년 윌슨 대통령의 영부인 엘렌 윌슨이 정원에 장미를 심으며 조성

2) 중앙관저(Executive Residence)

백악관 중앙에 위치한 대통령 가족의 거주공간

외교 접견실(Diplomatic Reception Room)

- 건물 로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대통령은 보통 이곳에서 손님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맞이하며, 평소에는 대통령 가족의 주 출입로로 사용
  ※ 미국 50개 주의 문장들이 새겨진 카페트로 장식

차이나룸(China Room)

- 역대 영부인들이 수집했던 도자기 식기들이 보관되어 있는 전시실

레드룸(Red Room) · 블루룸(Blue Room) · 그린룸(Green Room)

- 레드룸(Red Room)은 붉은색 실크 카페트로 꾸며져 있는 공간으로서, 보통 응접실 또는 거실로 사용
- 블루룸(Blue Room)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서, 백악관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등 환영 행사가 열리는 곳
  ※ 전통적으로 백악관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는 곳
- 그린룸(Green Room)은 녹색으로 꾸며진 방으로서, 간혹 고위 정치인들이 모여 체스를 두는 곳이며 한때 대통령 가족들이 응접실로 사용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국빈 만찬장(State Dining Room)

이스트룸(East Room)

국빈 만찬장(State Dining Room)

- 최대 140명을 동시에 수용 가능하며, 보통 백악관을 찾는 내빈들의 연회가 열리는 장소
  ※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주로 이곳보다 더 넓은 장소인 이스트룸 또는 야외에서 만찬을 거행

이스트룸(East Room)

- 대연회가 열리는 곳으로 무도회, 리셉션, 콘서트, 결혼식, 시상식, 기자회견실 등으로 두루 사용
  ※ 케네디 대통령의 사망 후 입관식이 거행된 장소이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발표한 장소

3) 이스트윙(East Wing)

백악관 동쪽에 위치한 이스트윙은 영부인 집무 공간 및 사회담당 비서, 백악관 직원 등의 사무실 및 극장 등으로 구성

재클린 케네디 가든(Jacqueline Kennedy Garden)

- 영부인의 가든(First Lady's Garden) 또는 이스트 가든(East Garden)이라고도 불리며, 미국의 전형적인 18세기 정원을 토대로 설계
  ※ 존슨 대통령의 영부인 레이디 버드 존슨이 재클린 케네디에게 헌정

나.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주요 기관

대통령실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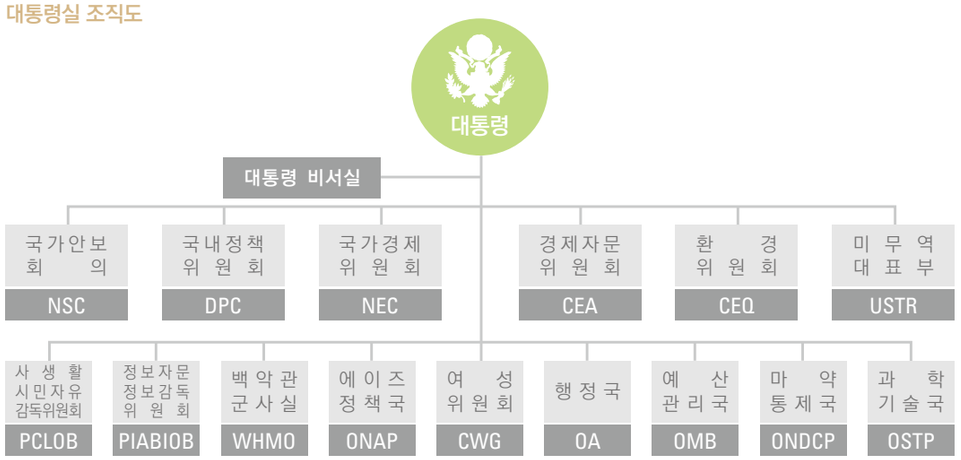

1) 대통령 비서실(White House Office)

1. 개 관

• 비서실은 1857년 설립되었으며 대통령의 보좌관 · 참모들로 구성. 대통령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대통령의 일정관리, 인사, 법률 자문, 대국민 홍보 등을 담당

2. 주요 조직

• 비서실의 주요조직으로는 대변인실, 정무/각료/내각/인사/법률/통신/에너지 및 기후변화/보건개혁 담당실, 영부인실 등이 존재

2) 국가안보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1. 개 관

• 설치 경위 : 1947년 제정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Law)에 의거, 「국가 안보에 관련된 국내정책,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창설

• 기능 : 국가안보에 관여하는 여러 부처간의 의견교환 · 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안보정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또한 대통령이 안보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 하는 제도적 장치로도 활용. 또한 대통령의 NSC 운영방식 또는 NSC 보좌관의 능력 여하에 따라 때로는 안보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책적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형식적 비서실 기구로 전락하기도 함. 이와 함께 국제환경이나 대통령의 정책성향에 따라 때로는 외교정책 위주로, 때로는 군사정책 위주로 운영

2. NSC의 구성 및 조직

• 주요 간부

- 안보보좌관 : Susan Rice
- 안보부보좌관 : Tony Blinken
- 동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 Evan Medeiros

• 참석 범위

- NSC는 그 설치근거가 된 국가안보법(1947)상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필요시 여타 각료나 차관급을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정책 지침 1호」를 통해 상기 4명 외에 재무 · 법무 · 국토안보 · 에너지 장관, 주유엔 대사, 비서실장, 국가안보 보좌관을 NSC 위원(member)으로 규정. 이외에도 국가정보국장, 합참의장, 백악관 법률고문,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매회의에 참석하도록 규정

• NSC 임무 지원 : NSC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백악관 NSC 보좌관실은 국무부, 국방부 및 CIA에서 파견되거나 별도 선임된 전문요원으로 구성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3. NSC의 역할 및 기구변천 연혁

• 창설당시(1947년) : 당초 미 국방부와 의회는 대외정책에 있어 국방부와 국무부간 협조를 강화하고 백악관내에서 국방부, 국무부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NSC 창설을 주도

• 트루만 행정부 : 트루만 대통령은 오히려 국무부, 국방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NSC를 이용했으며, 한편 당시 백악관내 NSC 지원 인력은 매우 소수로서 정책 분석이나 입안보다는 단순히 비서실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과

• 아이젠하워 행정부 :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트루만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NSC를 운영했으나 백악관내 NSC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조직도 세분화

• 케네디 행정부 : 케네디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NSC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관료적이라고 판단,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단순한 비서실로 격하시켰으나, 당시 국무부가 정책 창출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다시 NSC의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 그러나 당시 NSC는 임시기구적 성격을 면치 못했고 위기관리 역할에 주로 치중

• 존슨 행정부 : 존슨 대통령은 중요 안보정책을 대부분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과의 소규모 비공식 회의를 거쳐 직접 결정함으로써 NSC의 역할이 유명무실화

• 닉슨 행정부 : 닉슨 대통령은 케네디 · 존슨행정부하의 NSC가 지나치게 비공식 기구로 약화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아이젠하워 행정부 당시처럼 지나치게 관료조직화되는 것도 견제, 정책 입안을 일차적으로 각 부처에서 하되 NSC에서 지속적으로 재분석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 그러나 키신저 NSC 보좌관이 국무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는 국무부의 위상 강화로 NSC 기능이 크게 위축

• 카터 행정부 : 카터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과 정반대로 NSC를 운영, NSC에서 먼저 정책을 창안한 후 각 부처에서 이를 분석, 검토토록 했으나, NSC와 실무부처간의 의견 대립으로 정책 입안과 시행이 교착상태에 직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기에 NS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국무부 역할 약화 (밴스 국무장관 사임으로까지 발전)

• 레이건 행정부 : 레이건 대통령은 카터 행정부 말기 NSC의 비대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NSC 보좌관실 조직을 대폭 격하시키고 국무부, 국방부등 실무 부처에 주로 의존

• 부시 행정부 : 레이건 행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NSC를 운영했으나 주요 대외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정책 결정 관여가 확대됨에 따라 레이건 행정부때 보다는 NSC의 역할 강화

• 클린턴 행정부 : 클린턴 행정부 하의 NSC는 과거보다 많은 부처를 포용함으로써 다수 부처간 의견 조율이 가능해졌지만 효율성은 감소했다는 평가. 경제 정책에 있어 NSC 역할 강화

• 부시 행정부 : 부시 행정부는 NSC 조직을 1/3로 축소하고 미국의 방위전력과 국제 경제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NSC 조직 개편을 단행

• 오바마 행정부 : 오바마 대통령은 NSC 참석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NSC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외교 · 안보 영역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

역대 NSC 안보 보좌관

Robert Culter	1953. 3. 23 – 1955. 4. 2
Dillon Anderson	1955. 4. 2 – 1956. 9. 1
Robert Cutler	1957. 1. 7 – 1958. 6. 24
Gordon Gray	1958. 6. 24 – 1961. 1. 13
McGeroge Bundy	1961. 1. 20 – 1966. 2. 28
Walt Rostow	1966. 4. 1 – 1968. 12. 2
Henry Kissinger	1968. 12. 2 – 1975. 11. 3(1973.9.21부터는 국무장관 겸직)
Brent Scowcroft	1975. 11. 3 – 1977. 1. 20
Zbigniew Brzezinski	1977. 1. 20 – 1981. 1. 21
Richard Allen	1981. 1. 21 – 1982. 1. 4
William Clark	1982. 1. 4 – 1983. 10. 17
Robert McFarlane	1983. 10. 17 – 1985. 12. 4
John Poindexter	1985. 12. 4 – 1986. 11. 25
Frank Carlucci	1986. 12. 2 – 1987. 11. 23
Colin Powell	1987. 11. 23 – 1989. 1. 20
Brent Scowcroft	1989. 1. 20 – 1993. 1. 20
W. Anthony Lake	1993. 1. 20 – 1997. 3. 14
Samuel Berger	1997. 3. 14 – 2001. 1. 20
Condoleezza Rice	2001. 1. 20 – 2005. 1. 20
Stephen Hadley	2005. 1. 20 – 2009. 1. 20
James Jones	2009. 1. 20 – 2010. 10. 8
Thomas Donilon	2010. 10. 8 – 2013. 7. 1
Susan Rice	2013. 7. 1 –

경제자문위원회

환경위원회

3)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 설치 경위 :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모든 정책 결정에 경제안보의 우선을 강조하여 설치
- 기능 : NSC에 상응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미 국내 · 외정책의 조정 및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 역할 수행

4)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 설치 경위 : 1946년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 담당을 위해 설치
- 기능 : 국가 경제 여러 국면 분석, 대통령에게 자문, 연방정부 경제정책 평가 및 경제정책 권고, 대통령의 대의회 경제보고 및 연례 CEA 보고서 준비

5)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 설치 경위 : 1969년의 국가환경정책법에 의거 설치
- 기능 : 환경에 관한 국가 시책을 개발하여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환경보고서 작성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미 무역대표부

6) 미 무역대표부(USTR :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 권한 : 1962년의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되었으며(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1974년의 통상법에 의하여 대통령 직속의 각료급 기관으로 격상. 그 후 1980년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로 개칭되면서 그 권한이 강화
- 시안 상정 : 60개 이상의 분야별 소위원회로 구성된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및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Trade Policy Review Group(차관급)을 거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NEC에 상정
- 기능 : 미국의 국제무역, 상품무역, 직접투자정책 입안 및 조정, 또 이와 관련된 타국과의 협상 주도 및 지도. 무역대표는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문, 협상가, 대변인 역할 수행. 각종 다자 및 양자 협상 이외에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관련 제소, 337조 및 201조의 수입규제 관련 사안 등도 담당
- 조직 : 산하에 무역정책위원회, 무역정책심사위원회, 무역정책결정위원회 등의 3개 위원회 존재. 7개지역 부서, APEC, WTO 담당부서 등 총 24개 부서 총 200여명. USTR은 워싱턴과 제네바, 브뤼셀에 사무소 보유

역대 USTR 대표

Christian Herter	1962–1966
William Roth	1967–1969
Carl Gilbert	1969–1971
William Eberle	1971–1975
Frederick Dent	1975–1977
Robert Strauss	1977–1979 (이상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Reubin Askew	1979–1981 (이하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illiam Brock Ⅲ	1981–1985
Clayton Yeutter	1985–1989
Carla Hills	1989–1993
Michael Kantor	1993–1996
Charlene Barshefsky	1997–2001
Robert Zoellick	2001–2005
Rob Portman	2005–2006
Susan Schwab	2006–2009
Ron Kirk	2009–2013
Michael Froman	2013–현재

예산관리국

과학기술국

7)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설치 경위 : 1970년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대통령실에 설치되었으며, 예산관리국장은 각료회의에도 참석
- 기능 : 대통령의 효율적인 행정 발전 및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부의 조직을 관리, 예산관리의 감독과 통제, 법률안의 제의에 관한 각 부처별 의견조정

8) 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설치 경위 : 1976년 과학 · 기술 투자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위해 설치
- 기능 : 기초과학, 과학교육, 응용기술 및 연구에 대한 투자, 과학분야 국제협력 관련 정책에 대해 자문

국가정보장실(ODNI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ODNI는 대통령실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대통령의 주요 직속기관으로, 9.11위원회 권고 및 관련 법(DNI 신설 관련 상원결의 S.2645, 정보개혁 및 테러리즘 방지법 등)에 의거, 2005.4.22.에 신설
- 국가정보장(DNI)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문제에 있어 대통령 및 NSC에 자문을 제공하며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정보기관 6개의 집합)의 수장을 수임

부통령 (The Vice President)

- 대통령이 건재할 때 부통령의 존재는 그리 부각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의 계승권 제1위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자리
  - 또한 헌법에 의해 상원의 의장이 되며, 보통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상원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캐스팅 보트를 쥐기도 하는 자리

※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부통령직을 역임한 이후 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부통령은 존 애덤스(John Adams),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마틴 밴 뷰렌(Martin Van Buren), 존 타일러(John Tyler), 밀라드 필모어(Millard Fillmore),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 체스터 아서(Chester Arthur),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제럴드 포드(Gerald Ford), 조지 부시(George Bush) 등 14명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부통령

- 이러한 부통령은 △상원의장, △국가안보회의 멤버, △각종 국가 조언위원회 의장, △대통령 특사, △대통령 핵심 조언자, △의회 연락 책임자, △위기 조정자, △임시조정위원회 감독, △대통령 출장시 각료회의 주재, △정당의 부지도자, △대통령직 승계 실습, △미래의 대통령 후보자 등 역할 수행

※ 전통적으로 대통령 후보자가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자를 선택할 때 표를 의식하여 지역적이나 이념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안배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

중앙 행정 부처

- 연방정부의 행정부 조직은 대략 2천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다양하며, 부(department), 기관(agency), 국(bureau), 실(office) 등의 명칭이 사용되며 위상과 권한이 천차만별인 바, 이는 기관 설치 당시 정치세력들간의 권력싸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내각(cabinet department)에는 15개 부 존재, 연방정부의 집행기능의 주축을 이룸. 각 부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Secretary)이며 내각의 구성원이 되고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짐. 부장관 (Deputy Secretary), 차관(Under Secretary),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가 장관을 보좌함. 부의 하부조직으로는 국 · 실, 청(Service / Administration) 등이 있음

- 연방정부 조직은 크게 부(departments), 독립관청(independent agencies),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 정부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참고

- 독립관청은 부와 유사하나 항공우주국(NASA), 중앙정보국(CIA) 등 업무영역이 보다 좁으며, 주로 규제기능보다는 봉사기능을 수행함.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대통령을 위해 일함
- 정부기업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나 민간기업 형식의 기관으로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이며, 우정공사(US Postal Service),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등 수익을 창출하며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유연성이 강함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 미국에서 최초의 내각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전쟁부(Department of War) 등 세 개 부처로 시작했으며, 당시 법무부는 부처로서가 아닌 장관격인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만 존재
- 각 부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 생활여건의 변화 속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의 순서로 탄생
  -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담당업무를 위해 부처의 창설이 이루어지거나 기존의 부처가 분리되거나 통합
  - 가장 최근에 창설된 부처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외부로부터 미국 영토 안보를 위해 2002년 창설

중앙 행정부처

부처명	설립 연도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1789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1789
전쟁부(Department of War)* – 1947년 국방부에 통합	1789
해군부(Department of Navy)* – 1947년 국방부에 통합	1798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1849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1870
체신부(Department of Post Office)* – 1971년 독립청이 됨	1872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1889(62)
상무/노동부(Department of Commerce and Labor)* – 1913년 상무부와 노동부로 분리됨	1903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1913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1913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1947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1979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됨	1953
주택 ·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1965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66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1977
보건 · 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1979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1979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989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2

* 동 부처들은 다른 부처와 통합되거나 분리되어 독립됨으로써 현재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
** 1789년 초기 행정부에는 법무부 장관 자격인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만 존재함
*** 농무부는 1862년 독립기구로 탄생된 후 1889년 내격으로 승격됨

- 내각을 구성하는 부처들 간에도 그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1947년 대통령 승계법(Presidential Succession Act)에 따르면,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에 이어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내무부 장관, 기타 등등이 승계 순위
  - 특히,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는 핵심부처(Inner cabinet)로서 미국이 국가안보회의나 국가적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이들 부처의 장관들의 참석은 필수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미 관료제의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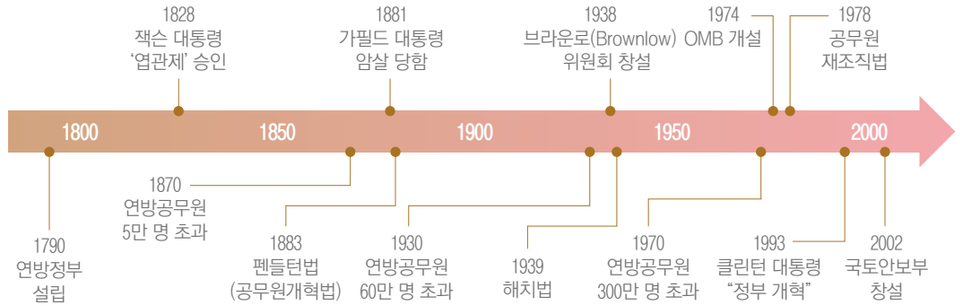

출처 :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오바마 행정부 내각(Cabinet) 구성

Barack Obama(2009–)
대통령

Joe Biden(2009–)
부통령

John Kerry(2013-)
· 국무부 장관
· 前 상원 외교위원장

Jacob Lew(2013-)
· 재무부 장관
· 前 대통령 비서실장

Chuck Hagel(2013-)
· 국방부 장관
· 前 상원의원(네브라스카)

Eric Holder(2009-)
· 법무부 장관
· 前 법무부 부장관

Sally Jewell(2013-)
· 내무부 장관
· 前 REI CEO

Tom Vilsack(2009-)
· 농무부 장관
· 前 아이오와 주지사

Penny Pritzker(2013-)
· 상무부 장관
· 前 프리츠커리얼티그룹 CEO

Thomas Perez(2013-)
· 노동부 장관
· 前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

Sylvia Mathews Burwell(2014-)
· 보건 · 후생부 장관
· 前 백악관관리예산처장

Shaun Donovan(2009-)
· 주택 · 도시개발부 장관
· 前 뉴욕시 주택보존 · 개발국장

Anthony Foxx(2013-)
· 교통부 장관
· 前 샬럿시장

Ernest Moniz(2013-)
· 에너지부 장관
· 前 에너지부 차관

Arne Duncan(2009-)
· 교육부 장관
· 前 시카고교육감

Sloan Gibson(2014-)
· 보훈부 장관 대리

Jeh Johnson(2013-)
· 국토안보부 장관
· 前 국방부 법률자문관

※ USTR 대표, 주UN대사, 경제자문위원장, 예산관리국장, 환경보호국장,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은 아니나 각료급(Cabinet-rank) 인사
※ 내각(the Cabinet) 및 각료급 인사는 각료회의(cabinet meeting) 참석

가. 주요부처 기능 및 조직

1)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

- 기능 : 모든 대외관계 직무 수행, 조약에 관한 협상, 전재외공관 지휘, 국제경제정책, 공공외교, 문화교류 시행
- 조직 : 장관 이하 2명의 부장관과 6명의 차관 및 각각의 지역 · 기능별 차관보들이 존재

2명의 부장관

① Deputy secretary of state of the U.S. (1972년 신설)
② Deputy secretary of state for Management and Resources (2000년 신설)

6명의 차관

① Political Affairs ②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③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④ Management ⑤ Economic, Energy and Agricultural Affairs ⑥ Democracy and Global Affairs

역대 국무장관

William Maxwell Evarts	1877–1881
James Gillespie Blaine	1881
Frederick T. Frelinghuysen	1881–1885
Thomas Francis Bayard	1885–1889
James Gillespie Blaine	1889–1892
John Watson Foster	1892–1893
Walter Quintin Gresham	1893–1895
Richard Olney	1895–1897
John Sherman	1897–1898
William Rufus Day	1898
John Hay	1898–1905
Elihu Root	1905–1909
Robert Bacon	1909
Philander Chase Knox Taft	1909–1913
William Jennings Bryan	1913–1915
Robert Lansing	1915–1920
Bainbridge Colby	1920–1921
Charles Evans Hughes	1921–1925
Frank Billings Kellogg	1925–1929
Henry Lewis Stimson	1929–1933
Cordell Hull	1933–1944
Edward Reilly Stettinius, Jr.	1944–1945
James Francis Byrnes	1945–1947
George Gatlett Marshall	1947–1949
Dean Gooderham Acheson	1949–1953
John Foster Dulles	1953–1959
Christian Archibald Herter Jr.	1959–1961
Dean Rusk	1961–1969
William Pierce Rogers	1969–1973
Henry A. Kissinger	1973–1977
Cyrus R. Vance	1977–1980
Edmund S. Muskie	1980–1981
Alexander M. Haig	1981–1982
George Shultz	1982–1989
James Baker	1989–1993
Warren Christopher	1993–1997
Madeleine K. Albright	1997–2001
Colin L. Powell	2001–2005
Condoleezza Rice	2005–2009
Hillary Rodham Clinton	2009–2013
John Kerry	2013–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국방부

2)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 기능 : 전쟁의 저지와 미국의 안전보장 유지를 위해 군대 보유, 육 · 해 · 공군성의 업무 종합, 조정, 각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행사, 3군장관은 행정관리, 병참보급 및 통합사령부에 배속되지 않은 부대에 대한 지휘 담당
- 조직 : 장관 이하 1명의 부장관과 5명의 차관 존재
  - 산하기관으로 합동참모회의와 육 · 해 · 공군 3개성이 있고 3군성에는 각각 장관과 차관 존재

재무부

3) 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

- 기능 : 국내외의 재정정책 수립 건의, 조세정책 수립 및 각종 세금징수, 화폐 및 국채의 발행 · 관리, 국립은행 감독
- 조직 : 장관 이하 1명의 부장관과 국내경제, 국제경제,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등 3명의 차관 존재

상무부

4)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 기능 : 미국 경제자원에 대한 개발, 미국의 대외무역정책 수립, 상무 및 공업분야 제 업무 총괄
- 조직 : 장관 이하 1명의 부장관과 국제무역, 경제통계, 산업보안, 지적재산권, 해양 · 대기 담당 등 5명의 차관 존재

국토안보부

5)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Bush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22개 국내 안보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여 창설(2002.11)
- 기능 : 장래 발생 가능한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 및 미국민 보호가 1차적 임무 정보 및 위협요소 분석, 국경 및 수송 부문 보안, 화학 · 생물 · 방사능 · 핵 등에 대한 대응조치, 국가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 및 대응조치, 연방 · 주 · 지방 정부 부서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 조직 : 장관 이하 1명의 부장관 및 정보 · 분석, 국가방어, 과학 · 기술, 행정 등을 담당하는 4명의 차관 존재

나. 주요 독립 행정기관

업무가 특수하여 행정각부에 소속되기가 어려우며 그 업무가 초당적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

1) 중앙정보국 (CIA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국

- 국내 · 외 정보수집에 관한 제반사항 수행
- 국외 방첩활동 수행 및 타 정보기관 조사 : 국내 방첩활동은 법무장관 및 FBI의 협조를 받아 활동 수행
- 대통령이 승인한 특수공작 수행

2) 연방준비은행 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은행 제도

- 기능 :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신용대부 및 통화에 관한 업무 관장,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 구성 : 워싱턴에 소재하는 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12개의 연방준비 은행, 25개의 지사 및 이 제도에 가입한 5,900개 이상의 상업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 이사회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7인의 위원(임기 14년)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국제통화 · 재정정책 국가자문회의 위원이 됨. 회장 및 부회장은 상원의 인준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임기 4년)

3) 미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 국제무역위원회

- 미국의 대외교역이 국내생산, 고용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국가간의 거래 및 관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대통령, 의회 및 정부기관에 제출
- 동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다양한 조사, 공청회 및 국제정책에 속하는 연구사업 시행
- 운영상 독립성을 가진 준 사법기관

4) 국제개발처(USAID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처

- 1961년 군사 원조 및 비군사 원조를 구분하는 해외원조법(Foreign Aid Act)이 통과된 후, 그해 11월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설립
- 미국의 비군사 원조를 담당하며, 독립행정기관으로 국무장관의 대외정책 관련 지침을 받음

Chapter 5 대통령과 행정부

철의 삼각동맹

오늘날 미국 관료제는 독립된 하나의 부로 간주될 정도로 그 규모나 기능에 있어서 자율성이 증가되었다. 관료제는 과거에는 정책 형성에 있어서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철의 삼각동맹(iron-triangle) 내에서 기능해왔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관계가 다른 모습의 철의 삼각동맹으로 변화되었다. 철의 삼각동맹은 정책 과정에서 관료조직, 의회 의원회, 그리고 이익집단이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밀접하게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형성을 일컫는 개념이다.

출처 :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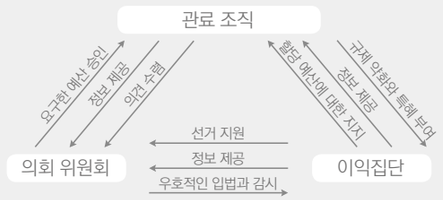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한 대의회 설득 및 필요한 정치적 협의 목적으로 의회 지도자, 위원회 등 의회 활동단체 및 의원 개개인을 접촉
- 의회 지도자들의 지지 획득 위해 수시로 접촉, 입법안 관련 정보 교환. 의원 설득 및 회유 위해 판사를 포함한 공직임명, 건설사업, 연방정부청사 개소, 선거운동 지원, 기밀정보의 제공,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백악관 만찬 초대 등을 활용. 오늘날 의회에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T/F(task forces), 비공식 연구모임 등 수많은 활동단체가 존재하는 바,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필요
- 의원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의회 전략과 병행하여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
- 대통령은 전국으로 방영되는 TV 연설, 주요 국가행사, 전국 순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 직접 호소. 취임 초기에는 의회 · 언론이 신행정부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밀월기간(Honeymoon Period : 통상 취임후 100일) 활용. 그러나 때로는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과잉기대 도출, 의원들과의 관계 소원 등 문제점 발생
- 어느 정당이 어느 기관을 지배하는지도 대통령과 의회간의 관계설정에 영향
  - 통합정부(united government)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인 경우인 바, 건국이후 대부분은 이에 해당. 그러나 통합정부라 하더라도 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뒷받침될 필요
  -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정당인 경우인바, 근래에 들어서면서 분할 정부가 보다 보편적. 그러나 분할 정부하에서도 대통령과 의회간 입법과정상의 협조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실제 주요 입법이나 행정부 비위 사실 조사시 통합정부와 분할정부간에는 큰 차이가 없음
- 행정부와 의회간 주도권 싸움은 비제로섬 게임
- 대통령과 의회 중 어느쪽도 절대적 주도권 행사 불가. 해당 시기별 이슈나, 국내외 정세 등에 따라 양 기관의 영향력 변화

Chapter 6

연방사법부

개관

- 미합중국 헌법 제3조 1항은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대법원과 연방의회가 제정 ·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고 연방정부의 사법권을 규정
- 미국 정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삼권분립으로서, 행정, 입법, 사법을 관장하는 제도간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이들간의 견제와 균형이 정치체계가 작동하는 핵심원리가 되며, 따라서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

  ※ 지난 2000년 박빙의 경쟁이었던 공화당 후보 부시와 민주당 후보 고어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플로리다 주의 개표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논쟁으로 결국 헌법에 근거한 판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연방대법원의 권위 있는 결정이 그 힘을 발휘

  ☞ 미국 정치에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위상을 확인

- 3권 분립 제도에 입각하여, 미국의 사법부는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관 역시 헌법에 의하여 독립된 지위가 보장되고, 탄핵을 받지 않는 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불가

-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인의 일상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일부는 연방대법원의 중재 기능을 미국 정치의 장점으로 간주

  ※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정책적 함의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 예를 들어 2000년 대선 당시 대표성이 기본인 선거의 결과가 비선출직 판사들의 법적 해석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의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
  - 또한, 연방대법원 판사가 정파성을 띠지 않더라도 결국 법의 해석이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닌 판사들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반영한 해석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연방대법원의 정책 이행 기능에 대한 비판도 존재

미 사법제도의 연혁

가. 헌법 제정

※ 부록中 '미국 헌법' 참조

1776. 7. 4.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발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선언하고, 이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건립 천명

1781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 13개 주정부가 연합한 형태로 국가체제 구성

- 사법권 미보유 등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조직

1787

새로운 연방헌법(Federal Constitution) 초안 마련

- 강력한 연방정부 구성 : 국방 · 외교 · 통화 정책 관장
- 3권 분립의 원칙 수립 : 행정 / 입법 / 사법 분리
- 연방의회의 2원화 : 상원(각 주마다 동등하게 선출) / 하원(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

1791

수정헌법 통과

- 1787년 헌법이 연방정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특히 연방정부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공화주의자 (Republicans)들의 주장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10개 조항의 수정안(Amendment)을 헌법에 추가

나. 연방대법원의 전개

- 건국 초기 연방법원은 "가장 힘이 약한 정부 부서(Alexander Hamilton)"로 불리울만큼, 사법부의 권위가 미약
- 1801년 마샬(John Marshall)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일련의 판례를 통해 연방법원의 법률심사(judicial review), 연방법 우위(federal supremacy)의 원칙 등을 확립, 연방법원 스스로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치주의를 통해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 발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이후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호자로서의 역할 정립

Chapter 6 연방사법부

존 마샬(John Marshall)

존 마샬(1755-1835)은 거의 독학으로 법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으며, 변호사이기보다는 버지니아 의회의 대의원으로서 활동하며 미국 헌법이 버지니아에서 비준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1799년 워싱턴 대통령의 설득으로 미 하원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1801년 애덤스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원장에 임명. 위헌심사권의 기반을 마련한 마베리 대 메디슨(Marbury vs. Madison) 판례로 마샬은 미국 역사상 의미 있게 기억되는 대법관 중 한 명이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1,000여 개의 판결에 참여했고, 500개 이상의 의견서를 작성

Marshall 대법원장의 판례들

- 마베리 판결(Marbury v. Madison, 1803) : 헌법상 명문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연방법원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연방법원의 법률 위헌심사권 확립
- 마틴 판결(Martin v. Hunter's Lessee, 1816) : 주대법원의 최종판결이라도 연방법률이나 연방 헌법상 문제가 있을 때는 연방대법원이 항소권을 행사한다는 원칙 확립
- 맥컬라크 판결(McCulloch v. Maryland, 1819) : "필요하고도 적절한(necessary and proper)" 권리 조항에 의하여 연방법률이 주정부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

- 19세기 중반 이후 첨예화된 노예 제도 폐지 논란에 연방대법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865년 남북전쟁 종식 이후 수정헌법 제13조를 통해 노예 제도 폐지 규정. 이어 수정헌법 제14조 및 15조를 통해 흑인들에게 동등한 법적 권리와 선거권 부여

스코트 판결

- 1857년 연방대법원은 스코트 판결(Scott v. Sandford)을 통해 노예제도는 주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연방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노예제도를 금지한 연방법이 위헌이라고 판결

플레씨 판결

- 1896년 연방대법원은 플레씨 판결(Plessy v. Ferguson)을 통해 "분리되었으나 동등하다(separate but equal)"논리를 내세워 흑백 분리 교육을 합헌으로 결정

- 20세기 초반 산업화를 거치면서, 연방대법원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며, 노동자 권익 및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판결을 내림

※ 센크 판결(Schenck v. United States, 1919) :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존재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결

- 보수주의로 치닫던 연방대법원은 1953년 워렌(Earl Warren)이 대법원장으로 재임하게 되면서 진보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었으며, 이 시기 판결을 통해 정부의 권력은 축소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신장

※ 워렌 대법원장은 공화당 아이젠하워(Eisenhower)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적 성향의 인물이었으나, 대법원장 재직 이후 미 사법 역사상 가장 진보주의적 판결을 내렸음(동 기간 중 29개의 선판례를 번복)

Chapter 6 연방사법부

워렌 대법원장 판례 예

-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 1954) : 흑백 분리 교육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권 위배임을 선언하여, 1896년 플레씨 판례를 번복
- 맵 판결(Mapp v. Ohio, 1961) :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재판 채택 부인
- 미란다 판결(Miranda v. Arizona, 1966) :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받은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 1980년대 렌퀴스트(William Rehnquist)가 재임하면서, 워렌 대법원장의 진보주의적 헌법 해석에 제동이 걸리고, 보수주의적 방향으로 선회

사법부 역할에 대한 논란

- 헌법 해석에 있어 첫째 "어구의 자명한 의미(plain meaning approach)"에 의거하지만, 이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입법 의도(legislative intent)"를 규명해야 하며, 만약 이로써도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였을 경우, 사법부의 헌법해석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
- 이에 따라, '사법 진보주의(judicial liberalism)'와 '사법 보수주의(judicial conservatism)'의 구분이 생기고,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가 '엄격한 위헌심사(strict scrutiny)'의 잣대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와 '협의적 헌법 해석(strict construction)'에 집착하는 "사법 제한주의(judicial restraint)"로 구분

- 현재 존로버츠(2005.9月~) 대법원장

연방법원의 조직 및 권한

가. 개 관

- 미국의 사법부는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연방법원과 주법원이라는 이원적인 사법체제가 병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법률 및 권한을 가진 50개 주와 연방정부가 서로 다른 재판관할권을 보유. 단,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상호간 위계 부재
- 연방법원은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 연방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의 3審級 구조

연방법원의 재판권

- 헌법, 연방법률 또는 조약을 위반한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한 사건
- 州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 해사법에 관련된 사건
- 상이한 주민간의 분쟁
-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사건
- 동일주 주민간에 타주로부터 부여된 토지에 관한 분쟁으로 야기된 사건

나. 연방법원의 구성

연방법원의 구성

연방 지방법원	연방 항소법원	연방 대법원
일반관할권을 가진 제1심 법원으로서, 50개 주 및 자치령에 걸쳐 9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800여명의 판사가 배치	제2심 항소법원으로, 전국적으로 1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3인 합의부에 의해 판결하며, 사실심리는 하지 않고, 법률심사만 수행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전원 합의제로 심판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판결. 하급심 재판기록과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다음, 양쪽 변호사로부터 구두변론을 들은 후, 매주 1회 개최되는 대법관회의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판결. 판결과 더불어, 그 사건의 법률적 분석에 대한 판결 이유문을 발표하는데 대개 '다수의견'에 대한 '동의의견' 및 '소수의견'을 발표

-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혹은 주 최고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 중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한쪽 당사자의 청원에 의하여 상고청원(Petition for Certiorari)을 하게 되고, 적어도 4명의 대법관에 의해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심판(연간 약 120건 정도)
  - 3권분립원칙에 의거, '소송과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재판권을 행사하며, 정치적 사안(political question)일 경우에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여 재판권을 불행사. 단, 재판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의 한계를 정해주는 '선언적 재판(Declaratory Action)'에는 재판권을 행사

사법부와 대통령

- 닉슨 판결(Nixon v. United States, 1974) :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내려진 연방 지방법원의 백악관 녹음테이프 제출 명령을 거부하면서, 동 녹음 테이프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중에 보좌관과 나눈 대화의 비밀로써, 대통령의 특권이라 주장한 데 대해,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특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돌할 경우, 사법부는 대통령의 특권 범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동 판결 2주만에 닉슨 대통령 사임)
- 부시 판결(Bush v. Gore, 2000) : 투표용지 논란으로 플로리다 일부 투표구에서의 수작업 재검토를 명령한 주대법원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결(고어 후보가 동 판결 직후 패배시인 연설을 함으로써, 대선 개표 논란 종식)

다. 연방법관의 임명과 지위

- 헌법 제2조2항 2절에 의해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대법관들을 임명하며,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의 판사들도 법률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
-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정치성향을 보유한 연방 대법관을 임명하며, 연방 대법관이 사임하고자 할때는 보통 정치성향이 유사한 대통령 재임 중 사임하는 것이 관례
  - 역대 대법관은 백인 남성 개신교도가 다수이나, 현재 가톨릭(Scalia, Kennedy 대법관), 유대인(Ginsburg, Breyer 대법관), 여성(Ginsburg, Sotomayor, Kagan 대법관), 흑인(Thomas 대법관) 대법관

Chapter 6 연방사법부

연방대법관 명단

이 름	임명년도	임명자
Antonin Scalia	1986	Reagan
Anthony Kennedy	1988	Reagan
Clarence Thomas	1991	Bush(senior)
Ruth Bader Ginsburg	1993	Clinton
Stephen Breyer	1994	Clinton
John Roberts(대법원장)	2005	Bush
Samuel Alito	2006	Bush
Sonia Sotomayor	2009	Obama
Elena Kagan	2010	Obama

- 연방법관은 헌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가 보장되고, 탄핵을 받지 않는 한 자의에 반하여 파면 불가(종신 임기제)

미국 법률대학원과 변호사 제도

- 전문적인 변호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법률대학원(law school)은 현재 전국에 약 199개로, 연간 졸업생은 약 48,000명
- 변호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주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bar exam)에 합격해야 하며, 연간 법률대학원 졸업생의 75-80%인 36,000명의 변호사가 탄생
  - 현재 미국 전체 변호사 수는 약 11,205명을 넘어서, 인구 300명 중 한 명이 변호사
- 1878년 조직된 미국변호사협회(ABA : American Bar Association)는 변호사들의 질적 향상과 이익 옹호, 대통령의 연방판사 지명시 검증, 미국 법률의 통일성 확보 등에 공헌

주법원의 조직 및 권한

가. 개 관

- 미국의 각 주는 독립된 권력을 가지고, 주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서로 독립 · 병존해 있으므로, 연방법원은 주법원의 권한에 간섭 불가. 다만,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주법원의 사건이라도 연방대법원이 최종 심판권 보유
- 주법원의 조직은 대체로 1개의 대법원(Court of Last Resort 혹은 Supreme Court)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일반적 관할권 또는 제한적 관할권을 가진 1심 법원(Trial Courts)으로 구성되나, 주에 따라서는 2심 제도를 채택

나. 주법원의 구성 및 권한

1) 1심 법원

- 일반적 관할권을 가진 지방법원(District Court)과 제한적 관할권을 가진 청소년법원(Juvenile Court), 가정법원(Family Court) 등으로 분류되며, 주법에 관련된 모든 민사 · 형사 소송의 1심 판결
- 공개재판 및 배심재판(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 판사에 의한 재판 가능)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 심리

2) 항소법원

- 3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주 전체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 항소 법원 설치
- 법률심사만 하며, 대체로 3인 합의제로 판결

3) 주(州)대법원

- 주의 최종 상고법원으로 7-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전원 합의제로 판결

미국의 배심제도

- 형사배심은 헌법 제6조에 의해 보장되며, 만장일치에 의한 유죄 평결 이후 형량 부과는 판사의 권한
- 민사배심은 헌법 제7조에 의해 보장되며, 과반수 다수결에 의해 평결을 내리며, 판사는 원칙적으로 평결에 따르나, 예외적인 경우 독자적인 판결 가능

다. 주법원 법관의 임명 및 선거

- 각 주별로 州民이 직접 선출하거나, 주의회에서 선출하거나, 혹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많은 주에서는 선거에 의해 법관을 선출하는데, 이는 법관들이 주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므로, 주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근거
  - 그러나, 법관 선거제도는 법관 선거운동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 당사자로 나타나,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보다는 주민의 정서와 사회적 여론에 비추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 대두
- 주법원 법관들은 탄핵, 입법기관의 소환, 주민소환, 법관 견책위원회의 강제 해임, 재임명 및 재선 실패 등의 경우 면직

미국 주의 특이한 법들

주	특이한 법	법 제정 사유
애리조나	낙타 사냥은 불법	미군이 한때 애리조나 사막에서 낙타를 이용한 실험을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그 후 낙타는 자유롭게 풀어주었으며 현재 보호대상이다.
콜로라도	소파를 밖의 베란다에 두면 안 됨	콜로라도 대학이 미식축구와 같은 큰 행사 후 학생들이 파티 때 소파를 태우는 전통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와이	옥외 광고판을 세우는 것 금지	하와이 주는 관광이 주된 수입원이므로 자연적 경관을 해치는 건물의 외향을 규제하는 것이다.
노스 캐롤라이나	단체모임에 특정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	KKK(백인우월주의 단체)는 하얀색 두건과 옷을 입고 모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주 정부가 이들의 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테네시	스컹크를 테네시 주 내로 반입을 금지함	스컹크는 광견병이나 공수병의 인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웨스트 버지니아	아이들이 야생양파 먹은 냄새를 내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함	웨스트버지니아에는 램프라고 하는 양파의 냄새가 요리를 했더라도 너무 지독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www.dublaws.com

연방 검찰 조직

연방 법무부

가. 연방 정부의 검찰 조직

1)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연방정부 최고의 법률 집행기관으로, 그 장관은 "Attorney General"(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동일인)이며, 미합중국의 모든 형사법을 집행하고, 미합중국이 당사자인 모든 소송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며, 모든 법률 문제에 있어 대통령과 각 부 장관에 자문과 권고 제공
- 법무장관 밑에 부장관(Deputy Attorney General), 차관(Solicitor General), 차관보 (Assistant Attorney General)를 두며, 이들은 모두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관례적으로 대통령과 임기 일치)

2) 연방 지방검사장(US Attorney)

- 연방 지방법원이 소재하는 94개 지역에 각각 지방검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검사장은 법무장관을 직속상관으로 하며, 역시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대통령과 진퇴 일치
- 연방 지방법원에서의 형사사건의 소추 및 연방 항소법원에서의 항소 사건을 담당

미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1908년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산하에 창설되어,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 약취유괴죄, 2개 이상 주에 걸친 범죄, 연방법 위반행위 등을 수사하고, 연방법 또는 대통령 명령에 의거하는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미 연방정부 수사기관. 단, 수사권을 행사할 뿐이며, 연방 또는 주 검찰과의 협조하에 기소
- 국장(Director,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부국장(Deputy Director) 및 수사를 전담하는 약 1만 3천명의 특별요원(Special agents)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에 56개 지국 및 해외 약 60개 대사관에 파견관 보유

나. 주정부의 검찰 조직

- 주정부의 형법 집행은 州內의 각 카운티(County)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카운티 검사장(County Attorney 또는 District Attorney)이 담당하며, 주 형사사건에서의 수사 및 소추를 담당(주법원서의 항소 및 상고 사건도 담당). 주정부의 검찰총장은 주지사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주를 상대로 하는 모든 민사사건에서 주의 변호인으로 출두하는 행정적인 사무를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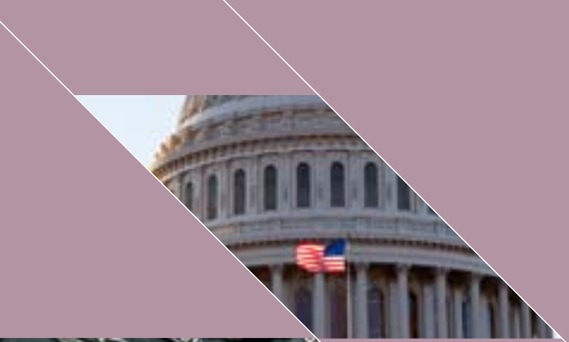

US Political System

PART 3

정치 제도

Chapter 7 선거제도

Chapter 8 정당제도

Chapter 9 연방제도

Chapter 7

선거제도

선거는 정권의 정통성(regime legitimacy)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희망을 표출하는 가장 안정적인 통로

- 정당과 후보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정부 및 정책 실현 가능

미국 선거제도의 특징

가. 투표권 행사

- 오늘날 미국 시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으로 국한. 1870년 헌법 수정 제15조에 의해 흑인들이 투표권을 인정받았으나 남부에서는 문자 해독 능력 테스트, 투표세(poll tax)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흑인들의 투표를 배제

  ※ 1960년대 마틴루터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시민권 운동을 거쳐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제정되어 투표권 회복

- 제1차 세계대전 중 동 전쟁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920년 헌법 수정 제19조의 채택으로 여성에게 투표권 인정. 이후 월남전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반전운동을 투표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치권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1971년 헌법 수정 제26조로 선거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조정

나. 유권자 등록

- 미국에서는 선거연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 필요.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시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등)을 밝히도록 요구
- 동 제도는 19세기말 표면적으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채택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흑인, 이민자 등의 투표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 동 제도로 인해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은 흑인, 소수민족의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의 투표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다.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와 본선거(general election)

- 미국은 각종 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중앙당 공천 형식으로 뽑지 않고 후보 스스로가 자력으로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를 통해 선출되며, 동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당의 후보들이 본선거(general election)에서 대결
- 자기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폐쇄적 예비선거'(closed prima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州와 무소속 또는 반대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투표를 허용하는 '개방적 예비선거'(open prima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州가 존재. 한편, 일부 주에서는 '당원대회'(caucus)를 통해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있으나, 점차 caucus 제도를 버리고 primary 제도를 채택하는 추세

라. 투표율

-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바, 현재 미국의 투표율은 주요 선진국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 대통령 선거 투표율(50-55%), 중간선거 투표율(35-40%)

  ※ 2012 대선의 경우, 57.5%의 투표율 기록

미국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 여타 선진국에서는 유권자 등록 의무가 정부에 있으나 미국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져 있어 유권자 등록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
- 많은 주들이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정이 있어 주소지를 떠난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기가 곤란
-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너무 많고 잦아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희석
- 최근 들어 정당의 역할이 점차 약화

마.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 24개 州와 워싱턴 D.C.에서 주민발안(initiative) 및 주민투표(referendum)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 州에서 주민소환(recall) 제도 실시중

대통령 선거

가. 개관

-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오랫동안 선거를 통해 대통령 리더십 교체를 실현해 온 국가
  - 1789년 초대 대통령 선거 이래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57번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으며, 현재까지 44명의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 4년을 주기로 11월 첫번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1789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
- 이처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선거를 통한 최고 리더십의 안정적인 교체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 미국은 대통령제의 원형 국가이지만 독특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선거제도는 대체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방향으로 변화

나. 선거절차 개요

1) 대통령 후보 지명

- 제1단계 : 각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 제2단계 : 각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

2) 대통령 선출

- 제3단계 : 유권자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 제4단계 :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 제5단계 : 상 · 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계 및 당선 선포

다. 대통령 후보 지명

1) 전당대회 참가 대의원 선출

- 각당의 州 지구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을 선출
- 대의원 선출방식은 주별 및 정당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예비선거(primary) 또는 당간부회의(caucus)를 통하여 선출. 관례상 아이오와주 caucus와 뉴햄프셔주 primary를 시작으로 선거실시 연도의 2-6월에 걸쳐 주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나, 각주가 후보 지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primary 일자를 경쟁적으로 앞당기려는 추세(front-loading)

2) 전당대회

- 선출된 대의원들이 선거실시 연도의 8-9월경 소집되는 소속 정당의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에 참석하여, 각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선출
- 투표결과 대의원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미리 선택한 바에 따라 결정)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생길 때까지 투표 계속
- 관례상 현 대통령 소속당이 1개월 정도 늦게 전당대회 개최

※ 2012년의 경우, 공화당은 8.27-30(플로리다), 민주당은 9.3-6(노스캐롤라이나) 전당대회 개최

라. 대통령 선출

1)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

- 대통령은 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고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되는바, 각 주의 유권자는 소속주 출신 연방 상 · 하원 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선출
  - 선거인단 총수(538명) : 상원의원 수(100) + 하원의원 수(435) + D.C. 3명

선거인단 정원

538명의 선거인단 수는 1964년 이래 고정

- 1789년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인단 수는 81명이었으며, 이후 인구증가 및 새로운 주의 연방 편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하원의원 수는 1912년 이래 435명을 최대로 하여 고정

- 미국의 주별 하원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르는데, 하원의원 수 역시 인구증가 및 새로운 주의 연방 편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 다만, 하원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하원의원 수의 계속적인 증가가 허용될 수 없었던 바, 연방의회는 1911년의 하원의원 수 할당법(Apportionment Act)에 의해 435명으로 의원 수를 고정

- 각 정당은 자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서약한 선거인단의 명단(slate)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는 11월 첫번째 일요일 다음의 화요일에 이들 slate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결과 다수득표 정당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승자독식방식)
  -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가 완결되는 즉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되며, 선거 인단의 과반수(270)를 확보함으로써 당선이 결정

대통령 선거일이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정해진 이유

선거시기가 11월 초보다 빨라지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더 늦어지면 눈이 내려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기 어려워지므로 11월 초를 적당한 시기로 간주. 일요일은 당시 대부분의 유권자가 교회에 가야 했으므로 가능한 선택이 아니었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한 주의 시작과 마지막이라 제외되었으며, 목요일은 식민통치를 했던 영국의 선거일이라 고려대상에서 제외. 결국 화요일과 수요일만 남게 되었는데 의원들은 그 중 화요일을 채택. 그리고 월 초에는 회계처리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가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첫 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선거일을 결정

- 특정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방식(winner-takes-all)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중요
  - 단, 네브라스카(5석)와 메인(4석)의 경우, 주 전체에서 다수득표자에게 선거인단 2석을 배정하고, 하원의원 지역구별로 1석씩 별도 배정

선거인단이 많은 주

① 캘리포니아(55) / ② 텍사스(34) / ③ 뉴욕(31) / ④ 플로리다(27) / ⑤ 일리노이(21), 펜실베니아(21) / ⑦ 오하이오(20)

하원의석 수가 단 1개에 불과한 주

버몬트, 델라웨어, 알래스카, 몬타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州 및 워싱턴 D.C.
(단 3명의 선거인단만 선출)

-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 선출하는 방식 때문에 2000년 대선의 경우처럼 앨 고어(Al Gore) 민주당 후보가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로 부터 얻은 표(popular votes)에서는 앞섰으나,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앞선 조지 부시(George Bush)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현상 발생가능

2)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 각주의 승리한 정당의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의 첫 월요일에 주도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형식적으로 투표
-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는 밀봉되어 연방 상원의장(부통령) 앞으로 우송

3) 개표 및 당선 선포

- 상원의장은 선거 다음해 1.6 상 · 하원 합동회의에서 투표결과를 공개 집계, 선거인단 투표수의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자로 선포

2012년 대선 결과

지난 2012년 11월 6일(화) 치러진 미 대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65,907,213표(득표율 51.07%)로 선거인단 332명을 확보해 206명 확보에 그친 롬니 후보(60,931,767표, 47.21%)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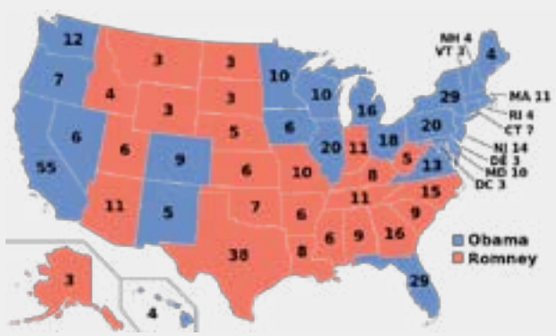

Chapter 7 선거제도

상 · 하원 의원 선거

가. 개관

-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양원의 선출단위와 임기가 서로 달라 의회 내에서도 권력분립 발생
- 미국 건국자들은 의회가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 권력기관이 되도록 구상
  - 양원제를 채택하면서 상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업무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 능력이 높은 엘리트들로 구성하고, 하원은 단기적으로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전국적 차원에서 다루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구성
  - 따라서 하원의원들은 가까운 이웃처럼 서로가 알고 지내면서 일상생활의 요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며, 반면에 상원의원들에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기대

나. 상원의원 선거

- 상원의원은 총 100명으로 각 州에서 2명씩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주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채택(상원의원 임기는 6년으로 매 2년마다 총 의석의 1/3씩 改選)

다. 하원의원 선거

- 하원의원은 총 435명으로, 각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되어, 각 주의 선거구당 1명씩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 하원의원 임기는 2년으로 매 2년마다 전원이 改選
- 헌법에 의거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州별로 하원의원 수를 재배분(reapportionment)하며, 주의회는 주내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획정(redistricting)

연방의회 선거제도

	하원	상원
의원 수	435명	100명
의석 할당	주의 인구수에 비례	각 주마다 2명씩
임기	2년	6년
선거주기	2년마다 모든 의선 선출	2년마다 전체 의석의 1/3 선출
자격	25세 이상, 지역구가 속한 주에 거주, 7년 이상 미국 시민권 유지	30세 이상, 대표하는 주에 거주, 9년 이상 미국 시민권 유지
임기 제한	없음	없음

최근 선거 흐름

최근 수십년간 동북부(Northeast) 및 중서부(Midwest) 지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동 지역(Rust Belt)에 있는 주들은 하원의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남부 및 서부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동 지역(Sun Belt)에 있는 주들은 하원의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주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소속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현상 상존

라. 현직의 이점

- 하원의원의 재선율이 90%를 상회하고 상원의원의 재선율도 70%를 상회하는 등 현역의원들의 재선율이 매우 높음. 이는 이익단체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도전자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현역 의원들에게 선거자금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현역 의원들은 제반 특권을 활용하여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
- 한편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도전자들도 독자적인 선거자금 모금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고, 주 TV 방송들이 한 주에서 여러 명을 뽑는 하원의원 선거보다는 주 전체에서 1명만을 뽑는 상원선거(매 선거시 정원의 1/3만 改選)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하기 때문에 도전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아 도전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마. 중간선거

-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일반적으로 의석을 늘리게 되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mid-term 또는 off-year election)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재선 대통령의 중간선거 즉, 재임 6년째 실시되는 선거에서 두드러짐
  - 대통령은 당선 후 현실 정치의 제약 때문에 선거공약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해 중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에 실망한 대통령의 핵심 지지계층(극우 또는 극좌)이 중간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 의석이 감소
  - 1862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소속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석 수를 늘린 적은 단 3번뿐(1934년, 1998년, 2002년)
  -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동 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바, 상원의 경우 매 선거시 정원의 1/3만 改選하고 상원의원들은 지명도가 높고 독자적인 선거자금 모금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국을 휩쓰는 정치적 조류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높기 때문
-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의회 선거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사람의 높은 인기도 때문에 소속당 의원 후보들이 혜택을 보나(대통령의 옷자락을 잡고 당선된다는 소위 coattail effect), 당선후 점차 대통령의 인기도가 떨어지면서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당 후보들이 불리해지는 현상 발생

정치자금제도

가. 선거와 정치자금

- 미국 선거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선거자금이 소요
  - 2008년 연방 상 · 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비로 지출한 돈은 약 14억불(하원 9억 8천만, 상원 4억 1천만불)이며, 승리한 하원 후보의 평균지출액은 140만불, 승리한 상원 후보의 평균지출액은 310만불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법률이 제정되는 즉시 후보, 정당, 이익단체들이 법의 허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선거자금 모금 방법을 강구해 내고 위헌소송을 통해 법률의 효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쉽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
- '연방선거운동법' 등 현행 선거 관련법에 의하면 연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개인, 정치활동위원회(PAC), 소속 정당 및 소속 정당 지도부로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보 개인이나 가족들의 돈은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
  - 기업, 노조 등 이익단체는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치활동위원회(PAC :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결성하여 연방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정치자금 기부 가능 (현재 연방선관위에 등록된 PAC는 약 4천개)
- 그러나 개인, 이익단체, 정당 등은 특정 후보와 협의를 하지 않는 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TV 광고, 투표참여운동 등을 위해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쓸 수 있는바, 최근 이런 종류의 정치자금(soft money)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 '연방선거운동법' 등 선거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모금되는 선거자금을 'hard money'라 부르는 반면, 동 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고 모금되는 선거자금을 'soft money'라 지칭

선거 자금 관련 주요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1971년) : 개인은 특정 후보에게 매 선거당(예비 선거와 본선거는 별도의 선거) 1천불, 정당에 연간 2만불, 정치활동위원회(PAC)에 연간 5천불 등 총 연간 2만 5천불까지 기부 가능. 정치활동위원회(PAC)는 특정 후보에게 매 선거당 5천불, 정당에 연간 1만 5천불까지 기부 가능하나, 연간 기부총액에는 제한 부재
- 선거자금개혁법(Campaign Finance Reform Act, 2002년) : 기업, 노조, 개인 등이 전국 중앙당에 기부하는 soft money 전면 금지. 개인의 hard money 기부한도 인상(매 선거당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한도를 1천불에서 2천불로 인상 등)

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적지원

- '연방선거운동법'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납세자들의 기부금으로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
  - 일반 납세자들은 매년 연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대통령선거 운동기금' 항목에 체크(∨)함으로써 3불씩 기부 (동 3불은 납세액에서 공제됨에도 불구하고 20% 정도의 납세자만 참여)

예비선거

- 20개 이상의 州에서 각 개인으로부터 25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총 5천불 이상을 모금한 후보는 연방선관위에 공적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방선관위는 후보가 모금한 액수와 같은 금액(matching fund)을 지원함.
  - 그러나 연방선관위의 공적지원을 받는 후보는 선거자금의 지출액에 있어 제한을 받음.
  - 2008년 예비선거의 경우, 오바마(Obama)후보는 지출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공적지원을 포기한 반면 매케인(McCain)후보는 공적 지원을 받음.

본선거

- 공화, 민주 양대 정당의 경우 전당대회를 통해 확정된 대통령 후보에게는 연방선관위가 공적지원을 제공하는바, 동 지원을 받는 후보는 동 지원금으로만 선거운동을 하여야하며 여타 모금을 할 수 없음.
  - 공적지원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번 조금씩 인상되는바, 2004년의 경우 양당 후보에게 약 7,500만불씩 지원. 제3의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최소 5%의 득표를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대 정당의 후보와는 달리 선거종료 후에 지급함.

Chapter 8

정당제도

정당의 발전과정

가. 초기정당의 태동 및 쇠퇴

- 미국 헌법에는 정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수립 초기에는 정당이 부재. 그러나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의 정책을 둘러싸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 갈라지면서 정당들이 태동.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부유층이었고, 반대자들은 농민, 근로자, 채무자 등 서민층이었는데, 이후 전자는 해밀턴(Hamilton)이 주도한 연방주의자당(Federalists)의 지지세력으로, 후자는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주도한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s)의 지지세력으로 발전
- 이러한 연방주의자당 vs. 민주-공화당 구도는 1790년부터 1816년까지 지속 : 연방주의자당이 1816년까지 대통령 후보도 내지 못하다가 1820년 해산되고 민주공화당이 사실상 "일당 지배"
- 1820년에서 1840년까지 유권자수가 확대되고 또한 대통령 선거인단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면서 정당의 기반 확대 및 영향력 증대 : 1828년 국민이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 뽑힌 최초의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에 반대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휘그당(Whig Party)을 창당하고 연방주의당의 이념을 계승
- 1832년 최초로 전국 규모의 대통령 후보지명 전당대회가 민주-공화당의 후신인 민주당(Democratic Party)에 의해 개최 :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앤드류 잭슨이며, 동인은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어 현재 대통령 선거방식에 의해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
- 휘그당은 이후 노예문제를 둘러싼 내부문제로 침체의 길을 걷다가 해체되고 1854년 노예제도 폐지를 표방하면서 창당된 공화당(Republican Party)으로 대체 : 링컨(Lincoln) 대통령은 1860년 공화당 후보로서 최초로 대통령으로 당선. 당시 선거는 정당의 정책보다는 남 · 북간의 대결 양상이었는데 북부는 공화당, 남부는 민주당을 지지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1920년까지 이어져 남부의 단 한 주에서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다수표 획득 실패

나. 양당 정치체제의 성립 및 변화과정

- 1860년 대통령 선거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정당, 즉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양당 정치체제를 구축

민주당 VS. 공화당

남북전쟁 이후 1930년대 초기까지 16명의 대통령 중 13명이 공화당 출신일 정도로 공화당이 압도적 우세를 지켜왔으나 대공황을 배경으로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에는 1960년대까지 민주당의 우세가 지속

양대 정당의 다수당 점유기간(1861-2013)

기간	대통령		하원		상원	
	민주	공화	민주	공화	민주	공화
1861-1897	8	28	16	20	4	32
1897-1933	8	28	10	26	6	30
1933-1981	32	16	44	4	44	4
1981-1997	4	12	14	2	14	2
1998-2013	8	8	3	12	7	8
합계	66	92	87	64	75	76

-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 집권후 민주당은 뉴딜 정책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시 노동자들의 지지를 규합하였고(New Deal Coalition), 남북전쟁 이후 공화당에 반대하는 남부보수세력(Southern Democrats)의 전통적인 지지를 향유. 이러한 정치 구도는 민권운동이 강화되면서 변화되었는바, 닉슨대통령이 1964년 흑인의 투표권 등을 보장하는 공민권법을 통과시키고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부의 보수세력들은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
- 1970년 이후에는 양 정당간의 우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시현 :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도는 낮아지고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
- 상기 현상을 양당의 지지계층간 이동과 TV · 선거캠페인 전문기관 등의 발전으로 인해 정당이 실제 선거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 정당정치의 쇠퇴를 예측하는 학자들도 등장. 그러나, 정당은 여전히 대의 민주정치에 있어 국민의 정치참여 수단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조직으로서 역할 수행
- 민주 · 공화당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고 그 조직은 철저하게 분권화되어 있으며 정책방향은 이념성을 배제하고, 미국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지지 기반이나 개별 정책에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

Chapter 8 정당제도

미국의 주요 정당

가. 공화당

- 공화당을 GOP(Grand Old Party)라고 부르는데, 공화당의 기본노선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 축소 · 주정부의 권한 증대, 개인의 자유 · 경제 활동의 확대
- 공화당은 백인이나 남성, 그리고 교외생활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남부와 남서부에서 지지도가 상승하는 반면 동북부에서는 하락. 인종적이나 종교적으로 다수파(백인과 기독교인)와 사회 · 경제적 부유층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 1970년대에는 민주당 지지성향인 기독교 기본 원리주의자들도 지지

나. 민주당

- 민주당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서 1793년 창당된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이 그 기원이며, 지금의 민주당으로 공식 명명된 것은 1840년. 민주당의 정책방향은 뉴딜정책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며, 소득 재분배와 시민권 보장 정책을 중시
-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남부 백인, 변방 정착민, 도시 근로자들, 아일랜드계 이민자들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으나 1970년 이후 동 기반이 약화. 남북전쟁 이후 부동의 민주당 지지세력이던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이 흑인권리 신장을 지지하자 민주당 지지세력으로부터 이탈하여, 민주당은 남부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상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노동조합원, 가톨릭교도의 지지는 감소하고 있으나 흑인 히스패닉 등 인종적 소수 집단의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

각 당의 상징 동물

양당의 상징은 공화당이 코끼리, 민주당이 당나귀이며 1874년 신문삽화가인 토마스 내스트(Thomas Nast)가 처음 사용하였음. 당시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가 숲 속의 어리석은 동물들을 놀라게 하는 삽화였으며, 어리석은 동물 중 하나가 코끼리였는데, 당시 정치 상황에서 당나귀는 민주당을, 코끼리는 공화당을 의미

몇 년 후 양당은 이를 당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 민주당은 당나귀가 날래고 현명하며 용기있고 겸손하여 사랑스러운 동물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코끼리는 거만하고 바보스러우면서 보수적이라고 깎아 내리고, 공화당은 코끼리가 위엄있고 점잖으며 강하면서도 이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당나귀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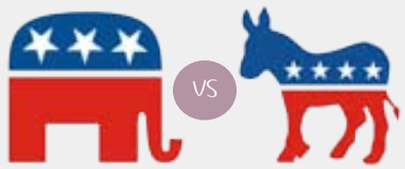

코끼리(공화당) 당나귀(민주당)

다. 소수 정당

- 미국 정치사에는 수백개의 소수 정당이 있어왔으나 양당체제의 벽을 깨지 못하고 사라짐. 소수 정당은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분류
  - 첫째, 이념정당으로서 공산당, 사회당, 사회주의 노동당, 녹색당 등 / 둘째, 이슈 정당으로서 채식주의자당, 금주당 등 셋째, 경제적 저항당으로서 인민당 등 / 넷째, 특정 후보에 의해 설립된 후보 지향당으로서 개혁당, 진보당
- 미국 정치에서 소수정당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①유권자들의 사표(死票) 방지 심리, ②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의회와의 대립 갈등 우려, ③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및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 ④전통적으로 영국에서 유래된 양당체제 선호경향, ⑤매스컴에서의 홀대 등

굳이 소수정당을 창당할 유인이 크지 않은 정치 환경

1

미국 정당은 분권화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도록 강요하기가 어렵고,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이 반드시 당 노선을 따르는 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 불가

2

당내에서도 공화당 및 민주당의 상 · 하원 선거운동 위원회들(현역 의원들로 구성)은 대통령 위주로 움직이는 전국위원회로부터 벗어나 자치적으로 활동.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에 대한 좁은 범위의 권한을 제외하고, 전국조직은 각 주별 당 업무에 불간섭. 개개 입후보자들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선거운동을 조직하는 경향

3

선거자체가 정당중심이라기 보다는 입후보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조직이나 당지도부의 입지가 축소되는 현상

제3의 후보

제3의 후보 중 최근 큰 지지를 받았던 후보로는 1992년과 1996년에 출마한 로스 페로(Ross Perot)가 있음. 양당제에 유리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1992년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의 18.9%의 득표를 하였음에도 불구, 단 한 주에서도 최다득표를 하지 못해 선거인단은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함.

Chapter 8 정당제도

이익집단 및 그들이 사용하는 로비 전술

이익 집단들은 대부분 특정 이슈에 대해 매우 강렬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따라서 이들 집단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목표달성에 대한 강렬한 열정에 기인한 이들 집단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쉽사리 이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정책결정과정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로비전술의 종류	사용%
청문회에서의 증언	99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정치인을 직접적으로 접촉	98
회의나 점심시간 등을 활용한 정치인에 대한 비공식적 접촉	95
연구결과나 기술적 정보제공	92
회원들에게 이익집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편지 발송	92
다른 이익집단과 연합형성	90
정책의 집행에 대한 영향행사	89
언론매체 종사자와 접촉	86
입법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정치인 컨설팅	85

로비전술의 종류	사용%
법안발의에 대한 조언	85
유권자들을 동원하여 지역구 의원에게 편지 발송	84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거나 기존에는 간과되어 왔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부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침	84
풀뿌리로비활동 전개	80
지역유지로 하여금 그 지역 의원과의 접촉 주선	80
정부규제 법안이나 규칙 등의 작성에 도움 제공	78
각종 전문 위원회 활동에 참여	76

로비전술의 종류	사용%
의원들에게 특정 법안이 그들의 지역구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지 설명	75
법적소송활동	72
선거자금제공	58
도움이 필요한 정치인 지원	56
공직임명에 영향 행사	53
의원들의 입법투표기록 공개	44
조직의 재정충당을 위한 활동	44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이익집단의 입장 홍보	31
선거운동에 인력제공	24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표명	22
시위	20

출처 : Schlozman and Tierney(1988)

양당간의 차별성

민주당과 공화당간에는 경제 · 사회적 배경에 따른 지지기반의 차이와 함께, 이념 성향과 정책에 다소 차이

- 진보 성향의 유관자들은 민주당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 경제 부문 정책에 있어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공화당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며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지지
- 환경문제에 있어 민주당은 친환경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개발을 더 중시하는 입장
- 복지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지원 및 노년층 의료보호 강화에 관심이 많고,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 유지를 통한 공적인 연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 사회적 쟁점에 있어 민주당은 낙태문제를 임산부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pro-choice)이고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편인데 반해, 공화당은 낙태문제는 산모의 권리보다는 태아의 보호를 중시하여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pro-life)이며 동성결혼에도 반대

- 또한 민주당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사형제도의 폐지, 수감자들의 인권 보호 강화를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하고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
- 이 밖에 문화적 부문에서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공화당은 외설적인 표현을 엄격히 규제하자는 입장

티 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

- 2009년 이후 미국 정치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티 파티 운동은 과거 보스턴 차(tea) 사건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세금 인상 반대 운동으로서, 2001년부터 지역의 보수주의적 단체들이 의원들과 행정 관료들에게 차(tea bags)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
- 티 파티 운동 참여자들은 보수층, 자유주의자 및 대중영합주의자로서의 포퓰리스트를 포함
  - 이들은 2009년 이후 주로 시위나 데모 등을 통한 정치적 저항과 함께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등장
- 이들이 주장하는 정치 어젠다는 명확하게 합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미국 연방헌법을 준수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며 감세를 통한 정부채무를 줄이는 것을 주장하며 이민정책에 반대
- 현재 안정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화당 지지의 보수주의자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티 파티 운동이 이념적인 균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유권자들의 이념 분화

- 통상 미국인의 이념은 진보(liberal)와 보수(conservative)로 대별
- 미국에서 진보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상대적으로 강한 신념을 지니며, 인종, 계급, 성별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 역할에 신뢰 부여
  - 정부가 기업 자본주의 경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규제하도록 노력하며, 인종과 소수민족은 물론 문화적 혹은 정치적 불복종주의자들의 시민권을 방어하는 입장
-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수주의는 자연스런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출에 반대하는데, 이는 불평등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성취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
  - 개인의 이윤 추구 행위에 간섭하는 정부 규제에 반대
  - 대신 낙태 금지와 동성애 금지와 같이 개인 품행의 영역에서 정부가 명확한 도덕적 잣대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
    - ※ 최근 일부 학자들은 진보-보수라는 단순한 틀보다는 경제영역에 있어서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과 사회이슈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
  - 사적 영역에 있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느냐 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보수주의(economic conservatism)'와 '경제적 진보주의(economic liberalism)'로 구분될 수 있는 한편, 사회적 · 도덕적 문제들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사회적 보수주의(social conservatism)'와 '사회적 진보주의(social liberalism)'로 나뉠 수 있다는 의미

☞ 이러한 분석 노력은 과거에 비해 미국인들의 이념적 성향이 보다 복잡해졌음을 시사하며, 쟁점이슈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당장의 현안에 따라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유동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Chapter 8 정당제도

개인 이념의 이차원 분류 기준

출처 : Janda, Berry&Goldman(1994)

정당의 조직형태

가. 전국단위 조직 및 역할

-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당은 중앙당의 개념이 없으며, 풀뿌리 당조직인 선거구 위원회 (precinct committee) 구성원들이 시 또는 카운티 당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이들이 주 당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향식 조직구조를 형성
- 당의 전국 단위 조직은 당 대통령 후보 지명이 전당대회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당대회 준비와 선거 캠페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

- 민주당, 공화당 공히 전당대회가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국위원회가 있는데, 전국위원회는 연 2회 회의 개최
  - 1948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1956년에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조직
  - 전국위원회는 당 위원회의 연합(confederations) 형식으로, 구성원은 각 주에서 선정하는 대표자(representatives)들로 구성되어 있음. 전국위원회에는 최고지도자로 의장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선출. 전국위원회 의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대통령이나 후보지명자가 선정하지만 비선거기간중에는 위원회에서 호선. 의장은 위원회를 공식 대표하고 당 행정을 총괄하며, 특히 대통령의 소속당과 다른 반대당의 의장인 경우 상당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
  - 전국위원회는 주로 대통령 선거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선거기금 마련 및 배분, 선거전략 작성, 여론조사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 또한, 주와 지방정당, 소속당 출신 선거직 공무원, 후보자 등과의 긴밀한 연락 및 지원도 병행

나. 의회내 조직

- 상 · 하 양원에는 정당별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 공화당은 공화당 하원 의회위원회(National Republican Congressional Committee)와 공화당 상원 위원회(National Republican Senatorial Committee). 민주당은 민주당 하원 선거위원회(Democratic Congressional Campaign Committee)와 민주당 상원 선거위원회(Democratic Senatorial Committee)로 구성

다. 주 단위 조직

- 미국 정당조직의 근간은 주 단위 이하의 지방조직이며, 선거직 공무원의 대부분은 지방 당조직에 정치력을 집중. 주에는 시나 카운티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 당위원회(State Party Committee)가 있으며, 주에 따라 크기나 구성, 기능 등에서 많은 차이
- 주 위원회는 전당대회 개최를 제외하고는 전국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
- 주 위원회는 전국위원회처럼 상근직원을 두면서 선거자금 모금. 주단위에서도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정치자금 모금 등 당운영에서 우세한 것으로 평가

라. 지방 단위 조직

- 정당조직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은 미국 전역에서 10만개 이상의 선거구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선거구 위원회(Precinct and ward committee)로, 이들 위원회는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를 구성
- 지방단위 조직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체로서 결속력은 약하며, 선거에 즈음해서 조직되어 정치자금 모금, 당원 관리, 캠페인 등 정당활동을 전개
  - 지방단위 당조직의 활동 양태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양당 대결이 첨예한 곳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종전에 민주당 표밭이었던 남부지역 같은 곳에서는 정당활동이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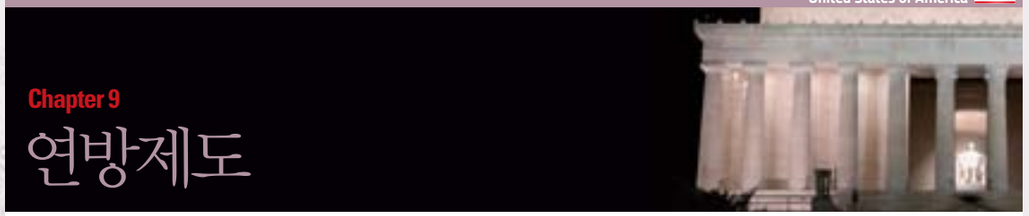

Chapter 9

연방제도

연방제도의 기원

가. 역 사

1776.7.4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대륙회의(1777.11)에서 최초의 헌법인 '연합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 채택(1781.3 13개주에 대해 비준)

※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 독립전쟁기에 미국 13주가 제정한 최초의 성문헌법이었지만 각주가 자유 · 독립 · 주권을 유지하고, 사법제도의 결여와 비능률적인 시책 등으로 미국헌법으로 후에 대체
- 서부 영토 귀속 문제 등 큰 주와 작은 주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비준에만 4년 소요
- 징세권 · 통상통제권 · 상비군 보유 등 주요 기능을 주정부가 여전히 보유
- 연맹회의에서의 투표권은 각 주마다 한 표로 하고 규약의 개정은 만장일치로 하며, 분담금은 백인 인구를 기준으로 각 주에 할당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 보유
- 초기 연합규약 하에서는 중앙정부는 그 기능이 국방 · 외교 · 화폐주조 등으로 제한되어 취약하였으며, 통상규제권, 사법권 등 실질적 기능 부재로 농민 반란 등 사회 불안 야기

취약한 연합규약을 개정 · 보강하기 위해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라고 불리는 55명이 필라델피아에서 제헌회의(1787.5월)를 개최, 동 회의에서 강력한 중앙 정부를 대변한 해밀턴(Alexander Hamilton), 큰 주의 이익을 대변한 메이슨(George Mason), 그리고 중도파인 매디슨(James Madison)이 큰 역할 담당. 116일 동안의 격론 끝에 참석자들은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를 대표하는 하원인 양원제를 두는데 합의하는 '대타협(Great Compromise)'에 성공

※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이보다 더 나은 것은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이 헌법을 찬성합니다."라는 말로 당시 분위기 표현

제헌 이후 13개주 비준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었지만 매디슨, 해밀턴, 제이(John Jay) 등의 논객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헌법 창시자들의 제헌 의도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

※ 상기 3인들의 85개 논설은 '연방주의자 평론(Federalist Papers)' 이라고 불리며 지금도 헌법학자나 대법원 판결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Chapter 8 정당제도

당시 헌법창시자들은 '연합규약'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하나의 국가로 존속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영국과 같은 강력한 중앙정부에는 반대

- 정부권력을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분점하면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을 정부 독재로부터 이중으로 보호

※ 연방제 원칙은 미합중국 헌법 제1조 8절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제9절), 주에 금지된 권한(10절) 등을 통해 시현

주 권한주의와 국가 권한주의 비교

	주 권한주의	국가 권한주의
연방정부 수립의 주체	주정부가 제한된 권한을 이양하여 연방정부를 창출함	인민이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창출함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관계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대체하기보다 주정부를 위해 운영됨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음
인민대표성	주정부는 인민에게 보다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인민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잘 이해함	연방정부는 특정 주에 거주하는 인민이 아니라 국가 내 거주하는 모든 인민을 대표함
헌법적 근거	수정헌법 10조의 잔여권한	헌법 1조 8절 18항의 유연성조항
사법심사권	헌법에 대한 엄격하고 좁은 유권해석 지지 → 사법 자제주의	헌법에 대한 유연하고 폭넓은 유권해석 지지 → 사법 행동주의

출처 :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연방정부의 권력

	연방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정부
헌법에 의해 인정된 권력	• 조폐 • 외교 • 주간 통상 규제 • 조세부과, 징수 • 선전포고 • 군대양성, 지원 • 우체국 설치운영 • 하급법원 설치 • 주의 연방가입 승인	• 조세부과 및 징수 • 채무부담 • 법률제정 및 집행 • 법원설치 • 일반 사회복지 제공 • 은행 및 회사의 설립	• 주내 통상 규제 • 선거관리 • 공중보건, 안전, 도덕 증진 • 지방자치단체 설립 • 헌법수정 비준 • 주 방위군 설치
헌법에 의해 금지된 권력	• 주간거래에 대한 관세 • 권리장전 침해 • 주 경계변경	• 작위나 귀족칭호 부여 • 노예제도 도입 • 투표권 제한	• 관세부과 • 조폐 • 조약체결 • 계약의무의 손상 • 시민의 특권 및 면제권 침해 • 법률에 의한 적정절차와 동등한 보호의 위반

Chapter 9 연방제도

미국의 연방제도는 기본권 보장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채택된 수정헌법 10개조가 확정(1791)되면서 확고하게 확립

- 수정헌법 제10조는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과 주의 위상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연방 제도 재확인

수정헌법 제10조 (1791.12.15)

"본 헌법에 의하여 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들은 각 주나 시민이 보유한다.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나. 의 미

- 연방제는 헌법에 의해 연방 또는 중앙정부와 하위정부들이 실질적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 권력을 분점
- 역사적으로 주가 먼저 생기고 13개주의 합의에 의해 연방정부가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각 주는 독자적 헌법과 삼권분립체제 등 완전한 정부형태를 보유하며 연방 정부와 대등한 관계 유지(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닌 완전히 독립된 정부)
  - 각 주가 독자적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연방제는 효과적인 정치적 및 행정적 실험을 가능하게 해주며 각 주의 풍부한 경험은 연방정부가 최선의 전국적 처방책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기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기 독자적 권력을 갖고 있으며,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 연방정부는 조약체결, 전쟁수행, 통상증진, 영토확보 등 고유한 권한을 보유하고, 주정부는 주내 통상 규제, 선거관리, 지자체 설립, 헌법수정 비준 등 연방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독자적 권력 보유
  - 조세부과 및 징수, 법률제정 및 집행 등 특정 분야에서는 양 정부가 동일한 권력 보유. 다만, 정부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연방정부가 우선하여 해결한다는 '연방정부의 우월성' 헌법에 규정

Chapter 9 연방제도

헌법 제6조 제2절 (일명 'Supremacy Clause')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합중국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 이 있을지라도 이에 구속된다.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the Judges in every States shall be bound thereby, any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 연방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연방정부의 우월한 권한을 인정

연방 정부의 우월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McCulloch vs. Maryland(1819)

주정부의 연방국립은행 지점에 대한 세금부과 권한의 존부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정부가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

Gibbons vs. Ogden(1824)

선박운항 독점권을 연방정부에게서 부여받은 사람과 주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사람간의 권리 주장 사건에서 연방정부의 독점권 부여가 우선한다고 결정

• 다만, 최근의 일관적이지 못한 일부 판례에서 확인되듯 양 정부간 관계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

- 실제로 1995년 대법원은 '학교구역 총기규제법' 적용에 있어 주정부의 권한을 우선시했으나 1주일 후 다른 판결에서는 연방정부 권한 우선 판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금지 규정

연방정부 금지 규정	주정부 금지 규정
(1) 인신보호의 특권박탈 (2) 소급처벌법 (3) 권리박탈법 (4) 귀족칭호수여	(1) 주정부의 외국정부와의 조약이나 협약 체결 (2) 대외무역에 대한 과세 (3) 주 정부 화폐 주조 또는 통화 발행 (4) 다른 주와 협정동맹이나 연합 (5) 권리박탈법 (6) 소급처벌법 (7) 귀족칭호수여
수정헌법에 의해 (5) 개인의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박탈 (6) 부당한 압수 · 수사 (7) 배심재판의 보장 및 과중한 처벌 금지	**남북전쟁 이후** (8) 노예제 금지 (9) 미국 시민권의 보장 (10) 흑인투표권의 보장

출처 :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Chapter 9 연방제도

정부간 관계의 변천

헌법제정-1932년 제한적 연방정부와 독립적 주정부(이원적 연방주의)

1932년-1960년대 대공황에 의한 주정부의 재정악화로 연방정부의 규제권한 확대(협력적 연방주의)

1960년-1980년 연방정부가 기존의 주정부 권한까지 흡수(우선적 연방주의)

1980년대 이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주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주정부의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신 연방주의)
- 다만, 보조금 삭감, 90년대 초의 경기 후퇴 등에 따른 재정악화로 실제로는 주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감소

미국의 각 50개 주를 표시한 지도

PART 4

정책

Chapter 10 대외정책 이념

Chapter 11 대외정책 방향 및 기조

Chapter 12 국방정책

Chapter 13 경제 · 통상정책

Chapter 14 국내정세

Chapter 10

대외정책 이념

미국 대외정책은 항상 일관된 이념적 노선만을 유지해 오지는 않았으며, 대립적이고 상반된 이념들 간의 긴장과 대립이 존재

-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립주의(isolationism)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그리고 이상주의(idealism)와 현실주의(realism) 간의 순차적 반복과 긴장관계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간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국제문제에 있어 국익추구를 위해 적절하고 바람직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의 차이에서 기인

- 고립주의는 가능한 한 대외문제에의 개입을 줄이고 국내에서의 내실을 기하며, 미국적 가치의 공고화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
  - ※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의 이임사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으며, 먼로 독트린에서 공식 천명되어 19세기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 기조에 위치
  - ※ 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독립 이후 미국의 관심이 국내에만 국한된 적은 없으며, △ 소위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표현대로 북미대륙 전역 확보를 향한 지속적인 영토확장을 추진하고 대외적인 군사력 사용도 많았다는 점, △ 또한 먼로 독트린도 미국이 국내문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유럽이 아메리카대륙 내 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을 주장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고립주의보다는 불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에 더 가깝다는 의견도 존재
  - ※ 건국 초기 미국의 고립주의 추구는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내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이 급선무였던 상황과 당시 유럽 열강들 대비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력수준에서 기인
- 국제주의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여 주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국익증진과 국위선양을 도모해야 한다는 견해
  - ※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전되고 북미대륙 전역으로 영토확장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유럽 열강들의 국력과 영향력도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던 무렵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국주의적 성향의 대외정책을 추진, 미국은 고립주의에서 국제주의로 전환
  - ※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통해 국제주의 외교노선 추구는 정점에 이르렀다가 국제연맹 참여거부를 기점으로 고립주의로 회귀했으며,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참전과 전후 냉전시작과 더불어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주의 노선 추구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간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번영을 위한 국가의 주요 과제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 외교의 기본 목표와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 기반

- 이상주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전쟁방지와 분쟁의 합리적 해결 가능성을 강조하고, 인권, 민주주의, 시장질서, 자유무역, 집단안보체제 등을 옹호하는 외교정책상 주요 이념
  - ※ 국제연맹 창설을 주장한 윌슨 대통령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카터나 클린턴 대통령의 인권중시 외교도 이러한 이상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현실주의는 국가가 자조와 동맹을 통해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하고, 국제평화는 동맹조정에 의한 세력균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

-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냉전의 시작과 함께 확고히 자리잡게 된 것으로 평가되며, 대소 봉쇄정책을 담은 트루먼 독트린, 핵무기 경쟁에 기초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소련 견제를 위한 닉슨 대통령의 미 · 중 관계 정상화, 레이건 대통령의 신데탕트 정책,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안정적 석유수급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걸프전 참전 등이 현실주의 외교노선을 반영

☞ 이러한 이념형들은 긴장과 경쟁을 지속하면서 구체적 외교사안의 해결에 번갈아 가며 영향을 미쳐왔는데, 외교사안의 특성, 대통령과 의회의 이념적 성향, 국내적 당면과제, 국제정세 등에 따라 어느 하나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영향력 발휘. 이러한 분석은 미국 외교이념에 대한 이해와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유용한 틀로 사용 가능

외교정책에 관한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헌법적 권한

	대통령 권한	의회 권한
전쟁에 관한 권한	군 최고통수권자(해외파병결정)	전쟁선포권
조약에 관한 권한	조약 협상 및 체결	조약 인준(상원의 2/3 찬성 시)
임면 권한	대사 및 외교 부처 고위직 임면	대통령 지명자 인준
통상 권한	통상조약 협상 및 관련 인사 임면	외국과의 통상 규제
일반 권한	정책 집행, 거부권 행사	입법, 예산배분 및 감사

출처 : Bruce W. Jentleso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Dynamics of Choice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Norton&Co. , 2000), p29의 표를 재정리

미국 외교의 이념적 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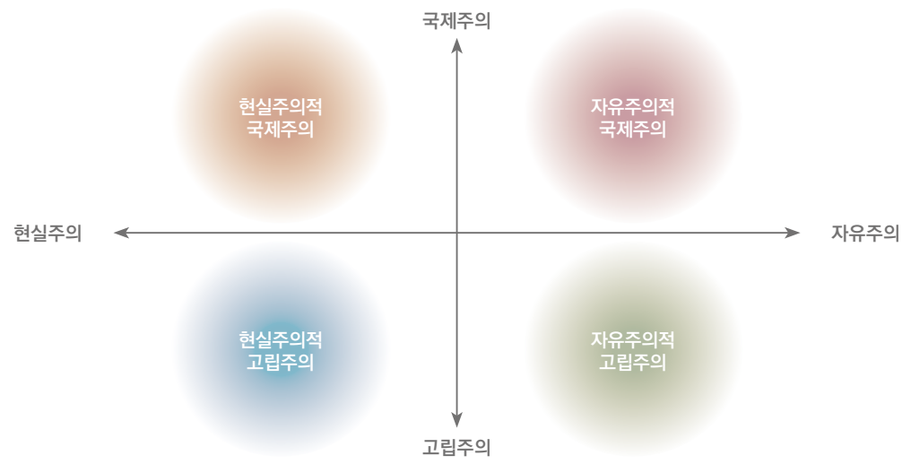

출처 :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Chapter 10 대외정책 이념

미국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미국인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오직 30%에 이르는 응답자들만이 고립주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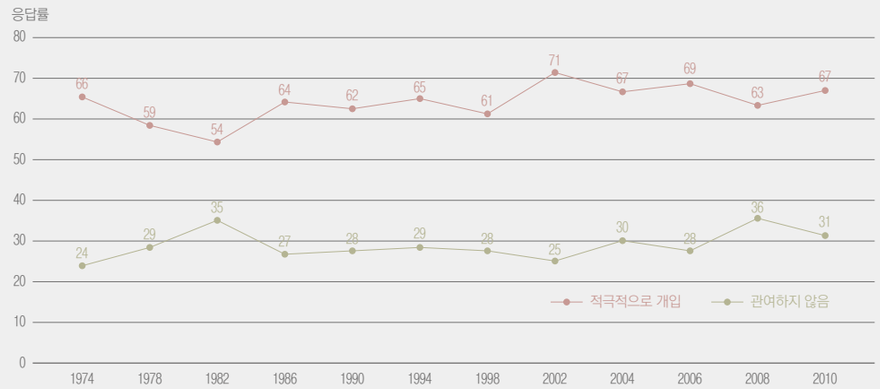

출처 :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onstrained Internationalism, Adapting to New Realities(2010)

대미 호감도와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세계의 인식 변화

미국은 세계인에게 있어 양 극단의 이중적 이미지를 가진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 역사 초기부터 미국은 아름다운 신세계, 희망과 기회의 땅,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황량한 미개척지, 질서 없는 무법천지, 문화적 후진국, 천박한 졸부의 나라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공존해왔다. 이러한 이중적 이미지는 오늘날에도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아있다. 한편에서는, 대외 원조로 빈국을 돕는 선의의 강국, 정치 · 경제뿐 아니라 대중문화의 세계 중심지, 민주주의의 모범국가, 세계 안보와 자유의 수호자 등 여러 측면에서 미화된 인식대상으로서의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국주의, 패권주의, 자국 중심적 우월감과 오만함, 인간을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천박한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경박한 대중주의, 경직된 도덕 절대주의, 문화적 퇴폐주의, 인종차별주의 등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라는 정반대 극단의 인식이 팽배해있다.

미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이 호불호 양 극단을 동시에 보인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속된 현상이지만(Thornton 1988),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이 수행한 대테러 전쟁으로 인해 반미감정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했었고 미국의 국가 이미지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미군이 이라크로 진격한 2003년을 전후로 대규모 반미 시위가 중동은 물론 서유럽, 아시아, 중남미를 휩쓸었으며, 더욱이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미국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서유럽에서의 격렬한 반미 운동은 미국인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출처: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Chapter 10 대외정책 이념

미국의 외교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외교이념은 미국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미국 예외주의'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하고 예외적인 나라라고 인식하는 태도
- 역사적 경험, 정치, 사회문화, 종교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독특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미국 예외주의는 '다르다'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세계인식 표현
- 미국 예외주의 관점에서 미국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한 국가, 즉 자유의 나라로서, 이러한 자기정체성 인식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도 반영
  - 즉, 미국적 가치의 세계적 보편성을 확신하고, 그러한 가치가 세계의 다른 나라에도 전파 및 확산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표현
- 예외적인 운명을 타고난 자신들은 선택받은 이들이며 그 선택에 대한 대답으로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위대한 모델국가를 건설해야만 한다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의식 보유

※ '명백한 운명'은 북미 대륙 전체로 미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개발하는 것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는 미국인들의 신념

국무부, 국방부, 국가안보회의에 의해 주도되는 미국 외교

전통적으로 미국 외교관계의 일차적 책임은 국무부에 있는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 내각의 4개의 부서 가운데 하나로 창설되었다. 본래 명칭은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였지만, 제1차 의회가 외무부의 명칭을 국무부로 변경하였다. 왜냐하면 국무부에 대통령의 성명서를 작성 및 발표하고 국새를 보관하는 등의 내부적 국가기능을 다수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무부의 장관 지위는 항상 다른 부서들의 도전을 받아왔는데, 일부 부서들은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외교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외교문제에 관한 한 모든 부처 가운데서 국무부가 제 1의 위치에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면서 국무부는 외교문제의 주관부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외교적 방법을 통한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국무부와는 달리 국방부는 대체로 강경한 대외정책 노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고, 실제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강압적 수단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또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미 행정부 내에서 소속인원과 예산규모가 가장 큰 조직이 바로 국방부였다. 미국의 경우 다른 서구 선진국들처럼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워낙 철저히 제도화되어 있어 현역 4성장군인 합참의장이 민간인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역시 현역장성인 육 · 해 · 공군 각 군 총장들이 민간인 신분의 각 군 장관의 지휘통제에 따르게 되어있다.

한편, 국가안보회의의 경우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제 1기 파월(Colin Powell) 국무 장관과 럼즈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 간의 강온 정책노선 대립과 라이스(Condoleezza Rice) 안보보좌관의 중재역할이 세간에 많이 회자되었으며, 제2기 때에는 대통령의 신임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라이스 국무장관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한다.

출처 :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Chapter 11

대외정책 방향 및 기조

오바마 행정부 대외정책 목표 및 주요 현안별 입장

1. 외교정책의 전반적 목표 및 수단

- "평화롭고, 번영하며, 정의롭고, 민주적인 세계를 구축 · 보호하며, 미국 국민과 전세계 인류의 이익에 봉사하는 안정적이고 진보적인 여건을 조성한다"는 기본 임무 하에, ▲다자주의적 접근, ▲외교력 · 군사력 · 경제력, ▲공공외교 · 문화를 앞세운 연성권력(Soft Power)을 복합적으로 구사

  ※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연설인 2013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비확산, 테러, 중동 민주화 등 세계적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고, ▲세계 각국과의 공조 강화를 재차 강조

- 특히, 미국의 군사 개입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핵심 이익 보호를 위해 군사 개입이 필요한 경우(▲미국 시민들의 안위와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경우, 또는 ▲미국의 동맹국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군사력을 행사할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글로벌 우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threshold)을 적용,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연대하여 집단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2014년 5월 28일 미 육사 졸업식 연설)

2. 아시아 · 태평양 재균형 정책

- 미국은 아 · 태 국가를 표방하면서, '아 · 태 재균형(rebalancing) 정책' 기조하에 아 · 태 지역의 안정적인 정치 ·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 제고
  - 아 · 태 재균형 정책은, ▲역내 군사력 증강, ▲동맹 강화, ▲중국 · 인도 · ASEAN 등 신흥국과의 파트너십 확대, ▲다자 정치 · 경제 협의체 활성화 등으로 구성

3. 중국과의 관계

- 미국은 중국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부상을 환영하며, 중국이 국제 규범과 질서 안에서 책임있는 대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

  ※ 중국으로서도 미 · 중 간 '不충돌', '不대항', '상호존중'을 중심으로 한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

- 반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 사이버 해킹 문제, 인권 문제 등 미 · 중 간 긴장요인도 발생

4. 러시아와의 관계

-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reset)한다는 정책을 표방하였으며,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체결, 아프간 주둔 미군 보급로 확보, 이란핵 문제 관련 제네바 합의 등 일정 성과 거양
- 그러나 지정학적 경쟁 관계(NATO 동진 및 동유럽 MD 문제, 시리아 사태 관련 이견, 중국과의 3각 관계 등) 및 일부 갈등요인(상호 지속되고 있는 첩보활동의 대외유출, 스노우든의 러시아 망명 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관계 악화

5. 중동 · 서남아 문제

-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란 핵 문제, 시리아 내전 등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란 핵 문제를 제외하고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이란 핵 문제의 경우 2013년 11월 P5+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 · 영 · 불 · 러 · 중 및 독일)과 이란 간 '제네바 합의' 도출 이후, 양측 간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협상 지속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14년말까지 전투임무를 종료하고, 2014년 이후에는 아프간 군 · 경에 대한 훈련, 자문, 지원 및 대테러임무 수행 예정

6. 범지구적 사안

- (대테러)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알카에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 2014년초 오바마 대통령은 남아시아에서 사헬에 이르는 지역까지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 개발을 지시하는 한편, 미 의회에 신규 대테러협력기금에 대한 지지 요청

- (군축 · 비확산) 미 · 러간 합의한 핵무기 감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북한 · 이란핵 개발 등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모색
- (기후변화) 코펜하겐 및 칸쿤 합의에 근거하여 이루어낸 진전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미국내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 기준의 30%로 감축, △연료효율이 높은 에너지 개발을 위한 셰일가스 개발 지속
- (개발원조) 국제보건(global health), 식량안보(food security)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강화
- (인권) 세계인권선언(1948년)에 명시된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여성 · 소아 · 소수자 권리 보호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미국의 중심적인 역할 지속

• (사이버안보)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국제적 노력 주도

오바마 대통령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졸업식 연설(2014년 5월 28일)

향후 미국이 추진할 4가지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

1)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개입

• 미국은 미국의 핵심 이익 보호를 위해 군사 개입이 필요한 경우, 즉 △미국 시민들의 안위와 생활이 위협을 받거나 또는 △미국의 동맹국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군사력을 행사할 것임

– 반면 미국의 이익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글로벌 우려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이보다 높은 기준(threshold)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연대하여 집단적인 조치 필요

2) 테러리즘 대처

•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테러리스트들이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들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테러리즘에 대응할 것임

3) 국제질서 강화

• 미국은 현 세계의 요구에 부응토록 국제 제도들을 진화시키고, 각각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

4)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 확산

•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행동한다는 의지 하에 불안정 및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불만에 대해 치유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

오바마 행정부 대아시아 정책 기조

1. 오바마 행정부의 아 · 태 재균형 정책

• 9 · 11 테러와 아프간 ·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대외정책이 지나치게 중동 문제에 편중되어 있다는 정책적 재검토 결과와, 아 · 태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이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아 · 태 재균형(rebalancing) 정책 추진

– 당초 아 · 태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안보 · 경제적 번영 및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미국의 외교자산을 역내국가에 계속 투입하겠다는 구상

– 다만,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후 산적한 국내 문제, 특히 재정적자로 인한 국방비 감축 압박과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사태로 아 · 태 재균형 정책의 동력이 다소 상실되었다는 평가도 존재

–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4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순방함으로써, 아 · 태 재균형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 아 · 태 재균형 정책 :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2011년 11월 Foreign Policy 기고문 "America's Pacific Century"를 통해 구체적인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당초 "Pivot to Asia"라고 표현되다가 "Rebalancing"으로 용어 정리

2. 아 · 태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한 · 미 동맹 등 양자동맹 강화, △미 · 중 관계 관리, △역내 다자협의체 참여 등의 정책을 복합적 · 중층적으로 전개

Chapter 11 대외정책 방향 및 기조

양자 동맹 강화

• 한 · 미 동맹과 미 · 일 동맹을 각각 아 · 태 지역 평화 · 안정의 핵심축(linchpin)과 초석(cornerstone)으로 규정하고, 동맹의 역할과 기능 강화 추진

• 호주 내 미 해병대 주둔, 필리핀과의 국방협력증진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체결(2014년 4월) 등 여타 동맹도 강화

미 · 중 관계 관리

• 아 · 태 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주요 국제이슈 대처를 위한 협조 확보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요구 등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 구축

역내 다자협의체 참여

• ▲ASEAN과의 협력 강화 및 APEC · EAS · ARF 등 역내 다자 협의체 참여, ▲한 · 미 · 일/미 · 일 · 인/미 · 일 · 호 등 소규모 다자(minilateral) 협의체 참여 · 추진 등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등 무역증진 · 경제발전을 위한 역내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

Donilon 국가안보보좌관 아시아 정책 연설(2013년 3월 11일, Asia Society 연설)

미 아 · 태 재균형 정책의 5개 주요축(pillar)

① 동맹 : ▲미 · 일 동맹은 아태지역 안보 · 번영을 위한 초석, ▲미 · 호주 동맹 및 동남아지역의 미 · 태국, 미 · 필리핀 동맹의 중요성 강조

② 신흥부상국 : ▲미-인도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및 인도의 "Look East" 정책 환영, ▲인도네시아 · 브루나이 등 아세안국가들의 중요성 강조

③ 중국 : ▲세계 주요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협조는 필수적인 바, 중국 신정부와의 건설적 관계 구축 필요성 강조, ▲미 · 중 관계는 협력과 경쟁 요소 포함, ▲특히 군사 · 안보, 경제 및 사이버 안보 분야의 대화 · 협력 중요성 강조

④ 역내 정치체제 : ▲역내협의체 구축 · 발전을 위해 노력, ▲ASEAN과의 협력 강화 및 EAS 등 협의체 적극 참여,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 희망

⑤ 역내 경제체제 : 무역증진 · 경제발전을 위한 역내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한미 FTA 평가 및 TPP 중요성 강조)

오바마 2기 행정부 下 한 · 미 관계

가. 2013-2014년 한 · 미 정상회담

1. 2013년 양국은 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초로 한 · 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청사진 마련

•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계기 한 · 미 정상회담(2013년 5월 7일)에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지구촌 평화 · 번영 기여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지향 등 양국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한 · 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

한 · 미 공동기자회견(2014)

한 · 미 정상회담(2013)

2. 2014년 양국은 지난 60년간의 동맹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중

- 오바마 대통령의 4번째 방한(2014년 4월 25-26일) 계기 한 · 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우호 증진,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 ▲주요 동맹 현안 진전, ▲북한 비핵화 및 통일 기반 구축 협력, ▲동북아 평화 ·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경제 · 사회 실질협력 심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양

  ※ 양국 관계 현황 및 주요 협력사업을 망라한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 채택, 발표

21세기(2001년-2013년) 한 · 미 동맹관계 연혁

역대 정부	관계	채택 문건
김대중 정부	포괄적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Partnership)	2001년 한 · 미 정상 공동발표문
노무현 정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Comprehensive and Dynamic Alliance Relationship)	2005년 한 · 미 정상 공동선언
이명박 정부	21세기 전략동맹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2009년 「한 · 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동맹 미래비전)
박근혜 정부	포괄적 전략동맹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2013년 「한 · 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Chapter 11 대외정책 방향 및 기조

나. 주요 협력 내용

1. 북핵 · 북한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 · 미간 긴밀한 공조 지속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태세 유지 및 한 · 미 연합 방위력 지속 강화
- 북한 비핵화 원칙하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경주

  ※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 미사일 관련 국제적 의무를 이행토록 「압박 · 대화 병행 전략」 기조 견지
- 미국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 비전을 지지하며, 남북한 동질성 회복 및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

2. 한 · 미 동맹 협력의 수준 · 범위를 확대 · 심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 아 · 태 지역 평화 안보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있는 한 · 미 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 · 협력을 위한 공동 노력 지속 추진
- 안보협력을 넘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2008년 11월 17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2012년 3월 15일), ▲한 · 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2013년 11월 1일 5년 연장) 등 경제 · 사회 · 문화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 심화
- 지구촌 평화 ·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인권, 개발협력, 대테러,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범세계적 이슈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 및 기여 강화

3. 한 · 미 FTA를 토대로, 교역 · 투자 · 창조경제 협력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 구축

- 한 · 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량 및 투자 증대 등 한 · 미 경제협력 관계 더욱 강화

  ※ 한 · 미 FTA는 한 · 미 동맹과 함께 양국 관계의 양대 축으로 평가
- 우리 기업의 최대 해외투자국은 미국이며, 최대 對韓투자국도 미국

  ※ 우리나라는 미국의 6번째, 미국은 우리의 2번째 무역상대국(2013년 기준)
- 에너지,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협력 확대 지속

4. 한 · 미간 활발한 인적 · 문화적 교류 등 지속적인 유대 강화

- 미국 내 대규모 한인사회(200만명 이상의 재외동포)는 양국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 · 강화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기능
- 매년 7만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 인구 비율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원수로는 중국, 인도에 이어 3위)
- 미국내 한국학 연구, 한국어 교육 확대, 한국 전문가 육성 등과 함께,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활발한 문화 교류 지속

Chapter 12

국방정책

국가안보 목표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 National Security Strategy)」(2010.5.27. 발행)는 미국이 추구하는 4대 국가이익을 토대로 구체적 이행 전략 제시

※ NSS : 미국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국방부재조직법(Goldwater-Nichols Defense Department Reorganization Act)에 의해, 미 행정부가 1986년 이후 2-4년마다 의회에 보고

국가안보 전략 주요 내용

▶ 국가안보 전략 접근 방식

- 국가안보는 군사력 뿐만 아니라, 외교 · 개발협력 · 정보 · 법집행 등으로 보완 필요
- 미국 독자적으로 범세계적 도전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전통적 동맹국 및 신흥 중심국가(centers of influence) 등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핵확산, 극단주의, 기후변화 등 도전에 대처할 필요성

▶ 상세 목표

안보
- 미국내 발생 테러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필요
-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교란, 분쇄 및 격퇴
- 핵무기/생물무기 확산 저지 및 핵물질 안전 확보
- 범중동지역의 평화, 안보, 기회 증진
- 강력하고 능력있는 파트너 역량 구축을 위한 투자
- 사이버 공간 안전 강화

번영
- 교육의 경쟁력, 인적 자본, 과학기술 강화
-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가치
- 솔선수범을 통한 보편적 가치 실현 및 민주주의와 인권 확산
- 기본 필요 충족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증진

국제질서
- 강력한 동맹 확보
- 여타 21세기 중심세력과의 협력구축
- 협력을 위한 제도 및 메커니즘 강화
- 주요 범세계적 도전과 관련한 광범위한 협력 지속

국방전략

미 국방부는 2012.2.1.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 유지 : 21세기 국방우선순위(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 Priorities for 21st Century)」라는 제목의 新국방전략지침을 발표

「新국방전략지침(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 21세기 국방우선순위)」 주요임무

동 보고서의 목적은 10년간 이라크/아프간 전을 치르고 동 지역에서 철군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재정상황의 관점에서 미국의 국방전략을 평가하고, ▲동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방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음

- 알카에다를 저지, 해체, 굴복시키는 것과 아프가니스탄이 동 조직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 미군이 한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펼치고 있어도, 다른 지역에서 기회주의적 침략자들을 억제하고 굴복시키는 역량 필요
- 접근거부/지역차단(A2/AD) 도전에 대한 효율적인 군사작전 운용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 필요
-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의 야욕을 좌절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강화
-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수행능력 보강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지속 협력
-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 본토 방어능력 제고
-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장소 및 배치 간격 등에 대해 신중한 결정 필요

한편, 미 국방부는 상기의 「新국방전략지침」에 따라, 2014.3.4. 「2014년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를 발표, 3개 분야별 국방전략 및 군 병력조정 · 현대화 방안 제시

※ 1997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 국방부는 4년마다 국방전략, 병력구조 및 현대화 계획,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QDR로 의회에 제출

「4개년 국방정책 보고서(QDR)」 주요 내용

- 아프간 전쟁 종결 및 예산 감축 상황 하에서, 미국의 우위 유지를 위해 다양한 재조정(rebalance) 방안(①다양화된 성격의 분쟁 대처를 위한 재조정, ②해외 미군 주둔 및 준비태세 재조정, ③미군내 능력, 역량 및 준비태세 재조정) 제시
- 미국의 안보 · 국방 전략을 3개 주요 분야(▲미 본토방위, ▲범세계 안보 구축, ▲전력투사 및 결정적 승리 확보)로 나누어 제시
  ☞ 특히, 아 · 태 재균형 정책 지속 추진 의지를 재확인(▲2020년까지 해군 자산의 60%를 태평양지역 배치, ▲역내 미 해 · 공군력 증강 및 미 해병대 괌 이전, ▲호주 Darwin에 대한 미 해병대 순환 주둔 확대, ▲이라크 · 아프간전 종료로 인한 유휴 미 병력의 아 · 태지역 투입 등)
- 예산 감축 상황 하에서 당면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육군 · 해병대 병력을 감축하고, 국방예산 추가 감축시 병력의 추가 감축 및 군 현대화 사업 차질 심화 가능성 제시

군사력 현황

가. 통합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s)

-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창설
- 최소한 2개 이상의 군으로 구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임무 수행
- 사령관(Commander)은 4성 장군/제독이며, 합참의장 휘하의 9개 통합 전투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포함 기능사령부 3, 지역사령부 6)로 구성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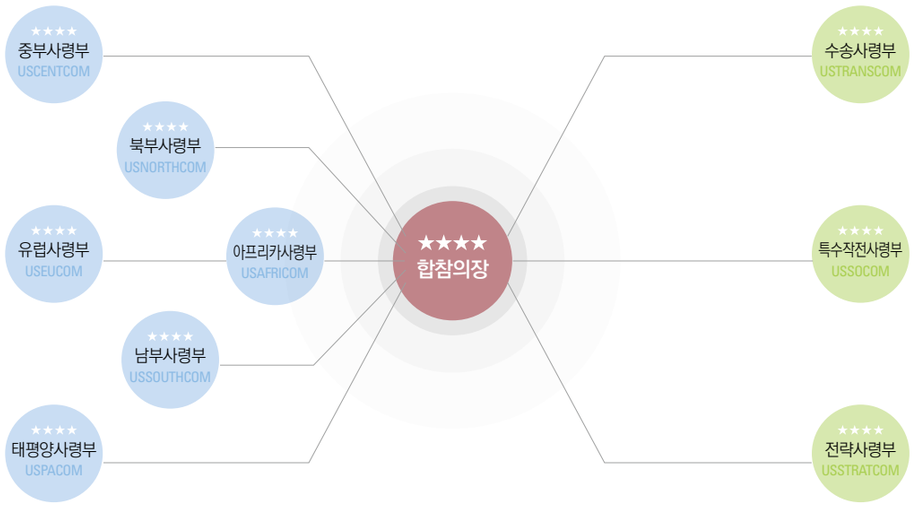

1) 지역사령부

- 태평양사령부(PACOM)는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큰 규모로서 태평양 함대사, 공군사, 해병사, 육군사 등 4개의 구성군사와 주한미군사, 주일미군사, 알래스카사령부, 태평양특전사 등으로 편성.
  - 총 전력은 약 30만으로 미군 병력의 20%차지
- 유럽사령부(EUCOM)는 NATO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서양 전체의 안보 강화 및 유럽,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이익 증진을 추구
- 그 밖에 중동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CENTCOM)와 아프리카지역을 담당하는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중남미지역을 담당하는 남부사령부(SOUTHCOM),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를 대상으로 국토안보(Home Land Defense)를 담당하는 북부 사령부(NORTHCOM)로 구성

태평양 사령부

- 부대창설 : 1947.1.1
- 위치 : Camp Smith
- 사령관 : 해군제독 Samuel J. Locklear III
- 책임지역 : 동북아시아, 인도양,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부, 몽골 등 약 1억 평방 마일 (지구 표면의 약 52%)

2) 기능사령부

- 특수작전사령부(SOCOM)
  - 사령부는 플로리다주 템파 MacDill 공군기지
  - 2013년 현재 63,000명의 전력 보유
  - 육 · 해 · 공 특수전력을 지휘하며, 민사와 심리전을 포함 전 범위에 걸친 군사작전 지원
- 전략사령부(STRATCOM)
  - 사령부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Offutt 공군기지
  -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하여, 우주전 · 정보전 · 미사일방어 등 21세기형 군사력 담당
- 수송사령부(TRANSCOM)
  - 사령부는 일리노이즈주 St. Clair County Scott 공군기지
  - 인력과 물품의 수송을 조정하며, 휘하에는 해군군사수송사령부 · 공중기동사령부 · 육군군사교통관리사령부 등이 있음

전세계 미군 주둔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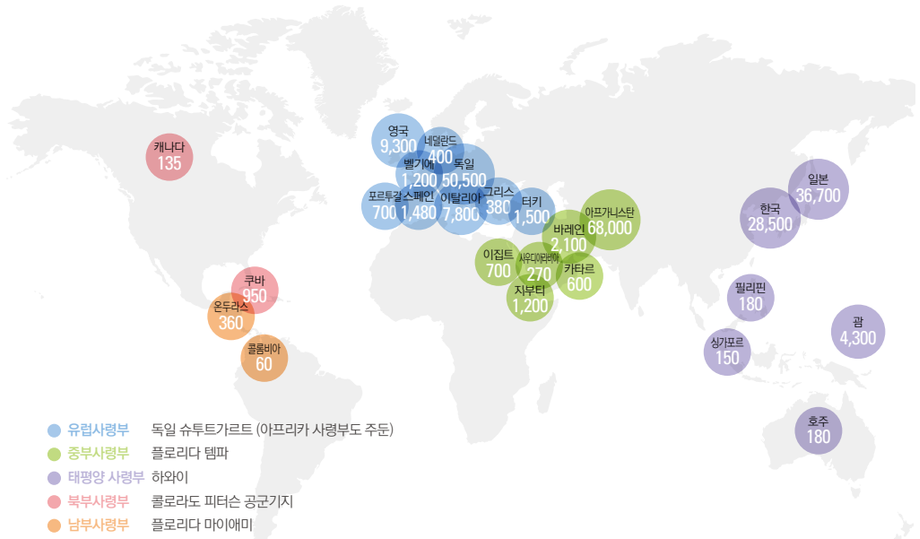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3 (런던:국제전략문제연구소)

나. 3군성

1) 육군

- 창설일 : 1775년 6월 14일(독립전쟁 당시 대륙군 창설일)
- 장관(Secretary of the U.S. Army) : John McHugh
- 전투사령부
  - 중부 육군 사령부 : 사우스 캘리포니아 주, Shaw AFB
  - 북부 육군 사령부 : 텍사스 주, Fort Sam Houston
  - 남부 육군 사령부 : 텍사스 주, Fort Sam Houston
  - 유럽 육군 사령부 : 독일, 비스바덴, Clay Kaserne
  - 태평양 육군 사령부 : 하와이 주, Fort Shafter
  - 아프리카 육군 사령부 : 이탈리아, Vicenza
- 여단중심(Brigade-based)의 군 구조 하에서 기갑 여단, 보병 여단,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구성된 전투 여단과 전투 지원 여단, 군 지원 여단 등이 있음

Chapter 12 국방정책

2) 해군

- 창설일 : 1775년 10월 13일
- 장관(Secretary of the U.S. Navy) : Ray Mabus
- 주요 기지
  - Norfolk 기지 : 버지니아 주 소재, 세계 최대의 해군 기지
  - Kitsap 기지 : 워싱턴 주 소재, 핵탄두미사일 잠수함(SSBN) 8척의 모항기지
  - San Diego 기지 : 태평양함대 후방지원 기지
  - Pearl Harbor 기지 : 태평양함대 주둔기지
  - Guam 기지 : 태평양 서쪽에 위치한 전략기지
  - Yokosuka 기지 :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기지
- 해병대는 해군 소속 기관이지만, 해안 경비대(US Coast Guard)는 국토안전부 소속

3) 공군

- 창설일 : 1946.9.18
- 장관(Secretary of the U.S. Air Force) : Debora Lee James
- 주요 사령부
  - 항공 전투 사령부 : 버지니아 주, Langley-Eustis 기지
  - 글로벌 스트라이크 사령부 : 루이지애나 주, Barksdale 기지
  - 우주 사령부 : 콜로라도 주, Peterson 공군기지
  - 특수 작전 사령부 : 플로리다 주, Hurlburt Field 기지
  - 태평양 공군 기지 : 하와이 주, Pearl Harbor-Hickam 기지

2013 회계연도 재래식 병력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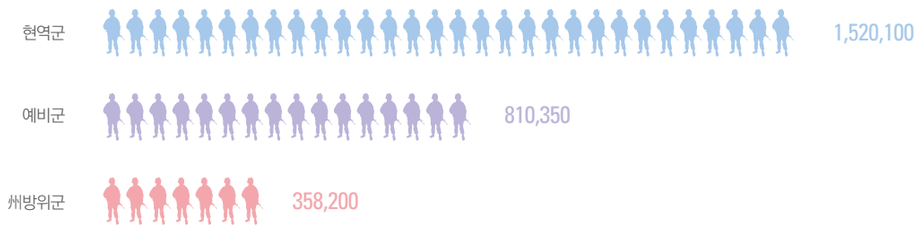

Chapter 12 국방정책

각 군별 구조 개요

(단위 : 명, 개, 대)

육 군	현역군	600,450
	州방위군	358,200
	예비군	205,000
해 군	병력	322,800
	잠수함(SSBN / SSGN / SSN)	14/44/14
	항공모함	11
	해양순양함	22
	구축함	62
	프리깃함	17
	상륙준비단	41
공 군	병력	346,100
	전투기	1,430
	무인기	215
	헬리콥터	143
해병대	병력	199,550
	사단(현역 / 예비역)	3/1
	비행사단	34,700
특수전 부대	육군 특수전 부대	32,400
	해군 특수전 부대	9,500
	공군 특수전 부대	15,300
	해병대 특수전 부대	3,000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3

Chapter 13 경제 · 통상정책

대내 경제정책

'14.1.29, 오바마 대통령은 '14년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통해 소득불균형 · 계층간 이동 문제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

- 일자리 창출 : ① 세제개편(close tax loophole)을 통한 투자촉진 및 인프라 건설 위한 재원 마련, ② 첨단제조업 위한 기업-대학 허브 증설, ③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자금대출 강화, ④ 차세대 에너지산업 진흥, ⑤ 이민개혁 통한 경제성장 동력 강화 및 재정적자 감축
- 교육 강화 : ① 맞춤형 직업 훈련, ② 취학전 아동교육 및 의무교육 수준 향상, ③ 학자금 인상 억제 · 대출 지원, ④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
- 실업자 지원 : ① 장기실업수당 지급 연장, ② 장기실업자 차별 금지
- 근로자 권익 보호 : ① 연방 최저임금 인상, ② 남녀임금격차 해소, ③ 근로장려세제의 1인 가구 확대 적용, ④ 퇴직연금제도 개편, ⑤ 전국민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지속 시행

대외 통상정책

'14.3.4, USTR은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목표 등을 담은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 보고서를 발표 (* 美 대통령은 1974년 통상법에 의거, 매년 통상정책의제 보고서를 3월초 의회에 제출할 필요)

- 핵심 국정과제인 중산층 강화 · 고용창출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무역확대 · 무역규범 이행 · 개도국 성장지원 등을 통상정책의제로 설정
  - (무역확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 범대서양투자동반자협정(TTIP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 Trade In Services Agreement) 등 협정 체결 추진
  - (통상권한의 국제적 집행 강화) 중국 · 인도 · 인니 등의 WTO 규범 준수 유도 등 WTO 규정 위반에 대한 대응, 汎부처무역집행센터(ITEC : 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통한 각국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등
  - (빈곤퇴치 · 무역을 통한 세계경제 성장 견인) 아프리카 경쟁력 향상,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특혜 및 WTO를 통한 최빈개도국 지원, 여성차별 철폐 등
- 오바마 대통령은 상기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美 의회에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지부족 등으로 인해 연내 처리 불투명

경제동향 및 전망

주요 경제지표

항목		2010	2011	2012	2013
GDP성장률(%)		2.5	1.8	2.8	1.9
무역[1]	상품수출(억불) (전기대비,%)	12,888 (20.5)	14,959 (16.1)	15,612 (4.4)	15,904 (1.9)
	상품수입(억불) (전기대비,%)	19,390 (22.7)	22,400 (15.5)	23,027 (2.8)	22,935 (△0.4)
경상수지(십억불)		△449	△458	△440	미집계
달러화 실효환율[2]		75.32	70.87	73.52	76.04
통화(M2)증가율(%)		3.6	10.1	8.2	5.3
금리(%)	Federal Fund Rate(기말)	0~0.25	0~0.25	0~0.25	0~0.25
	장기국채수익률[3]	3.21	2.79	1.80	2.35
물가[4] (증가율,%)	생산자	4.2	6.0	1.9	1.2
	소비자	1.6	3.2	2.1	1.5
실업률(%)		9.6	8.9	8.1	7.4
노동생산성[5](%)		3.3	0.5	1.5	0.6
산업생산[6](%)	全산업	5.7	3.4	3.6	2.6
	제조업	6.1	3.4	3.9	2.3
	제조업 가동율	71.3	74.0	75.8	76.3
주가지수[7]		11,577.5	12,217.6	13,104.1	16,576.7

주 : 1) 캐나다,유로지역,일본,영국,스위스,호주,스웨덴 등 7개국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환율지수, 명목기준 2) 10년만기 3) 생산자물가는 최종재기준
4) 전산업(농업부문 제외) 취업자의 단위시간당 불변산출액기준(1992=100) 5) 지수(2007=100) 증감율 6)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미 상무부 및 노동부, Federal Reserve Bulletin(미 연준),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Reuters

Chapter 13 경제 · 통상정책

가. 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 성장

• 2011년 미국 경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2년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중

- 2013년의 경우 전체 성장률이 2012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예산자동삭감(sequester)으로 인한 1분기의 낮은 성장률(1.1%) 감안 필요

2) 고용

• 2009년 이후 실업률이 지속 하락, 2013년에는 7%대 도달

3) 물가

• 2010년 말부터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2012년부터 둔화

4) 금리

• 美 연방준비이사회는 경기회복을 위해 2008.12월 기준금리를 0-0.25%로 큰 폭 인하(75bp)한 후 현재까지 동 수준 유지

※ 다만, 美 연준은 美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13.12.18 이후 양적완화규모 축소중

5) 재정

• 2013.12월, 미 의회는 '14 · '15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

- 예산자동삭감(sequester)을 일부 완화하여 '14 · '15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재량지출 규모를 각각 1조 120억불 · 1조 580억불로 증액

※ 예산자동삭감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여타 분야에서 정부지출을 삭감하여 향후 10년간 약 220억불 재정적자 감축 도모

• 상기 합의로 정부폐쇄('13.10월) 사태 재연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美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 美 경제 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나. 수출입 동향

1) 전체 수출입 동향

• 2013년 미국은 수출 22,723억달러, 수입 27,439억달러로 전년대비 약 632억달러 감소한 4,715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상품분야의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5.2% 감소, 서비스분야의 흑자는 12.0% 증가

미국의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달러, %)

항목		2011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상품	14,959	16.1	15,612	4.4	15,904	1.9
	서비스	6,170	11.0	6,493	5.2	6,820	5.0
	합계	21,128	14.5	22,106	4.6	22,723	2.8
수입	상품	22,400	15.5	23,027	2.8	22,935	△0.4
	서비스	4,297	6.1	4,425	3.0	4,503	1.8
	합계	26,697	13.9	27,452	2.8	27,439	△0.1
무역수지	상품	△7,441	14.5	△7,415	△0.4	△7,032	△5.2
	서비스	1,873	24.2	2,068	10.4	2,316	12.0
	합계	△5,568	11.5	△5,347	△4.0	△4,715	△11.8

자료 : 미 상무부 CENSUS 기준

2) 품목별 수출입 동향 및 특징

• 전반적으로 품목별 수출 및 수입은 모두 증가 추세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항목	수출			수입		
	2012년	2013년	증가율	2012년	2013년	증가율
음식료	132,810	136,001	2.4	110,258	115,206	4.5
산업부품	501,071	508,160	1.4	730,374	681,406	−6.7
자동차및부품	146,126	152,095	4.1	297,813	308,813	3.7
자본재	527,375	534,111	1.3	548,614	553,845	1.0
소비재	181,745	188,522	3.7	516,342	533,170	3.3
기타	56,581	60,002	6.0	71,920	75,118	4.4
합계	1,545,709	1,578,893	2.1	2,257,320	2,267,557	0.5

자료 : 미 상무부 CENSUS 기준

Chapter 13 경제 · 통상정책

3) 지역별 수출입 동향 및 특징

• 지역별로는 유럽 · 동북아(韓 · 日)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수출이 증가

- 수입은 북미 · 유럽 · 아시아 등 지역에서 증가

• 중국과는 수출 1,220억달러, 수입 4,404억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교역 규모가 5,624억달러를 초과

지역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항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2년	2013년	증가율	2012년	2013년	증가율	2012년	2013년	증가율
북미	508,471	526,500	3.5%	601,506	612,533	1.8%	−93,035	−86,034	−7.5%
유럽	329,205	327,271	−0.6%	455,301	460,217	1.1%	−126,096	−132,947	5.4%
아시아	379,228	388,374	2.4%	762,207	771,012	1.2%	−82,979	−382,638	−0.1%
– 중국	110,484	122,016	10.4%	425,579	440,434	3.5%	−315,095	−318,417	1.1%
– 일본	69,955	65,145	−6.9%	146,392	138,534	−5.4%	−76,437	−73,389	−4.1%
– 한국	42,284	41,555	−1.7%	58,896	62,228	5.7%	−16,612	−20,673	24.4%
중남미	183,188	184,262	0.6%	171,781	158,434	−7.8%	11,407	25,828	126.4%
중동	81,722	84,599	3.5%	180,770	152,746	−15.5%	−99,048	−68,147	−31.2%
아프리카	32,738	35,038	7.0%	66,817	50,076	−25.1%	−34,080	−15,038	−55.9%

자료 : 미 상무부, 수입 : 통관기준

* 아시아(Pacify Rim Country), 중동(OPEC회원국) 기준

Chapter 14

국내정세

미 의회 동향

가. 현황

1) 미 의회 대치정국 심화

- 2013.10.1-16, 17년만에 미 연방정부 폐쇄(Government Shutdown)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미 의회의 대치정국이 최고조에 도달
- 2014년 예산안이 극심한 대립 끝에 양원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오바마케어, 이민법, 농업법, 총기규제법 등 주요 현안 진전 난항

2) 거부주의 민주주의(비토크라시)의 대두

-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비토크라시(vetocracy)", 즉 거부주의 민주주의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개탄

  ※ 워싱턴포스트 2010.6일 기고문,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로 강력한 반대자가 조금만 있어도 정부 ·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입법을 막을 수 있음을 의미

- 당내 파벌주의가 중간지대를 없애고 극단주의 초래
- 113대 의회 상반기 법안 처리 건수는 15건으로 47년 이래 최저

3) 대중의 정치불신 증대

- 오바마 지지율 46%(Washington Post-ABC News 여론조사), 의회 지지율 15%(2014.5.8-11, 갤럽 여론조사) 등 전반적인 정치 지지율 저조한 편

나. 주요 원인

주요원인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상적 요인
미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증가 및 사회정치 양극화 심화	의회정치의 정당양극화와 티파티 운동의 공화당 포획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경제철학 대립
※ 80년대 이후 유권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입장에 따른 정당일체감을 채택함에 따라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바, 미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대중들의 정당일체감의 양극화 증가(보수적인 고소득층의 공화당 지지 및 진보적인 저소득층의 민주당 지지현상)	※ 70년대부터 의회 활동에 있어서 의회 지도부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일련의 의회 개혁과 1990년대 당파성이 강한 정치 지도자(Gingrich 등)의 등장에 따라 중도파의 축소와 강경파의 성장으로 의회내 양극화 심화 ※ 연방 하원의 경우 435명 중 야당인 공화당이 232명으로, 이 중 티파티 세력으로 대표되는 강경파는 50 여명에 불과하나 강경파가 공화당 내 의사결정을 좌우	※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시장과 경쟁의 긍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구

재정 정책의 주요 이슈 및 정치권 대립 구도

주요 이슈		민주당	공화당
세금	1. 세금인상	• 부유세 추가 증세 • 대기업 세금혜택 축소	• 추가 증세 반대
지출	2. 시퀘스터	• 세금 인상 + 지출 유지	• 증세 없이 복지지출 축소
	3. 의료개혁	• 의료개혁법 수정 없이 전면 시행	• 오바마 의료개혁 폐지 • 의료보장 부분 민영화

미국의 사회보장정책

- 미국의 의료보험정책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자율을 중요시하며 연방정부 역할의 최소화와 그에 따른 연방-주 간 분권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가치에 바탕
  -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득 수준 심사에 입각한 선별적 복지까지로만 발전
  - 복지를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인식하고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기를 원하는 공화당과 보수주의적 이익집단 및 유권자들은 연방정부의 책임 하에 전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강력히 반대
- 최근 의료보험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개혁이 시도되고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의 주정부의 반발로 개혁의 장기적 성공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
  - 게다가 개혁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보험은 결국 삭제됨으로써 미국인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잔여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예산안 관련 동향

가. 2014-2015 회계연도 예산 주요 내용

상하원을 통과한 금번 예산안은 연방정부 지출한도를 2014회계연도에 1조120억 달러, 2015회계연도에 1조140억 달러로 각각 책정

- 예산안의 핵심은 세금 인상 없이 단기 지출을 확대하되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 규모 감축
- 우선 연방 정부의 시퀘스터 조치는 유지하되 2년간 국방 예산을 포함해 일반 예산(재량 지출)을 630억 달러 증액
- 이는 시퀘스터에 따른 예산 삭감분의 절반이 만회된다는 의미로, 특히 가장 논란이 많았던 국방 예산은 시퀘스터의 충격에서 회복
- 또한 항공 운임 수수료 인상, 공무원연금 본인 부담금 인상, 퇴직 군인 연금 축소 등을 통해 국민적 저항이 적은 부문에서 재정수입 증가 도모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850억 달러 줄이고, 2년간 예산 증액을 감안한 순수한 재정 적자 감축액은 220억 달러로 결정

나. 평가

- 2013년 10월 정부폐쇄 이후, 양당이 2014-2015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미국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감소
- 국방수권법안(NDAA)이 예산안과 함께 양원을 통과하면서 미 국방 약화에 대한 우려 해소
- 예산안 합의에 오바마케어, 농업법, 이민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바, 당분간 양당간 협상 난항 가능성

오바마 행정부 주요 국내정책

가. 개요

중산층 복원 노력 강화

- 미 경제의 성장 동력 활성화 방법으로 △고용 창출, △제조업 강화,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중산층 복원 강조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경제 회복 노력 지속

- 정부지출 감소 및 세제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필요성을 역설, 부유층 증세에 대한 공화당 협조 촉구

사회 발전 위한 개혁 과제 추진

주요 정책

교육발전
교육 개선을 통해 혁신 강화, 인재 양성 및 경제성장 도모
※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 강화 및 혁신 장려
※ 4세 어린이를 위한 무상 유치원 투자로 중산층 부담 감소

이민법
포괄적 이민법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의회의 초당적노력 평가
※ △국경 수비 강화를 통한 불법 입국 방지, △이민 절차 단축을 통한 숙련 기술자 및 사업가의 이민 장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도모

여성인권 보호
사회적 차별 및 가정내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조 당부

총기규제
총기 소지 기준 강화(background check) 및 총기 구입 · 유통을 제한하는 신규 법안 채택 지지 호소

사이버 안보
국가 안보, 일자리,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협조 당부

기후변화
미래세대를 위한 초당적이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회측 협력 촉구/ 행정명령을 통한 대응 마련 입장 표명

나. 이민법 관련 동향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S. 744)

-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민정책 개혁을 표방하여 재선된 이후 포괄적 이민개혁 추진 중
- 상원 "Gang of Eight"의 주도로 이민법 개혁에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13.6.27 상원의 최종 표결을 통과(찬성 69표, 반대 29표), 하원 계류중

  ※ "Gang of Eight" : 이민법 개혁안 논의를 위해 민주/공화 각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

  - 소속 의원 : Charles Schumer(D-NY), Dick Durbin(D-IL), Michael Bennet(D-CO), Bob Menendez(D-NJ), John MaCain(R-AZ), Lindsay Graham(R-SC), Mike Lee(R-UT), Jeff Flake(R-AZ)
-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주요 내용
  -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불법체류자들(약 1,100만명)에게 시민권 부여, △고숙련 이민 노동자에게 그린카드 발급, △불체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국경 경비 강화 등
  - △12만에서 25만개의 쿼터를 포인트 시스템에 따른 영주권 배당, △취업영주권제도 수정 및 국가별 쿼터 삭제,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임시이민자 제도 신설) 등
- 2014년 하원에서 이민법 통과를 위한 양당간 협상 본격화 전망

다. 총기규제 관련 동향

-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해 △총기 소지 · 사용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미 의회가 총기규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
  - 2012.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총 26명 사망, 어린이 20명) 후 정치권 차원의 총기 규제 강화 논의 부상

    ※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형 무기 판매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총기규제 법안 처리 추진
- 총기규제 법안이 지난 4월 상원에서 부결된 후 법안 통과 추진력 상실
  - 막대한 로비력을 과시하는 전미총기협회(NRA)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여 총기규제법안 통과 난항
  - 2013년 9월 NRA와 그 지지자들은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 등 총기 규제를 추진했던 콜로라도주 상원의원 2명에 대한 소환투표를 추진, 의원직 박탈 유도
- 공화당 강성 지역(소위 red state) 출신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 입장 감안시, 상기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
  - 총기규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쟁점사항 중 하나인 공격 무기 금지 법안은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우세
  - 현재 미 의회 정치 현실 감안시, 도출가능한 합의 수준은 결국 △기존 규정의 집행, △정신질환 및 총기 폭력 관련 연구 확대, △총기 구입자 신원조회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증대 정도일 것으로 전망

PART 5

사회 · 문화

Chapter 15 사회 · 문화 일반

Chapter 16 종교

Chapter 17 교육

Chapter 18 예술

Chapter 19 스포츠

Chapter 20 미국 민권운동

Chapter 15

사회 · 문화 일반

개관

다양한 인종에 근거한 다문화 사회

- 미국은 16세기 유럽으로부터 이민이 시작된 이래, 아프리카 · 아시아 등 세계 각지로 부터 온 이민자들이 모여 구성된 다인종 · 다민족 · 다문화 사회
- 이러한 다원적 미국사회를 동질성을 강조, "용광로(melting pot)"라고 부르거나, 각 문화의 이질성을 강조, "샐러드볼(salad bowl)"에 비유

기회의 땅, 미국 –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 초기 이민자들이 종교박해를 피해 또는 계급상 제한에서 벗어나 토지 · 일자리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은 자유 ·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이 생김
- 이는 곧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으로 형상화된바, 이는 미국에서는 개개인이 계급 · 종교 · 인종 제한에 관계없이 근면(hard work)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삶의 목표를 추구 · 실현할 수 있다는 소망을 의미

미국인의 일생

- 미국은 속지주의 국적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국적 보유
- 성인식으로 유태인은 바르 미츠바(bar mitzvah : 유태교에서 13세에 행하는 남자의 성인식)를 성대히 거행하는데 부모는 이를 위해 수년간 준비. 가톨릭이나 성공회파 등에서는 견진성사(confirmation)의 의식을 행하지만 유태인만큼 성대한 축제를 벌이지는 않음
- 보통 65세가 퇴직연령(퇴직연금 전액 수령 가능 연령)이나, 많은 미국인들이 그 전 은퇴

미국의 1년

미국에는 국경일(National Holiday)이 없고 주가 각각 축제일을 결정.
다만 New Year's Day 및 2월의 워싱턴 탄생일(Presidents day),
5월의 현충일(Memorial Day), 7월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9월의 노동절(Labor Day), 10월의 콜럼버스의 날(Columbus Day),
11월의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및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12월의 크리스마스가 법정 휴일(Federal Holidays)로 지정.
여기에 1986년부터 킹 목사의 탄생일(Martin Luther King Day)이 추가.

미국의 1년

1월 January

1월은 New Year's Day로 시작하는데, 미국인들은 하루 전인 섣달 그믐날(New Year's Eve/12월 31일) 친구 · 가족들과 성대하게 파티를 엶. 자정이 되어 새해가 되면 "Happy new year!"이라고 외치면서 서로 포옹하며 새해를 축하

1월 15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탄생일(Martin Luther King Day)로, 민권운동의 지도자로서 암살당한 킹 목사를 기념, 1986년, 1월의 셋째 월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주로 1월 하순 즈음하여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회에서 연두교서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하며, 이 연설에서 향후 1년간의 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 1월 20일은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4년마다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자가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 취임

2월 February

2월 14일은 성 발렌타인의 날(St. Valentine's Day)로, 한국과는 달리 성별에 관계없이 연인, 친구, 동료 등 친한 사람에게 초콜렛과 카드를 선물

2월 셋째주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로,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

3월 March

3월 17일은 성 패트릭(St. Patrick's Day)의 날로,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포교한 성 패트릭을 기념. 미국내에서는 아일랜드계 주민이 많은 동부에서 퍼레이드 등 성대한 행사가 열리며, 초록색으로 된 악세사리, 의류 등을 착용. 이날 아일랜드 총리가 미국을 방문, 아일랜드의 상징인 샴록(세잎 클로버 · 삼위일체를 상징)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축하 행사를 개최

3월은 또한 대학교의 입학 허가 통지(admission) 및 장학금 수혜 통지가 도착하는 달임

한편, 3월 둘째 일요일부터는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실시되어,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며 이는 11월 첫째 일요일에 종료

4월 April

3월 25일–4월 25일 사이에 오는 부활절(Easter)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 이날 미국인들은 부활과 다산의 상징인 계란에 그림을 그려 선물하고, 교회에서는 부활절 예배 개최

5월 M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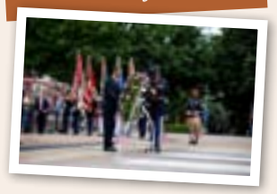

5월 둘째 일요일은 어머니의 날(Mother's Day)로,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 작고 후 기일마다 친구들과 추도식을 올렸는데, 이것이 어머니날로 발전. 이 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꽃, 선물, 카드 등을 드리며, 어머니가 살아있는 사람은 핑크색 카네이션을, 돌아간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착용

마지막주 월요일은 현충일 (Memorial Day)로, 전쟁으로 사망한 병사들을 기념, 예포를 쏘고 진혼곡을 연주하는 등 행사를 거행

한편, 5월은 학기말에 해당되어 고등학교 졸업파티(prom), 대학 졸업식 및 홈커밍 등이 개최

Chapter 15 사회 · 문화 일반

6월 June

6월 14일은 국기의 날(Flag Day)로, 각처에서 성조기를 볼 수 있으며,

셋째 일요일은 아버지의 날(Father's Day)로 미국인들은 아버지에게 카드와 선물을 증정. 또한, 본격적인 여름휴가와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여름캠프(summer camp)들이 시작

7월 Ju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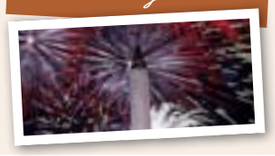

중요 휴일중 하나인 7월 4일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에는 성대한 경축 행사가 열리는데, 특히 이 날의 불꽃놀이는 각 도시의 여름철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또한 이 날 전후를 기해서 각 지방의 대학에서는 여름 학기(Summer Session)가 시작. 여느 학기와는 달리 외부 학생도 받아들이므로 캠퍼스는 붐비게 됨. 8주에서 12주까지의 기간도 다양하고, 수강생도 졸업 이수 학점(unit)이 모자라는 사람, 학점을 빨리 따서 졸업을 앞당기려는 사람, 사회 생활을 하면서 여름에만 공부하여 학위를 따려는 사람 등 다양

8월 August

1920년 8월 26일, 여성 참정권이 미 연방법으로 승인되었으며, 따라서 여성 참정권의 날 (Woman Suffrage)로 지정

9월 September

9월 첫째 월요일은 노동절(Labor Day)로, 미국인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된다고 인식

9월 11일은 애국의 날(Patriot Day)로, 2001년 9월 11일 발생했던 미 본토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제정

9월은 또한 신학기가 시작되는 달로, 대학 초년생들은 부모님의 집을 떠나 대학 생활을 시작

10월 October

10월 둘째 월요일은 콜럼버스의 날(Columbus Day)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1942년 미 대륙에 도착한 것을 축하하며,

10월 31일은 할로윈(Halloween)으로, 이날 어린이들은 가면과 의상을 준비, 원하는 캐릭터로 변장하고 "Trick or treat!"라고 말하며 동네의 각 집들을 방문하여 캔디를 얻어옴

한편, 10월에 여러 대학에서는 학부모들을 캠퍼스로 초청하는 '학부모 방문의 날(Parent Visiting Day)' 행사를 개최

11월 November

11월 11일은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로, 1차세계대전의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을 기념한 데서 출발

11월 넷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로, 17세기 종교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the Pilgrim Fathers)이 이듬해 거두어들인 결실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인디언들을 초대, 3일에 걸친 감사제를 벌인 데에서 유래. 미국인들은 이날 가족들과 칠면조와 호박파이 등으로 저녁식사

11월 첫째 화요일은 투표일로, 의회, 대선 등의 선거들이 치러짐

Chapter 15 사회 · 문화 일반

사진은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전통 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을 거행 중인 모습이다.

백악관의 터키 사면 전통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처음 시작된 것으로 전국칠면조연맹(NTF)이나 전국가금류협회가 증정한 칠면조가 평생 식용으로 쓰이지 않고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면하는 행사다. 사면을 받은 칠면조들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버지니아의 마운트 버넌으로 옮겨져 남은 생을 살게 된다.

12월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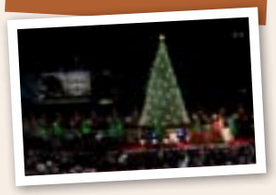

12월 7일은 진주만의 날(Pearl Harbor Day)로, 1941년 2차세계대전 중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희생당한 군인들을 기리는 날

12월 15일은 유태인 명절인 하누카(Hanukkah)로, 기원전 165년에 시리아에 점령되어 이교도를 강요당한 유태교도가 유다 마카베우스에 의해 구원된 것을 기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사무실에서 파티를 열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귀향. 동료 · 친구 · 가족들에게는 선물과 카드를, 아파트 관리인 · 신문배달원 · 청소부에게는 팁 선물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주위에 모여 선물꾸러미 개봉

미국 주요 사회 · 문화 기관

문화기관 (워싱턴 인근)	Smithsonian(www.si.edu)	Corcoran Gallery of Art(www.corcoran.org)
	National Theatre(thenationaldc.org)	The Textile Museum(www.textilemuseum.org)
	The John F. Kennedy Center (www.kennedy-center.org)	Korean Cultural Center of N.Y. (www.koreanculture.org)
	Philips Collection(www.phillipscollection.org)	Korean Cultural Center of L.A.(www.kccla.org)
언론기관	USA TODAY(www.usatoday.com)	Long Island Newsday(www.newsday.com)
	New York Times(www.nytimes.com)	Houston Chronicle(www.chron.com)
	Los Angeles Times(www.latimes.com)	The Wall Street Journal(www.wsj.com)
	Washington Post(www.washingtonpost.com)	Newsweek(www.newsweek.com)
	New York Daily News(www.nydailynews.com)	U.S. News & World Report(www.usnews.com)
	Chicago Tribune(www.chicagotribune.com)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www.csmonitor.com)
	San Francisco Chronicle(www.sfgate.com)	
학술기관	American Enterprise Insitute(www.aei.or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www.iie.com)
	Atlantic Council(www.atlanticcouncil.org)	Korea Economic Institute(www.keia.org)
	Brookings Institution(www.brookings.edu)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www.usip.org)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ww.ceip.org)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ww.wilsoncenter.org)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ww.csis.org)	World Affairs Council of Washington (www.worldaffairsdc.org)
	Century Foundation(www.tcf.org)	Korea Society(www.koreasociety.org)
	Heritage Foundation(www.heritage.org)	Asia Society(www.asiasociety.org)
	Hudson Institute(www.hudson.org)	

Chapter 16

종교

미국과 종교

- 미국은 헌법에 정교분리를 명시(수정헌법 1조)하며,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
  - 종교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온 미국 초기 이민자들은 신대륙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헌법에 어떠한 종교도 국가 종교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 따라서 정부의 교회 지원 및 학교내 예배 불가
- 그러나 정교분리 규정에도 불구, 법원에서의 증인 선서, 대통령 취임식 등에서 성서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할 정도로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며, 미국인들은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 Pew Research Center에서 시행한 여론조사('07)에 따르면 우리나라(25%), 일본(12%) 및 주요 서방 선진국 국민들 중 종교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10-30%대인 반면, 미국의 경우 59%
- 이러한 미국 사회의 종교적 성향은 기부 문화를 강조하고, 고아 입양을 증진시키는 등 개인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공적부조 시스템이 부족한 미국 사회의 약점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때로는 지나친 종교원리주의, 사이비 종교의 발흥, 타 종교에 대한 암묵적인 거부 문화 등 역기능도 초래

미국 지역별 종교의 차이

-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종교적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이민 집단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기 때문. 예를 들면 루터교는 독일인들과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인데 그들이 중서부 지역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중서부 지역에 많은 루터 교회가 있으며, 침례교는 남부에서 발달했는데 남부 주에는 아직도 많은 침례교도들이 거주. 서부의 Utah주는 몰몬 교도들이 정착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몬교 신자
- 미국의 남부 지역과 서부의 일부는 '성서 벨트(Bible Belt)'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는 성서가 문자 그대로 진리이고 성서의 내용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신교도들이 많이 살고있기 때문
- 과거 청교도인들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동북부(뉴잉글랜드 지역) 지역의 경우, 19세기 이후 아일랜드, 이태리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가톨릭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변화했으며(케네디 가문이 그 일례), 멕시코 접경지역에서의 히스패닉 인구의 유입으로 바이블 벨트 이외의 남부지역 또한 가톨릭 인구 증가 추세

종교의 정치적 영향

- 종교적 자유의 절대적 보장과 함께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온 미국의 현실에서 종교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점차 사회, 정치적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
  - 1960년대 이후 이민자들의 증가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낙태와 동성애, 그리고 이민자 문제를 중심으로 소위 '가치갈등이슈(Value Conflicting Issues)'가 미국 사회의 주요한 쟁점들로 떠오르면서 종교는 개인적 삶을 넘어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
  - 1970년대 후반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결성된 소위 '새로운 기독교 우파(New Christian Rights)'로부터 종교집단의 정치세력화가 시작되었고,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의 정치참여가 본격적으로 등장

Chapter 17

교육

개관

- 미국의 연방 헌법에는 교육 관련 규정이 없으며, 교육에 관한 권한은 주이하의 기관이 보유(지방 분권). 즉, 교육구나 학교가 모든 교육정책을 입안 · 실시하고 주 및 연방은 재정적인 후원 등을 제공
- 그러나 근래 공교육의 부실화, 타선진국에 비해 미국 학생들의 학습 성과 부진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미 정부는 교육 개혁을 추진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개혁(Education Reform)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전 선거공약으로 교육 개혁 추진을 제시해 왔으며(오바마-바이든 플랜), 5대 개혁과제로 ① 조기교육 강화, ② 초중등학교의 학업 성취도 기준 상향 조정, ③ 우수교사의 양성, 확보 및 보상, ④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 확대 등 미국 초중등학교의 혁신 및 수월성 증진, ⑤ 모든 미국인들에게 질 높은 고등교육 제공 등을 제시(2009.3.10)
- 또한, 부시 행정부때 입안된 낙오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의 재정비를 예고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초등(6-12세), 중등(13-18세), 고등(19세-) 교육으로 구성되며, 많은 주에서 의무교육은 중등교육(-18세)까지로 규정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

단과대학 College	초급대학 Junior College Community College, City College	종합대학 University	기술대학 Institute of Technology	학부중심대학 Liberal Art College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모두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 교과과정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4년의 학부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 수여	2년제 교육기관으로서 주로 공립이며 전문기술과 기초 학문과정을 교육.정규학생들보다 대체로 야간에 많은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어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일부 초급대학은 전공분야 없이 A.A.(Associate of Arts : 준문학사) 학위만을 수여하기도 하며,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A.A 학위를, 제도(製圖)나 자동차 역학 등 과학이나 실용기술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A.S.(Associate of Science : 준이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초급대학도 존재 초급대학을 마친 후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	몇 개의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주마다 주립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사립대학들도 여러개 있음 **학부과정(Undergraduate) :** 종합대학의 학부과정은 4년제이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 **대학원(Graduate School) :** 대체로 대학에 속해 있으나, 독립된 경우도 있는데, 이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이 통과되면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 :** 대부분의 경우 대학에 부설되어 있으며, 의학, 치의학, 법학, 약학, 경영학 등 단일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 이 전문학위 과정은 분야에 따라 학업기간이 다양하며 때론 견습기간(의학에서와 같이) 포함	종합대학과 유사하나 과학 기술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	대학원 과정은 거의 없고 4년제 학부 과정만 개설된 대학 "University"는 10,000명 이상 규모에 교수들이 연구 성과에 주력하는 반면, Liberal Arts College는 1,000-3,000명 정도의 소규모로 인문교양분야에 집중. 주로 미 동북부에 소재한 사립 대학으로 졸업생들은 상위권 전문대학원 등에 진출

Chapter 17 교육

미국대학원 제도

초기에는 신학자 양성을 위한 목적의 사립대(Ivy)로 출발하였으며 학부중심 사립대학이 등장한 후, 19세기부터 주립대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기업인들이 투자한 대학이 20세기 초 등장

아이비 리그 (ivy league)

아이비 리그(ivy league)

미국 동북부의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프린스턴, 브라운, 다트머스, 펜실베이니아, 코넬 등 유명 대학교 8개를 통칭하는 표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학교들은 건물 외관이 '아이비(담쟁이)'로 덮여있다는 것이 공통의 특징. 그래서 예전부터 '아이비 대학(ivy colleges)' 등이라 불리기도 했고, 이들 대학교 스포츠 팀 간의 대회도 자연스럽게 '아이비리그'라고 명명.

'아이비 대학' 로고와 모토

Chapter 18 예술

영화

세계 최초 상업 영화 상영이 1894년 뉴욕에서 이루어진 이래,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영화산업은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 미국영화계는 미국의 다원적 문화 배경 및 거대 자본에 기반, 블록버스터에서부터 인디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이는 TV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드라마 역시 전세계로 수출.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및 인디영화를 선보이는 선댄스(Sun Dance) 영화제 등 세계 주요 영화제들 매년 개최

음악

미국 음악은 다인종 · 다문화적 사회답게 다양한 장르를 지니고 있으며, 20세기 이래 세계 대중음악을 선도. 흑인 이주자들의 민속음악에서부터 비롯된 재즈 · 소울 · 블루스, 블루스와 백인 육체노동자들의 컨트리 음악이 혼합된 락앤롤 그리고 최근의 힙합, 미국 팝음악 등이 미국의 대표적 음악 장르. 주간지 빌보드(Billboard)가 앨범 판매량 · 방송횟수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빌보드 차트'는 대중음악의 지표로 유명

문학

대표적인 미국 작가로는 마크 트웨인, 어니스트 헤밍웨이, J.D.셀린저, 에드가 앨런 포, 스캇 피체럴드 등이 있으며, 싱클레어 루이스(1930)부터 토니 모리슨(1993)까지 11명의 미국인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

어니스트 헤밍웨이

미술

미국의 미술은 특히 팝아트, 추상 표현주의 등을 통해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쳐왔으며, 앤디 워홀, 잭슨 폴록, 조지아 오키프 등의 유명 화가들을 배출. 뉴욕은 현재 세계 최대 미술 시장으로, 맨해튼에만 500개가 넘는 갤러리가 존재

Chapter 19

스포츠

개관

- 다민족 ·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스포츠는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언어로 기능
- 미국학교에서는 체육 과목을 강조하며, 방과후 활동으로 크로스 컨트리, 육상, 미식축구 등 팀 스포츠를 장려
- 미국인들은 시즌마다 프로 스포츠 게임의 관전을 즐기며, 야구(MLB), 농구(NBA), 미식축구(NFL), 아이스하키(NHL)는 4대 스포츠로 대중적 인기를 확보

프로스포츠 시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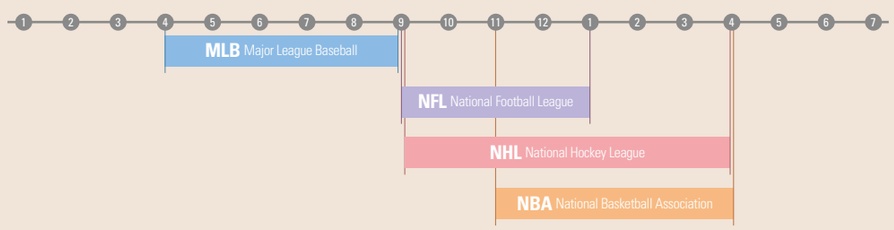

4대 스포츠

MLB(Major League Baseball)

- '코리안 특급' 박찬호, '한국형 핵잠수함' 김병현, 그리고 최근에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과 '추추 트레인' 추신수까지 한국의 많은 선수들이 진출하며 우리에게 그만큼 익숙한 메이저리그는 야구선수들의 꿈의 무대
- 약 140여 년 전 설립된 전통있는 프로 스포츠 리그로서 '내셔널리그(National League)'와 '아메리칸리그(American League)'라는 양대 리그로 나뉘며, 이 중 아메리칸리그는 투수 대신 다른 타자가 타석에 서는 '지명타자(Designated Hitter)'를 도입해 내셔널리그와 차이

월드시리즈(World Series)

양 리그 우승팀이 메이저리그 챔피언을 결정하기 위해 치르는 경기로서, 열리는 시기가 10월이자 가을이기 때문에 '악토버 클래식(October Classic)' 또는 '폴 클래식(Fall Classic)'으로 별칭. ☞ 단순히 '더 시리즈(The Series)'으로도 호칭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 NBA 리그는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러스'로 나뉘어 치러지며, 총 30개의 팀이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82게임 실시
- 정규 시즌 이후 컨퍼런스별 상위 8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 컨퍼런스의 우승팀 결정 후 두 우승팀간 '래리오브라이언컵(Larry O'Brien Championship Cup)을 차지하기 위한 챔피언 결정전 실시

영원한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

- 전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진 마이클 조던은 큰 키와 탄탄한 근육에서 나오는 높은 점프력과 파워는 물론 화려한 풋워크와 순발력, 수비력까지 갖춘 만능선수로 평가받은 선수로서 데뷔 첫 해에 신인왕을, 3년차에 득점왕을 차지했다. 시카고 불스팀의 전설적인 플레이어로 91-93년 시즌 3연패, 97-99년 시즌 3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운 최고의 농구 스타이다. 현재는 프로농구팀 샬럿 밥캐츠의 공동 구단주로 활동하고 있다.

☞ 최근 50번째 생일을 맞아 미국의 유명 스포츠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 표지 모델로 등장했는데, 은퇴한지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조던의 영향력과 인기를 실감하게 한다.

NFL(National Football League)

- NFL로 일컬어지는 미국 미식축구 리그에는 총 32개 팀이 소속되어, 해마다 8월이면 프리 게임을 시작하여 9월부터 정규리그 시작
- 한 시즌 동안 한 팀당 16경기만을 치루고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Super Bowl)이 단판제로 열리며, 슈퍼볼이 열리는 2월 첫째 일요일은 '슈퍼볼 선데이(Super Bowl Sunday)'이라 호칭

Chapter 19 스포츠

슈퍼볼 선데이(Super Bowl Sunday)

매년 2월 첫째 일요일(슈퍼볼 선데이)에는 NFL 챔피언 결정전이 열리고, 이날 미국인들은 모여 맥주 · 피자를 먹으며 관전을 즐김. 약 9천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이 경기를 시청하고, 기업들은 경기 중간에 나가는 TV광고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

미식축구와 럭비를 헷갈리지 말자

미식축구와 럭비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큰 차이점 중 하나로 '손을 사용해 공을 앞으로 패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꼽을 수 있다. 즉 럭비는 발로 차지 않는 한 전진패스가 허용이 안 되는 반면, 미식축구는 좌, 우, 전방, 후방 가리지 않고 패스를 할 수 있다.

NHL(National Hockey League)

- NHL 리그는 미국과 캐나다가 결성하여 시작된 프로아이스하키 리그로서, 우승팀에게 수여되는 컵의 이름을 따 '스탠리 컵'이라고도 불리며, 총 30개의 팀이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러스로 나뉘어 경기를 실시

스탠리컵(Stanley Cup)

- 북미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오래된 트로피로서, 1892년 캐나다인 스탠리경(Lord Stanley)이 캐나다의 아이스협회에 기증한 컵. 전통적으로 매 시즌 승리한 팀과 선수의 이름을 컵 주위에 두른 은띠에 각인.
  - ☞ 처음 만들어졌던 트로피는 많이 낡아서 1969년부터 토론토에 있는 아이스하키 명예의 전당에 보관

Chapter 20 미국 민권운동

미국 민권운동의 발전과정

가. 19세기 미국에서의 흑인의 지위

미국에서 흑인들은 공화국이 수립될 당시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으나, 1865~70년 제13, 14, 15조 수정헌법(Amendment)에서 처음으로 기본적인 시민권을 약속받게 됨

흑인의 지위와 관련된 헌법 및 조례의 허와 실

남북전쟁의 결과로 채택된 연방헌법 수정 제13-15조는 노예제도의 폐지, 인종간의 평등 보장과 흑인의 참정권 부여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법상으로는 흑인들도 백인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을 누릴 수 있게 됨. 이후 1875년의 시민권 조례는 공공시설을 백인만이 아니라 흑인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부 여러주에서는 입법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유린. 1900년에 이르자 북부와 서부에서는 이미 18개 주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공공정책을 법률로 제정했지만, 남부에서는 시민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가장 유명한 인종차별 조항은 祖父조항인데, 동 조항은 1867년 이전에 선거권을 가졌던 부친이나 조부의 자손 이외에 교육받지 않은 흑인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

한편, 이 당시 미국 대법원은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사건(1896)에서 분리하지만 동등 원칙(separate but equal principle)을 지지함으로써, 흑인과 백인을 격리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합법화

나. 20세기 민권운동의 태동

- 20세기에 이르러 미국은 흑인들이 대거 참전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방위 산업체의 인종차별을 금지(1941)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군대의 인종차별을 폐지(1948)하였으며, 1950년 한국전쟁을 기회로 군대내의 모든 제도적, 법적 차별을 철폐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1940년대말과 1950년대초에는 흑인 변호사들 및 백인 동조자들을 중심으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원 투쟁을 전개. 이를 주도한 것은 '전국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소속 변호사들이었으며, 이른바 소송전술(litigation tactics)를 앞세워 강력한 전국적 로비 집단으로 등장
- 한편, 행정부에서는 1946년 트루만(Truman) 대통령이 인종차별을 조사하기 위한 연방 민권위원회를 결성하고, 1947년 이에 관련된 10개항의 민권계획안을 의회에 송부
- 사법적 차원에서도 대법원은 이른바 브라운(Brown) 판결 '브라운과 캔자스주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1954. 5. 17)을 통해 획기적인 판결을 내림
  - 동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색맹이론(color-blindness doctrine)"에 기초하여 흑인과 백인에게 별개의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인종간의 절대적 평등을 확인
  - 이로써 1896년의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에서 법원이 확립한 "분리하지만 동등 (separate but equal principle) 원칙"을 부정

*1909년 백인집단의 동참으로 조직된 NAACP(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는 아래를 주요 목표로 설정

①백인과 동등한 조건의 투표권 부여
②교육받을 기회 허용
③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④배심원에 참여
⑤변호사 선임 권리
⑥대중교통수단 평등한 이용
⑦공공시설(공원, 도서관)의 동등한 이용
⑧고용에 있어서의 동등한 기회

Chapter 20 미국 민권운동

• 한편 브라운 판결은 미국 전역(특히 남부)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인종차별 관행과 인종간 불평등을 종식시키려는 흑인과 백인 동조자들의 대중운동을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 특히 남부 여러 주가 브라운 판결에 승복하지 않음에 따라 "법률상의 평등(de jure equality)"은 쟁취되었으나 "사실상의 평등(de facto equality)"은 과제로 남기게 됨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선수들중 상당수는 흑인선수들이지만,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뒤 탄생된 흑인리그가 별도로 1947년까지 지속. 1901년 생긴 메이저리그의 높은 벽을 허문 최초의 흑인선수는 재키 로빈슨(Jackie Robinson, 72년 53세로 사망)이었으며, 그는 47년 4월15일 브루클린 다저스(현 LA 다저스)에 입단, 신인왕에 오르면서 흑인의 영웅으로 떠올랐음

미국 민권운동의 전개

• NAACP의 오랜 법정투쟁이 획기적인 승리를 가져왔지만, 남부의 주의회들은 각종 입법을 통해 브라운 판결의 집행을 방해

• 이에 흑인들은 궁극적으로 흑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정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전술인 "비폭력 · 직접행동"을 채택

가. 주요 민권운동 사례

• 앨라배마주 몽고메리(Montgomery)에 사는 로자 파크스(Rosa Parks)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 안에서 흑인 전용칸으로 옮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자(1955. 12), 흑인들은 이에 항의해 하루 동안 이 지역의 버스 이용을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

• 침례교회 목사인 마틴루터킹(Martin Luther King, Jr)은 이 항의에 참여한 사람들과 흑인 교회의 세력을 합해, 자연발생적인 항의를 강력한 저항운동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 동 운동은 부정한 법에 저항하기 위해 "비폭력적 시민불복종(nonviolent civil disobedience)"이라는 민권운동의 전술이 본격 적용된 것으로 유명

• 1957년부터는 마틴루터킹의 주도로 결성된 남부 그리스도교 지도자회의(SCLC*)가 이 저항운동을 이끌기 시작. 몽고메리 버스회사에 대한 거부운동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법정투쟁도 병행되자 버스 회사들은 버스의 백인 전용칸과 흑인 전용칸을 폐지할 수 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항의시위와 거부운동은 다른 공동체로 급속히 확산

*South Christian Leaders Conference

**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

***Congress of Racial Equality

****동 행사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의 Lincoln 기념관에서 행한 유명한 "I have a dream"을 연설

*****차별의 철폐를 위해 여성과 소수민족에게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조치로서, 종종 여성 및 소수민족 쿼터(Quota) 설정 등이 한 예

******급진주의적인 민권운동의 대표적 인물로는 말콤엑스(Malcolm-X)를 들수 있는데, 그는 1963년 독자적으로 이슬람 종교집단 및 세속조직을 만들고 정치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

Chapter 20 미국 민권운동

• 민권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Greensboro)에서는 백인식탁에 착석한 흑인들이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항의하기 위한 연좌농성운동 시작. 이 운동에 참여한 흑인 대학생들은 그 지역의 백인 전용 식당에 가서 손님들의 시중을 들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연좌농성을 전개. 산발적인 각 지역의 운동을 연계하기 위해 학생비폭력협력위원회(SNCC**)가 설립. 간디의 비폭력 방식을 본뜬 이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백화점과 슈퍼마켓 및 도서관과 극장들은 결국 인종차별을 폐지

• 1961년 5월 인종평등회의(CORE***)는 흑인과 백인으로 이루어진 자원자를 바탕으로 자유여행(Freedom Rides) 운동을 시작하여, 남부 및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 장거리 교통수단의 인종차별 실태를 점검하고 그 관행을 깨뜨리는 노력을 시작. 7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고, 그중에서 약3,600명이 체포된바 있으며,20개 주의 100개가 넘는 도시들이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았음. 그러나 동 운동은 최초의 대규모 폭동인 알바니(Albany) 운동으로 연결되어 흑인민권운동내의 분열 및 폭력에 대한 거부감도 동시에 낳은 것으로 평가

• 상기 운동은 1963년 8월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대규모 행진(일명 워싱턴 행진****으로 20만명이 참가)으로 절정에 도달

• 비폭력운동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SCLC가 주도한 1963년의 버밍햄(Birmingham) 운동으로 이 시위는 과잉진압을 낳게 되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유발하였고, 이에 당국은 시위대와의 휴전을 제시, 타결. 동 운동은 공공시설, 고용기회 및 인종관계에 있어서의 통합가능성이 제시된 가장 성공적 사례로 평가

나. 민권운동의 성과

• 당초 아이젠하워(Eisenhower) 대통령(1953~61)과 케네디(Kennedy) 대통령(1961-63)의 연방 정부는 남부 백인들의 저항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법원의 '브라운 판결'을 남부에 강제로 적용하기를 주저

• 의회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1963. 11)에야 1964년 존슨(Johnson)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통과. 민권법은 공공시설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인종차별 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연방준비 은행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내용

• 1965년에는 "투표권법"을 강력히 추진하여 흑인들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등장. 이 결과로 남부에서는 등록된 흑인 유권자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에 따라 공직에 출마해 당선되는 흑인의 수도 크게 증가

• 이로서 흑인들의 평등권(특히 참정권)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실현을 보게 되었으며, 나아가 흑백간의 불평등은 과거 2세기 이상에 걸친 차별관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보상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부는 흑인들에게 "조건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교육과 고용분야에서 활용

다. 민권운동의 급진주의화 및 퇴조

• 1966년 이후 젊은 흑인들은 느린 변화의 속도에 참을성을 잃고 비폭력적인 항의방법에 불만을 품게 되어, 민권운동에 급진주의적 조짐이 나타남. 이러한 급진주의화******는 사회 ·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실상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평가

- 급진적인 투쟁방식의 민권운동은 지도층을 분열시켰고, 일부 백인 동조자들도 민권 운동에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 특히 1965~67년 몇몇 대도시의 흑인 거주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민권운동에서 이탈하는 백인들이 증가
- 1968년 킹 목사의 암살 및 계속된 흑인 폭동으로 인한 지도층의 분열로 그때까지 응집력을 갖고 있던 민권운동은 대중운동으로서의 기반이 붕괴. 그후 많은 민권 지도자들은 공직에 출마해 직접적인 정치권력을 더 많이 얻으려고 애썼고, 고용과 대학 입학에서 흑인이 받았던 차별대우를 보상해주는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통해 좀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교육 혜택을 받으려는 노력으로 연결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회운동

가. 여성운동

- 민권운동이 한창이었던 1963년 미국 여성의 평균 근로수입은 남성의 63%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차별도 존재
- 민권운동에 영감을 얻은 여성운동은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전국여성연맹(NOW) 창설(1966년)을 계기로 1970년대 초에 최고조에 도달
- 1972년 의회에서는 남녀평등 헌법수정안(ERA: Equal Rights Amendment)이 통과되고 각 주의 비준절차에 들어감
  - 동 수정안은 "법 앞에서의 남녀동권은 성별로 인해 합중국이나 주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
  - 한편, 동 수정안은 비준에 필요한 38개주의 승인을 얻지 못해 1982년에 폐기
- 1973년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에서는 여성의 '유산' 권리가 인정되는 등 여성운동이 절정에 이르렀으나, 70년대 중 · 후반이후 여성운동은 침체
  - 이는 당초 여성운동이 중산층을 벗어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나. 중남미계 미국인 운동

- 중남미계 미국인들은 흑인 민권운동을 통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압력정치의 중요성을 체득

- 1960년대 이들은 '전미농업노조'를 결성, 이를 주축으로 캘리포니아 등에서 착취당하고 있던 떠돌이 농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당초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농업 노동자들의 결사권, 단체 교섭권을 확보
- 이들은 7-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방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vote power를 매개로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변모 (이외에도 민권운동은 아메리칸 인디언 행동주의에 영향을 주었으며, 환경운동 등에 영향을 끼침)

민권운동의 의의

가. 긍정적인 측면

- 미국에서의 민권운동은 인종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혁(social reform)의 정형을 제시하였으며, 소수집단의 권리를 위한 많은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침. 특히, 법적 접근방법에 의한 인권보장이 완만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적 힘(collective power)을 통해 국가기관에 적극적으로 접근, 새로운 인권을 확인 · 보장 · 실현토록 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권리장전이나 성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며, 사회운동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 재확인)
- 또한 민권운동의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나 계층이 그들의 인권(자유와 평등)을 신장하기 위해 시위나 항의와 같은 비폭력 직접행동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법적 구제방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초법적"인 인권보장의 방법으로서 승인 · 수용

나. 부정적 측면

- 한편으로 민권운동은 폭력적 사회운동의 방법적 한계를 잘 예시해 준 것으로 평가
  - 경제적 정의의 추구에서 시작된 급진화된 민권운동의 폭력적 방법은 국가안전 보장과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에 밀려 쉽사리 진압되고, 여사한 폭력적 사회 운동은 대부분 종말을 고하게 됨
  -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회운동의 방법적 한계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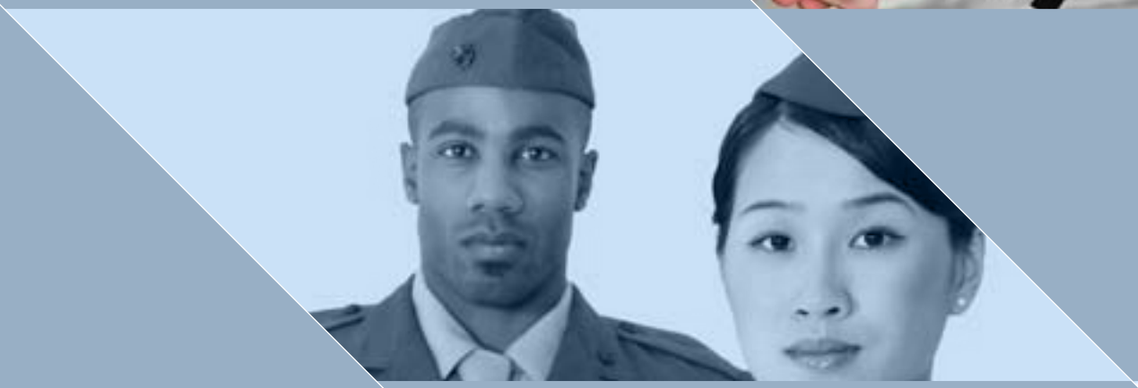

ROK-US Re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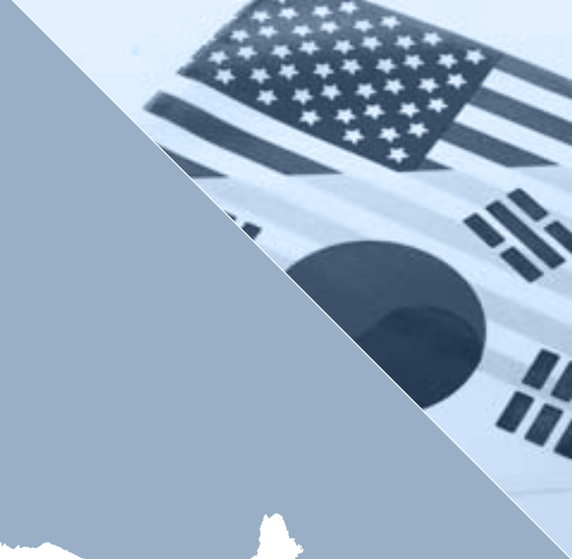

PART 6

한 · 미 관계

Chapter 21 한 · 미 관계 약사

Chapter 22 한 · 미 정상회담 일지

Chapter 23 정치 · 안보 분야

Chapter 24 경제 · 통상 분야

Chapter 25 사회 · 문화 분야

Chapter 26 한인 이주 역사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Chapter 21

한 · 미 관계 약사

한 · 미 관계의 시작

한 · 미 관계는 1882년 양국 간 수교 조약인「조 · 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둔 이래 식민 지배함으로써 단절되었다가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을 기점으로 양국관계가 복원

※ 1949년 1월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3월 초대 주한 미 대사(John Muccio 대사)를 임명. 우리정부는 1949년 3월 주미 한국대사관을 개설하고, 주미대사(장면 대사)를 임명

조 · 미 우호통상항해조약(1882)

1882년 5월 22일 체결된 조 · 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은 한 · 미 관계의 효시로, 동 조약 체결로 우리나라는 워싱턴에 주미 공사관을 개설하고, 1887년 초대 공사 박정양이 부임

50년대의 한 · 미 관계

한 · 미 동맹의 수립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여, UN 회원국 16개국의 파병(통합사령관: 맥아더 장군)을 이끌어 냄.

한 · 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 · 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국 대외관계의 근간이 된 한 · 미 동맹관계를 수립. 미국은 한국전쟁에 180억불의 전비를 지출하고 각종 경제 · 군사 원조를 제공

한 · 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1953.8.8)

한 · 미 상호방위조약(1953)

본문 6조와 부속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①당사국중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양국은 언제든지 서로 협의(제2조), ②각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타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제3조), ③미국의 육 · 해 · 공군의 대한민국 영토 및 그 주변 배치에 합의(제4조), ④동 조약은 일방이 타방에 조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제6조)

60년대의 한 · 미관계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한국의 근대화 노력

1960년대 들어 한국정부는 1953-61년간 미국이 제공한 약 157억불 상당의 경제원조(유 · 무상)를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 집행(1962년(1차), 1967년(2차)).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켜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근대화 노력과 함께 한 · 미 양자 경제관계는 점차 심화 ·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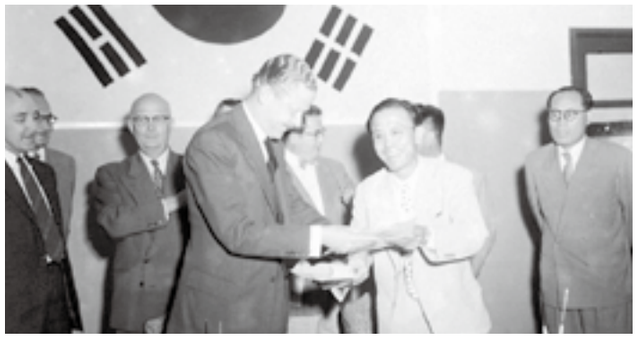

한 · 미 원조 조인식(1955)

70년대의 한 · 미관계

한국의 경제적 도약과 한 · 미 연합방위체제의 공고화

1970년대 들어 한 · 미 경제관계는 연간 교역량이 70억불(1978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기존의 수원국-공여국 관계를 넘어 호혜적 경제 파트너 관계로 발전. 한편, 동 기간 주한 미군 규모는 데탕트 등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61,000명 수준에서 41,000명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나, 양국간 연합방위체제는 1978년 한 · 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한층 더 공고화

박정희 대통령-Ford 대통령 정상회담(1974)

80년대의 한 · 미관계

한국의 국력신장과 이에 따른 안보역할 증대

1980년대 들어 한국은 우호적인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 아울러, 동 기간 중 대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등 한 · 미간 무역 마찰도 증가하기 시작. 한편, 1981년 출범한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한 · 미간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양국은 한국의 국력신장에 걸맞게 한국의 안보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한 · 미 정상회담(1981)

90년대의 한 · 미관계

한국내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한 한 · 미 동맹 발전

1990년대 들어 한국내 민주화가 정착되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 이러한 한국의 역동적 발전에 따라 한 · 미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는 보다 성숙한 동맹 관계로 발전. 이와 함께 탈냉전 및 북한 핵문제 대두라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제고된 위상을 반영,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1994년 평시작전권 전환 및 1991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최초 체결 등에 따라 한국의 안보 역할은 더욱 증대

한 · 미 정상회담(1993)

한 · 미 관계의 현주소

21세기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 · 발전

- 오늘날 한 · 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아 · 태 지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중
- 특히, 양국은 21세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 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 지속 경주
  - 강력한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 기후변화와 환경, 비확산, 대테러, 사이버안보, 개발, 인권은 물론, 지역 안보 문제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들에 공동 대처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오바마 대통령 방한 계기
우리 문화재 인수 행사(2014)

2001-2014년 한 · 미간 주요 문서

- 「**한 · 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 방미 계기 채택)
- 「**한 · 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2003년 10월 APEC 계기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채택)
- 「**한 · 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2005년 11월 Bush 대통령 방한 계기 채택)
- 「**한 · 미 정상 공동성명**」(2008년 8월 Bush 대통령 방한 계기 채택)
- 「**한 · 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 계기 채택)
- 「**한 · 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계기 채택)
- 「**한 · 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2014년 4월 Obama 대통령 방한 계기 공동 발표)

Chapter 22

한 · 미 정상회담 일지

일 자	내 용
1952. 12	Eisenhower 대통령 당선자 방한(12.2-12.5),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
1954. 7. 30	이승만 대통령 방미(7.25-8.13), Eisenhower 대통령과 회담 ※ 7.28 의회 합동연설
1960. 6. 20	Eisenhower 대통령 방한(6.19-6.20), 허정 국무총리와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61. 11. 14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방미(11.11-11.25), Kennedy 대통령과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65. 5. 18	박정희 대통령 방미(5.16~5.26), Johnson 대통령과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66. 11. 2	Johnson 대통령 방한(10.31-11.2),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68. 4. 17	박정희 대통령 방미(4.17-4.20), Johnson 대통령과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69. 8. 22	박정희 대통령 방미(8.20-8.23), Nixon 대통령과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74. 11. 22	Ford 대통령 방한(11.22-11.23),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79. 7. 1	Carter 대통령 방한(6.30-7.1),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81. 2. 2	전두환 대통령 방미(1.28-2.7), Reagan 대통령과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83. 11. 14	Reagan 대통령 방한(11.12-11.14), 전두환 대통령과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85. 4. 26	전두환 대통령 방미(4.24-4.29), Reagan 대통령과 회담 ※ 언론 발표문 채택
1988. 10. 20	노태우 대통령 방미(10.17-10.22), Reagan 대통령과 회담 ※ 10.18 유엔총회 연설
1989. 2. 27	Bush 대통령 방한,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
1989. 10. 17	노태우 대통령 방미(10.15-10.20), Bush 대통령과 회담 ※ 언론 발표문 채택 ※ 10.18 의회 합동연설
1990. 6. 6	노태우 대통령 방미(6.3-6.8), Bush 대통령과 회담 ※ 6.4 한 · 소 정상회담 개최(샌프란시스코)
1991. 7. 2	노태우 대통령 방미(7.1-7.3), Bush 대통령과 회담
1991. 9. 23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9.22-25), Bush 대통령과 회담 ※ 9.24 유엔 연설

Chapter 22 한 · 미 정상회담 일지

일 자	내 용
1992. 1. 6	Bush 대통령 방한(1.5-1.7),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 ※ 언론 발표문 채택
1993. 7. 10	Clinton 대통령 방한(7.10-7.11),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
1993. 11. 23	김영삼 대통령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시애틀) 참석차 방미(11.17-24), Clinton 대통령과 회담
1994. 11. 14	APEC 정상회의(인도네시아) 계기 한 · 미 정상회담(김영상 대통령-Clinton 대통령) ※ 언론 발표문 채택
1994. 11. 14	APEC 정상회의(인도네시아) 계기 한 · 미 · 일 정상회담(김영삼 대통령-Clinton 대통령-무라야마 총리)
1995. 7. 27	김영삼 대통령 방미(7.25-8), Clinton 대통령과 회담
1996. 4. 16	Clinton 대통령 방한,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제주도) ※ 언론 발표문 채택
1996. 11. 24	김영삼 대통령, APEC 정상회의(필리핀) 계기 Clinton 대통령과 회담 ※ 언론 발표문 채택
1997. 6. 26	김영삼 대통령, 유엔 환경특별총회 참석 계기 방미(6.23-27), Clinton 대통령과 회담(뉴욕)
1997. 11. 24	김영삼 대통령, APEC 정상회의(캐나다) 계기 Clinton 대통령과 회담
1998. 6. 9	김대중 대통령 방미(6.6-13), Clinton 대통령과 회담 ※ 6.10 의회 합동연설
1998. 11. 21	Clinton 대통령 방한(11.20-23),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
1999. 7. 2	김대중 대통령 방미(7.2-4), Clinton 대통령과 회담 ※ 언론 발표문 채택
1999. 9. 11	APEC 정상회의(뉴질랜드) 계기 한 · 미 · 일 정상회담(김대중 대통령-Clinton 대통령-오부치 총리)
2000. 6. 8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전 일본 총리 장례식 계기 Clinton 대통령과 회동
2000. 9. 7	김대중 대통령, 새천년정상회의 계기 Clinton 대통령과 회담
2000. 11. 15	김대중 대통령, APEC 정상회의(브루나이) 계기 Clinton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1. 3. 7	김대중 대통령 방미(3.6-10), Bush 대통령과 회담 ※ 언론 발표문 채택
2001. 10. 19	김대중 대통령, APEC 정상회의(중국) 계기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2. 2. 20	Bush 대통령 방한(2.19-21),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
2002. 10. 26	APEC 정상회의(멕시코) 계기 한 · 미 · 일 정상회담(김대중 대통령-Bush 대통령-고이즈미 총리)
2003. 5. 14	노무현 대통령 방미(5.11-16), Bush 대통령과 회담 ※ 언론 발표문 채택

Chapter 22 한 · 미 정상회담 일지

일 자	내 용
2003. 10. 20	노무현 대통령, APEC 정상회의(방콕)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 언론 발표문 채택
2004. 11. 20	노무현 대통령, APEC 정상회의(칠레)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2005. 6. 10	노무현 대통령 방미(6.9-10), Bush 대통령과 회담
2005. 11. 17	Bush 대통령 APEC 정상회의(부산) 참석차 방한(11.16-17),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경주) ※ 공동성언 발표
2006. 9. 14	노무현 대통령 방미(9.12-15), Bush 대통령과 회담
2006. 11. 18	노무현 대통령, APEC 정상회의(베트남)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2006. 11. 18	APEC 정상회의(베트남) 계기 한 · 미 · 일 정상회담(노무현 대통령-Bush 대통령-아베 총리)
2007. 9. 7	노무현 대통령, APEC 정상회의(시드니)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2008. 4. 19	이명박 대통령 방미(4.15-19), Bush 대통령과 회담(Camp David)
2008. 7. 9	이명박 대통령, G-8 정상회의(일본)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2008. 8. 6	Bush 대통령 방한(8.5-6),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 공동성명 발표
2008. 11. 22	이명박 대통령, APEC 정상회의(페루) 계기 Bush 대통령과 회담
2008. 11. 22	APEC 정상회의(페루) 계기 한 · 미 · 일 정상회담(이명박 대통령-Bush 대통령-아소 총리)
2009. 4. 2	G-20 정상회의(영국) 계기 한 · 미 정상회담(이명박 대통령-Obama 대통령)
2009. 6. 16	이명박 대통령 방미(6.15-6.17), Obama 대통령과 회담 ※ 동맹미래비전 채택
2009. 11. 19	Obama 대통령 방한(11.18-19),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2010. 6. 26	G-20 정상회의(캐나다) 계기 한 · 미 정상회담(이명박 대통령-Obama 대통령)
2010. 11. 11	Obama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방한(11.10~12),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2011. 10. 13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미(10.11-15), Obama 대통령과 회담 ※ 10.13 의회 합동연설
2012. 3. 25	Obama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서울) 계기 방한(3.25~27),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2013. 5. 7	박근혜 대통령 방미(5.5-5.10), Obama 대통령과 회담 ※ 5.8 의회 합동연설 ※ 공동선언 발표
2014. 3. 25	핵안보 정상회의(네덜란드) 계기 한 · 미 · 일 정상회담(박근혜 대통령-Obama 대통령-아베 총리)
2014. 4. 25	Obama 대통령 방한(4.25-26),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 ※ 한 · 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 발표

Chapter 23

정치 · 안보 분야

한 · 미간 정책협의

한 · 미 외교장관 회담(2014.2월)

가. 외교장관회담 등 한 · 미간 고위급 협의

- 매년 상호 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 개최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지역 · 범세계적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강화
  - 2013.3.1 윤병세 외교장관 취임 후 일년간 다섯 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 차례의 전화통화를 갖는 등 외교장관간 긴밀한 정책 협의 전개
- 이외에도 외교 · 안보 부처 고위 실무진간 수시 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 협력 기반 확대

나. 한 · 미 장 · 차관급 전략대화

- 2005.11월 경주 한 · 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한 · 미간 장관급 전략대화의 출범을 공식 발표
  - 단순한 현안 협의를 넘어 지역 ·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적 협의
  - 기존 국방차원의 한 · 미 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 더하여 한 · 미관계를 조율하는 제도적 틀 마련

전략대화 개최 현황

- 2006 1.19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워싱턴)
- 2006 11.7 제1차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서울)
- 2007 10.11 제2차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워싱턴)
- 2008 9.2 제3차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워싱턴)
- 2010 2.26 제2차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워싱턴)
- 2012 10 제4차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서울)
- 2013 12.17 제5차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워싱턴)
- 2014 6.24 제6차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워싱턴)

북핵문제

가. 제2차 북핵위기 발생과 6자회담 성립

-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 시인(2002.10월) 및 IAEA 사찰관 추방, NPT 탈퇴 선언 등으로 제2차 북핵문제 대두
- 우리 정부는 △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 등 3대 기본 원칙하에 한 · 미 공조 및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 정립
- 남 · 북한, 미 · 일 · 중 · 러 등 6개국 참여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 개최 (2003.8.27-29, 북경)

나. 6자회담 관련 주요 경과

6자회담 관련 주요 경과

비핵화 및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제1차 회담 (2003.8.27-29), 제2차 회담 (2004.2.25-28), 제3차 회담 (2004.6.23-26)
9.19 공동성명	• 제4차 회담 제1단계 회의 (2005.7.26-8.7) 및 제2단계 회의 (2005.9.13-19) - 「9.19 공동성명」 채택 • 제5차 회담 제1단계 회의 (2005.11.9-11) •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2006.7.5) 및 핵실험(2006.10.9) 실시 -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 채택 • 제5차 회담 제2단계 회의 (2006.12.18-22)
2.13 합의	• 제5차 회담 제3단계 회의 (2007.2.8-13) - 「9.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2.13 합의) 도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주요 내용** 60일 이내 • 영변 핵시설의 폐쇄 · 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 대북 긴급에너지 지원 개시 • 미 · 북/일 · 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30일 이내 •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 설치 및 가동 개시 • 제6차 회담 제1단계 회의 (2007.3.19-22) • 미 재무부 BDA 북한자금 동결 해제 발표 (2007.4.10) • 제6차 회담 수석대표회의(2007.7.18-20)

Chapter 23 정치 · 안보 분야

10.3 합의	• 제6차 회담 제2단계 회의 (2007.9.27-30)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 도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주요 내용** • 북한은 2007년내 영변 3개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제공 • 북한은 핵 물질 ·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중유 100만톤 상당의 대북 경제 · 에너지 · 인도적 지원 제공 • (미-북)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공약이행 • (일-북)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적절한 시기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 재확인 • 불능화 및 대북 경제 · 에너지 지원 이행 • 북한의 신고서 제출(2008.6.26) 및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2008.6.27) -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2008.6.26)
검증 등 비핵화 2단계 마무리 관련 논의	•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2008.7.10-12) - 비핵화 검증체제 수립 및 6자 공약 이행 감시체제 수립 합의 • 6자 외교장관 회동(2008.7.23, 제15차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 북한의 불능화 조치 중단 및 영변 핵시설 원상 복구 고려 발표(2008.8.26) - 검증문제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 보류에 대한 반발 • Hill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검증 관련 미-북간 잠정 합의(2008.10.2) - 미국,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 발효(2008.10.11) - 북한 불능화 조치 재개 발표(2008.10.12) •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2008.12.8-11) -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경제 · 에너지 제공의 병렬적 이행에 합의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참여 환영 - 시료채취 등 검증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 미도출
이후 동향	• 2008.12월 6자회담 결렬 이후, 핵실험 ·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 및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미비로 인해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 · 미 공조

- 2003년초 한 · 미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6자회담 틀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
- 한 · 미 양국은 굳건한 한 · 미 동맹을 기반으로 정상, 외교장관 및 6자회담 수석대표 등 각종 고위급 양자 협의 및 다자무대를 통해 북핵문제 관련 긴밀히 공조중
  -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

한 · 미 안보협력

가. 한 · 미 상호방위조약

- 한국전쟁 종결 직후, 북한의 재침시 미국 등 우방 개입의 법적 근거 필요에 따라 협의
- 1953.10.1 변영태 외무장관과 Dulles 미 국무장관의「한 · 미 상호방위조약」서명(미국 워싱턴), 양국 국회 비준을 거쳐 1954.11.18부로 발효
- 미군의 한국주둔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이며,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정부간 또는 군사당국간의 각종 안보 · 군사관련 후속 협정들의 기 초 제공

나. 주한미군(USFK)

1) 개 관

- 한 · 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주둔
  -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와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
- 주요 전력 : 미 제8육군사, 미 제7공군사

주한미군 주요 전력 현황(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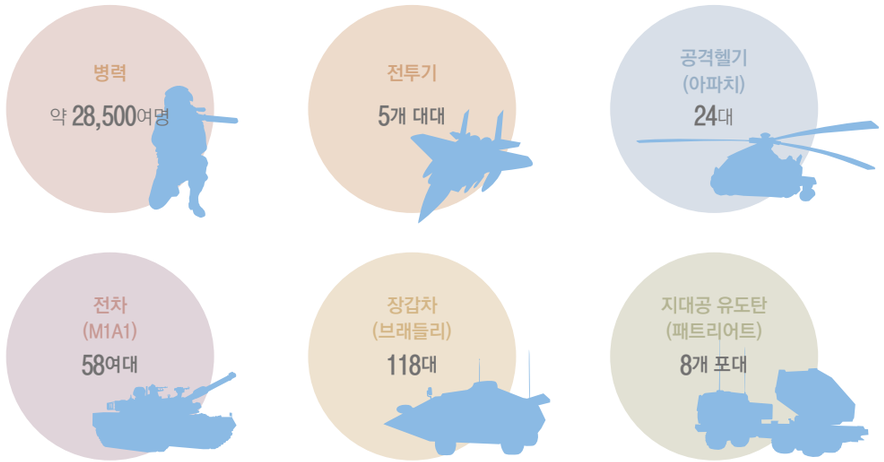

Chapter 23 정치 · 안보 분야

2) 주한미군 재조정

1. 주한미군 기지이전

- 2003.4월-2004.9월간 총12차례 개최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FOTA : 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를 통해 재배치 합의서(용산기지이전협정/연합토지관리 계획(LPP)개정협정) 협의 · 체결, 2004.12월 재배치합의서 국회비준동의안 가결
-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를 통해 서울지역에 있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및 관련 부대를 평택지역(52만평)으로 이전하고,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기지를 2단계에 걸쳐 중부(평택, 오산), 남부(대구/부산) 등 2개 권역으로 통폐합
- 2007년 11월 평택기지 건설사업 기공식 및 2008년 1월 기지이전시설 종합계획(MP: Master Plan) 승인 이후, 기지이전 사업은 부지 조성공사 등 본격적인 기지 시공 단계 진입
-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정상추진 중(2014년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 및 공여부지 조정

현 공여	반환	계속 유지	비고
2억 4,198만㎡ (7,319만 평)	1억 6,532만㎡ (5,000만 평)	7,666만㎡ (2,319만 평)	현 공여 대비 31.7%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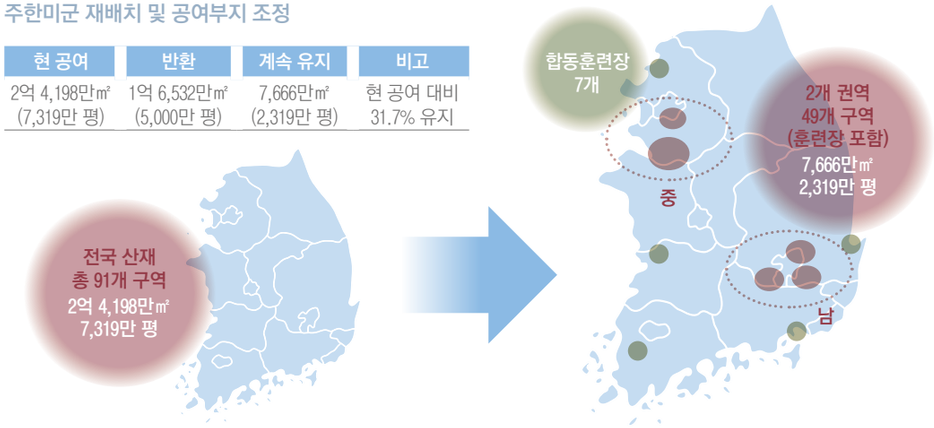

- 기지이전 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 기지를 통폐합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

2.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 한 · 미 양국은 2004.6월-2004.10월간 총 5개월에 걸친 공식협의를 거쳐 5년간(2008년말 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2,500명 감축(37,500 → 25,000명)에 합의하였으나, 2008.4월 캠프 데이비드 한 · 미 정상회담시 주한미군 병력을 現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
  - 2008.10월 제40차 SCM시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공약 이행 재확인
- 적정규모의 주한미군 유지가 한 · 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는 물론 양국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

주한미군 병력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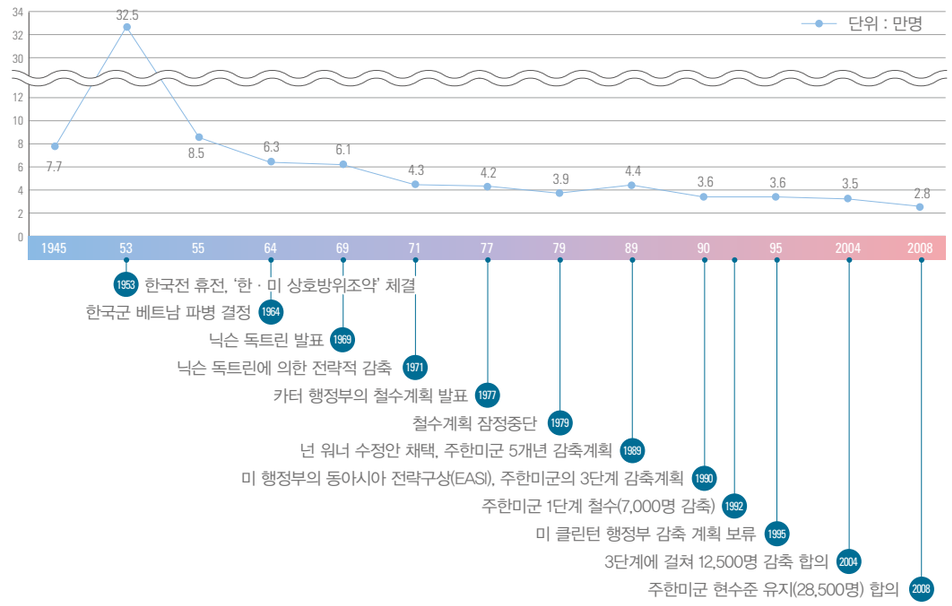

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1) 명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 정식 명칭으로, '한 · 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로 통용

2) 의의

- 주한미군의 원만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접수국인 한국이 주한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법적 지위를 제도화한 협정

3) 연혁

- 1953년 상호방위조약 서명 이후 13년에 걸친 교섭 끝에 1966.7.9 서명, 1967.2.9 발효
- 1991.2.1 형사재판관할권, 시설구역 등 8개 조항에 관한 양해사항 개정(1차 개정)
- 2001.1.18 형사재판관할권, 시설구역 등 기존 문안 개정 및 환경, 노무 관련 양해각서 체결(2차 개정)

Chapter 23 정치 · 안보 분야

한 · 미 SOFA 체결 및 개정 주요내용

한 · 미 SOFA체결 1966년 7월 9일	**배 경**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 필요 **주요내용** 형사재판권, 시설 · 구역 등 미군 주둔에 따른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
제1차 한 · 미 SOFA 개정 1991년 2월 1일	**배 경** 우리측 형사재판권 행사에 대한 제약,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문제, 미군 기지내 물자의 국내시장으로의 불법 유출문제 대두 **주요내용** • 형사재판관할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한측 1차 형사재판권 대상 범죄 확대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 노동법령 규정 적용을 통한 노동관계 개선 •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공여지) 반환근거 마련 • 한국인의 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등) 이용 통제
제2차 한 · 미 SOFA 개정 2001년 1월 18일	**배 경** 윤금이씨 살해사건(1992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1995년) 등 주한미군 관련 범죄에 따른 SOFA 개정 여론 증가, "SOFA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국회 본회의 채택(2000년) **주요내용** • 살인, 강간, 불법마약거래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기소시 신병인도 등 우리측 형사재판권 행사 범위 확대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환경보호에 관한 SOFA 명문 규정 최초 마련 •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 해고조건 강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위 강화 •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 변경시 협의 의무 부과 등 미군의 시설 · 구역 사용 관련 우리측과의 협의 확대

4) 구조

- 한 · 미 SOFA는 31개 조항의 본문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및 양해 사항(Understanding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 고용 및 주한미군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등 양해각서와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 동 협정을 보완

5) 운영 체제

- 1967년 SOFA 제28조에 의거 한 · 미 양측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설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SOFA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산하에 'SOFA 운영 개선 특별합동위' 및 20개의 분과위원회 가동중

  ※ 여중생 사망사건 계기로 2002.12월 설치된 「SOFA 운영개선 특별 대책반」을 2005.1월 「SOFA 운영 개선 특별합동위」로 승격하여 상설화

- 2003년~2014년 6월 현재까지 한 · 미 양측은 총 12차례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형사재판권, 시설구역, 환경, 민사청구권, 노무 등)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6) 운영 개선

• 2002.6월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 미 SOFA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 및 「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운영 개선 성과 도출

주요 SOFA 운영 개선 실적

2002.12	초동단계 수사에 있어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 미간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 합의
2003.5	주한미군 훈련 및 차량이동계획을 관할지자체와 경찰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훈련안전조치 합의
2003.5	주한미군 반환 ·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에 관한 절차서(부속서A) 마련
2004.6	주한미군측 공무중 행위로 발생한 소액배상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사전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 · 미간 협력방안 마련
2005.12	주한미군기지 내 우리 문화재 조사를 위한 절차서 마련
2006.10	주한미군용 반입 축산물에 대한 합동검역 실시 합의
2008.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적용 합의
2008.2	향후 주한미군과 한국노무단(KSC)간 개인 및 단체 근로자 쟁의사안의 해결절차는 국내법과 조화를 이룬 SOFA 노무조항(제17조)의 쟁의해결 절차에 따를 것에 합의
2009.3	공여 및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합의 · 채택
2010.1	반환 미군기지 7개소에 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시범 적용 사업 완료
2010.8	향후 모든 기지 공여 · 반환시 현행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계속 적용키로 한 · 미간 합의
2010.12	SOFA 소음저감분과위, 질병예방 · 통제분과위 신설 합의
2011.6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문제 관련 한 · 미 공동조사 구성 합의
2012.3	주한미군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한 · 미간 정례 협의체 출범
2012.5	'기소전 신병 인도'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 합의
2013.4	기소前 신병인도 최초 집행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개소
2013.12	미군 헌병 영외순찰 운영개선 합의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고용 · 산재보험 납부절차 개선 합의

• 한 · 미 양국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조성 및 미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SOFA 협의 채널을 통하여 SOFA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해 지속 협의할 예정

라. 방위비 분담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시설과 구역(facilities and areas)을 우리가, 기타 유지경비는 미측이 부담토록 규정한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

-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에 대한 우리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

Chapter 23 정치 · 안보 분야

•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미국 정부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주둔 경비 일부를 분담

- 방위비 분담 항목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보수지원),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
- 인건비는 전액 현금, 군수지원은 전액 현물 지원이며, 군사건설비는 제8차 SMA(2009-2013)부터 현물지원(단, 12% 설계 · 감리비는 현금지원)

•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2014.2.2 서명되었으며, 2014.4.16 국회 비준동의 완료

- 2014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9,200억원이며, 2015-2018년간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결정(단, 소비자 물가지수 상한선을 4%로 제한)

  ※ 2014년 총액은 2013년 총액 8,695억원 대비 5.8% 인상으로 역대 인상폭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또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쳐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리 근로자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제도개선에 합의

방위비 분담 제도개선 내용

①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②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③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④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⑤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연합방위력 강화 뿐만 아니라 한 · 미간 상호이해와 신뢰 제고에 기여

2013년 방위비 분담금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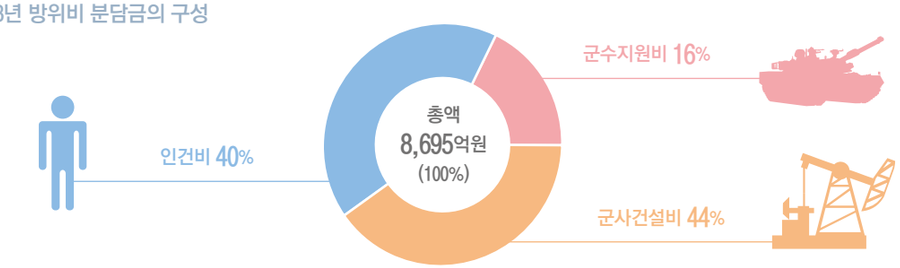

1991년-2013년간 방위비 분담금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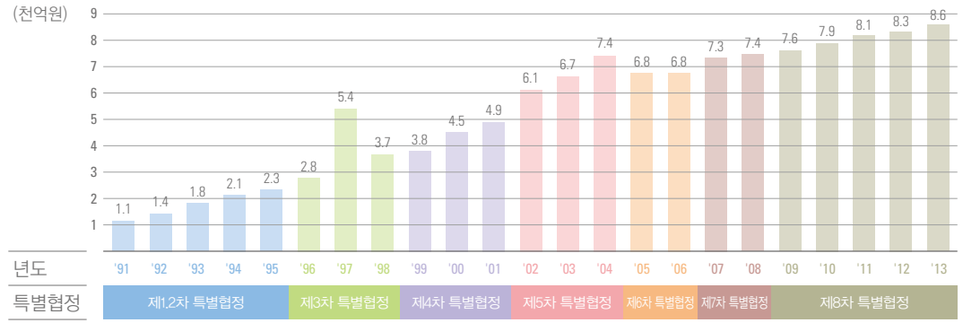

마. 한 · 미 연합방위체제

한 · 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는 군사위원회를 통해 연합사령관에게 전략 지시 및 임무 부여

1) 한 · 미 연합사령부(CFC : Combined Forces Command)

1. 창설 연혁

- 1977년 제10차 한 · 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종철 국방부 장관과 브라운 미 국방장관간에 연합군 사령부 창설 합의
- 1978.7.27 제11차 SCM에서 연합군 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합의 도달
- 1978.9.17 연합사 권한위임사항에 관한 한 · 미 각서교환('박-글라이스틴' 각서)
-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합의한 '군사위원회 및 한 · 미연합군사령부 권한 위임사항'과 1978년 군사위원회의(MCM)에서 하달한 '전략지시1호'에 따라 1978년 11월 7일 용산 미군기지 내에 한 · 미 연합사령부 창설

2. 임무 및 유엔사와의 관계 설정

- 한 · 미 연합군사령부 창설로 그동안 유엔군사령부가 수행해 온 한국방위 임무를 한 · 미 연합군사령부가 담당
  - 평시 한국 합참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한반도 전쟁억지를 위한 위기관리
  - 전시 대비 계획 발전 및 연습을 통해 한미연합전력을 운용, 한국 방어임무 수행 준비
-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유지에 대해서만 계속 책임지고, 연합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한,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설정

3. 편제 및 구성

- 한 · 미간 동률 보직원칙에 따라 사령관에 미군 4성 장군, 부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으로 보임하는 등 양측간 균형 유지

역대 한 · 미 연합사령관

78.11~79.7	John W. Bethy Jr.	96.7~99.12	John H. Tilelli
79.7~82.6	John A. Wickham Jr.	99.12~02.5	Thomas A. Schwartz
82.6~84.6	Robert W. Sennewald	02.5~06.2	Leon J. LaPorte
84.6~87.6	William J. Livsey	06.2~08.6	Burwell Bell
87.6~90.6	Louis C. Menetrey	08.6~11.7	Walter L. Sharp
90.6~93.6	Robert W. RisCassi	11.7~13.10	James D.Thurman
93.6~96.7	Gary E. Luck	13.10~현재	Curtis Scaparrotti

Chapter 23 정치 · 안보 분야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체계

유엔군 사령부

- 1950.7.7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의거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유엔회원국 병력을 지휘하기 위해 설립
- 한국전에 파병한 유엔회원국 군대의 통합사령부 기능
  - 통합사령부에서 취한 조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
- 정전협정(1953.7.27)의 유엔군측 서명자로서 정전체제 유지, 집행기능(정전협정 제17항)
  -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최종 책임보유(군정위 유엔군측 대표 임명 · 지휘 감독, 중감위 유엔군측 대표 후방지원 제공)
  - 정전협정과 대치될 평화보장장치 마련시까지 정전체제 유지(전쟁억지력)

2)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1.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

-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 (1950.7.14 공한)
- 정전협정 체결후 유엔군사령관에 작전통제권을 이양 (1954.11.17 한 · 미 합의의사록)
- 한 · 미 연합사령부 창설(1978년)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 위임 (1978.10.17 한 · 미 교환공한)
- 평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합참의장에게 전환 (1994.11.30 한 · 미 교환각서)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2006.9월 한 · 미 정상회담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칙 합의
- 2007.2월 한 · 미 국방장관회담시 2012.4.17부 전작권 전환 합의
- 2010.6.26 한 · 미 정상회담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말로 조정 합의
- 2010.10월 한 · 미 안보협의회의(SCM)시 한 ·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관련 포괄적 이행계획인 「전략동맹 2015 (Strategic Alliance 2015)」에 서명

전략동맹 2015

- 2015.12.1부로 한반도 연합방위의 주도권을 한 · 미 연합사로부터 우리 합참으로 전환(미군 한국사령부는 우리 합참 지원)하는데 필요한 포괄적 이행계획
- ▲전작권 전환에 따른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필요한 한국군 능력 확보 등 군사적 조치사항, ▲전작권 전환시기에 맞추어 조화로운 이행이 필요한 주한미군 재배치, 정전관리 책임조정 등 제반 동맹현안 추진 내용 포함

- 2013년 상반기 우리 국방부는 심각해진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점검해 나가자고 미측에 제의
- 2013.10.2 SCM 시, 한 · 미 국방장관은 심각해진 북한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 및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상기 SCM 합의에 따라, 한 · 미 전작권 공동실무단을 구성, 2013.12월~2014.3월간 양국 국방당국간 관련 협의 실시
- 2014.4.25 한 · 미 정상회담 계기 한 · 미는 지속되는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

3. 향후 계획

- 정부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한 · 미 연합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

바. 한 · 미간 주요 안보 협의체

1) 한 · 미 외교 · 국방(2+2) 장관회의

- 2014.4.25 한 · 미 정상회담시 양국은 보다 긴밀한 안보정책 협의를 위해 2014년 중 제3차 한 · 미 외교 · 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과거 2+2 장관회의 개최 결과

제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0.7.21, 한국 서울
- **참석자 :** (韓)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김태영 국방부 장관, (美) Hillary Clinton 국무부 장관 · Robert Gates 국방부 장관
- **주요일정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6.25전쟁 유엔군 · 한국군 전사자 및 천안함 순국장병 명비 헌화 · 참배 등
- **주요성과 :** ▲6.25 이후 동맹성과 평가 및 동맹발전에 대한 공동 인식 재확인, ▲천안함 사태 관련 한 · 미 공조 지속 강화 방안/북핵대응 방향 협의 등

제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2.6.14, 미국 워싱턴
- **참석자 :** (韓)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 김관진 국방부 장관, (美) Hillary Clinton 국무부 장관 · Leon Panetta 국방부 장관
- **주요일정 :**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등
- **주요성과 :** ▲한 · 미간 공동의 명확한 대북전략 공감대 형성, ▲전작권 전환 · 확장억제 · 사이버안보 협력 등 동맹현안 협의 · 점검을 통한 대북억지력 강화, ▲지역 · 범세계 차원에서의 다원적 전략동맹 대내외 과시 등

Chapter 23 정치 · 안보 분야

2)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1968년 연례 국방 각료 회의로 출발, 1971.2월 제4차 회의부터 한 · 미 안보협의회의로 개칭하고 외무부가 참여하기 시작하여 2013년까지 45차례 개최
- 양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 국방 고위관계자 참석하에 한 · 미간 안보협력 방안 등 협의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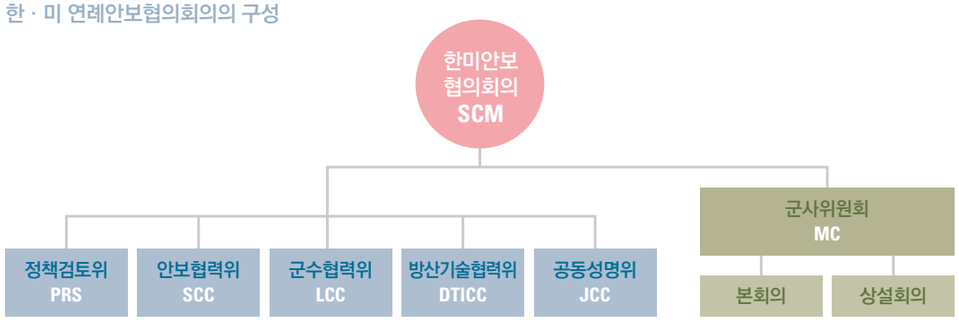

3)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 기존의 한 · 미간 안보협의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본회의, 전략동맹 2015(SA2015) 공동실무단 회의를 통합한 차관보급 협의체로 2012년초 발족(반기별 개최)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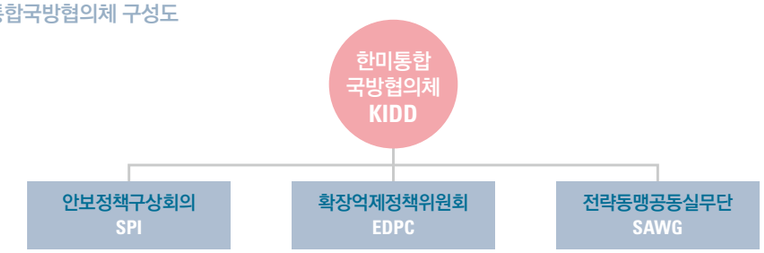

- 하위 협의체
  - SPI(Security Policy Initiative) : 한 · 미 동맹의 거시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 · 미 양국의 외교 · 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회의로서, 2003-2004년간 11회 개최되었던 미래한 · 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의 후신
  - EDPC(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동맹의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된 협의체
  - SAWG(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동맹현안을 재조정 · 관리하기 위한 한 · 미간 전략문서인 「전략동맹2015」의 세부계획 작성 및 이행 점검을 위한 협의체

Chapter 24

경제 · 통상 분야

개관

가. 교역현황

• 중국이 각국의 핵심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면서부터 한국의 對美 교역비중 및 미국의 對韓 교역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속 증가중으로 여전히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교역파트너

-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은 미국에게 6번째로 큰 교역파트너 ('13년 기준)

*EU, ASEAN을 하나의 블록으로 볼 경우 중국, EU, ASEAN에 이어 4위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단위 : 백만불)

2011				
국가	수출	수입	교역량	수지
중국	134,185	86,432	220,590	47,753
일본	39,680	68,320	108,000	−28,640
EU	55,727	47,424	103,151	8,303
미국	56,208	44,569	100,777	11,639
전체	555,214	524,413	1,079,627	30,801

2012				
국가	수출	수입	교역량	수지
중국	134,323	80,785	215,108	53,538
일본	38,796	64,363	103,159	−25,567
미국	58,525	43,341	101,866	15,184
EU	49,371	50,374	99,745	−1,003
전체	547,870	519,584	1,067,658	28,285

2013				
국가	수출	수입	교역량	수지
중국	145,869	83,053	228,922	62,817
EU	48,857	56,230	105,087	−7,373
미국	62,052	41,512	103,564	20,541
일본	34,662	60,029	94,691	−25,367
전체	559,632	515,586	1,075,218	44,04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특히 한미 FTA('12.3.15 발효) 체결 이후 동 FTA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양국 간 양자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관리중

• 한편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각국에게 신성장동력 발굴이 핵심과제로 대두된바, 박근혜 대통령 방미(5.5-9) 및 오바마 美 대통령 방한(4.25-26)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통상 중심의 전통적 경제협력 틀에서 벗어나 에너지 · ICT · 과학기술 등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중

분야별 협력 관계

가. 교역 및 투자 현황

교역

• 미국과의 교역액은 2013년 기준 1,036억불로서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국(교역 비중 약 9.6%)

- 수출 621억 달러, 수입 415억 달러로 2013년 무역수지는 206억 달러 흑자를 기록, 역대 최고치 달성

• 한국은 미국에게 6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캐나다>중국>멕시코>일본>독일 순)

- 2012년의 경우 7번째 교역대상국

주요 품목별 대미 수출

(단위 : 백만불, %)

품목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승용차	10,313	19.5	12,113	17.5
자동차부품	5,642	12.4	6,163	9.2
무선전화기	4,440	−45.1	5,881	32.5
집적회로반도체	2,093	−13.0	2,586	23.6
제트유및등유	1,885	22.0	2,553	35.4
철강관	1,763	20.3	1,724	−2.2
타이어	1,611	7.9	1,304	−19.1
냉장고	1,046	4.1	1,104	5.5
건설중장비	1,149	43.9	980	−14.7
무선통신기기부품	586	27.4	975	66.3
전체	**58,525**	**4.1**	**62,052**	**6.0**

주요 품목별 대미 수입

(단위 : 백만불, %)

품목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집적회로반도체	4,272	11.3	3,830	−10.3
항공기부품	1,402	3.2	1,477	5.4
반도체제조용장비	2,178	−4.4	1,475	−32.3
항공기	1,744	16.3	1,228	−29.6
합성수지	892	10.1	971	8.9
기타정밀화학제품	875	4.8	933	6.6
기타정밀화학원료	1,022	−0.1	899	−12.0
가축육류	914	−21.4	891	−2.4
의약품	746	21.5	881	18.1
고철	1,187	−16.4	836	−29.6
전체	**43,341**	**−2.8**	**41,512**	**−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투자

• (韓→美) 미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 (2013년까지 누계기준)

- 2008년 62억불 수준에서 2011년 165억불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12년 69.2억불, 2013년 53.6억불

• (美→韓) 미국은 한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 (EU 제외시)

- 미국의 對韓 투자는 1997년 이후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저히 증가된 이래 꾸준한 증가 추세

- 2008년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3억불 수준으로 하락 하였으나 2012년 36억불 수준으로 증가(2013년에는 35.3억불로 소폭 하락)

한 · 미 투자현황

(단위 : 억 달러, 신고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대한국 투자	총외국인 투자	117.1	114.8	130.7	136.7	162.9	145.5	2,180.9
	미국의 대한투자	13.3	14.9	19.7	23.7	36.7	35.3	533.5
	비중	11.3	12.9	15.1	17.3	22.6	24.2	24.5
대미국 투자	총해외 투자	368.5	309.4	344.0	456.6	394.6	351.2	3,635.3
	한국의 대미투자	62.4	39.4	50.8	166.1	69.2	53.6	698.1
	비중	16.9	12.7	14.8	36.4	17.5	15.2	19.2

* 대한국투자는 1962~2013년간, 대미국투자 누계기간은 1968~2013년간
*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나. 한미 FTA

- (연혁) 한 · 미 양국은 상품, 농산물, 섬유, 서비스 ·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과 관련된 19개 분야를 협상 분야로 정하고,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 총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협상타결을 발표
  - 이후 2007년 6월 협정문에 서명, '11년 10월 및 11월 각각 미 의회 · 우리 국회에서 비준되어 '12년 3월 15일에 발효
  - 서명 이후 장기간 국회비준이 지연되었음을 감안, 동 기간 동안의 세계정치 · 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12월 추가협상을 진행, 합의 도출
- (주요 결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으로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양국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등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성 반영
  - 서비스 ·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개방 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 있는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세무) 개방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방을 하기로 합의
  - 지재권,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 등에 있어서도 제도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발효 2주년 평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4년 3월 발표한「한 · 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에 따르면, 발효 2년간 혜택품목의 수출입(각각 15.7%, 10.1%)이 동시에 증가하고 우리의 대미 투자유치도 크게 확대(82.5%)되어 우리 경제활성화에 기여

한 · 미 통상관계의 전개 과정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 우리의 對美 무역적자가 점진적으로 흑자로 반전 • 미국의 섬유, 신발 등 사양산업 보호를 위해 취한 수량 제한 등의 수입규제조치가 양국 간 통상마찰의 중심적 대상
1980년대	• 한 · 미간 통상마찰은 1982년 한국의 對美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미국의 對아시아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본격화 • 198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는 1970년대 수입제한 조치보다는 이른바 공정무역 개념에 기초하여 상대국 수출시장 개방 요구로 전환
1980년대	– 198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의 공산품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관세인하 등을 요구 – 1980년대 후반부터는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 • 이후 대외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 – 미국은 1974년 통상법에 의해 도입된 301조를 무기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였고 한 · 미 양국 간 통상관계의 긴장은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 제정을 계기로 정점에 도달
1990년대	• 1990년대 초반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강도는 다소 완화 – 양자 간 통상현안의 해결보다 UR 등 다자간 협상이 통상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였다는 점이 주요 원인 – 또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양국 간 전반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통상마찰의 상당 부분을 방지 – 한 · 미간 최대 통상현안이었던 자동차협상이 '98.10월 타결됨으로써 상호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기반 조성 • 관세 등 국경에서의 무역장벽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외국 상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관행 등이 주요 통상교섭 사안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
2000년대	• 80-90년대에 비해 한 · 미간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대부분의 현안을 한 · 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low-key로 처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 양자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WTO/DDA 및 APEC 등 다자차원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다. 에너지

- 박근혜 대통령 방미('13.5.5-9) 계기 한 · 미 양국은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을 발표, 양국 간 에너지협력의 추진방향 설정
  - 한 · 미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 · 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협력 등
- 양국은 한 · 미 국장급에너지대화, 한 · 미 클린에너지협의회, 한 · 미 셰일가스워크샵, 클린에너지장관회의 등 각종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중

한 · 미 양국 간 에너지협력 현황

① 한 · 미 국장급 에너지대화 : 외교부 국제경제국장-국무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에너지정책, 美 셰일가스 현황, 글로벌 협력 등을 논의하며 '13.7월에 1차 회의 개최

② 한 · 미 셰일가스 워크샵 :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동향 파악과 한 · 미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3.11월 1차 회의 개최

③ 클린에너지장관회의 : 클린에너지 기술개발 및 확산을 위해 美 에너지부 주도로 발족한 회의로서 현재 23개국, 3개 국제기구 참여중이며 '14.5월 서울에서 제5차 회의 개최

라. 과학기술

- 박근혜 대통령 방미('13.5.5-9) 계기 한 · 미 양국은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은 한 · 미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중
  - 2014.5.19.-20. 한 · 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워싱턴)

Chapter 24 경제 · 통상 분야

한 · 미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 현황

① 한 · 미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한 · 미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93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동 위원회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함께 발굴하기로 합의하고 제8차 위원회 개최('14.5.19-20, 미래부장관-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② 한 · 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갱신 :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분야 협력 유지 및 공고화를 위해 '14.7월 만료 예정인 동 협정 갱신 추진

- '76년 최초 체결('88년 종료). '99년 재체결 이후 2차례 협정 효력이 연장된 바 있으며, 한미 과학 및 기술협력 선언, 협력활동 관련 비용 부담, 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을 규정

③ 한 · 미 과학협력센터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존의 한 · 미 과학협력센터(한미 과학협력증진을 위해 '95년 우리나라가 미국에 설립한 비영리기관)를 글로벌혁신센터로 개편 및 기능 확대 추진

마. ICT

• 박근혜 대통령 방미('13.5.5-9) 계기 한 · 미 양국은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은 한 · 미 ICT 정책포럼 등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중

한 · 미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현황

한 · 미 ICT 정책포럼 : 양국간 ICT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신설된 차관급 협의체로서 '13.11월 1차 회의 개최

※ '14년 하반기 2차 회의 개최 예정

바. 기후변화

• 박근혜 대통령 방미('13.5.5-9) 계기 한 · 미 양국은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기후변화 및 환경이슈 관련 양국간 협력과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

- 기후변화의 위험성 인식, 양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및 동 노력의 창조경제에 기여, 양 · 다자 차원 협력 강화 등

• 양국은 한 · 미 기후변화 양자대화, 주요경제국포럼(MEF; Major Economies Forum) 등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중

한 · 미 양국 간 기후변화 분야 협력 현황

① 한 · 미 ICT 기후변화 양자대화 :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국무부 기후변화특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Post-2020 신기후체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 입장의 상호 이해제고를 도모하며 '14.1월 1차 회의 개최

② 주요경제국 포럼 : '09년 미국 주도로 기후변화 다자협상 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 행동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18개국 참여중

사. 특허

• 한 · 미 양국은 한-미 특허청장회담 등 양자 협의체를 활용, 인적교류 · 정보교환 · 제도개선 등 논의를 통해 특허 분야 협력 강화

Chapter 24 경제 · 통상 분야

- 특히 제11차 한-미 특허청장회담('13.6월) 시 발명교육교재 및 스토리콘텐츠 공동개발, 디자인 심사분야 협력 등에 합의, 그간 특허심사에 한정되었던 양국 협력의 외연을 21세기 신성장 분야로 확대

• 상기 특허청장회담 외에도 양국은 상표분야 고위급 회의, 특허 분류 협력회의, 특허심사 work-sharing 협력회의 등을 통해 협력 중

- 특히, 특허 분류 협력회의를 통해서는 미국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논의

※ 미측 요청으로 '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관련하여 양국 특허청은 '13.1월 870만불 규모의 수출에 관한 MOU를 체결(미국 특허문헌을 국제특허분류체계(IPC)에 맞도록 재분류하는 작업)

한 · 미 양국 간 특허 분야 협력 현황

① 한 · 미 특허청장회담 : 양국 특허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특허 분야 정보 및 자료교환, 인적교류, 공동연구 등을 논의, '86.1월 이래 '13.10까지 총 12회 회의 개최

② 한 · 미 상표분야 고위급 회의 : 국장급 협의체로서 공동심사프로젝트, 양국 상표 및 디자인 홍보 등을 논의하며 '13.5월 제3차 회의 개최

③ 한 · 미 특허분류 협력회의 : 對美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 수출, CPC(*국제특허분류에 대응되기 어려운 기술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미-EU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분류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는 과장급 협의체로서 가장 최근 회의는 '12.10월 개최

④ 한-미 특허심사 work-sharing 협력회의 : 양국간 상호출원 증대 관련 심사처리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장급 협의체로서 가장 최근 회의는 '12.6월 개최

아. 교통

• 한 · 미 양국은 한-미 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 등을 통해 교통안전,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 교통 분야 양자 협력 강화

- 특히 '14.3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제6차)를 통해 양국 교통정책 및 최신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우리의 첨단 교통분야 R&D · ITS(지능형교통체계) 기술 등을 홍보

• 상기 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 외에도 양국은 도로협력회의, ITS 협력회의, 자동차안전협력회의 등을 통해 협력 중

한 · 미 양국 간 교통변화 분야 협력 현황

① 한 · 미 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 : 실장급 협의체로서 친환경교통, 국가 교통망 R&D, 교통 SOC 투자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99년 이래 '14.3월 현재까지 총 6차례 회의 개최

② 한 · 미 도로협력회의 : 국장급 협의체로서 양국 도로, 교량 관련 신기술, 사례, 정책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회 회의 개최

③ 한 · 미 자동차 안전협력회의 : 국장급 협의체로서 한-미 간 자동차 기술규정 및 안전분야에서 정보교환을 포함한 협력 및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05년 이래 총 6차례 회의 개최

④ 한 · 미 ITS 협력회의 : 국장급 협의체로서 양국간 지능형교통체계계 분야 정보공유, 국제표준 대응 등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며 '14.5월 제1차 회의 개최

자. 기타

• (관세) 한-미 관세청장회의('83년 이래 총 15회 개최), 한-미 원산지협력회의('12년 이래 총 3회 개최)

• (보건) 한-미 보건장관회의('09년 이래 총 4회 개최)

• (산업) 한미 산업협력위원회('10년 제1차 회의 개최)

Chapter 25

사회 · 문화 분야

한 · 미 사회 · 문화 관련 교류

가. 양국간 교류 현황

1) 방문 교류 현황

- 한국→미국 방문객의 경우, 2010년 이래 100만명을 상회하면서 꾸준히 증가 추세
- 미국→한국 방문객의 경우, 2009년 이래 65만명 수준을 유지

양국간 교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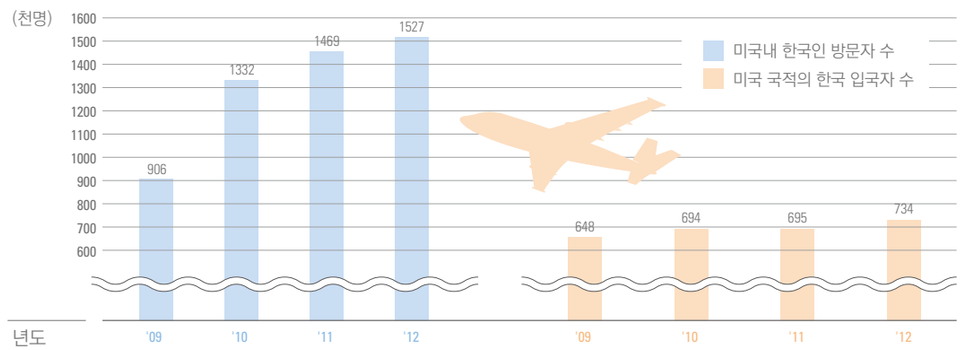

※ 출처 : 미 국토안보부 이민통계국　　※ 출처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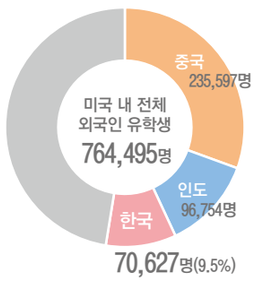

한국 내 미국인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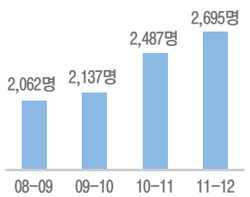

2) 유학생 현황

- 2012-2013 학사연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70,627명으로, 중국(235,597명)과 인도(96,754명)에 이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 3위 차지
  - 미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764,495명)중 약 9.5% 차지
- 한국으로의 미국인 유학생 수는 2,062명(2008-09 학사연도), 2,137명(2009-10 학사연도), 2,487명(2010-11 학사연도), 2,695명(2011-12 학사연도)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

※ 출처 : 美국제교육원(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3) 양국간 학술회의 개최

- 한 · 미 양국 학계간 교류는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한 · 미 21세기 위원회 포럼, 한 · 미 안보 포럼, 서울 · 워싱턴 포럼 등의 정기적 학술회의와 여타 비정기적 학술회의 활발히 개최

나. 미국내 한국 관련 학문 · 교육 기반 확대

1) 한국학 지원 및 한국 전문가 육성

-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중심으로, 미국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교수직 설치, 현지 교원 고용 또는 객원교수 파견을 지원하고, 해외의 한국(어)학 학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어 및 한국학 기반 확대
  - 90년대 초반 이래 한국학 지원이 확대되면서,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코넬, UC 버클리 대학 등 유수 미 대학에서 한국 관련 교수직, 강좌, 연구 프로그램 등을 설치 · 운영

미국내 주요 대학 한국학 개설 현황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olumbia University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Korea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Center for Korean Studies
Indiana University	East Asian Studies Center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Nam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Center for Asian Studies
University of Sheffield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Korea Studies Program
Ohio State University	East Asian Studies Center
Yale University	East Rock Institute

  -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학 연구 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등에 대해 △대학원생/박사후과정/방한연구/한국어 펠로십 사업을 운영하고,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등을 통해 해외 교육자들의 교육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2) 한국어 교육 기반 확대

- 미국내 한국어능력평가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
  - 2014년 기준 미국내 TOPIK 응시자는 2,371명으로, 중국(25,142명), 일본(8,002명)에 이어 전체 3위
  - 2012년에는 미국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TOPIK을 활용하여 한국어 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애틀에서 최초 도입(2012.5.30. 국립국제교육원-시애틀 타코마 교육청간 MOU 체결)

※ 1997년에는 미국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SAT Ⅱ에 한국어 과목이 신설

3) 출판 및 도서 관련 지원

- 한국의 역사 · 정치 · 예술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과 교육 자료의 미국내 간행 및 북미지역 대학 도서관들의 한국연구 관련 도서의 구비 · 관리를 지원

다. 문화 교류 사업

1) 박물관내 한국 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

•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LA 카운티박물관, 샌프란시스코 동양 박물관 등 미국 내 20여개 이상의 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및 한국전 개최

미국 박물관내 한국실 설치 현황

박물관	94	95	97	98	99	00	01	02	03	05	07	09	10	11	12	13
Seattle Asian Art Museum (시애틀동양박물관)	●															
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박물관)			●													
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트로폴리탄박물관)				●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카운티박물관)					●											
Honolulu Academy of Arts (호놀룰루박물관)							●									
Birmingham Museum of Art (버밍햄박물관)								●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동양미술관)									●							
Peabody Essex Museum (피바디에섹스박물관)									●							
The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오레곤대박물관)										●						
The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스미스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											●					
Museum of Fine Arts, Houston (휴스턴미술관)											●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 (미시간대박물관)												●				
Weisman Art Museum, University of Minnesota (미네소타대와이즈만미술관)														●		
Samuel P. Harn Museum of Art (플로리다대미술관)															●	
Virginia Museum of Fine Arts (버지니아미술관)															●	
Pacific Asia Museum (퍼시픽아시아박물관)															●	
Museum of Fine Arts, Boston (보스턴박물관)															●	
The Cleveland Museum of Art (클리블랜드미술관)																●

출처 : 한국국제교류재단(KF : Korea Foundation)

• 한국 문화 관련 강좌, 한국영화 상영회, 의복 전시, 무용 · 음악 공연, 미술 전시회, 한인 관련 영상물 제작 방영, 예술단간 교류 등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미국 내에서 활발히 전개

2) 한류

• 미국 내 한국 드라마, K-POP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동호회 활동도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

- 2013년 7월 기준 미국 내 26개 한류 동호회 활동중

• 드라마

- 미국 인터넷 업계에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넷플렉스, 훌루, 유튜브 등이며, 이들은 국내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한국 드라마 컨텐츠를 제공

Chapter 25 사회 · 문화 분야

• 영화

※ 출처 : 「지구촌 한류현황 1」, 한국국제교류재단

- 2013년에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니콜 키드먼 주연)', 김지운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아놀드 슈워츠제네거 주연)',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존 워튼 주연)' 등이 헐리우드에서 개봉하는 등 한류 컨텐츠 확산
- 한국 유명 배우 출신의 배두나, 이병헌, 비 등이 헐리우드 영화계에 입성, '클라우드 아틀라스', '지아이조 1 · 2', '스피드 레이서', '닌자 어쌔신' 등에 출연

※ 미국 인기 드라마 '로스트' 시리즈에 출연하였던 배우 김윤진은 새 미국 드라마 '미스트리스' 시즌1에서 주인공으로 활약

- 2010년에 한국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가 LA에서 개관, 다수의 한국 영화를 영어자막과 함께 상영

• 한식

- 한국 농수산식품의 미국시장 수출 증가(2014.4월 기준 2억 4,840만불, 전년도 대비 16.4% 증가)

김치레시피

- 2014년 1월 NBC 투데이 쇼는 '2013년 가장 핫한 트렌드 음식 7' 중 하나로 고추장을 소개

※ 2014년초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자신이 담근 김치 사진과 요리법을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김치를 건강식이라 소개

- 뉴욕 유명 푸드 매거진,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에서 미국에서의 한식의 인기 반영

※ 2013년 국내 커피 브랜드 '카페베네' 뉴욕 타임스퀘어 진출

한 · 미 교류 증진 기관

● 한국소재 기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Korea)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
전 화 : 02-564-2040
팩 스 : 02-564-2050

AMCHAM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간의 무역 및 상업 증진이라는 사명 하에 1953년에 설립되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회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1,800 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900여 개 이상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업종만큼이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의 기본적 목표는 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며, 한국 정부, 한국 상공업계 및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재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아시아 재단 (Asia Foundation)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
전 화 : 02-732-2044
팩 스 : 02-739-6022

아시아 재단은 아태지역의 평화, 번영 및 개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비정부 기구이다.

아시아 재단은 통치와 법률, 경제 개혁과 개발, 여성 참여 및 국제 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내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시아 재단은 아시아 지역에서 60년간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및 공공 단체들과 협력하여 리더십과 제도 개발, 교류 및 정책 연구를 지원한다.

아시아 전역에 18개의 사무소, 워싱턴 D.C.에 1개 사무소,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재단은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위와 같은 사안들을 다룬다.

한미우호협회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
전 화 : 02-730-3595, 7095
팩 스 : 02-730-3596

의미 세미나 및 출판물을 통해 한 · 미간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비당파적인 민간조직

개요 설립년도 : 1991.6월
회원수 : 개인회원 310여명
활동 : 연 2회 '한 · 미 우호의 밤' 개최, 연례 한 · 미 친선 음악회, 월 1회 포럼 개최 등 한미간의 각종 연구와 문화의 이해, 친선활동과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간 우호 증진과 유대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협회 (Korean-American Association)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
전 화 : 02-589-0005
팩 스 : 02-589-0009

의미 강연회, 토론회 및 각종 사업 지원 통한 한 · 미 양국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친선단체

개요 설립년도 : 1963년 ㅣ 대표 : 한승주(전외교장관)
회원수 : 개인회원 250여명, 법인회원 33개사
활동 : 연례 친선음악회(4월) 및 '한 · 미 친선의 밤'(11월) 개최. 한미협회는 한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양국간 비영리, 비정부 기구이다. 한미협회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 간의 우호와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간의 문화적, 경제적 및 기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협회는 저명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및 다양한 사회/특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관심 있는 한국 및 미국 시민들이 1963년도에 한미협회를 설립한 이래로, 협회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Chapter 25 사회 · 문화 분야

한미 친선 좋은친구 협회

소재지 : 대한민국 경기도
전 화 : 031-8016-9964
팩 스 : 031-8016-9965

의미 민간 차원의 한 · 미 교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조직

개요 설립년도 : 2005년 ㅣ 대표 : 이경재((주)삼진앨앤디 대표이사) ㅣ 회원수 : 152명
활동 : 주한미군장병 제주도 탐방 사업, 주한미군가족 음악회 관람, 미군모범장병 스키투어, 미군모범장병 안보격려행사 등을 통해 양국민 문화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한미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국가와 민족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 친선회 (Korean-American Friendship Association)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
전 화 : 02-757-3011
팩 스 : 02-757-5657

의미 한 · 미 양국민간 상호이해와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특히 주한미군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조직

개요 설립년도 : 1990. 7월 ㅣ 대표 : 왕상은 ㅣ 회원수 : 108명
활동 : 위문행사, 주한미군가정초대, 전통문화예술소개, 송년파티 등 한 · 미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친선교류를 통해 양국민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 클럽 (Korean-American Club)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
전 화 : 02-713-2448
팩 스 : 02-771-2449

의미 전 · 현직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의 연구, 친목 모임

개요 설립년도 : 2008.8월 ㅣ 대표 : 봉두완(전 TBC-TV앵커) ㅣ 회원수 : 747명
활동 : 한 · 미 현안 관련 세미나 및 '친선의 밤' 개최

한미교육위원단(Korea-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
전 화 : 02-3275-4000
팩 스 : 02-3275-4028

흔히 풀브라이트 위원회로 지칭되는 서울의 한미교육위원단은 전 세계에 소재하는 51개의 양국간 비영리 위원단 중 하나이다. 풀브라이트 위원회는 정부, 교육계 및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동수의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관리를 받는다. 풀브라이트 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전문적/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한미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는 장학금 프로그램 및 미국 내의 각종 교육 기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산화된 시험의 응시 등록을 처리한다. 한국내의 모든 TOEFL, GRE 및 GMAT 시험은 전산화된 형식으로 관리된다.

한미친선군민협의회 (Korea Corporate Members of AUSA)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
전 화 : 02-701-5566
팩 스 : 02-701-4154

의미 한미친선군민협의회는 우호 및 문화 활동을 통하여 한국 국민과 주한 미 육군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

개요 설립년도 : 1987. 12월 ㅣ 대표 : 박정기 ㅣ 회원수 : 152명
활동 : 주한 미 육군과의 우호 활동, 국내외 회원간의 우호 활동 ,미 육군협회(AUSA)의 활동을 통한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 워싱턴 D.C. 소재 미 육군협회 본부 및 서울 소재 한국 지부와의 업무 조정 활동 등 한미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의 증진과 한국전통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경제협의회 (Korea-U.S. Economic Council, Inc.)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
전 화 : 02-6000-5488, 5425
팩 스 : 02-6000-5460

한미경제협의회는 한국 정부의 인가를 득하여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이다. 협의회는 한국 주요 기업과 경제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국 내의 미국 재계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3년도에 설립된 한미경제협의회는 한미간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안보, 교역 및 투자를 위한 미국의 주요 협력 상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반의 조직으로서 설립되었다.

● 미국소재 기관

한미문화재단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소재지 : 미국 뉴욕
전 화 : (+1 212) 300-2145

(재)한미 문화재단의 목표는 문화교류를 통한 한 • 미간의 우호증진과 관계를 재조명하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인식을 도모함으로써 양국민간의 친선에 이바지 하며 아울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에 있다.

한미재계회의 (U.S. - Korea Business Council)

소재지 : 미국 워싱턴 D.C.
전 화 : (+1 202) 463-5461

한미재계회의는 한국과 미국의 양자간 최고 재계 단체이다. 한미재계회의는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고위 임원들로 구성된다.

한미재계회의는 최고 수준에서 한미 양국간 쌍방향 무역 및 투자 증대와 경제/정치 관계 증진을 도모함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Asia Society)

소재지 : 미국 뉴욕
전 화 : (+1 212) 288-6400

비영리 초당파 교육 기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일본에서 이란, 중앙 아시아에서 뉴질랜드와 태평양 군도에 이르는 지역으로) 대개 아태지역으로 규정되는 30 여 개 국가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예술 전시회 및 공연, 영화, 강연, 세미나와 회의, 출판 및 언론 지원, 학생과 교사를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시아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한미경제연구소 (Korea Economic Institute)

한미경제연구소는 비영리 교육 기구로서 1982년에 설립되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주력 분야는 경제이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미간의 전반적 관계를 모두 다루고 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임무는 한국 및 한미 관계 관련 경과를 미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한국의 경제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제공원으로서 활동하며,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대외/경제 정책의 주요 진전 상황과 동향을 알리는 것이다.

Chapter 25 사회 · 문화 분야

코리아 소사이어티 (Korea Society)

소재지 : 미국 뉴욕
전 화 : (+1 212) 759-7525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미 국세청법501(c)(3)항에 의한 면세 대상의 초당적 민간, 비영리 기구로서, 개인 및 기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오로지 한국과 미국 국민들 간의 인식, 이해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임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공공 정책, 사업, 교육, 이(異)문화간 관계 및 예술 분야에서 양국간의 중대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 교류 및 연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재원은 기여금, 기부금, 보조금, 회비 및 프로그램 수수료로 충당한다. 뉴욕 시에 본부를 둔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적극적인 대외 활동 노력과 미국과 한국 전역의 여타 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미국 전역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러스 하우스 (The KORUS House)

소재지 : 미국 워싱턴 D.C.
전 화 : (+1 202) 939-5688

코러스 하우스는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 한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코러스 하우스가 마련하는 세미나, 강연 등 각종 학술 행사에는 한미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와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해 강연하거나 토론한다. 코러스 하우스는 미국의 주류 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미국 소재 한국 문제 연구 기관

한미관계 및 한국학 연구소 (Center for Korean-American and Korean Studies)

소재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전 화 : (+1 323) 343-5768

한미관계 및 한국학 연구소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미 관계 및 한국학 연구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것을 그 소명으로 한다. 이 연구소는 원래 한국 문화 및 전통에 대한 연구를 조율하고, 한미 공동체 및 관련 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그 업적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서화하며, 한국인과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문화간 교과과정 자료를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이 연구서의 주요 목적은 한미 관계 및 한국학 관련 연구와 간행물 발간을 실시하고, 증진하고, 조율하며,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및 전시회를 후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 자원 및 연구 센터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컬럼비아대학교 한국법연구소 (The Center for Korean Legal Studies, Columbia University)

소재지 : 미국 뉴욕
전 화 : (+1 212) 854-5759

한국법연구소는 한국타이어그룹 및 국제교류재단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1994년 컬럼비아 로스쿨에 설립되었다. 한국법연구소는 한국 법률 및 한국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변호사, 판사, 정부 및 기업 관리 등이 동 연구소의 객원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컬럼비아대학교 한국연구센터(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소재지 : 미국 뉴욕
전 화 : (+1 212) 854-1728

컬럼비아대학교의 한국학 역사는 1931년부터 시작된다. 그 해 뉴욕지역의 한국 유학생들이 다수의 한국 서적을 컬럼비아대학교에 기증하고 한국학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건립했던 것이다. 1934년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인 윤응팔 박사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최초의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다. 공식 한국학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수 직책이 생겨난 1962년에 시작되었다. 초빙교수는 한국문학을 전공한 윌리엄 스킬렌드(William E. Skillend) 박사였다. 그는 1964년에 고향 영국으로 돌아갔고, 그의 후임으로 부임한 개리 레드야드(Gari Ledyard) 박사는 2000년에 퇴임할 때까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한국역사를 강의하였다. 또한 1962년에 한국자료실(Korean Collection)이 동아시아도서관(현 C.V. Starr 동아시아 도서관)내에 설치되어 그 때까지만 해도 다른 여러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한국 관련 서적이 한 곳에 모이고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되었다. 한국어 및 한국 관련 서적들과 정기간행물이 동아시아도서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자료 담당 사서에 의해 관리된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한국학센터 (Center for Korean Studies, UC Berkeley)

소재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전 화 : (+1 510) 642-5674

한국학센터(CKS)는 동아시아연구소(IEAS)의 부설기관으로서 UC버클리 국제지역 연구소(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내에 있다. 이 센터는 미국에서 한국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대학센터 중 한 곳이다. 이 센터의 목표는 국제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학술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UCLA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 한국학센터(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소재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전 화 : (+1 301) 825-3284

UCLA 한국학센터는 한국학 연구분야에서 UCLA의 신생 프로그램 개발을 조정하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되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와 교수진에 한국 전문가들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현재 미국 본토에서 최대 규모의 한국학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한국학센터(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소재지 :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전 화 : (+1 808) 956-7041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한국학센터는 한국 관련 수업 및 연구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교수진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 1972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아시아학, 춤, 경제학, 역사, 언어, 언어학, 문학, 음악, 정치학, 사회학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 관련 강좌를 제공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20여명의 교수진을 보유한 이 센터는 한국 이외 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한국학 프로그램의 본거지이다.

Chapter 25 사회 · 문화 분야

예일대학교 동암연구소(East Rock Institute, Yale University)

소재지 :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전 화 : (+1 203) 624-8619

동암연구소는 아시아인들, 아시아계 미국인들 및 동아시아의 미국인 친구들이 후원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이 연구소와 후원자들의 공통목표는 연구 및 수업에 대한 혁신적 접근방식들을 통해 동서양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예일대학교 근처 뉴헤이븐에 위치하여 연구원들은 예일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소가 뉴헤이븐의 이정표인 East Rock (역주: 뉴헤이븐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바위산 중 동쪽에 있는 산)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안된 연구소 이름은 동아시아학과 한국학이 현재 미국에서 구축한 확고한 기반을 상징한다.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The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소재지 :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
전 화 : (+1 617) 496-2141

한국학연구소는 하버드대 한국학 지원과 개발을 위한 하버드대의 유일한 비학과(non-departmental) 기관이다. 1981년에 페어뱅크 동아시아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이 연구소는 1993년에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되었다.

남가주대학교 한국학연구소(Korean Studies Institut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소재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전 화 : (+1 213) 740-3758

1995년에 설립된 남가주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미국 최고의 한국학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이 연구소는 주요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발한 소수의 최고 학술기관에 속하며 연구소의 한국학도서관(Korean Heritage Library)은 미국에서 저명한 한국어 교재 연구자료실 중 한 곳이다. 게다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로스엔젤레스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기관으로서 남가주대학교의 위상은 이 연구소의 잠재력을 강화시킨다. 로스엔젤레스는 한국 이외 지역에서 한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서 60만여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 역사적 · 지리적 측면에서 남가주대학교는 미국에서 주요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제를 해결하기에 특히 적합한 곳에 위치해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코리아체어(Korea Chair,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소재지 : 미국 워싱턴 D.C.
전 화 : (+1 202) 887-0200

CSIS는 국제경제, 정치, 안보 관련문제 등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독립, 비영리 기관으로서 초당파적 정책 연구 기관이다.

2009년 CSIS 연구소에 Korea Chair가 설치되어, 초대 Chair로 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Korea Chair의 활동 범위에는 △한 · 미 학자간 교류, △정책 분석 보고서, 뉴스레터 등 간행물 발간, △언론 홍보 및 인터뷰, △한국 및 아 · 태 지역내 각종 연구소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코리아체어(Korea Chair, Brookings Institution)

소재지 : 미국 워싱턴 D.C.
전 화 : (+1 202) 797-6000

브루킹스 연구소는 경제, 행정,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간행물 발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 비영리기관이다.

2014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이어 두 번째로 코리아체어(Korea Chair)가 설치되어, 초대 Chair로 Katharine Moon 웨슬리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 VWP 개요

- 관광 · 상용 또는 경유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행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해당 여행자는 VWP 가입국 국민이어야 함

VWP 가입국 현황(총 38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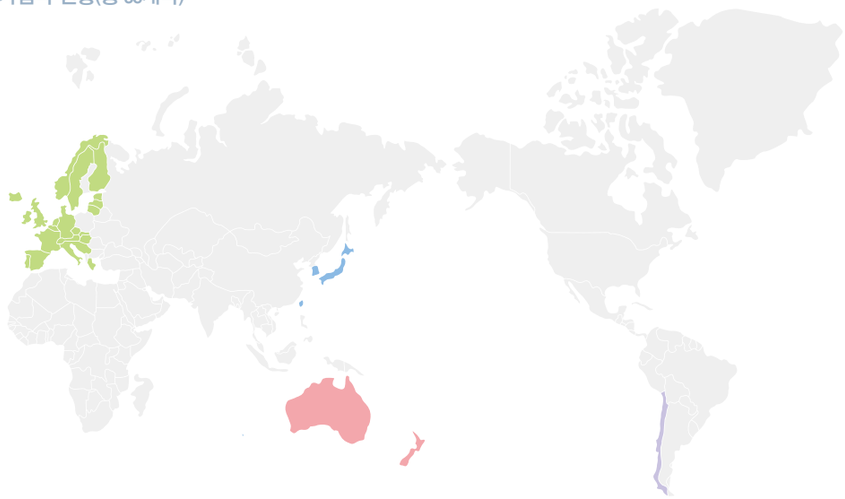

아시아(4개국)	대한민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타이완
아메리카(1개국)	칠레
오세아니아(2개국)	뉴질랜드, 호주
유럽(30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타, 모나코, 벨기에,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나. 우리나라와 VWP

-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우리의 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008년 4월 체결하고 동 가입요건 충족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그 결과 같은 해 11월 17일 미국 VWP에 가입
- 상호주의에 의해,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미국인도 90일까지는 무비자로 체류 가능

※ VWP 이용 방법은 부록 '미국비자'편 참조

Chapter 25 사회 · 문화 분야

한 · 미 대학생 연수 취업(WEST) 프로그램

가. 개요

- 어학 연수와 인턴 취업을 연계한 한 · 미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2008년 8월 한 · 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정부간 사업
- 기간은 어학연수 5개월, 인턴취업 최장 12개월, 여행 1개월 등 총 18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3-4학년(전문대는 2학년) 학생 및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인 졸업생들이 참가 대상
  - 기존 인턴십에 비해 참가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3개월→18개월)
- 5개월간의 어학연수를 통해 충분한 현지 적응기간을 확보하고, 유급 인턴으로 체재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학연수와 인턴십의 장점을 결합

추진경과

2008 8.6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연계하여 연간 최대 5천명이 참가할 수 있는 WEST 프로그램 시행 합의

2008 9.22 한 · 미 외교장관회담에서 WEST 양해각서를 서명하여 프로그램 시행을 위 한 기본 운영 골격 마련

2008 12.17 제1기 WEST 프로그램 시행 공고
- 공인 영어성적, 대학 평점, 학교추천서 및 참가계획서를 참가 요건으로 하여 각 대 학 및 대학교육협의회에서 1차 선발(09.1)
- 외교부 글로벌인턴지원단의 영어면접과 스폰서 기관의 서류심사 및 영어인터뷰를 통해 최종 참가자 190명 확정(09.2)
  ※ 저소득층(장애인 3명 포함) 34명에 대해 참가비용 1,683만원 지원

2009 3 제1기 WEST 프로그램 실시
-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3.11)
- 3월말부터 미국 현지 스폰서별 소속 어학연수기관으로 출국, 어학연수 실시
  ※ 뉴욕 · LA 등 7대 도시에 분산되어 실시
- 어학연수기간중 인턴 구직 실시

2011 6 제1기 귀국자(2010.9 귀국) 중 졸업생 상당수가 국내외 취업
  ※ 2011년부터는 국내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참여 기회 부여

2013 10 제1기 출범 이래 약 1,800여명 참가, 현재 제13기 WEST 프로그램 추진중
  ※ 다양한 참가자 지원방안 모색
  -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확대(기초생활수급자→소득 5분위 계층), 어학연수비 대출 등 참가자 지원방안 마련
  - 스폰서 기관 추가 지정 및 한인기업 등을 통한 현지 인턴 확보
  - 주미 공관별 WEST 담당자 지정, 미국 현지(뉴욕) 주재원 운용, 한인단체 등을 통한 멘토링 제도 운영 추진 등
  - 2011년부터는 국내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참여 기회 부여

2013 11.1~ 5년간 WEST 프로그램 연장
- '13.10.31 만료 예정인 WEST 프로그램의 5년간 연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5월)
- 한 · 미간 WEST 프로그램 연장 관련 MOU 서명식 개최(10.29)

Chapter 26

한인 이주 역사

한인 이주 역사

한국에 있어서 최초의 미국 이민은 1902년 하와이 설탕재배자협회의 비숍회장이 내한하여 대한제국 정부와 이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시작

- 19세기 중후반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하와이의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들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극동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각국에 하와이의 풍물, 작업내용, 미국달러로 임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각 항구도시에 붙여 이민 노동자를 모집
- 한국에도 한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포스터가 붙었는데, 그 결과 102명의 사람들이 1903년 1월 미상선 갤릭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

한인 노동자 모집

한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포스터에는 "하와이는 기후가 온화해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고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년 내내 어떤 절기든지 직업을 얻기가 용이하다"고 명시. 이 광고지는 "하와이는 나무에도 돈이 열린다"라는 소문과 함께 퍼져나갔고 지원자들이 대거 지원

- 이후 1905년까지 약 7,200명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이민했으며, 1910년부터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들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의 처녀(사진신부)들이 하와이로 이주

사진결혼

사진결혼은 하와이나 본토에 이민 온 노총각이 고향의 처녀에게 사진을 보내서 선을 보고, 미주로 시집가기를 원하는 사진신부(Picture Bride) 를 맞이하는 한국과 미국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색다른 동족간의 결혼제도

미국 동포사회의 정착

- 미국 이민이 시작된 이래 해방 때까지 하와이 사탕수수노동자와 더불어 독립운동가와 유학생의 이주가 이어졌고, 해방이후에는 미군 병사와의 혼인, 전쟁고아, 입양, 유학 등을 사유로 이주가 증가
- 이후 1965년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이민개정법으로 의사, 간호사 등 취업 이민이 증가했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미국 내 불경기로 전문직 이민이 억제된 대신 노동직, 기능직, 서비스직, 농업 이민이 증가

미국 동포 사회의 형성 및 발전 과정

시기	내용
1903년~1945년	하와이 사탕수수노동자(102명)로 이민 시작(1903.1.13)
1945년~1950년대	해방이후 미군진주, 한국전쟁을 거치며 이주자 증가, 향후 가족초청 연쇄이민의 기틀 마련
1960년대	1965년 미국이민법 개정으로 취업 이민 증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계속된 미국내 불경기로 전문직 이민 억제, 가족초청 및 블루칼라 이민 증가
1980년대~현재	동포사회 발전 및 안정기

오늘날의 미국 동포사회

- 오늘날 200만 명이 넘는 재미교포가 LA,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대도시 주변에 동포사회를 뿌리 내리고 있으며, 미국 내 아시아계 중에서는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에 이어 5번째를 차지
- 재미동포는 어린 나이 이민을 간 1.5세대와 현지에서 출생해 성장한 2세대의 비중이 커져가는 세대교체를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요 취업 업종도 이전의 자영업 · 서비스업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영어구사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 · 사무직으로 옮겨가 주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추세

코리아타운(Koreatown)

한인 밀집지역 내지 상업 지구를 뜻하는 코리아타운은 미국 내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큰 규모.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한국인 거리로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코리아타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밖에 댈러스, 시카고, 애틀랜타, 오클랜드 등지에도 대규모의 코리아타운이 형성

LA의 코리아타운 표지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866-1900

1866.8	(고종 3년) 미 상선 General Sherman호 사건
1871.5	(고종 8년) 신미양요
1882.5.22	(고종 19년) 조 · 미 평화, 우호, 통상, 항해조약 서명(조 · 미간 최초 협정)
1883.5.19	조 · 미간 평화, 우호, 통상 항해조약(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비준서 교환(서울)
1883.5.19	Foote 초대 주조 미공사, 고종에게 신임장 제정
1883.6.4.	미 대통령, 조 · 미간 평화, 우호, 통상 항해조약(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공포
1888.1.17	박정양 초대 주미 공사, Cleveland 미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1901-1950

1905.1.29	주한 미 공사관 폐쇄
1905.7.29	미 · 일 가쓰라-태프트 밀약 –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 인정
1905.12.16	주미 공사관 폐쇄
1941.12.7	일본 진주만 기습, 태평양 전쟁 발발
1943.11.27	미 · 영 · 중 3국간 카이로 선언 – "한국 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게 독립" 시키기로 합의
1945.2.4.-11	미 · 영 · 소 얄타회담 – 유럽 전후처리 및 대일전 문제 협의
1945.4.12	Truman 미 대통령 취임
1945.7.26	미 · 중 · 영 3개국 수뇌, 포츠담 선언
1945.8.15	8 · 15 해방
1945.9.8	미군정(1945.9.8~1948.8.15) 실시
1945.12.27	모스크바 3상(미 · 영 · 소)회의
1946.3.20	제1차 미 · 소 공동위원회 개막(서울)
1946.5.6	제1차 미 · 소 공동위원회, 한국 임시정부 수립문제로 결렬
1946.6.3	이승만 정읍발언(남한 단독정부수립론)
1947.5.21	제2차 미 · 소 공동위원회 개최
1947.11.14	국제연합 제3차 총회, 한국 관련 결의 – 미국의 제안에 따라 9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의 한국특별위원회(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설치 – 동 위원회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 실시, 통일정부 수립
1948.1.12	유엔 임시 한국위원회 최초 회의 개최(서울) – 소련은 동 위원회 접수를 거부
1948.2.26	유엔 한국문제 소총회, 미국이 제안한 "가능지역선거안" 채택
1948.5.10	대한민국 제헌국회 구성 – "가능지역선거안"에 따라 38선 이남에서만 선거 실시
1948.7.24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제1대~제3대)
1948.8.11	「대한민국에 대한 정권이양 및 미 점령하의 철수에 관한 한 · 미간 협정」각서 교환
1948.8.13	미 정부, 한국을 사실상 승인, 미 외교 대표에 Muccio 대사 임명
1948.8.15	대한민국정부 수립
1948.8.23	Muccio 주한 미국 외교대표(대사로서 대통령의 특별사절) 착임
1948.8.26	주한 미국외교 대표부(Diplomatic Mission to Korea) 개설
1948.9.8	미군정으로부터의 행정권 인수 완료에 관한 한 · 미 공동 성명 발표
1948.9.9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1948.9.18	소련 외무성,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병력이 1948.12말까지 전원 철수한다고 주소 미 대사관에 통고
1948.10.12	소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승인
1948.10.30	유엔 임시한국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남 · 북 평화교섭 달성시까지 미군이 주둔할 것을 유엔총회에 요청
1948.12.12	유엔총회,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46:6)하고 유엔한국위원단(U.N. Commision on Korea) 설치안 가결
1949.1.1	미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백악관 발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49.2.2	초대 주미대사로 장면 임명
1949.2.20	주한 미합중국 공사관, 대사관 승격
1949.3.14	미 정부, Muccio 주한 외교대표를 주한 초대 미 대사로 임명
1949.3.25	주미 한국대사관 개설(장면 초대 주미대사, Truman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1949.4.20	주한 미대사관 개설(Muccio 초대 주한 미대사, 이승만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1949.6.29	주한 미군 철수 완료
1949.7.1	주한 미군사 고문단(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설치
1950.1.26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서명(1949.7.1자로 소급 발효)
1950.1.26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 원조협정" 서명, 발효
1950.2.14	중소 상호우호동맹조약 체결
1950.6.25	6 · 25 전쟁 – 미국, 유엔 사무총장에게 즉각적인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 –유엔 안보리,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 한국정부, 미국에 군사원조 요청
1950.6.27	유엔안보리, 대북한 군사제재 및 대한 군사지원 결의
1950.6.30	Truman 대통령, 미지상군 한국 출동 명령
1950.7.3	MacArthur 연합군 총사령관, 미해병대 한국 출동명령
1950.7.7	유엔 안보리, 유엔통합군 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 채택
1950.7.8	Truman 대통령, MacArthur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
1950.7.12	대전협정(한국군 통수권 미군 이양에 관한 협정) 체결
1950.7.15	이승만 대통령,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부여
1950.9.15	유엔군 인천상륙작전 감행
1950.9.28	유엔군, 서울 수복
1950.10.19	유엔군, 평양 점령
1950.11.30	Truman 대통령, 여하한 사태에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1951-1960

1951.1.5	중공군, 서울 점령 – 유엔군이 3.14 재탈환
1951.4.11	Truman 대통령은 MacArthur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사임하고 후임에 Rideway 중장을 임명
1951.5.18	유엔총회, 북한 · 중공에 대한 금수조치 권고 결의 채택
1951.6.8	Marshall 미 국무장관 한국전선 시찰
1951.6.23	Malik 주유엔 소련대사, 한국전쟁 휴전협상 제의
1951.7.10	휴전회담(개성) 시작
1951.9.8	미일 상호협력안보조약(구 안보조약) 서명
1951.11.22	Barclay 부통령 방한
1952.5.11	유엔군 총사령관에 Clark 장군 임명
1952.5.24	한 · 미 경제조정협정(마이어협정) 체결
1952.12.2-5	Eisenhower 대통령 방한, 이승만 대통령과 정상회담
1952.12.14	한 · 미 경제조정협정(마이어협정) 조인
1953.1.20	Eisenhower 미 대통령 취임 *변영태 외무부장관 방미, 취임식 참석
1953.6.8	유엔군 · 공산군 병상포로교환협정 체결
1953.7.27	휴전협정 조인
1953.8.3	Dulles 미 국무장관 방한
1953.10.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조인
1953.11.12	Nixon 부통령이 극동지역 친선방문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미 대통령 친서 전달)
1953.12.24	Radford 합참의장 방한
1954.4.26	제네바회의 – 월남을 17도선으로 분리키로 합의, 한반도 문제는 합의 실패
1954.5.16	Wilson 미 국무장관 방한
1954.7.25-8.13	이승만 대통령 방미, Eisenhower 대통령과 정상회담(7.30) *7.28 의회 합동연설
1954.11.17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 · 미간의 합의의사록」 서명(변영태 외무부장관-Briggs 주한 미 대사)
1955.4.22	「한 · 미간 민간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성립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55.10.6	Hoover Jr. 국무차관 방한
1956.1.9	Radford 합참의장 방한
1956.3.17	Dulles 미 국무장관, 방콕에서 개최된 SEATO 회의 참석차 방한
1956.11.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 통상, 해운조약」 서명(서울) – 1957.11.7. 발효
1957.1	"아이젠하워 독트린" 발표
1957.9.16	Herter 국무차관 방한
1958.10.8	McElroy 미 국무장관 방한
1959.9.28	McElroy 미 국무장관 방한
1959.12.1	유엔총회, 유엔 한국재건단(UNKRA) 설치 결의 채택
1960.3.15	3 · 15 부정선거
1960.4.19	4 · 19 혁명
1960.6.19	Eisenhower 대통령 방한(6.19–20), 허정 국무총리와 회담 *공동성명 발표
1960.8.12	윤보선 대통령 취임
1961-1970	
1961.1.20	Kennedy 미 대통령 취임
1961.5.16	5 · 16 군사쿠데타
1961.5.17	한 · 미 공동성명 발표, 작전권 유엔군에 이양
1961.11.4	Rusk 미 국무장관 방한
1961.11.14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방미(11.11–25), Kennedy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1962.10.16	김종필 특사 방미
1963.10.15	박정희 대통령 당선(제5대~제9대)
1963.11.22	Kennedy 대통령 암살, Johnson 대통령 취임
1963.12.17	박정희 대통령 취임
1964.1.28	Rusk 미 국무장관 방한
1964.5.8	미국, 한국 등 25개국에 월남전 지원 요청
1964.8	Johnson 대통령 통킹만 결의안 통과
1964.9.22	한국군 월남 파병
1964.10.16	중국 핵실험 성공
1965.3.15-17	이동원 외무부장관 방미
1965.5.18	박정희 대통령 방미(5.16–18), Johnson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1965.11.28	이동원 외무부장관 방미
1966.1.1-2	Humphrey 부통령 방한
1966.2.22-23	Humphrey 부통령 방한
1966.2.25	「한 · 미합의의사록」(브라운 각서) 작성
1966.7.8-9	Rusk 미 국무장관 방한
1966.7.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 – 1967.2.9 발효
1966.11.2	Johnson 대통령 방한(10.31–11.2),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1967.3.11	정일권 국무총리 방미, Johnson 대통령과 회담
1967.6.30-7.3	Humphrey 부통령 방한
1967.10.30-11.1	제1차 한 · 미 상공부장관 회담(서울)
1968.1.21	1 · 21 사태(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1968.1.23	미 정보함 Pueblo호 사건 발발
1968.4.17	박정희 대통령 방미(4.17–20), Johnson 대통령과 정상회담(호놀룰루) *공동성명 발표
1968.5.27-28	제1차 한 · 미 국방각료회의(워싱턴)
1969.1.20	Nixon 미 대통령 취임
1969.3.22	Albert 의장 등 한 미 하원의원단 방한
1969.3.29	정일권 국무총리, Eisenhower 前 대통령 장례식 참석차 방미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69.6.3-4	제2차 한 · 미 국방각료회담(서울)
1969.7.25	"닉슨 독트린" 선언, 주한미군 부분 철수 시작
1969.7.31-8.1	Rogers 미 국무장관 방한
1969.8.22	박정희 대통령 방미(8.20–8.23), Nixon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1969.9.14	3선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 변칙 통과
1969.12.11	대한항공기 납북사건 발생
1970.7.21-22	제3차 한 · 미 국방각료회담(호놀룰루) *1971년부터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로 명칭 변경
1970.8.24-26	Agnew 부통령 방한
1971-1980	
1971.1.2	Bloomfield 상원 외무위원장 방한
1971.6.29	Agnew 부통령 방한
1971.6.30	주한미군 2만 병력 철수
1971.7.12-13	제4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1971.8.9	Albert 하원의장 등 미 하원의원단 방한
1972.2.27	미 · 중 상하이공동성명
1972.6.25-27	제5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콜로라도)
1972.7.4	7 · 4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2.8.29	남북적십자 본회담 첫 개최(평양)
1972.10.17	박정희 대통령 "10월 유신" 단행
1972.11.13	Haig 미 대통령 특사 방한
1973.1.20	Haig 미 대통령 특사 방한
1973.1.27	파리평화협정 체결
1973.3.29	주월 한국군 및 미군, 베트남에서 철수 완료
1973.7.18-20	Rogers 미 국무장관 방한
1973.8.27	Porter 국무차관 방한
1973.9.12-13	제6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서울)
1973.11.16	Kissinger 미 국무장관 방한
1974.3.20-22	김동조 외무부장관 방미, Kissinger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74.3.25	북한,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74.8.9	Ford 미 대통령 취임
1974.8.15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발생
1974.9.23-24	제7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호놀룰루)
1974.11.22	Ford 대통령 방한(11.22–23),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1975.3.28	김동조 외무부장관, Kissinger 미 국무장관과 회담(워싱턴)
1975.4.30	사이공 함락(베트남 통일)
1975.5.6	Ford 대통령, 북한의 남침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
1975.8.26-27	제8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서울)
1975.9.22	김동조 외무부장관 방미, Kissinger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75.11.22	김동조 외무부장관 방미, Kissinger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75.12.7	Ford 대통령, "태평양 독트린" 발표
1976.4.9	박동진 외무부장관, Kissinger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76.4.9-27	제9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미국)
1976.6.7	한 · 미 팀스프리트 훈련 첫 실시
1976.7.22	Kissinger 미 국무장관, 시애틀 소재 로터리클럽 및 시애틀 상공회의소 합동회합에서 한반도 휴전당사국 회담(한국, 미국, 중공, 북한) 개최를 재차 제의)
1976.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발생
1976.9	유엔 한국문제 상정 중단(제31차 총회)
1976.9.27	박동진 외무부 장관 방미, Kissinger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76.9.30	Kissinger 미 국무장관, 제3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당사국회담과 한국과 북한에 대한 교차승인 재차 제의
1977.1.20	Carter 미 대통령 취임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77.3.7-10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미, Carter 대통령과 회담
1977.3.9	Carter 대통령, 주한미지상군 철수계획 발표
1977.3.17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미, 주UN 미국대사 및 Waldheim UN 사무총장과 회의
1977.7	한 · 미 양국, 주한미군 철수 보완조치 합의 – FMS 11억불, 군사장비 8억불 무상 이양, 한 · 미 연합사 창설 등
1977.7.25-26	제10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서울)
1977.9.6	미 법무부, 박동선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
1977.9.15-10.6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미, Van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78.3.2-8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미, Van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78.4	Carter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규모 축소
1978.5.24-25	Brzezinski 안보담당 보좌관 방한
1978.7.26-27	제11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샌디에고)
1978.9.20-10.14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미, Brzezinski 보좌관, Holbrooke 차관보 등과 현안 협의
1978.10.6-8	Braun 국방장관 방한, 한 · 미 연합사(CFC) 창설식 참가
1979.1.2-5	Wolf 하원 아 · 태위원장 일행 방한
1979.2.15-23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미, Van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79.4.10-12	제9차 한 · 미 상공부장관 회의 개최(워싱턴)
1979.5.6-9	미 국무부 Lake 정책기획실장 방한, 제1차 한 · 미 정책협의회 개최(경주)
1979.7.1	Carter 대통령 방한(6.30–7.1),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남 · 북한과 미국간의 3당국회담 제의했으나 북한 거부(7.10 외교부 성명)
1979.9.27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미, Van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79.10.17-19	제12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피살
1979.11.3	Vance 미 국무장관 방한
1979.11.9-12	제11차 한 · 미 경제정책협의회 개최
1979.12.12	12 · 12 쿠데타
1979.12.21	최규하 대통령 취임
1980.1.6-8	Wolf 하원 외무위 아 · 태소위원장 등 의원단(17명) 방한
1980.2.7-8	한 · 미 해운회담 개최
1980.2.13-26	이한빈 부총리 방미
1980.4.11-15	박동진 외무부장관 방미, Van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80.5.18	5 · 18 광주민주화운동 발발
1980.9.1	전두환 대통령 취임
1980.12.13	Braun 국방장관 방한
1981-1985	
1981.1.20	Reagan 미 대통령 취임
1981.2.2	전두환 대통령 방미(1.28–2.7), Reagan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1981.3.1-5	Percy 상원 외교위원장 등 대통령 취임 경축사절단 방한
1981.4.28-30	제13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샌프란시스코)
1981.6.23-24	제1차 한 · 미 경제위원회 개최(서울)
1981.7.12-8.6	정래혁 국회의장 방미
1981.9.22-10.11	노신영 외무부장관 방미
1981.11.2-3	제2차 한 · 미 정책협의회 개최
1981.11.24-25	Mondale 前 부통령 방한
1982.1.25-27	제1차 한 · 미 문화교류위원회 개최(워싱턴)
1982.2.28	주 보스톤, 마이애미 총영사관 폐쇄
1982.3.30-31	제14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서울)
1982.4.25-27	Bush 부통령 방한
1982.5.13	한 · 미 상공장관 회의(워싱턴)
1982.6.26-27	이범석 외무부장관 방미
1983.2.6-8	Shultz 미 국무장관 방미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83.3.30-4.5	Hatfield 상원 세출위원장 방한
1983.3.31-4.2	한 · 미 경제협의회 개최(워싱턴)
1983.4.14-15	제15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워싱턴)
1983.4.27-5.6	이범석 외무부장관 방미
1983.7.14-15	제3차 한 · 미정책협의회 개최(워싱턴)
1983.8.6-10	Solarz 하원 아 · 태소위원장 방한
1983.9.1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
1983.9.1-3	Helms 상원 농업위원장 방한
1983.9.21-22	Cooper 미무역대표부(USTR) 대사 방한
1983.10.9	미얀마 아웅산 묘역 폭파사건 발생
1983.10.13-14	Weinberger 국방장관 방한
1983.10.27-11.4	제7차 한 · 미 원자력공동위 개최(서울)
1983.11.12-14	Reagan 대통령 방한 – 한 · 미 공동성명 발표(11.14)
1983.11.30-12.2	이원경 외무부장관 방미
1984.1.10	Reagan 대통령, 남 · 북한 · 미 · 중 4자회담 제의 (– 북한은 같은 날 남 · 북한 · 미국간 3자회담 개최 주장)
1984.4.18	Baker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방한
1984.5.1-2	Shultz 미 국무장관 방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회담
1984.5.8-5.10	Weinberger 국방장관 방한
1984.5.9-10	제16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서울)
1984.9.25-10.9	이원경 외무부장관 방미
1984.10.30-31	제4차 한 · 미 정책협의회 개최(서울)
1984.12.21-22	Percy 상원 외교위원장 방한
1985.2.13-17	Thurmond 상원 법사위원장 방한
1985.4.7-10	Murkowski 상원 동아 · 태 소위원장 방한
1985.4.26	전두환 대통령 방미(4.24–29), Reagan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1985.5.7-8	제17차 한 · 미 안보협의회의(워싱턴)
1985.7.1-2	제4차 한 · 미 경제협의회(워싱턴)
1985.7.3-5	Kissinger 前 미 국무장관 방한
1985.8.11-15	Burton 하원의장 방한
1985.8.16-18	Dole 상원공화당 원내총무 일행 방한
1985.8.29-31	Fugua 하원 과학기술위원장 방한
1985.8.30-9.1	Nixon 前 대통령 방한
1985.9.20	남북교향방문단 첫 상호 교환방문
1985.10.18-25	노신영 국무총리 제40차 유엔총회 참석
1985.12.4-5	제5차 한 · 미 정책협의회(워싱턴)
1985.12.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86-1988	
1986.1.2-4	Goldwater 상원 군사위원장 방한
1986.1.4-7	Fuqua 하원 과학기술위원장 일행 방한
1986.1.6-10	Danforth 상원 통상과학운수위원장 일행 방한
1986.1.13-16	Webster FBI 국장 방한
1986.1.15-17	Hatch 상원 노동위원장 일행 방한
1986.2.8-10	Rowny 군축문제 특별보좌관 방한 – 미 대통령 특사로 군축문제 협의(4.22–23, 7.28–30, 재방한)
1986.3.5-10	이재형 국회의장 방미
1986.3.28-4.1	Solarz 하원 아 · 태 소위원장 방한
1986.4.1-3	Weinberger 국방장관 방한
1986.4.3	제18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1986.5.7-8	Shultz 미 국무장관 방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회담
1986.9.5-6	제6차 한 · 미 정책협의회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86.9.23	최광수 외무부장관 방미, Shultz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87.3.4-6	Shultz 미 국무장관 방한
1987.3.6-10	Sigur 미 국무부 동아 · 태담당 차관보 방한
1987.4.15-19	Solarz 하원 아시아 · 태평양 소위원장 위원장 방한
1987.4.18-21	Baldrige 상무장관 방한(제12차 한 · 미 상공장관 회담 참석차)
1987.4.20-21	제12차 한 · 미 상공장관 회담(서울)
1987.4.26-5.11	이기백 국방장관 방미 – 제19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 참석
1987.5.6	「한 · 미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표(외무부고시 131호)
1987.5.6-7	제19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 – 핫라인 설치 – 한 · 미 탄약 현대화 협정 서명
1987.5.6-17	한 · 미 해운협의회(워싱턴)
1987.5.13-15	한 · 미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 사무회의(서울) – 양해각서 서명
1987.5.18	「제법특허 출원의 물질 보호 제공에 관한 한 · 미간의 교환각서」 발효 (조약 923호)
1987.5.20	「한 · 미간의 미국 연해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 교환(1987.10.27. 발효, 외무부고시 144호)
1987.5.20	Wickham 육군참모총장 방한
1987.6.29	6 · 29 민주화 선언
1987.6.29-30	제6차 한 · 미 경제협의회(워싱턴)
1987.7.6-7	한 · 미 항공회담(워싱턴)
1987.8.7	「한 · 미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 교환(1987.7.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40호)
1987.8.30-9.2	Cranston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방한
1987.9.8-12	Armitage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방한
1987.9.10-11	제7차 한 · 미 정책협의회(워싱턴)
1987.9.13-17	노태우 민정당 총재 방미
1987.9.24	최광수 외무장관 방미, Shultz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87.9.24	「한 · 미간의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발표(조약 940조)
1987.10.10-13	Ford 前 대통령 방한
1987.10.19-23	Brown 국방장관 방한
1987.10.27	「한 · 미간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 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44호)
1987.10.29-31	Armacost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87.11.3-4	한 · 미 직유 쿼타협상(서울)
1987.11.4-6	「한 · 미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 각서」 발효(외무부고시 147호)
1987.11.29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발생(버마 상공)
1987.12.2-9	Allen 前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방한
1987.12.16	Rowny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방한
1988.1.4-7	Solarz 하원 아 · 태 소위원장 방한
1988.1.20	미 정부, KAL기 폭파사건 관련 3개항의 대북한 제재조치 발표 – 국제테러국 지정 포함
1988.2.24-26	Baker 재무장관 방한(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1988.2.25	노태우 대통령 취임
1988.5.9	박동진 제13대 주미대사 부임(7.5, 신임장 제정)
1988.5.10-11	Taft 국방부 부장관 방한
1988.5.16-19	Kissinger 前 미 국무장관 방한
1988.6.5-7	Rowny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방한
1988.6.7-9	Carlucci 국방장관 방한
1988.6.7-9	제20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1988.7.7	노태우 대통령 7 · 7 선언 발표
1988.7.16-18	Shultz 미 국무장관 방한
1988.718	제6차 한 · 미 외무장관 회담(서울)
1988.8.15-17	Hollings 상원 통상 · 과학위원장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88.9.12-22	Derwinski 미 국무부 차관 방한
1988.9.15-18	Walters 주유엔 미국대사 방한
1988.9.17	서울올림픽대회 개막(북한 불참)
1988.9.30	제7차 한 · 미 외무장관 회담(뉴욕)
1988.9.30-10.5	Armacost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88.10.20	노태우 대통령 UN총회 참석차 방미(10.17–22), Reagan 대통령과 정상회담(워싱턴) *10.18 유엔총회 연설
1988.12.1-2	제8차 한 · 미 정책협의회(서울)
1988.12.6	제1차 미 · 북한 북경 접촉
1989-1992	
1989.1.20	Bush 미 대통령 취임
1989.2.27	Bush 대통령 방한,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
1989.6.10-18	김영삼 민주당 총재 방미
1989.6.17-7.1	김종필 공화당 총재 방미
1989.7.18-19	제21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워싱턴)
1989.7.20-28	최호중 외무장관 방미 – 한 · 미 외무장관 회담(7.25)
1989.9	불란서 상업위성 SPOT, 영변핵시설 촬영 및 공개
1989.9.11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1989.9.19-21	Quayle 부통령 방한
1989.9.26	한 · 미 외무장관 회담(뉴욕) – 제44차 유엔총회 참석
1989.10.17	노태우 대통령 방미(10.15–20),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의회 양원 합동의원 연설(10.18)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1989.11.10	베를린 장벽 붕괴
1989.12.2	미소 몰타 정상회담(냉전의 종식 선언)
1990.1.22-26	Derwinski 원호장관 방한
1990.2.14-17	Cheney 국방장관 방한
1990.3.27-29	Lehman 군축처장 방한
1990.4	미 정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Ⅱ)" 발표 – 미 국방부,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3단계 철수안(이에 따라 92년말까지 주한미군 7,000명 감축) 대의회 보고
1990.4.9-12	한 · 미 항공회담(서울)
1990.6.6	노태우 대통령 방미(6.3–8),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 소 정상회담(6.4, 샌프란시스코)
1990.7.3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싱가폴) 참석 계기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1990.9.6-7	Brady 재무장관 일행 방한
1990.9.21	제9차 한 · 미 정책협의회(워싱턴)
1990.9.26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 · 미 외무장관 회담(뉴욕)
1990.11.14-15	제22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워싱턴)
1990.12.11-23	대미통상 관련 조순 특사 방미
1991.1	한국군 걸프전 파병
1991.1.4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안 서명
1991.1.14-15	한 · 미 경제협의회(서울)
1991.1.25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서명
1991.2.8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1991.3	군정위 유엔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 – 이후 북한은 군정위 회의 불응
1991.4.5-6	Mosbacher 상무장관 방한
1991.4.20-28	이봉서 상공장관 방미
1991.4.29-5.3	이상옥 외무장관 방미, Baker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91.5.10-12	Wolfowitz 국방부 정책차관 일행 방한
1991.5.13	제16차 미 · 북한 북경 접촉
1991.5.21-24	Weinberger 前 국방장관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1.6.4-6	Lehman 군축처장 방한
1991.7.2	노태우 대통령 방미(7.1-3),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1991.7.25	한 · 미간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HNS) 타결 - 1992.12.23 발효
1991.7.30	제17차 미 · 북한 북경접촉
1991.8.6-7	한 · 미 고위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하와이)
1991.9.17	남북 동시 유엔 가입
1991.9.23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9.22-25),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9.24 유엔 연설
1991.11.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991.11.13	이상옥 외무장관- Baker 미 국무장관간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개최
1991.11.20-22	제23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1991.12.18	노태우 대통령 핵부재 선언
1991.12.21	Solarz 하원의원(동아 · 태소위 위원장) 방한(12.15-17 방북후)
1992.1-6	Bush 대통령 방한(1.5-7),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1992.1.7	한 · 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발표
1992.1.20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1992.1.21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1992.1.22	제1차 미 · 북한 고위급 접촉(뉴욕) - Kanter 정무차관-김용순
1992.2.24	제10차 한 · 미 경제협의회(워싱턴) - 유종하 외무차관 참석
1992.2.27-31	Lehman 군축처장 방한
1992.3.6	미국, 북한 · 이란에 대한 MTCR 제재조치 - 94.3.6 종료
1992.4.29-5.1	제2차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워싱턴)
1992.5.13-15	Kanter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92.5.24-6.1	한봉수 상공부장관 방미
1992.6.1	제23차 미 · 북한 북경접촉
1992.6.14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기공식
1992.6.22	미야자와 일수상, 아 · 태 다자안보기구 구상 언급(기자회견)
1992.6.23	미국, 북한 · 시리아에 대한 MTCR 제재조치 - 1994.6.23 해제
1992.6.30	제24차 미 · 북한 북경접촉
1992.7.2	미야자와 일수상, 한반도 관련 4강협력 구상 제기 - 워싱턴 NATIONAL PRESS CLUB 연설
1992.7.26	한 · 미 외무장관회담(마닐라)
1992.8.2-3	Perkins 주유엔 미국대사 방한
1992.8.10	NYT, 아 · 태 집안안보체제 구축 촉구
1992.9.27-10.1	Mondale 前 부통령 방한
1992.10.3-6	Schultz 前 미 국무장관 방한 - 서울 평화상 수상(10.5)
1992.10.8	제24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
1992.10.14-16	한 · 미 · 일 3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서울)
1993-1994	
1993.1.20	Clinton 미 대통령 취임
1993.2.24-28	Ackerman 하원 아 · 태소위 위원장 방한
1993.2.25	김영삼 대통령 취임
1993.3.7-12	북한 핵문제 관련 한 · 미 고위협의회(워싱턴)
1993.3.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1993.3.9-18	93년도 T/S 훈련 실시 - 1.26 실시 발표
1993.3.22	한 · 미 · 일 고위 실무협의회(뉴욕)
1993.3.25-30	한승주 외무장관 방미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3.4.7-8	Robb 상원 동아 · 태 소위원장 방한
1993.4.7-8	Nixon 前 대통령 방한
1993.4.11-20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방미
1993.4.13	한 · 미 · 일 고위실무협의회(뉴욕)
1993.4.21-23	Tarnoff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93.5.9-12	Perry 국방부 부장관 방한
1993.6.2	미 · 북한 제1단계 제1차 고위회담(뉴욕) - Gallucci 차관보-강석주 부부장
1993.6.4	미 · 북한 제1단계 제2차 고위회담(뉴욕)
1993.6.24	제11차 한 · 미 경제협의회(서울)
1993.6.10	미 · 북한 제1단계 제3차 고위회담(뉴욕)
1993.6.11	미 · 북한 제1단계 제4차 고위회담(뉴욕) - 북한, NPT 탈퇴 효력정지 선언
1993.7.10	Clinton 대통령 방한(7.10-11),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
1993.7.12-19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방미
1993.7.14	미 · 북한 제1단계 제5차 고위회담(뉴욕)
1993.7.16	미 · 북한 제2단계 제1차 고위회담(제네바) - Gallucci 차관보-강석주 부부장
1993.7.19	미 · 북한 제2단계 제2차 고위회담(제네바)
1993.8.12	한 · 미 · 일 고위실무회의 (뉴욕)
1993.8.13-16	하원 정보위 소속 의원단 방한 - Glickman 위원장 등 4명
1993.8.24	미 · 북한 유해송환 각서 - 군정위 채널을 통한 유해송환 협의 명시
1993.9.12-16	Larson 태평양지구 사령관 방한
1993.9.13-15	제3차 한 · 미 · 일 3자 외교정책협의회(일본 시즈오까)
1993.9.23-24	Deutch 국방차관 방한
1993.9.28-10.2	한승주 외무장관, UN 총회 참석 계기 Christopher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93.10.12-13	Ackerman 미 하원 아 · 태 소위원장 방한 - 10.9-12간 방북 후 판문점 경유 방한
1993.11.3-4	제25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서울)
1993.11.19-20	APEC 정상회의(시애틀)
1993.11.23	김영삼 대통령 APEC 정상회의(시애틀) 참석차 방미(11.17-24), Clinton 대통령과 정상회담
1993.11.23	제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1993.12.17	제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1994.1.18-20	Woolsey CIA 국장 방한
1994.2.10-12	한승주 외무장관 방미
1994.3.3	한 · 미, 94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1994.3.10-13	Gallucci 미 국무부 정치 · 군사 차관보 방한
1994.3.14-17	Wisner 국방부 정책차관 방한
1994.3.27-4.4	한승주 외무장관, 중국 · 유엔 · 미국 · 일본 방문
1994.4.15-19	Gallucci 미 국무부 정치 · 군사 차관보 방한
1994.4.16-18	Bush 前 대통령 방한 - 제43차 아시아 · 태평양 관광협회(PATA) 연차총회 기조연설
1994.4.16-21	Gallucci 미 국무부 정치 · 군사 차관보 방한
1994.4.19-21	Perry 국방장관 방한 - 1994.11월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합의
1994.4.22-24	제4차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제주)
1994.4.28	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 · 북한 협상 제의(외교부 성명)
1994.5.5-24	김대중 아 · 태평화재단 이사장 방미
1994.5.23-7.6	한 · 미 · 일 환태평양 합동군사 훈련(RIMPAC) 실시
1994.5.24	한 · 미 · 일 고위실무회의 (뉴욕)
1994.5.24	북한, 군정위 임무종료 선언(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 군정위 이외의 정전협정상 활동은 계속 유지 방침이라고 통보
1994.6.4	한 · 미 · 일 고위실무회의(워싱턴)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4.6.10-11	Tarnoff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94.6.15-18	Carter 前 대통령 방북 – 김일성, 경수로 제공 및 핵불사용 보장시 핵투명성 보장 용의, 지체없는 남 · 북 정상회담 용의 표명
1994.6.22	제12차 한 · 미 경제협의회(워싱턴)
1994.6.29-7.4	3단계 미 · 북 회담 관련 한 · 미 · 일 3자협의(워싱턴)
1994.7.8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1994.7.8	미 · 북한 제3단계 제1차 고위회담(제네바) – Gallucci 핵담당대사–강석주 제1부부장
1994.7.20-22	Gallucci 미 국무부 정치 · 군사 차관보 방한
1994.8.5-12	미 · 북한 제3단계 제2차 고위회담(제네바)
1994.8.9-11	Macke 태평양지역 사령관 방한
1994.8.16	한 · 미 사증발급 협정 개정 각서교환 발효
1994.9.5-9	한승주 외무장관 방미, Christopher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94.9.7-8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방미
1994.9.14-16	Gallucci 핵대사 방한
1994.9.23-10.17	미 · 북한 제3단계 제3차 고위회담(제네바) – 10.17 잠정합의서 채택, 10.21 대외발표
1994.9.29	한 · 미 외무장관회담(뉴욕)
1994.10.4-8	제26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
1994.10.18-19	Nunn 상원 군사위원장 방한
1994.10.21	미 · 북한 제네바합의 서명(Gallucci–강석주) –핵동결, 연락사무소 교환, 경수로지원, 중유지원, IAEA full compliance, 폐연료봉 반출, 핵시설 해체
1994.10.21	한 · 미 '94 팀스피리트 훈련 취소 발표
1994.10.23-24	제5차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하와이) – 이장춘 외교정책실장, Steinberg 정책기획실장, 야나이 총합외교정책 국장
1994.11.8-10	Christopher 미 국무장관 방한
1994.11.12-19	제1차 미 · 북한 사용후 연료봉 전문가 회의(평양)
1994.11.18	한 · 미 · 일 고위실무자회의 (워싱턴)
1994.11.14	APEC 정상회의(인도네시아)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 한 · 미 · 일 정상회담 – 한 · 미 외무장관 회담(11.14)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1994.11.17	Nye 미 국방차관보, 동아시아 미군감축(EASI) 백지화 천명 – 동아시아에 10만 병력 계속 주둔
1994.11.18	한 · 미 · 일 3자협의(워싱턴)
1994.11.30-12.2	제1차 미 · 북한 경수로 전문가회의(북경)
1994.12.1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994.12.6-9	제1차 미 · 북한 연락사무소 전문가회의
1994.12.11-13	Murkowski, Simon 상원의원 남 · 북한 방문
1994.12.15-16	한 · 미 · 일 고위실무자 회의
1994.12.17-23	Richardson 하원의원 남 · 북한 방문
1994.12.28-30	주한미군 헬기 DMZ 월경 격추사건 발생(HALL 준위사건) – 북한, 12.30 Hubbard 부차관보에게 억류승무원 인도
1995-1996	
1995.1.19	대북한 중유 제1차 선적분(5만톤) 인도
1995.1.19-20	나웅배 통일외무위원장 방미
1995.1.19-20	Shalikashvili 합참의장 방한
1995.1.19-28	제2차 미 · 북한 사용 후 연료봉 전문가회의(평양)
1995.1.20	미국, 대북한 제재조치 일부 해제
1995.1.23	북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반대 천명(외교부 담화)
1995.1.26-28	Talbott 미 국무부 부장관, Lord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1995.1.28-2.1	제2차 미 · 북한 경수로 전문가회의(백림)
1995.1.28-2.2	김철수 국제통상대사 방미
1995.2	미 정부, 신동아시아 · 태평양 전략 발표 –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보고서 발표(동아시아 10만 병력 유지)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5.2.4-7	공로명 외무장관 방미
1995.2.12-15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방미(워싱턴, 뉴욕)
1995.2.23-24	한 · 미 고위협의회(서울)
1995.3.7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창설
1995.3.9	폴란드 중감위 대표단 철수(축출)
1995.3.11-12	제6차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하꼬네)
1995.3.23-24	한 · 미 고위협의회(워싱턴)
1995.3.25-27	제3차 미 · 북한 경수로 전문가회의 1차회담(백림/SAMORE–이영호)
1995.4.10	미 · 북한 직통전화 개통(AT&T)
1995.4.12-13	제3차 미 · 북한 경수로 전문가회의 2차회담(백림)
1995.4.18-21	제3차 미 · 북한 경수로 전문가회의 3차회담(백림)
1995.5.4	북한 중감위 북측사무실 폐쇄
1995.5.8-19	한 · 미 RSOI 훈련(수용대기 전방이동 통합훈련) 실시
1995.5.9-10	한 · 미 · 일 양자 및 3자협의(서울)
1995.5.19-6.13	미 · 북한 경수로회담(쿠알라룸푸르) – Hubbard 부차관보–김계관 부부장
1995.6.6-7	Richardson 하원의원 방한(6. 3–6간 방북)
1995.6.9-11	Gallucci 미 국무부 핵대사 방한
1995.6.13	KEDO 집행이사회 개최(서울)
1995.6.13-14	Gallucci 미 국무부 핵대사 방한
1995.7.27	김영삼 대통령 방미(7.25–28), Clinton 대통령과 정상회담
1995.8.7-8	한 · 미 고위협의회(호놀룰루)
1995.8.15-22	제1차 경수로 부지조사단 파견(신포)
1995.8.21-24	Myers 의원 등 하원 세출위 위원단 방한
1995.8.25-30	Bereuter 하원 아 · 태소위원장 방한
1995.9.11-15	제1차 KEDO–북한 회담(쿠알라룸푸르) – Bosworth 사무총장–허종 대사
1995.9.16-17	제7차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 (경주)
1995.9.23-30	제3차 미 · 북한 연락사무소 전문가회의
1995.10.16-12.15	제2차 KEDO–북한 회담(뉴욕) – Bosworth 사무총장–허종 대사
1995.10.21-25	김영삼 대통령 유엔 방문
1995.11.3	제27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1995.11.17	APEC 정상회의(일본) 계기 한 · 미 · 일 외교장관 회담 * 공동성명 발표
1995.11.24	제3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1995.12.1	제3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1995.12.15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서명
1996.1.11-13	제1차 미 · 북한 MIA(Missing In Action) 회담
1996.1.12-13	Bush 前 대통령 방한
1996.1.24-25	한 · 미 · 일 고위협의회(호놀룰루)
1996.2	미 정부, 대북한 식량지원(2백만불 상당)
1996.2.22	북한, 미 · 북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 – 공동군사기구 설치 및 이를 위한 미 · 북 협상 제의
1996.3.1-4	제1차 ASEM 정상회담 개최 – 제3차 ASEM 정상회담 한국개최 결정
1996.3.19-21	Prueher 태평양 사령관 방한
1996.3.23-30	KEDO 사무총장단 방북
1996.3.25-28	공로명 외무장관 방미
1996.4.5	북한, 비무장지대 의무포기 선언(비무장지대 무효화 선언)
1996.4.6-7	제8차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하와이)
1996.4.15-16	Perry 국방장관 방한
1996.4.16	Clinton 대통령 방한, 공로명 외무장관과 회담(제주도)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 4자회담 공동제의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6.4.20	제1차 미 · 북 미사일 회담(백림)
1996.4.25-27	제2차 미 · 북한 MIA 회담(뉴욕)
1996.4.27	영변 사용후 연료봉 canning 개시
1996.5.3-7.11	한 · 미 RIMPAC '96 합동훈련
1996.5.4-9	제3차 미 · 북한 MIA 회담(평양)
1996.5.13-14	제2차 한 · 미 · 일 고위협의회(제주)
1996.5.24	미국, 북한, 이란에 대한 MTCR 제재
1996.6.8-15	제4차 미 · 북한 MIA 회담(평양) – 96.7월 및 9월 공동발굴조사 합의
1996.6.11	한국, 300만불 대북 식량지원 발표 – 6.12 미국 620만불, 6.14 일본 600만불 식량지원 발표
1996.6.21	미 의회 공화당 지도부, 대북 식량원조 반대에 관한 미 국무장관 앞 연명 서한
1996.7.10	경수로 부속의정서 서명식(뉴욕) – 특권 · 면제의정서, 통행의정서, 통신의정서
1996.7.11-27	제1차 미 · 북한 유해공동발굴 작업 – 96.9월 제2차 발굴작업은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취소
1996.7.14	Lake 대통령 안보보좌관 방한
1996.7.24	ARF(ASEAN Regional Forum, 인도네시아) 참석 계기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
1996.7.25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담화 – 미 · 북 잠정협정 협의를 위한 미 · 북 장군급회담 개최 및 이를 위한 실무협의 개시 제의
1996.8.18-19	Specter 미 상원 정보위원장 방북
1996.8.21-24	Hall 미 하원의원 방북
1996.9.18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강릉인근 해안, 26명)
1996.9.24	한 · 미 외무장관 회담(뉴욕)
1996.9.24	Robert Kim, 비밀문서 불법유출 혐의로 체포
1996.10.25-26	제9차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 (아와시마)
1996.11.1	제28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
1996.11.24	APEC 정상회의(캐나다)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 회담
1996.12.29	북한 잠수함 사건 사과(외교부대변인 성명)
1996.12.30	북한 잠수함 승무원 유해송환(판문점)
1997-1998	
1997.1.14-16	Levin 상원의원 방북(1.16–17 방한)
1997.1.15-17	Spence 하원 국가안보위 위원장 등 일행 9명 방한
1997.2.22-23	Albright 미 국무장관 방한(2.22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1997.3.5	4자회담 공동설명회 (뉴욕)
1997.3.7	미 · 북한 고위접촉 (뉴욕, Kartman 부차관보–김계관 부부장)
1997.3.8	한 · 미 · 일 실무협의회 (뉴욕)
1997.3.24-26	Gingrich 미하원의장 방한(서울–홍콩–북경–상해–동경–대만)
1997.3.28-29	Gore부통령 방한 (동경–북경–상해–서울)
1997.3.26-28	Stevens 상원 세출위원장(R–AK), Inouye 세출위 국방소위 간사등 방한 – 3.28–29 방북
1997.4.4-7	Hall 하원의원 방북
1997.4.9-11	Cohen 국방장관 방한
1997.5.3	남 · 북 적십자회담(북경)
1997.5.4-15	미 · 북한 유해송환 회담 (뉴욕)
1997.5.7	한 · 미 · 일 3자협의 (동경)
1997.5.21-24	유종하 외무장관 방미, Albright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97.5.23	북한 크루즈미사일 발사 실험(사정거리 120km, 서해안 안골 육군부대)
1997.5.25-28	Livingston 하원 세출위원장 방북 (5.28–30 방한)
1997.5.27-28	Baucus 상원의원 방북
1997.6.11-13	제2차 미 · 북 미사일회담 (뉴욕)
1997.6.12-13	한 · 미 · 일 3자협의(시애틀)
1997.6.23-27	김영삼 대통령 유엔 환경특별총회(뉴욕) 참석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개최
1997.6.25-26	미 · 북 유해송환 실무회담(뉴욕)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7.6.30	4자회담 차관보급 공동설명 후속협의
1997.7.11	Robert Kim, 군사기밀 누설죄로 미법정에서 징역9년 선고
1997.7.15-8.3	제1차 미 · 북한 MIA 공동발굴(운산군)
1997.7.16	북한군 14명 군사분계선 침투, 아측과 교전
1997.7.20-22	미 무기회사 간부 Ratcliffe, 한국법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1997.7.25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PMC)(쿠알라룸푸르) 계기 한 · 미 외무장관회담
1997.7.28	제1차 4자회담 예비회담
1997.8.5-7	미국, 대북한 MTCR 제재조치
1997.8.6	경수로 부지준비공사 착공
1997.8.9-11	제2차 미 · 북한 MIA 공동 발굴
1997.8.19	Goss 하원정보위원장 등 정보위 의원 7명 방북
1997.8.23-9.11	제3차 미 · 북 미사일회담 (뉴욕)
1997.8.27-29	제10차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경주)
1997.9.4.-5	일본인처 고향방문 협의를 위한 일 · 북 적십자회담(북경)
1997.9.6-7	장승길 관련 미 · 북 회담 (북경) – Kartman–김계관
1997.9.10	Roth 동아태차관보 방한
1997.9.11-12	장승길 관련 미 · 북 회담 (뉴욕)
1997.9.16	미국, 북한의 노동1호 실전배치 사실 포착
1997.9.16	제2차 4자회담 예비회담 (뉴욕)
1997.9.18-19	한 · 미 외무장관회담(UN총회 계기, 뉴욕)
1997.9.24	WFP 식량시찰단 방북(미,일,카,덴,EU,WFP)
1997.9.30-10.4	제3차 미 · 북한 MIA 공동 발굴
1997.10.4-23	Hall 하원 의원 방북 (10.16 방한)
1997.10.14-17	USAID 주관 북한 식량실태 조사단 방북
1997.10.25-11.4	제3차 4자회담 예비회담(뉴욕)
1997.11.22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 미 정상회담(캐나다)
1997.11.24	미 · 북 유해회담(뉴욕)
1997.12.3-6	제29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워싱턴)
1997.12.9	제1차 4자회담 본회담(제네바) – 이시영 대사, Roth 차관보, 당가선 부부장, 김계관 부부장
1997.12.9-10	IMF 구제금융 신청
1998.1.6-11	Roth 상원 의원 등 아 · 태 의회포럼(APPF)총회 참석 의원단 방한
1998.1.9-11	Murtha 하원 의원 방한
1998.1.15-19	Levin 상원 의원 남 · 북한 방문
1998.1.17-20	헤리티지재단 Feulner 회장 일행 방한
1998.1.21-24	오노 신임 KEDO 사무차장 방한
1998.1.21-24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 개최 (향산)
1998.1.21-22	Leach 하원 금융위원장 등 미 하원 금융 · 재정위 의원단 방한
1998.1.21-22	Cohen 국방장관 방한
1998.1.22	Roth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송영식 차관보와 한 · 미 양자협의 개최
1998.1.26-29	국회대표단(박정수, 한승수, 이태섭 의원) 방미
1998.1.27-31	경수로 기획단장 방북
1998.1.15-24	Revere 주평양 미국 연락사무소장 내정자 방북
1998.2.5-6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1998.2.6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1998.2.7-10	미국 사용 후 연료봉 전문가팀 방북
1998.2.15-17	4자회담 관련 한 · 미 양자협의 (호놀룰루) – 송영식 차관보, Kartman 동아 · 태 부차관보
1998.2.16-22	제2차 한 · 미 정책기획협의회 (호놀룰루) – 강근택 외교정책 부실장, Craig 정책실장
1998.2.17-18	Riordan LA시장 방한
1998.2.24-3.1	김대중 대통령 취임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8.2.26-28	제9차 IAEA-북한 실무회의 (평양)
1998.3.2-6	EU 측 KEDO 집행이사 방한
1998.3.2-5	Kartman 동아 · 태부차관보 방한 - 3.4 한 · 미 고위급 협의회(송영식 차관보)
1998.3.13	미 · 북 양자협의 (베를린) - Kartman 부차관보 및 김계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
1998.3.14	4자회담 준비회담 (제네바)
1998.3.16-21	제2차 4자회담 본회담 (제네바) - 송영식 차관보, Roth 차관보, 진건 부장조리, 김계관 부부장
1998.3.19	제4차 경수로 재원분담 협상 (뉴욕)
1998.3.15-18	Marshall Bouton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방한
1998.3.21	한 · 미 · 일 3자 고위협의회 (제네바)
1998.3.15-19	Oberdorfer SAIS 연구원 방한
1998.3.26-28	Einhorn 미 국무부 정치 · 군사 부차관보 방한
1998.4.3	판문점 비서장급 접촉
1998.4.4-7	미측 사용후연료봉 전문가 방북
1998.4.4-11	Pickering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998.4.7-8	Anderson KEDO 사무총장 방한
1998.4.7-10	Saxton 하원의원 방한
1998.4.14-17	경수로 사업 관련 한 · 일 협의
1998.4.15-18	제1차 미 · 북 유해공동발굴 작업 (평북 구장군)
1998.4.17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대표단 방한
1998.4.20-21	한 · 미 항공자유화 회의 (서울)
1998.4.21-5.14	Marshall Bouton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방한
1998.4.22-26	Shelton 합참의장 방한
1998.4.22-23	Albright 미 국무장관 방한, 박정수 외무장관과 회담 - 대통령 국빈방미, 대북정책 공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미측 원조
1998.4.26-29	Karen House 월 스트리트 저널 국제담당 사장 방한
1998.4.27-29	Kramer 미 국방부 차관보 방한
1998.4.28	제1차 한 · 미 자동차 실무협상 (서울)
1998.5.1-2	National War College 대표단 방한
1998.5.1-5	Kartman 미 국무부 부차관보 방한
1998.5.5-7	Feulner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1998.5.13-16	Rangel 하원의원(세입위 간사) 방한
1998.5.13-18	미군유해 송환
1998.5.7-15	Bingaman 상원의원(민주-뉴멕시코) 방한
1998.5.12-15	김대중 대통령 방미(6.6-13), Clinton 대통령과 정상회담 *의회 합동연설(6.10)
1998.5.14-19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에서 남북 무력충돌
1998.5.17-20	Rudenstein 하버드대학 총장 방한
1998.5.19-23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1998.5.23-25	제11차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 (샌디에고)
1998.5.25	제3차 한 · 미 정책기획협의회 (샌디에고)
1998.5.27-30	Rubin 재무장관 방한
1998.6.6-13	KEDO 집행이사회 개최(브뤼셀)
1998.6.18-22	천용택 국방장관 방미
1998.6.23-25	Leon 국방부 인력준비태세 차관 방한
1998.6.30	Gansler 국방부 획득기술 차관 방한
1998.7.1	미국 유해 송환 - 북측은 제2차 미 · 북 공동 유해 발굴작업(6.30-7.23, 평북 구장군)을 통해 발굴된 미군 유해 3구를 판문점을 통해 유엔사측에 인도
1998.6.30-7.1	ARF/ASEAN PMC(마닐라) 참석 계기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1998.6.30-7.1	경수로 재원분담 협상 잠정합의(뉴욕)
1998.7.8-13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8.7.14-17	통상교섭본부장, OPIC(미 해외민간투자공사) 주관 투자설명회 참석 한국 경제 및 투자환경 설명
1998.7.19-20	제5차 한 · 미 비확산회의 (호놀룰루)
1998.7.24	한 · 미 고위정책협의회 (호놀룰루)
1998.7.27	Prueher 태평양 사령관 방한
1998.7.28-29	제3차 미 · 북 공동 유해발굴 작업 (평북 구장군)
1998.7.29-8.1	제2차 한 · 미 자동차 실무협상 (워싱턴)
1998.7.30	Solomon 하원 규칙위원장 일행 방한
1998.8.4-5	미 · 북 고위급 회담 (뉴욕) - 김계관 부부장, Kartman 한반도 평화회담 전담대사
1998.8.6-7	북한 미사일 발사
1998.8.12-15	Kimble 미 국무부 환경 · 과학담당 차관보 방한
1998.8.11-9.3	Kissinger 前 미 국무장관 방한
1998.8.11-13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Albright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98.8.21-23	한 · 미 · 일 3자고위실무협의 (워싱턴)
1998.8.21-9.5	제3차 한 · 미 자동차 실무협상 (서울)
1998.8.23-29	Korea Caravan 행사 - 교역 및 투자확대를 위한 미 10개 도시 순회 경제설명회
1998.8.26-28	Hamre 미 국방부 부장관 방한
1998.8.31	유엔총회(뉴욕) 계기 한 · 미 · 일 외무장관 회담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
1998.9.3-4	KEDO 총회 개최(뉴욕)
1998.9.4-6	미 북 미사일회담(뉴욕)
1998.9.10-13	Deming 미 국무부 동아 태 부차관보 방한
1998.9.14	Kartman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대사 방한
1998.9.14-16	미군유해 5구 송환(제4차 미 북 유해공동발굴작업 결과)
1998.9.14-25	한 · 미 자동차 협상 타결, 「한 · 미 자동차 양해각서」 체결 (워싱턴)
1998.10.21-24	제5차 미 북 유해 공동발굴작업(평남 개천시)
1998.11.3	미 상원, Koh 미 국무부 인권차관보 인준
1998.11.6	제3차 4자회담 본회담(제네바) - 수석대표: 한국 - 박건우 대사; 미국 - Kartman 대사; 중국 - 전영년 대사;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1998.11.9	제15차 한 · 미 경제협의회 (워싱턴) - 수석대표 : 선준영 외교통상부 차관 / Eizenstat 미 국무부 경제차관
1998.11.12-13	미군 유해 9구 송환(제5차 미 북 공동유해발굴작업 결과)
1998.11.17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1998.11.16-18	Hall 미 하원의원 방한 - 11.8-12 방북
1998.11.20-23	APEC 정상회의(말레이시아) 계기 김대중 대통령, Gore 미 부통령과 회담
1998.11.21	Kartman 대사 북한 방문(지하의혹시설관련 1차 미 · 북회담) - 11.13-16 및 11.18-21 Kartman 대사 방한
1998.12.4-11	Clinton 대통령 방한(11.20-23),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 미 통상장관회담
1998.12.6-8	지하의혹시설관련 2차 미 북회담(뉴욕, 워싱턴)
1998.12.8-15	Perry 대북정책 조정관 방한
1998.12.9-12	미 · 북 유해회담(뉴욕)
1998.12.21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1998.12.22	한 · 미 · 일 3자 고위협의회 개최(뉴욕)
1999	
1999.1.8	유엔사-북한군 판문점 중령급 접촉
1999.1.10-11	미 하원의원 방한 (Bereuter 하원 아.태소위원장, Kolbe 의원 등)
1999.1.11-12	한 · 미 양자협의 (워싱턴)
1999.1.14-15	제30차 SCM 개최 (서울)
1999.1.15	유엔사-북한군 판문점 비서장급 접촉
1999.1.18-22	4자회담 제4차 본회담 개최 (제네바) - 수석대표 : 한국 - 박건우 대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국 - Kartman 대사; 중국 - 전영년 대사 * 미 · 북 양자협의 (1.16-17, 23-25)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9.1.26-30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방미
1999.1.27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1999.1.30-2.6	국회의원단 방미
1999.2.6-16	미 · 북 유해송환 관련 전문가 회담 (평양)
1999.2.8	Halperin 미 국무부 정책부장 방한
1999.2.8-9	Einhorn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방한
1999.2.9.	한 · 미 · 일 3자 협의회 개최 (서울)
1999.2.9-10	미 국가안보연구그룹(NSSG) 방한 * 방한단: Boyd 前 공군대장, Olmer 前 상무부 부장관 등
1999.2.11	유엔사–북한군 제4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 개최
1999.2.13-14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 (동경) – 수석대표: 한국– 김삼훈 외교부 외교정책실장; 미국 – Halperin 미 국무부 정책부장; 일본 – 가토 외무성 총합정책국장
1999.2.18	유엔사–북한군 판문점 비서장급 접촉
1999.2.18-19	Quigley,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방한
1999.2.26	제4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1999.2.25-3.3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 방미
1999.2.26-28	Feulner,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1999.2.27	한 · 미 · 일 국방부 차관보급 3자 안보대화
1999.2.27-3.15	금창리 지하시설관련 미 · 북 협상 (뉴욕)
1999.3.8	제4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1999.3.8-9	Perry 조정관 방한
1999.3.9	유엔사–북한군 제5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
1999.3.11-12	한 · 미 쇠고기 WTO 협의
1999.3.17	한 · 미 정부조달 WTO 협의
1999.3.17-18	4자회담 관련 한 · 미협의 (서울)
1999.3.17-19	Blair 미 태평양사령관 방한
1999.3.18-20	Mondale 前 미 부통령 방한
1999.3.25-28	Feulner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1999.3.26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서울)
1999.3.27-4.2	미 · 북 유해공동발굴 작업관련 북한문서 확인작업 (평양)
1999.3.28-31	미 하원 과학위원회 Sensenbrenner 위원장 방한
1999.3.29-30	제4차 미 · 북 미사일 회담 (평양) – 수석대표: 미국 – Einhorn 미 국방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북한 – 장창천 외무성 미주국장
1999.3.30-4.3	금창리 방문 관련 미 · 북 실무협의 – 수석대표: 미국 – Wit 미 국무부 한국과 제네바 합의 담당관; 북한 – 한성열 외무성 연구관
1999.4.3-5	미 하원의원단 방한(Horn 하원의원 등)
1999.4.6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1999.4.6-8	Young 미 하원 세출위원장 일행 방한
1999.4.12-13	한 · 미 과학기술 포럼
1999.4.18-23	Korea Caravan 행사 – 미 서부지역 6개 도시 순회
1999.4.19-26	Laney 前 주한미대사 방한
1999.4.20-5.13	제1차 미 · 북 유해공동발굴작업 (유해 6구 발굴)
1999.4.21-23	Deming 미 국무부 부차관보 방한
1999.4.23-27	4자회담 제5차 본회담 개최 (제네바) – 수석대표: 한국 – 박건우 대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국 – Kartman 대사; 중국 – 전영년 대사
1999.4.24-25	한 · 미 · 일 3자 협의회 개최 (호놀룰루) – 수석대표: 한국 –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미국 – Perry 조정관; 일본 – 가토 외무성 총합정책국장
1999.4.29-30	제1차 한 · 미 자동차 협의 (워싱턴)
1999.5.1-6	Bolton AEI 수석 부회장 방한
1999.5.7-10	제27차 Williamsburg 회의 (제주) – Roth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5.6–10)
1999.5.13-17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방미, Albright 미 국무장관과 회담
1999.5.13-14	Kartman 대사 방북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9.5.14-15	Kartman 대사 방한
1999.5.18-28	김용환 자민련 수석 부총재 방미
1999.5.20-24	미측 대표단 금창리 지하시설 방문 * 미측 대표단 금창리 지하시설 방문 결과 성명 발표 (6.25)
1999.5.24	한 · 미 · 일 3자 협의회 개최 (동경)
1999.5.25-28	Perry 조정관 방북
1999.5.25-6.11	제2차 공동유해발굴작업 (유해 4구 발굴)
1999.5.28-29	Bush 前 대통령 방한
1999.5.29	한 · 미 · 일 3자 협의회 개최 (서울)
1999.5.30-6.12	Shin 워싱턴주 상원의원 방한
1999.6.4	4자회담 관련 한 · 미 협의 – 수석대표: 한국 – 유진규 국방부 군비통제관; 미국 – Moseley 합참소장
1999.6.7-8	대북정책 관련 한 · 미 양자협의 개최 (호놀룰루)
1999.6.14-16	Kissinger 박사 방한
1999.6.15	북한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인한 서해교전 발발
1999.6.15	유엔사–북한군 제6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 개최
1999.6.16-26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 방미 시찰 * 한영수 국방위원장, 허대범, 이동복, 이훈평 의원
1999.6.17-25	Steinberg 조지타운대 교수 방한
1999.6.17-7.20	카렌 한(한국계 미국인), 북한 억류
1999.6.22	유엔사–북한군 제7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 개최
1999.6.23-24	미 · 북 회담 (북경) – 수석대표 : 미국 – Kartman 대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1999.6.25-26	미 외교협회(CFR) 한국팀 방한 * Laney 前 주한 미대사, Abramowitz CFR 선임연구원, Manning CFR 아시아 연구소장 등
1999.6.25-29	Kartman 대사 방한
1999.6.25-26	한 · 미 · 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워싱턴)
1999.7.2	유엔사–북한군 제8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 개최
1999.7.2	김대중 대통령 방미(7.2–4), Clinton 대통령과 정상회담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수상 (7.4)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1999.7.6-7	Torricelli 미 상원의원 방한
1999.7.6-10	Morrison 하와이 동서센터 소장 방한
1999.7.10-12	Torricelli 미 상원의원 방북
1999.7.15-20	Kartman 대사 방한
1999.7.19	한 · 미 4자 고위 오찬협의회
1999.7.21	유엔사–북한군 제9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 개최
1999.7.26	ARF/ASEAN PMC(싱가폴) 계기 한 · 미 외무장관회담
1999.7.27	ARF/ASEAN PMC(싱가폴) 계기 한 · 미 · 일 외무장관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1999.7.27-31	Einhorn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방한
1999.7.28-30	Cohen 미 국방장관 방한
1999.7.30	한 · 미 정책검토위(PRS) 회의 개최
1999.8.5-9	4자회담 제6차 본회담 개최 (제네바) – 수석대표: 한국 – 박건우 대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국 – Kartman 대사; 중국 – 전영년 대사 * 미 · 북 양자협의 (8.3,4,9)
1999.8.10-17	Jordan CNN 부사장 방북
1999.8.11-13	Barnes 대사 (미 Carter Center) 방한
1999.8.17	유엔사–북한군 제10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 개최
1999.8.19	한 · KEDO 차관공여협정 비준동의안 발효
1999.8.21-29	임용근 오레곤주 상원의원 방한
1999.8.23-30	임동원 통일부 장관 방미
1999.8.26-29	Hall 하원의원 방북
1999.8.29-31	Hall 하원의원 방한
1999.9.1	유엔사–북한군 제11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 개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1999.9.2	북한, NLL 무효 선언
1999.9.3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1999.9.7-12	미 · 북 회담 (베를린)
1999.9.10	APEC 정상회의(뉴질랜드)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1999.9.10-15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방미 * 오세응, 유흥수, 한승수, 황규선, 조웅규, 박원홍, 이신범 의원 등 동행
1999.9.11	APEC 정상회의(뉴질랜드)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한 · 미 · 일 정상회담(9.12)
1999.9.15-16	Perry 보고서 미 의회에 보고
1999.9.17	미국,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발표
1999.9.22-23	Perry 조정관 방한
1999.9.24	북한, 미사일 발사 유예 발표
1999.9.29-11.19	서순덕(한국계 미국인), 북한 억류
1999.9.30	한 · 미 정책검토위(PRS) 개최 (서울)
1999.9.30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UN 연설
1999.10.1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LA 만찬 연설
1999.10.4-5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1999.10.12-14	Roth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1999.10.12-14	미 · 북 유해회담 (뉴욕)
1999.10.20	한 · 미 범죄인인도조약 관련 미 상원 청문회 개최
1999.10.21-25	Kissinger 前 미 국무장관 방한
1999.10.25-11.11	제6차 미 · 북 공동유해발굴작업 실시 (유해 3구 발견)
1999.11.5	한 · 미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미 상원본회의 통과
1999.11.7-10	Marshall Bouton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방한
1999.11.8-9	한 · 미 · 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 개최 (워싱턴)
1999.11.8-10	Freeh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방한
1999.11.15	제30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1999.11.15-19	미 · 북 회담 (베를린) – 수석대표: 미국 – Kartman 대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1999.11.17-20	Geisel 미 방위비 분담대사 방한
1999.11.22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1999.11.23	제31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 – 수석대표: 한국 – 조성태 국방장관; 미국 – Cohen 미 국방장관
1999.11.26-12.4	김형우 북한 아 · 태 평화위 부위원장 일행 방미
1999.12.4	한 · 미 · 일 정책기획협의회(부산)
1999.12.8-9	제2차 한 · 미 자동차 협의 (서울)
1999.12.13	KEDO 집행이사회 개최(동경)
1999.12.14-17	Kartman 대사 방한
1999.12.15	경수로 주계약(TKC) 서명 (서울)
1999.12.15-17	미 · 북 유해회담 – 수석대표: 미국 – Liotta 국방부 POW/MIA 부과장; 북한 – 박임수 대좌
1999.12.19-23	미 하원 군사위 민주당 의원단 방한 * Taucher, Reyes 의원
1999.12.20	한 · 미 범죄인인도조약 비준서 교환 및 발효
2000	
2000.1.9-13	한 · 미 의원 외교협의회 개최
2000.1.14-15	Roth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00.1.15-18	Feulner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2000.1.22-28	미 · 북 회담(베를린) – 수석대표: 미국 – Kartman 대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2000.1.30-2.5	이희호 여사, 미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차 방미
2000.1.31-2.1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서울)
2000.2	한 · 미 양국, SOFA 재개정 협상 재개
2000.2.7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0.2.9-11	Quayle 미 前 부통령 방한
2000.2.21-23	한 · 미 대북정책협의회(호놀룰루)
2000.2.22-26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 회의(향산)
2000.2.25-27	Blair 미 태평양사령관 방한
2000.2.27-3.2	Marshall Bouton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방한
2000.3.3-4	Bush 前 대통령 방한
2000.3.8-15	미 · 북 회담 (뉴욕) – 수석대표: 미국 – Kartman 대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 · 북 테러회담 : Sheehan 대사; 김계관 부상)
2000.3.13-15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Albright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0.3.17-18	Cohen 미 국방장관 방한
2000.3.21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호놀룰루 PBEC 회의 계기)
2000.3.30-31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동경)
2000.4.7-10	Zoellick 前 미 국무부 경제차관 방한
2000.4.9-12	Einhorn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방한
2000.4.11-14	Korea Caravan 행사 – 미 동부지역 5개 도 시 순회 홍보활동
2000.4.14	북한의 미사일 수출관련 미국의 제재조치 부과
2000.4.21-5.6	김영삼 前 대통령 내외 방미
2000.4.24	한 · 미 4자 고위협의 오찬('2+2') –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주한미대사, 주한미사령관
2000.4.26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0.4.30-5.4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 방미
2000.5.6-9	한 · 미 · 일 국방당국자 간 안보토의(제주도)
2000.5.6-11	Allen 前 백악관 안보보좌관 방한
2000.5.7-10	Sherman 미 국무부 자문대사 방한
2000.5.12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동경)
2000.5.14-18	오레곤주 친선사절단 방한 * Adams 오레곤주 상원의장, 임용근 주 상원의원 등
2000.5.15-19	미 National War College 대표단 방한
2000.5.21-28	Walker 미 회계감사원장(GAO) 방한
2000.5.23-28	Lilley 前 주한미대사 방한
2000.5.24-25	금창리 제2차 방문
2000.5.24	미 · 북 회담 (로마) – 수석대표: 미국 – Kartman 대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2000.5.27-31	Armitage 前 국방차관보 방한
2000.5.28-6.4	남 · 북 정상회담 관련 국회 방문단 미 · 일 방문 * 유재건 의원, 이용삼 의원, 이낙연 당선자
2000.6.7-9	미 · 북 유해회담(쿠알라룸프르) – Liotta al 국방부 POW/MIA 부과장, 박임수 북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부대표
2000.6.8	오부치 前 일본 총리 장례식 참석 계기 한 · 미 정상 회동
2000.6.15	6 · 15 남북공동성명 발표(평양)
2000.6.16-17	황원탁 대통령 특사(외교안보수석) 파견
2000.6.19	미국, 대북 제재완화 발효
2000.6.21	북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moratorium) 재확인
2000.6.21-22	Bush 前 대통령 방한
2000.6.23-24	Albright 미 국무장관 방한,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2000.6.23-27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 참가 계기 미 대통령 사절단 방한 – 공동대표 : Togo West 향군장관 및 Rangel 하원의원
2000.6.25-28	Wolfowitz SAIS 학장 및 Feulner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2000.6.26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0.6.27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파리 OECD 각료이사회 계기)
2000.6.27-7.22	제1차 미 · 북 유해 공동발굴작업
2000.6.29-30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호놀룰루)
2000.7.6-15	미 하원 태권도 동호 의원단 방한
2000.7.10-12	미 · 북 미사일 회담(쿠알라룸푸르)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0.7.10-15	Solomon 미 평화연구소(USIP) 소장 방한
2000.7.16-18	Slocombe 미 국방부 정책차관 방한
2000.7.19-21	미 · 북 회담(베를린)
2000.7.25-8.19	제2차 미 · 북 유해 공동발굴작업
2000.7.26	ARF 계기 한 · 미 양자협의(방콕)
2000.7.28	ARF 계기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개최(방콕)
2000.7.28	ARF 계기 미 · 북 외무장관 회담(방콕)
2000.7.30-8.2	Kartman 대사 방한 * KEDO 집행이사회 및 한 · 미 양자협의
2000.7.29-8.19	미 국무부 초청 초선 국회의원단 방미
2000.7.31-8.3	국회의원단(한나라당) 미 공화당 전당대회 참관차 방미
2000.8.2-3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서울)
2000.8.6-10	Ford 前 미 국방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00.8.9-10	미 · 북 테러회담(평양)
2000.8.14-17	국회의원당 미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차 방미
2000.8.15	8 · 15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상호교환방문(서울 · 평양)
2000.8.16-18	Blair 미 태평양사령관 방한
2000.8.22-9.16	제3차 미 · 북 유해 공동발굴작업
2000.8.23-25	Cleland 미 상원의원 방한
2000.8.30-31	제3차 한 · 미 자동차 협의회 (워싱턴)
2000.8.31-9.1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서울)
2000.9.7	유엔 새천년정상회의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2000.9.19-10.14	제4차 미 · 북 유해 공동발굴작업
2000.9.18-19	제4차 한 · 미 과학기술공동위
2000.9.18-25	한 · 미 SOFA 개정협상 관련 의원외교단 방미 * 박명환 위원장 등 통외통위 소속 의원 4명 및 김광동 수석전문위원
2000.9.19	한 · 미 4자 고위협의회(서울)
2000.9.21	제32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서울) – 수석대표 : 조성태 국방장관, Cohen 미 국방장관
2000.9.25-27	KEDO 연례 총회 및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0.9.27-29	미 · 북 회담(뉴욕)
2000.10.5	한 · 미 4자 고위협의회('2+2')
2000.10.5-6	SOFA 개정 관련 법률전문가회의(서울)
2000.10.5-10	Przystup 미 국방대학원 연구원 일행 방한
2000.10.7	미 · 북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공동발표문" 채택
2000.10.7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워싱턴)
2000.10.9-12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 방미
2000.10.17-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워싱턴)
2000.10.17-11.11	제5차 미 · 북 유해 공동발굴작업
2000.10.22-24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방미
2000.10.25-28	Feulner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2000.10.23-25	Albright 미 국무장관 방북
2000.10.25-26	Albright 미 국무장관 방한 * 한 · 미 · 일 외무장관 회담(10.25)
2000.11.1-3	미 · 북 미사일 회담(쿠알라룸푸르)
2000.11.15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 미 정상회담(브루나이)
2000.11.16	APEC 정상회의(브루나이)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2000.11.24-30	Hall 미 하원의원 남 · 북한 방문
2000.11.27-12.1	북미 4대도시 한국경제설명회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벤쿠버)
2000.11.28	한 · 미 4자 고위협의회(서울)
2000.12.1-1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서울)
2000.12.2-5	Kartman 대사 방한
2000.12.5-6	KEDO 집행이사회 개최(동경)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0.12.13	미 · 북 유해회담 (쿠알라룸푸르)
2000.12.14-15	Baucus 상원의원 등 미 몬타나주 통상사절단 방한
2000.12.18-20	한 · 미 통상현안 협의(워싱턴, 국장)
2000.12.2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안 가서명
2001	
2001.1.3-5	Ignatius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뷰지 편집장 방한
2001.1.11-12	Gillis 미 라이스 대학 총장 방한
2001.1.11-13	미 하원의원단 방한
2001.1.11-13	Gephardt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및 Bond 상원의원 일행 방한
2001.1.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정식 서명
2001.1.20	Bush 미 대통령 취임
2001.2.5-10	이정빈 외교부 장관 방미, Powell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1.2.8	한 · 미 외교/국방 고위협의회('2+2') 개최
2001.2.15-17	Pickering 前 미 국무부 동아 · 태차관보 방한
2001.2.18-24	Endicott 조지아 테크 국제전략기술 · 정책연구소 소장 방한
2001.2.19-21	Kartman 대사 방한
2001.2.22-24	Roth 前 미 국무부 동아 · 태차관보 방한
2001.2.25-28	CFR Korea Task Force 방한 * CFR–서울포럼 공동워크샵 개최(2.26)
2001.2.27-3.3	Sokolski 미 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 방한
2001.3.7	김대중 대통령 방미(3.6–10),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 「한 · 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 채택
2001.3.18-21	Blair 미 태평양 사령관 방한
2001.3.22-23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1.3.26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서울)
2001.3.28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워싱턴)
2001.4.10-13	Gramm 미 상원 금융위원장 일행 방한
2001.4.13-15	Shelby 미 상원 정보위원장 일행 방문
2001.4.19-25	미 4개 도시 한국경제설명회 (LA, 보스톤, 시카고, 뉴욕)
2001.4.26	한 · 미 4자 고위협의회(2+2) 개최
2001.4.26-28	Keating 오클라호마 주지사 방한
2001.4.30	Perry 前 국방장관 주관 AF Workshop 개최 (워싱턴)
2001.5.1-5	KEDO–북한 고위전문가 회의 개최 (향산)
2001.5.9-10	Armitage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 방한
2001.5.12-18	조웅규, 정재문, 박원홍 한나라당 의원 대표단 방미
2001.5.17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파리, OECD 각료이사회 계기)
2001.5.23-28	Bosworth 前 주한미국대사 방한
2001.5.25-26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호놀루루)
2001.5.30-6.1	Lugar 상원 농업위원장 방한
2001.5.30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1.5.31-6.4	미 하원 세출위 군건축소위 소속 의원단 방한
2001.6.2-6	Kartman 신임 KEDO 사무총장 방한
2001.6.5	APEC 정상회의(중국)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2001.6.5-14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Powell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1.6.6	대북정책 관련 Bush 대통령 성명 발표
2001.6.12-14	제1차 한 · 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서울) 및 제4차 한 · 미 자동차 협의 (서울)
2001.6.12-15	Sherman 前 대북정책 조정관 방한
2001.6.14-17	Perry 前 국방장관 방한
2001.6.15-17	Gore 前 미 부통령 방한
2001.7.6-11	국회정보위원회 시찰단 방미
2001.7.9-13	한 · 미 의원 외교협의회 개최 (워싱턴)
2001.7.10-12	Bloomfield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1.7.27-28	Powell 미 국무부 장관 방한,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2001.7.30-31	KEDO 집행이사회 개최 (뉴욕)
2001.8.5-11	Carter 前 대통령 내외 방한
2001.8.10-11	Biden 미 상원외교위원장 일행 방한
2001.8.25-28	Korea-US Exchange Council 미 의원 방한 초청
2001.8.26-29	이인제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워싱턴 방문
2001.8.28-31	LaFleur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01.9.5-6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동경)
2001.9.7-15	Kartman KEDO 사무총장 방한
2001.9.8-11	Pritchard 미 한반도 평화담당특사 방한
2001.9.11	9 · 11 테러 발생
2001.9.17	부시 독트린 발표 * 선제공격의 정당성 강조
2001.9.18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Powell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1.9.20-21	제2차 한 · 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워싱턴)
2001.9.24	미국 테러 참사 관련 정부의 대미 지원 조치 발표
2001.9.24	김대중 대통령, World Statesman Award 수상 (뉴욕)
2001.9.24	임성준 차관보-Lino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대사 면담
2001.9.27-28	Mitchell 前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방한
2001.9	한국군 아프간 파병
2001.10.10-11	Kelly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01.10.11-12	KOMPSAT-2 위성 부품 수입 관련 한 · 미 실무협의 (워싱턴)
2001.10.14-17	Brooks 국방부 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01.10.14-17	Roth 前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2001.10.16	APEC 정상회의(중국)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2001.10.16-17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1.10.17	APEC 정상회의(중국) 계기 통상교섭본부장, 미 Bodman 상무부 부장관과 회담
2001.10.19	APEC 정상회의(중국)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2001.10.20-28	유진규 NSC 사무차장 일행 방미
2001.11.7	한 · 미 4자 고위협의회('2+2') 회의 개최
2001.11.7-8	한 · 미 과학기술포럼 (뉴어크)
2001.11.7-11	Tilelli 前 주한 · 미군 사령관 방한
2001.11.9-11	Bush 前 대통령 방한
2001.11.15	제33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워싱턴)
2001.11.15-21	Bosworth 前 주한미국대사 방한
2001.11.26-27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샌프란시스코)
2001.11.28	한 · 미 철강 협의회 (서울)
2001.11.28	Schwartz 주한미군사령관 장관 예방
2001.12.1-8	Kartman KEDO 사무총장 남 · 북한 방문
2001.12.6-7	KEDO 집행이사회 개최 (서울)
2001.12.10-14	Korea Caravan 행사 - 미 중서부 5개도시
2001.12.14-15	Bohlen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2001.12.18-21	Hall 미 하원 의원 방한
2001.12.19-21	Johnson 미 USTR 농업협상대표 방한
2002	
2002.1.3-6	미 국방위 및 국제관계위 소속 의원단 방한
2002.1.17-20	Hastert 미 하원의장 방한
2002.1.23-24	제3차 한 · 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서울)
2002.1.24-25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서울)
2002.1.30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Rice 안보보좌관 면담 (워싱턴)
2002.2.1	다보스 회의 계기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뉴욕)
2002.2.3-5	Lott 상원 공화당 의원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2.2.6-8	Blair 미 태평양 사령관 방한
2002.2.20	Bush 대통령 방한(2.19-21),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2.2.25-27	KEDO 집행이사회 개최
2002.3.5-9	한 · 미 의원 외교협회 의원단 방미
2002.3.12-17	Gleysteen 前 주한대사 방한
2002.3.15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한 · 미 철강협의(워싱턴)
2002.3.20-21	LaFleur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02.3.29	한 · 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서명
2002.4.4	한 · 미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회('2+2')
2002.4.4	제5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2002.4.7-11	Kanter 前 국무차관 방한
2002.4.8-9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동경)
2002.4.16-20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Powell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2.4.17-20	Groombridge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차관 특별보좌관 방한
2002.4.19	제5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02.4.22-23	제4차 한 · 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워싱턴)
2002.4.23-24	KEDO 특별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2.4.24	미 중부사, 대 테러전쟁 관련 추가 파병 요청
2002.4.29-5.1	Richard Myers 미 합참의장 방한
2002.4.30	미 · 북 대화 재개 발표
2002.4.30-5.4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 회의 개최(향산)
2002.5.5-7	Bush 前 대통령 방한
2002.5.13-14	한 · 미 · 일 안보토의 및 2단계 한 · 미 동맹 미래발전 공동협의
2002.5.18-22	Fargo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방한
2002.5.20	LaPorte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장관 예방
2002.5.21-25	Sherman 前 대북조정관 방한
2002.5.22-23	KEDO 집행이사회 및 총회 개최(뉴욕)
2002.5.25-28	Burns 미 상원의원 방한
2002.6.1-3	Weldon 미 하원의원 일행단 방한
2002.6.2-6	Kartman KEDO 사무총장 방한 및 방북
2002.6.12-13	한반도 문제 학술회의(CSIS) 개최
2002.6.13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발생
2002.6.17-18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샌프란시스코)
2002.6.17-23	Plate 미 UCLA대 교수 (LA 타임즈지 칼럼리스트) 방한
2002.6.24-25	Rodman 미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 방한
2002.6.29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NLL) 침범, 남북교전 발생
2002.7.31	ARF/ASEAN PMC 계기 한 · 미 외무장관회담
2002.8.4-9	Pritchard 대북협상담당대사 방한
2002.8.4-11	Kartman KEDO 사무총장 방한
2002.8.5	KEDO 집행이사회 개최
2002.8.7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 개최
2002.8.7-8	제5차 한 · 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서울)
2002.8.17-20	Fuller 아시아재단 총재 방한
2002.8.24-27	Feulner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수교훈장 광화장 수훈
2002.8.27-29	Hahn LA 시장 및 통상사절단 방한
2002.8.28-30	LaFleur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02.8.28-30	Bolton 미 국무부 군축 · 비확산 담당 차관 방한
2002.9.6-7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서울)
2002.9.13	UN 총회 계기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뉴욕)
2002.9.24	남 · 북간 군사 핫라인 개통
2002.10.2-6	Kelly 미 특사 방한 * 10.3-5 방북
2002.10.10-11	LaFleur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2.10.19-20	Kelly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02.10.23	APEC 정상회의(멕시코) 계기 한 · 미 통상장관회담(로스카보스)
2002.10.26	APEC 정상회의(멕시코) 계기 한 · 미 · 일 정상회담 및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2002.10.27-31	한나라당 의원단 방미
2002.10.30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국회 통과
2002.10.30-11.1	한 · 미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2002.10.31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발효
2002.11.2-5	Gregg 前 주한대사 방북
2002.11.6-7	Feith 미 국방부 정책차관 방한
2002.11.8-9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동경)
2002.11.10-12	Kelly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02.11.14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2.11.21-22	제6차 한 · 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워싱턴)
2002.12.5	제34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
2002.12.8-10	Inouye 및 Stevens 미 상원의원 방한
2002.12.10-11	Armitage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02.12.17-20	Reed 미 상원의원 방한
2002.12.22	북한 핵 동결 해제 선언
2003	
2003.1.6-7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워싱턴)
2003.1.10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2003.1.12-14	Kelly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03.1.29-30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3.2.9-15	북핵 관련 국회 대표단 방미
2003.2.24-25	Powell 미 국무장관 방한
2003.2.25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3.13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3.3.20	미국, 이라크 침공
2003.3.26-29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Powell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3.3.27-28	Fargo 미 태평양사 사령관 방한
2003.3.27-29	Keyser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03.4.4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3.4.8-9	제1차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003.4.10-16	Kartman KEDO 사무총장 방한
2003.4.13-17	Royce 하원의원 일행 방한
2003.4.14-15	Bush 前 대통령 방한
2003.4.16-18	Frist 상원 공화당 대표 일행 방한
2003.4.25-26	Kelly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03.4.29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3.4.29	OECD 각료회의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파리)
2003.4.29-5.3	국가안보보좌관 방미
2003.5	한국군 이라크 파병
2003.5.13-14	김태식 국회부의장 방미
2003.5.14	노무현 대통령 방미(5.11-16),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2003.5.20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3.5.26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3.5.30-31	Evans 미 상무장관 방한
2003.5.30-6.2	Weldon 미 하원의원 일행 남 · 북한 방문 * 방북(5.30-6.1), 방한(6.1-2)
2003.6.1-2	Wolfowitz 미 국방부 부장관 방한
2003.6.4-5	제2차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003.6.12-13	한 · 미 · 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호놀룰루)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3.6.18	ARF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프놈펜)
2003.6.28-7.1	Kartman KEDO 사무총장 방한
2003.7.2-3	한 · 미 · 일 고위급 대북정책협의회 (워싱턴)
2003.7.10-12	KEI, KIEP 공동주관 한 · 미 Opinion Leaders Seminar(워싱턴) 개최
2003.7.13-15	미 국무부 Keyser 부차관보 일행 방한
2003.7.21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3.7.22-23	제3차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003.7.24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3.7.25-28	Kissinger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03.8.13-14	6자회담 관련 한 · 미 · 일 3자 협의 (워싱턴)
2003.8.24-29	Sherman 前 미 국무부 대북조정관 방한
2003.8.27-28	Leach 하원 아 · 태 소위원장 방한
2003.8.27-29	제1차 6자회담 개최(북경) * 수석대표 :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한), 김영일 외무성 부상(북), Kelly 미 국무부 차관보(미), 야부나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일),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중),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러)
2003.9.2-7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Powell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3.9	한 · 미 양국 주한미군 긴축협상 개시(워싱턴)
2003.9.3-4	제4차 미래 한 · 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003.9.13	WTO 각료회의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멕시코 캔쿤)
2003.9.13-19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방미
2003.9.17-19	Green 미 국무부 기획관리 차관 방한
2003.9.25	UN총회 계기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뉴욕)
2003.9.25-26	Lash 미 상무부 시장접근담당 차관보 방한
2003.9.29-30	한 · 미 · 일 3자 협의 (도쿄)
2003.10.6-8	제5차 미래 한 · 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003.10.12.-14	Murkowski 미 알라스카 주지사 방한
2003.10.13-14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3.10.20	APEC 정상회의(방콕)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 「한 · 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2003.10.27-11.4	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비서 방미
2003.11	미 정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발표
2003.11.6-8	Bouton 시카고 외교협회 회장 방한
2003.11.13-16	Clinton 前 대통령 방한
2003.11.15-16	Kartman KEDO 사무총장 방한
2003.11.16-18	Rumsfeld 미 국방장관 방한
2003.11.17	제35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한국)
2003.11.19-21	Kelly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03.12.4-5	한 · 미 · 일 3자협의(워싱턴)
2003.12.8-12	Brilliant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방한
2003.12.16	KEDO 총회 개최(뉴욕)
2003.12.22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4	
2004.1.15-16	제6차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개최(호놀룰루)
2004.1.19	Feulner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방한
2004.1.21-22	한 · 미 · 일 3자협의 (워싱턴)
2004.2.1-2	Kelly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4.2.13-14	제7차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2004.2.17	한 · 미 외교 · 국방 장관회담(2+2) 개최
2004.2.19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4.2.22-23	한 · 미 · 일 3자협의 (서울)
2004.2.25-28	제2차 6자회담 (북경) * 수석대표 :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북), Kelly 미 국무부 차관보(미), 야부나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일),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중),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러)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4.3.2-6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Powell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4.3.8-10	Sherman 前 미 국무부 대북조정관 방한
2004.3.13-14	Ridge 미 국토안보부 장관 방한
2004.3.16	Bosworth 前 주한대사 방한
2004.4.7-8	한 · 미 · 일 3자 협의 (샌프란시스코)
2004.4.8-9	Bollinger Columbia 대학 총장 방한
2004.4.15-16	Cheney 미 부통령 방한
2004.4.17-29	박관용 국회의장 방미(IPU 총회 참석차)
2004.4.22-27	Kartman KEDO 사무총장 방한
2004.5.7-8	제8차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워싱턴)
2004.5.17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4.5.19-20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4.5.22-27	박진 의원(한나라당) 일행 방미
2004.5.26-28	Sheeran 미 USTR 부대표 방한
2004.6.1-5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방미
2004.6.6-13	Thomson RAND 연구소장 방한
2004.6.7-8	제9차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국방부)
2004.6.7-12	Ford 前 미 국무부 정보조사차관보 방한
2004.6.10-14	고건 前 국무총리 등 Reagan 前 대통령 조문사절단 방미
2004.6.12-14	Richardson 뉴멕시코주 주지사 방한
2004.6.13-14	한 · 미 · 일 3자협의 (워싱턴)
2004.6.13-17	Gregg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방한
2004.6.17-24	Harrison CIP 아시아프로그램실장 방한
2004.6.21-22	제2차 Working Group 회의 (베이징)
2004.6.23-26	제3차 6자회담 개최(북경)
2004.7.1-3	제17차 한 · 미 재계회의 연차 총회(서울)
2004.7.2	ARF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자카르타)
2004.7.5-9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 일행 방미
2004.7.9	Rice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방한
2004.7.10-19	유재건 의원 등 한 · 미 의원외교협회 대표단 방미
2004.7.17-31	임용근 Oregon주 상원의원 방한
2004.7.19-22	Bolton 미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 방한
2004.7.19-25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일행 방미
2004.7.22	KEDO 총회 개최
2004.7.22-23	제10차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워싱턴)
2004.7.26	Bosworth 및 Abramowitz 前 대사 방한
2004.7.26-29	열린우리당 대표단 미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 (보스톤)
2004.8.2	주한미군 제2사단 제2보병여단, 이라크전 투입으로 철수
2004.8.2-4	Cronin CSIS 부소장 방한
2004.8.5-7	미 하원 정부개혁위 대표단 방한
2004.8.18-22	Rangel 미 하원의원 일행 방한
2004.8.19-20	제11차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국방부)
2004.8.26-29	Feulner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2004.8.29-9.3	한나라당 대표단, 미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 (뉴욕)
2004.8.31-9.3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방미
2004.9.8-11	Asia Foundation 관계자 일행 방한
2004.9.9-10	한 · 미 · 일 3자협의 (도쿄)
2004.9.21-22	제12차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워싱턴)
2004.9.23	UN 총회 계기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뉴욕) * 외교부 장관,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 참석(Van Fleet상 수상)
2004.9.26-10.1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일행 미국(워싱턴, 뉴욕) 방문
2004.9.29-10.5	Wolfsthal 미 카네기 평화재단 비확산 부실장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4.10.14-16	Revere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방한
2004.10.16-20	최영진 외교부 차관 방미
2004.10.18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서명, 발표
2004.10.19-22	제36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 (워싱턴)
2004.10.24-30	Einhorn 前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방한
2004.10.25	한 · 미 통상장관 회담(워싱턴)
2004.10.25-26	Powell 미 국무장관 방한(10.26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04.10.26	Penn 미 농무부 차관 방한
2004.10.26-11.3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방미
2004.11.1-2	제6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협의(워싱턴)
2004.11.5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4.11.8	APEC 정상회의(칠레)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2004.11.9-12	이종석 NSC 사무차장 방미
2004.11.12-13	노무현 대통령 APEC 정상회의 계기 LA 방문 * WAC 오찬 연설
2004.11.16-20	대미의원외교단(정의용. 박진 의원) 방미
2004.11.19	APEC 정상회의(칠레)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04.11.20	APEC 정상회의(칠레)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2004.12.1-3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미
2004.12.3-7	김혁규 의원 등 국회대표단 방미
2004.12.8-9	DeTrani 대북협상담당특사 방한
2004.12.8-9	제6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서울)
2004.12.12-14	Lash 미 상무부 차관보 방한
2005	
2005.1.8-11	미 하원 군사위 방한
2005.1.14-15	Weldon 미 하원의원 일행 방한 * 방북 1.11–14
2005.1.18-19	제6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협의(서울)
2005.1.24-25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5.2.3-4	제1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05.2.5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5.2.10-16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Ri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5.2.17	한 · 미 통상장관 회담(워싱턴)
2005.2.20-23	미 하원 의원단 및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2005.2.23	한 · 미 · 일 3자협의(서울)
2005.2.23-24	제6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협의(워싱턴)
2005.2.24-25	Clinton 前 대통령 방한
2005.3.2-5	Kissinger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05.3.5-12	김원기 국회의장 일행 방미
2005.3.15	제6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고위급협의(서울)
2005.3.15-2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방미
2005.3.19-20	Rice 미 국무부 장관 방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2005.3.22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5.3.24-26	Bereuter 아시아재단 총재 방한
2005.4.4-5	이봉조 통일부 차관 방미
2005.4.5-6	제2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호놀룰루)
2005.4.7-10	Perry 前 대북정책조정관 일행 방한
2005.4.23-26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5.4.24-30	김대중 前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방문
2005.4.26-29	이종석 국가안보실 사무차장 방미
2005.5.2	OECD 각료회의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파리)
2005.5.4-6	정의용, 황진하 의원 제2차 한 · 미 · 일 의원회의 계기 방미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5.5.9-12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미
2005.5.15-17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5.5.18-21	Romberg 前 미 국무부 정책부실장 방한
2005.5.23-24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5.5.23-25	Sherman 前 대북조정관 방한
2005.5.31-6.3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및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미
2005.6.3	APEC 정상회의(제주)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2005.6.9	제6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2005.6.9-17	Donald Gregg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방한
2005.6.10	노무현 대통령 방미(6.9-10),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5.6.10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Ri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5.6.16-17	제2차 한 · 미 통상 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2005.6.16-19	Lingle 하와이 주지사 방한
2005.6.22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 참석 계기 한 · 미 외무장관 회동(벨기에)
2005.6.23-24	제3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워싱턴)
2005.6.29	제6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2005.6.29-7.2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방미
2005.6.29-7.7	Owen 워싱턴주 부지사 방한
2005.7.2-5	Leebron 미 라이스(Rice)대 총장 방한
2005.7.7	용산기지이전협정 기술양해각서(E-MOU) 체결
2005.7.12-13	Rice 미 국무장관 방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2005.7.12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 관련 MOU 서명
2005.7.16-18	Powell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05.7.25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2005.7.26-8.6	1단계 4차 6자회담(베이징)
2005.8.20-26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Ri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5.8.24-29	Hall 유엔 식량농업기구 미 대표부 대사 방한
2005.9.3-4	Leach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일행 방한
2005.9.7-9	김원기 국회의장 세계국회의장회의 계기 방미
2005.9.12-13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5.9.13-19	2단계 4차 6자회담(베이징)
2005.9.13-16	노무현 대통령,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담 참석 계기 방미
2005.9.17	유엔총회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뉴욕)
2005.9.19	한 · 미 통상장관 회담(워싱턴)
2005.9.20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5.9.28-30	제4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워싱턴)
2005.10.7-9	Richard Allen 前 안보보좌관 방한
2005.10.11	WTO 소규모각료회의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제네바)
2005.10.12-13	Stephens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방한
2005.10.15-18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미
2005.10.18-24	신기남 국회정보위원장 방미
2005.10.21	제37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2005.10.21-22	Richardson 미 뉴멕시코 주지사 방한
2005.10.20-21	Rumsfeld 미 국방장관 방한
2005.11.2-5	Lilley 前 주한미국대사 방한
2005.11.2-5	Wagner 에모리 대학 총장 방한
2005.11.9-11	제5차 6자회담(베이징)
2005.11.9-13	Bush 前 대통령 내외 방한
2005.11.16	APEC 정상회의(부산)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2005.11.16	APEC 정상회의(부산)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05.11.17	Bush 대통령 APEC 정상회의(부산) 참석 계기 방한(11.16-17),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 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발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5.11.28-12.2	Talbott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 일행 방한
2005.12.5-9	Stephens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방한
2005.12.5	제5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
2005.12.6	제5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05.12.7-8	Negroponte 국가정보부장 방한
2005.12.8-11	Lefkowitz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한
2005.12.18-22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방미
2006	
2006.1.5-8	Feulner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2006.1.8-10	Murkowski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방한
2006.1.9-11	Armacost 前 미 국무부차관 방한
2006.1.11-14	Samuel Berger 前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2006.1.17~21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제1차 한 · 미 장관급 전략대화(공동성명 발표)
2006.1.21-24	Glaser 미 재무부 부차관보 일행 방한
2006.1.22-28	Evans 하원의원 방한
2006.1.25-26	Crouch 백악관 부보좌관 방한
2006.1.31	한 · 미 통상장관 회담(워싱턴)
2006.2.3	한 · 미 FTA 협상 공식 출범(워싱턴)
2006.2.11-16	Einhorn 前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2006.2.14	제6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괌)
2006.2.23-24	송민순 안보실장 방미
2006.3.6	한 · 미 FTA 제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3.19-21	Bond 미 상원의원 방한
2006.3.21	제7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06.3.21-24	Jamie Metzl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방한
2006.3.22-25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방미
2006.3.24-25	Bartlet 미 하원의원 일행 방한
2006.4.12-14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6.4.17-18	한 · 미 FTA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4.18	개성공단 관련 KEI 토론회(워싱턴)
2006.4.20-22	Gordon Flake Mansfield Foundation 소장 일행 방한
2006.5.3-7	정의용, 김명자, 박진, 황진하 의원 한 · 미 · 일 의원회의 계기 방미
2006.5.7-9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대표단(김원웅 위원장, 주호영, 한광원 의원) 방미
2006.5.17-21	유명환 차관, 제34차 Williamsburg 국제회의 참석차 방미
2006.5.22-23	제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협의(하와이)
2006.5.25	제8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호놀룰루)
2006.5.25-26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6.5.30-31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6.5.30-6.2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Hadley 안보보좌관, Zoellick 미 국무부 부장관 면담
2006.6.2	Stephens 미 국무부 부차관보 방한
2006.6.2	APEC 정상회의(베트남)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2006.6.5-9	한 · 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 수석대표 : 김종훈 한 · 미 FTA협상 수석대표/Cutler USTR 대표보
2006.6.8-11	Williams 워싱턴 DC 시장 방한
2006.6.18-24	Gregg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방한
2006.6.24-28	Daniels 인대애나 주지사 방한
2006.6.29-30	제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워싱턴)
2006.7.4-6	송민순 안보실장 방미
2006.7.5-7	Gallucci 조지타운 대학 외교대학원장 방한
2006.7.6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6.7.7-9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6.7.10-14	한 · 미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수석대표 : 김종훈 한 · 미 FTA협상 수석대표/Cutler USTR 대표보
2006.7.11-14	Desai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일행 방한
2006.7.13-14	제9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06.7.13-20	한 · 미 의원외교협의회 계기 국회의원단 방미
2006.7.16-18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방미
2006.7.16-18	Levey 미 재무부 차관 방한
2006.7.28	ARF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쿠알라룸푸르)
2006.8.3-11	이용희 국회 부의장(열린우리당) 일행 방미
2006.8.9-10	제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협의(서울)
2006.8.9-11	Hyde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일행 방한
2006.8.10	한 · 미 통상장관회의(쿠알라룸푸르)
2006.8.10-15	김우식 과학기술부 총리 방미
2006.8.15	한 · 미 FTA 관세양허안 교환
2006.8.24	ASEAN+3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쿠알라룸푸르)
2006.8.30-9.1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방미
2006.8.30-9.3	Feulner 미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2006.9.1-7	White Southern Center for Int'l Studies 소장 방한
2006.9.5-7	송민순 안보실장 방미
2006.9.6-9	한 · 미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시애틀) * 수석대표 : 김종훈 한 · 미 FTA협상 수석대표/Cutler USTR 대표보
2006.9.7-8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6.9.11-12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6.9.14	노무현 대통령 방미(9.12–15),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6.9.13	한 · 미 통상장관 회담(워싱턴)
2006.9.17-29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UN총회 계기 방미
2006.9.19-21	이상득 국회부의장(한나라당) 일행 방미
2006.9.20-21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방미
2006.9.27-28	제10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워싱턴)
2006.10.9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6.10.10-11	제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협의(서울)
2006.10.11-19	반기문 장관 방미 *유엔 사무총장 수락 연설
2006.10.14-16	Hanneman 호놀룰루 시장 방한
2006.10.14-18	Gregoire 워싱턴 주지사 방한
2006.10.15-18	Villaraigosa LA 시장 방한
2006.10.17-20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6.10.19-20	Rice 미 국무장관 방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한 · 미 · 일 3국 외교장관 회담(10.19)
2006.10.20	제38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
2006.10.23-27	한 · 미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제주)
2006.10.26-27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6.11.5-8	Pritchard KEI 소장 방한
2006.11.6-8	Burns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및 Joseph 군축차관 방한 * 한 · 미 차관급 전략대화(11.7)
2006.11.8	Kimmit 재무부 부장관 방한
2006.11.13-14	제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고위급협의(워싱턴)
2006.11.18	APEC 정상회의(베트남)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및 한 · 미 · 일 정상회담,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06.11.29-30	제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고위급협의(서울)
2006.12	한국군 레바논 파견
2006.12.4-8	한 · 미 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몬타나) * 수석대표 : 김종훈 한 · 미 FTA협상 수석대표/Cutler USTR 대표보
2006.12.5-7	Donald Gregg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방한
2006.12.6-7	Romney 메사추세츠 주지사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6.12.18-22	2단계 5차 6자회담 (베이징)
2006.12.2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대한민국 원주 소재 한국지진관측소에 관한 협정" 서명 (서울) 제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Vershbow 주한미대사
2007	
2007.1.1-6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Ri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7.1.10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7.1.15-19	한 · 미 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수석대표 : 김종훈 한 · 미 FTA협상 수석대표/Cutler USTR 대표보
2007.1.17-19	Sherman 前 대북정책조정관 방한
2007.1.19-20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7.1.25	다보스포럼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다보스)
2007.1.25-26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2007.1.25-29	Christensen 미 국무부 중국담당 부차관보 방한
2007.1.26-28	Stephens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07.2.3-5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7.2.6-11	국회 통외통위 대표단 방미
2007.2.7-8	제11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07.2.8-13	3단계 5차 6자회담 (베이징) * 9 ·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2.13)
2007.2.11-14	한 · 미 FTA 제7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 수석대표 : 김종훈 한 · 미 FTA협상 수석대표/Cutler USTR 대표보
2007.2.12-16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 방미
2007.2.14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7.2.19-22	Perry 前 미 국방장관 방한
2007.2.20-24	심윤조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미
2007.2.21-22	Bond 미 상원의원 방한
2007.2.22-24	김장수 국방부 장관 방미 * 한 · 미 국방장관회담(2.23)
2007.2.26-28	백종천 안보실장 방미
2007.2.28-3.1	Crouch 안보 부보좌관 방한
2007.2.28-3.5	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일행 방미
2007.3.1-3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Ri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7.3.5-6	Paulson 미 재무장관 방한
2007.3.5-7	Negroponte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07.3.8-12	한 · 미 FTA 제7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수석대표 : 김종훈 한 · 미 FTA협상 수석대표/ Cutler USTR 대표보
2007.3.14-22	한인 여성 해외 성매매 방지 대책 관련 국회의원단 방미
2007.3.17-29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단 방미
2007.3.19-22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개최(베이징)
2007.3.21-24	Hamre CSIS 소장 방한
2007.3.22-31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 방미
2007.3.26-31	UN 장애인 권리 협약 서명식 참석 의원단 방미
2007.3.26-4.2	한 · 미 FTA 고위급 협상(서울) * 한 · 미 FTA 협상 타결(4.2)
2007.3.29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7.4.1-7	윤병세 외교부 안보수석 방미
2007.4.2	한 · 미 FTA 협상 타결
2007.4.2	제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2007.4.11-12	Richardson 뉴멕시코 주지사 방한 * 방북 4.8–11
2007.4.10-12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7.4.16	제12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워싱턴)
2007.4.23-26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방미
2007.5.1-3	한 · 미 · 일 의원회의 참석 의원단 방미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7.5.3	ICI(ICI: International Compact with Iraq) 참석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07.5.3-4	미 외교협회(CFR) 대표단 방한
2007.5.13-17	열린우리당 동북아 평화위원회 대표단 방미
2007.5.14-15	서울-워싱턴 포럼 개최(서울)
2007.6.8	제13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07.6.10	국제경제포럼 계기 한 · 미 통상장관회담(상트페테르부르크)
2007.6.18-22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 방북 6.21-22
2007.6.20-24	Edwin Feulner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2007.6.25	한 · 미 통상장관 회담(워싱턴)
2007.6.26	군대 위안부 결의안, 미 하원 외무위 통과
2007.6.26-29	Samore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 방한
2007.6.27-30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Ri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7.6.28	전작권 전환 전략적 이행계획 합의(서울)
2007.7.1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7.7.15-16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7.7.23-25	Stephens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07.7.27	제14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호놀룰루)
2007.7.31	미 하원 군대위안부 결의안, 하원 본회의 통과
2007.8.2	ARF 계기 한 · 미 협의 * 송민순 외교장관-Negroponte 미 국무부 부장관
2007.8.26-31	한 · 미 의원 외교협의회 참석차 미 하원 대표단 방한
2007.8.27-30	백종천 안보실장 방미
2007.9.4	APEC 정상회의(호주)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
2007.9.6	APEC 정상회의(호주)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07.9.7	APEC 정상회의(호주)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2007.9.12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7.9.17-28	김대중 前 대통령 방미 (뉴욕, 워싱턴)
2007.9.26	제62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2007.9.26	송민순 외교장관, 미 외교협회(CFR) 오찬 연설
2007.9.27-30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베이징)
2007.10.5-7	윤병세 안보수석 방미
2007.10.9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7.10.10-14	심윤조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미 * 제2차 한 · 미 차관급 전략대화(10.11)
2007.10.17	Powell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07.10.19	제15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07.10.23-24	Holbrooke 前 유엔 미국대사 방한
2007.10.31-11.5	Tran 캘리포니아주 하원 무역위원장 방한
2007.11.2-3	Hill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방한
2007.11.4-10	송민순 외교부 장관 방미, Ri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 송민순 외교장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11.5)
2007.11.7	제39차 한 · 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서울)
2007.11.19	ASEAN+3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싱가포르)
2007.11.25-29	Honda 미 하원 의원 방한
2007.11.28	OSCE 각료이사회 계기 한 · 미간 협의(마드리드)
2007.11.29-12.3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담당 차관보 방한 * 12.3-5 방북
2007.12.3-7	백종천 안보실장 방미
2007.12.8	UN 기후변화회의 계기 한 · 미 통상장관 회담(발리)
2007.12.17	팔레스타인 공여국회의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파리)
2007.12.20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Bush 대통령 전화통화
2008	
2008.1.8-10	Hi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8.1.15-16	Sideman 미 전국유태인위원회(AJC) 회장 일행 방한
2008.1.15-17	Inouye, Stevens 미 상원의원 일행 방한
2008.1.21-26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 방미
2008.1.23	제16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워싱턴)
2008.2.7	미 하원 대통령 당선인 취임 축하 결의안(H.Res.947) 채택
2008.2.11-13	Nye 하버드대 교수 방한
2008.2.14	미 상원 대통령 당선인 취임 축하 결의안(S.Res.444) 채택
2008.2.19-21	Hi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2008.2.20-22	Kissinger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08.2.21-3.1	Korea Society Evans Revere 회장 및 Gregg 이사장 방한 및 방북
2008.2.24-26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Rice 미 국무장관 방한
2008.2.24-26	Sherman 前 대북정책조정관 방한
2008.2.24-27	Pritchard KEI 소장 방한
2008.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8.2.25-28	뉴욕 필하모닉 방북 및 방한
2008.3.11-13	Bush 前 대통령 내외 방한
2008.3.11-14	Kanter 前 미 국무차관 방한
2008.3.17-18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방미
2008.3.22-25	Rohrabacher 미 하원의원 방한
2008.3.25-29	유명환 장관 방미, Rice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8.4.1-3	Holbrooke 아시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방한
2008.4.1-4	Hi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2008.4.8	제17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08.4.11	Powell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08.4.14	CFR 대표단 방한
2008.4.19	이명박 대통령 방미(4.15-19), Bush 대통령과 정상회담(Camp David)
2008.4.15-25	김대중 前 대통령 방미
2008.4.29-5.3	한 · 미 · 일 의원회의 대표단 방미
2008.5.6-7	미 외교정책위원회(NCAFP) 대표단 방한
2008.5.7-8	Negroponte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08.5.12-17	위성락 장관특별보좌관 방미
2008.6.7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8.6.9-12	한나라당 의원대표단 방미
2008.6.9-15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방미
2008.6.28-29	Rice 미 국무장관 방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2008.7.9	G-8 정상회의(일본)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2008.7.10-12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베이징)
2008.7.21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협의(워싱턴)
2008.7.23	ARF 계기 한 · 미 외교장관회담(싱가포르)
2008.7.23	제18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워싱턴)
2008.7.26-31	한 · 미 의원외교협의회 개최
2008.8.6	Bush 대통령 방한(8.5-6),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 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
2008.8.28-29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서울)
2008.8.30-9.7	Faleomavaega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방한
2008.9.1-5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 방미 * 9.2 한 · 미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워싱턴)
2008.9.10	제19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워싱턴)
2008.9.21-26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총회 참석 계기 방미 * 9.22 한 · 미 외교장관 회담(뉴욕)
2008.9.24-25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협의(워싱턴)
2008.10.5-10	미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8.10.13-15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미 * 10.14 한 · 미 · 일 고위급 3자 협의 개최
2008.10.17	제40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
2008.10.21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8.10.29-30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협의(서울)
2008.11.4	미 대선 및 총선 실시
2008.11.7	이명박 대통령-Obama 미 대통령 당선자 전화통화
2008.11.7-8	Powell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08.11.14-15	Gore 前 미 부통령 방한
2008.11.14-16	이명박 대통령,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2008.11.17-18	Berger 前 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2008.11.17-22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표단 방미
2008.11.19-20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고위급협의(호놀룰루)
2008.11.19-20	Perry 前 미 국방장관 방한
2008.11.22	APEC 정상회의(페루)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및 한 · 미 · 일 정상회담
2008.12.1-6	한나라당 한 · 미 비전특위 대표단 방미
2008.12.10-13	Bouton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회장 방한
2008.12.12	제20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워싱턴)
2009	
2009.1.5-7	Feulner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방한
2009.1.15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2009.1.19	이명박 대통령-Bush 대통령 전화통화
2009.1.20	Obama 미 대통령 취임
2009.1.25 -2010.8.25	Aijalon Gomes (미국인), 북한 억류
2009.2.3	한 · 미 정상간 통화(이명박 대통령-Obama 대통령)
2009.2.11-15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방미
2009.2.18-20	미 하원 군사위 대표단 방한
2009.2.18-25	Evans Revere Korea Society 회장 방한
2009.2.19-20	Clinton 미 국무장관 방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2009.2.20	제21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09.2.21-24	Friedman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방한
2009.2.22-24	Perry 前 국방장관 방한
2009.3.2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09.3.7-10	Bosworth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
2009.3.17-8.14	Euna Lee 및 Laula Ling(기자), 북한 억류
2009.3.20	반환기지 환경치유 관련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합의 · 채택
2009.4.2	G20 정상회의(영국)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2009.4.3-9	신각수 차관 방미
2009.4.10-14	Burton 미 하원 Korea Caucus 공동의장 방한
2009.4.16	Holbrook 미 국무부 아프간 · 파키스탄 특별대표 방한
2009.5.8-11	Bosworth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
2009.5.14	제22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워싱턴)
2009.5.18-19	Clinton 前 대통령 방한
2009.5.19	CSIS, Korea Chair 설립 및 발표
2009.5.26	한 · 미 정상간 통화
2009.6.2-5	Steinberg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 방한
2009.6.4-7	유명환 장관 방미, Clinton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09.6.16	이명박 대통령 방미(6.15-17), Obama 대통령과 정상회담 * 「한 · 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채택
2009.6.22-27	Hastert 前 미 하원의장 방한
2009.6.26	Flournoy 미 국방부 정책차관 방한
2009.7.5-11	제1차 평화봉사단원 재방한 초청 사업 실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09.7.18-20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09.7.22	ARF 계기 한 · 미 외교장관회담 개최(푸켓)
2009.7.23	제23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개최(서울)
2009.7.27	미국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 제정
2009.7.31-8.4	Bush 前 대통령 방한
2009.8.4-5	Clinton 前 대통령 방북
2009.8.10-13	코리아 소사이어티 지도부 방한 * Hubbard 신임 이사장, Gregg 전임 이사장, Revere 회장
2009.8.10-15	Honda 미 하원의원 방한
2009.8.13-14	Clinton 前 대통령 방북 * 북한 억류 미국인 관련(Euna Lee 및 Laula Ling)
2009.8.17-19	Berman 미 하원 외무위원장 일행 방한
2009.8.19-22	Gingrich 前 미 하원의장 방한
2009.8.22-24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관련 미측 조문사절단 방한
2009.8.31-9.7	Faleomavaega 미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원장 방한
2009.9.17-19	Thomson RAND 연구소장 방한
2009.9.19-20	Steinberg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09.9.20-26	UN총회 및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명박 대통령 방미
2009.9.21	UN총회 계기 한 · 미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2009.10.6	유명환 장관, 한 · 중 · 일 3국 주재 미국대사 접견
2009.10.12-15	Bush 前 대통령 방한
2009.10.21	Gore 前 미 부통령 방한
2009.10.22	제41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2009.10.25-31	제2차 평화봉사단원 재방한 초청 사업 실시
2009.11.11-15	Armacost 아시아재단 이사장 방한
2009.11.19	Obama 대통령 방한(11.18-19),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9.11.29-12.2	Henry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소장 방한
2009.12.1-3	Donovan 미 국무부 동아 · 태 수석 부차관보 방한
2009.12.8-9	Verveer 미 국무부 국제여성문제 담당 본부대사 방한
2009.12.14	한 · 미 외교 · 국방(2+2) 국장급 회의 개최(워싱턴)
2009.12.24 -2010.2.5	Robert Park(미국 인권운동가), 북한 억류
2010	
2010.1.7-1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단 방미
2010.1.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단 방미
2010.1.28	제24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10.1.28-31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방미
2010.2.2-4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0.2.16-18	Smith 미 하원의원 방한
2010.2.25-27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제2차 한 · 미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
2010.3.2-5	Hubbard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방한
2010.3.11-13	Kissinger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10.3.11-20	김영란 대법관 방미
2010.3.21-24	Carter 前 대통령 내외 방한
2010.3.27-29	Faleomavaega 미 하원 외무위 아 · 태 소위원장 방한
2010.4.1	한 · 미 정상간 통화
2010.4.2-3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0.4.6	한 · 미 외교장관간 통화
2010.4.6-9	Hamre CSIS 소장 방한
2010.4.11-13	2010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명박 대통령 방미 * 4.12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및 Biden 부통령 접견
2010.4.29-30	미국지역 총영사회의 개최(워싱턴)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10.5.3-4	제4차 서울-워싱턴 포럼 개최(워싱턴)
2010.5.5-7	한 · 미 · 일 의원회의 개최(워싱턴)
2010.5.6	제25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10.5.6-17	Perry 前 국방장관 방한
2010.5.8-15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단(추미애, 조원진, 김재윤 의원) 방미
2010.5.9-11	미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 방한
2010.5.10-14	Sherman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방한
2010.5.10-14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단(김영록, 이춘석 의원) 방미
2010.5.12-14	Romberg 스팀슨센터 동아시아연구실장 방한
2010.5.13-14	Haass CFR 회장 방한
2010.5.14	한 · 미 차관보급 2+2 협의 개최(워싱턴)
2010.5.18	한 · 미 정상간 통화
2010.5.23-27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방미
2010.5.26	Clinton 미 국무장관 방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2010.5.30-6.1	Webb 상원 외교위 동아 · 태 소위원장 방한
2010.6.2	Korea Society 연례만찬 개최(뉴욕)
2010.6.5	이명박 대통령, 샹그릴라회의 계기 · Gates 미 국방장관 접견(싱가포르)
2010.6.6-9	Albright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10.6.11-14	주호영 특임장관 방미(LA, 라스베가스)
2010.6.16-17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0.6.20-23	Bush 前 대통령 방한
2010.6.23	미 의회 한국전 발발 60주년 기념 상 · 하원 합동결의안(S.J.Res.32) 채택
2010.6.26	G20 정상회의(캐나다)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2010.7.9	제26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워싱턴)
2010.7.18-22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방미
2010.7.21	6.25전쟁 발발 60주년 계기 제 1차 한 · 미 외교 · 국방장관회의(2+2) 개최(서울)
2010.7.29-8.2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대표단 방미(워싱턴 · 뉴욕)
2010.8.1-3	Einhorn 미 국무부 대북한 · 이란 제재 조정관 방한
2010.8.9-11	미 정부 영사대표단 방북
2010.8.13-21	Minton 코리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방한
2010.8.16-19	Watson 미 하원의원 방한
2010.8.24-27	천영우 차관 방미
2010.8.25-27	Carter 前 대통령 방북
2010.9.1-7	박희태 국회의장,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 계기 방미
2010.9.7-9	Cohen 前 미 국방장관 방한
2010.9.21-24	Daley 시카고 시장 방한
2010.9.26-30	Sherman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방한
2010.10.6-7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0.10.8	제42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
2010.10.10-16	제4차 미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사업
2010.10.13-17	Thomas Hubbard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방한
2010.10.30	Clinton 미 국무장관, ASEAN+3/EAS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 예방(하노이)
2010.10.30	ASEAN+3/EAS 정상회의 계기 한 · 미 외교장관회담 개최(하노이)
2010.11.2	한 · 미 정상간 통화
2010.11 -2011.5.28	Eddie June(선교 활동 미국인), 북한 억류
2010.11.4-6	Bouton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회장 방한
2010.11.7-9	Inouye, Cochran 상원의원 방한
2010.11.8-12	Roskam 하원의원 방한
2010.11.11	Obama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11.10-12),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2010.11.15-19	Romberg 스팀슨센터 동아시아연구실장 방한
2010.11.17-19	Manyin 미 의회조사국 아시아담당관 방한
2010.11.24	한 · 미 정상간 통화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10.11.25	한 · 미 외교장관간 통화
2010.11.28-29	Faleomavaega 하원의원 방한
2010.11.28-12.4	Talbott 브루킹스 연구소장 및 Bush 연구실장 방한
2010.11.28-12.5	New Beginnings Policy Study Group 방한
2010.11.29-30	Rice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10.11.30-12.3	한 · 미 FTA 추가협상 및 추가협상 타결
2010.12.1	OSCE 정상회의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동(아스타나)
2010.12.5-7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Clinton 미 국무장관과 회담 *한 · 미 · 일 외교장관 회담(12.6), 공동성명 발표
2010.12.8	Mullen 미 합참의장 방한
2010.12.13	제27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2011	
2011.1.2-5	남경필 외통위원장 일행 방미(워싱턴, 뉴욕)
2011.1.14	Gates 미 국방장관 방한
2011.1.19-25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일행 방미(워싱턴, 뉴욕)
2011.1.23-28	황진하 의원 일행(황진하, 고흥길, 정옥임, 김정 의원) 방미
2011.1.26-27	Steinberg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11.2.6-11	King 미 대북인권특사 방한
2011.2.10	한 · 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2.28-3.4	Hubbard 이사장 및 Minton 회장 등 코리아 소사이어티 일행 방한
2011.3.12-13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1.3.14-16	Arnold 아시아재단 회장 방한
2011.3.21-30	한 · 미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정몽준 의원 등) 방미
2011.3.22-26	Sanchez 미 하원의원 방한
2011.3.27-29	Bush 前 대통령 방한
2011.3.28-29	제28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하와이)
2011.3.29-30	CFR 대표단 방한
2011.3.27-4.3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방미
2011.3.28-31	이재오 특임장관 방미
2011.3.29	제28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개최(하와이)
2011.4.16-17	Clinton 미 국무장관 방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2011.4	Carter 前 대통령 방북 * 북한 억류 미국인 관련
2011.4.17-19	Webb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방한
2011.4.17-21	Reed 및 Bass 미 하원의원 방한
2011.4.18-19	McConnell 상원 공화당 대표 일행 방한
2011.4.26	한 · 미 외교차관보 전략대화 및 외교 · 국방(2+2) 차관보급 회의 개최 (워싱턴) * 외교통상부-미 국무부간 인사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2011.4.26-30	Hamre 소장 등 CSIS 대표단 방한
2011.5.15-17	McDonnell 미 버지니아 주지사 방한
2011.5.17-18	Elman 회장 등 미 유태인위원회 대표단 방한
2011.5.17-23	Desai 회장 등 아시아 소사이어티 대표단 방한
2011.5.18-20	Faleomavaega 미 하원의원 방한
2011.5.24-28	King 북한인권특사 방북
2011.5.29-30	Blunt 미 상원의원 방한
2011.6.3-9	한나라당 의원단(정몽준, 장제원, 조해진 의원) 방미
2011.6.6-9	O'Malley 매릴랜드 주지사 방한
2011.6.10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1.6.9-10	Cohen 미 재무부 테러 · 금융정보담당 차관 대행 방한
2011.6.20-25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Clinton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11.7.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단 방미
2011.7.10-16	제5차 미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 실시
2011.7.13-15	Mullen 미 합참의장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11.7.23	ARF 정상회의(발리)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 *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2011.7.22-23	민일영 대법관 방미
2011.8.9-12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방미
2011.8.31-9.3	Hamre CSIS 소장 일행 방한
2011.9.4-5	미 군사위 하원의원단 방한
2011.9.20-23	UN총회 · 원자력 안전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이명박 대통령 방미(뉴욕 · 시애틀)
2011.9.22-23	제29차 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서울) *SPI는 이후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본회의 구성회의로 통합됨
2011.10.7-8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2011.10.13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미(10.11-15), Obama 대통령과 정상회담 * 의회 합동연설(10.13)
2011.10.28	제43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2011.10.30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 계기 Clinton 미 국무장관 방한
2011.11.22	Sherman 방한
2012	
2012.1.4-6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
2012.1.16-18	미 국방수권법상 이란 제재 관련 미측 대표단 방한 * 대표단 : Einhorn 미 국무장관 특보, Glaser 미 재무부 테러 · 금융담당 차관보 등
2012.1.17	한 · 미 · 일 3자협의(워싱턴)
2012.1.31-2.1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2.1.30-2.3	Zumwalt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12.2.25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2.28-29	Nides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12.2.29	제3차 미 · 북 대화 결과(합의사항) 발표 - 북한은 △영변 UEP 포함 핵활동 ·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에 합의
2012.3.9	김성환 장관 방미, Clinton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12.3.11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3.12-14	Kissinger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12.3.15	한 · 미 FTA 발효
2012.3.25	Obama 대통령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3.25-27),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2012.4.6-8	Chambliss 상원의원 등 미 공화당 의원단 방한
2012.4.15-18	Locklear 미태평양 사령관 방한
2012.4.16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2.4.17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4.23-25	Harman 우드로윌슨센터 회장 방한
2012.4.25	Zumwalt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12.4.26-27	제1차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 및 본회의 개최(워싱턴)
2012.5.8-10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캐나다 및 미국 방문
2012.5.17-19	Zumwalt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12.5.20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5.20-25	Manzullo 미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원장 방한
2012.5.21	한 · 미 · 일 3자협의
2012.5.21-25	Hamre CSIS 소장 방한
2012.5.22-25	Ros-Lehtinen 미 하원 외무위원장 방한
2012.6.13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6.14	제2차 한 · 미 외교 · 국방(2+2) 회의 (워싱턴)
2012.6.18-19	Rawlings 미 댈러스 시장 방한
2012.6.25-26	이명박 대통령 중남미 순방 계기 방미
2012.6.25-7.1	Rutherford 미 일리노이주 재무장관 방한
2012.6.25-7.1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미
2012.7.1-7.4	Lippert 미 국방부 아 · 태차관보 방한
2012.7.6-7	Clinton 미 국무장관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12.7.9-7.12	Yee 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방한
2012.7.12	EAS/ARF 외교장관회의(캄보디아) 계기 한 · 미 · 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2012.7.14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2.7.20-25	Zumwalt 미 국무부 동아 · 태 부차관보 방한
2012.7.23-26	Hubbard 미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방한
2012.7.25-26	Carter 미 국방부 부장관 방한
2012.7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여수)
2012.7.30-8.3	Perez 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 방한
2012.8.16-20	Honda, Faleomavaega 미 하원의원 방한
2012.8.19-24	Whitmire 미 텍사스주 상원의원 방한
2012.8.26-31	새누리당 국회의원단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 계기 방미 (8.26-31)
2012.9.3-5	Liu 뉴욕시 감사원장 방한
2012.9.9	APEC 정상회의(러시아) 계기 이명박 대통령, Clinton 미 국무장관 접견
2012.9.12-13	제2차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 및 본회의 개최(서울)
2012.9.16-17	Bryant 미시시피 주지사 방한
2012.9.19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9.22-25	Sandoval 네바다 주지사 방한
2012.9.25	유엔총회(뉴욕) 계기 한 · 미 · 일 3국 외교장관회담
2012.10.9-11	Gregoire 미 워싱턴 주지사 방한
2012.10.11-14	Koh 미 국무부 법률자문관 방한
2012.10.15-25	강창희 국회의장 방미
2012.10.16	제4차 한 · 미 차관급 전략대화 (서울)
2012.10.17	한 · 미 · 일 3자협의(도쿄)
2012.10.19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10.21-25	Dreier 미 하원 규칙위원장 방한
2012.10.21-27	미 평화봉사단 재방한사업 실시
2012.10.23-24	제44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
2012.10.26-27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2.11.3	Kenneth Bae(미국인), 북한 억류
2012.11.11-13	Steinberg 前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12.11.14	한 · 미 정상간 통화
2012.12.2-6	김황식 국무총리 미주지역 순방
2012.12.4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2012.12.12-13	Paal 카네기재단 부소장 및 Snyder 미 외교협회 (CFR) 선임 연구원 방한
2012.12.28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사 캠프 보니파스(Camp Bonifas) 및 육군9사단 위문 방문
2013	
2013.1.7-8	Inhofe 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단 방한
2013.1.8-10	한 · 미 · 일 의원회의 참석 계기 Honda 하원의원 등 미 하원의원단 방한
2013.1.9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Clinton 미 국무장관 전화통화
2013.1.15-16	미 외교안보 합동 대표단 방한
2013.1.28-31	Lohman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소장 등 헤리티지 재단 대표단 방한
2013.1.30-31	한 · 미 · 일 안보토의(DTT) 본회의 참석
2013.2.1-2	Royce 미 하원 외무위원장, Eagel 외무위 간사 등 하원의원 대표단 방한
2013.2.3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Kerry 미 국무장관 전화통화
2013.2	Richardson 前 주지사 방북
2013.2.6-10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 방미
2013.2.12	한 · 미 정상간 통화
2013.2.12-28	한 · 미 동맹 60주년 기념 로고 공모전 개최
2013.2.21-22	제3차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 및 본회의 개최(워싱턴)
2013.2.24-26	Donilon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2013.2.24-26	Feulner 헤리티지 재단 회장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13.2-24-3.1	Hubbard 이사장 등 코리아 소사이어티 대표단 방한
2013.2.25	박근혜 대통령 취임
2013.2.27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 방문단 방한
2013.3.6-7	Bush 前 대통령 방한
2013.3.16	윤병세 외교부 장관-Kerry 미 국무장관 전화통화
2013.3.17-18	Carter 미 국방부 부장관 방한
2013.3.19-20	Cohen 미 재무부 테러 · 금융정보 담당차관 방한
2013.3.19-21	Nixon 미주리 주지사 방한
2013.3.23-26	Powell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13.3.25-27	J.Yun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 대리 방한
2013.3.28-30	Corker 미 상원 외교위 간사 방한
2013.3.28-31	이군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단 방미
2013.4.1-4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방미, Kerry 미 국무장관과 회담
2013.4.8-13	Manzullo KEI(한국경제연구소) 소장 방한
2013.4.12	Kerry 미 국무장관 방한
2013.4.26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개소
2013.4.27	Burns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13.4.28-30	Chabot 미 하원 외무위 아 · 태 소위원장 등 대표단 방한
2013.6.9-13	김규현 외교부 1차관 방미
2013.5.7	박근혜 대통령 방미(5.5-10),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 회담 * 「한 · 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발표 * 의회 합동연설(5.8)
2013.5.10	Gottemoller 미 국무부 군축 · 비확산 차관대리 방한
2013.5.20-24	Hamre 소장 등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 방한
2013.5.28-30	Cardin 미 상원 외교위 동아 · 태 소위원장 방한
2013.6.9-13	김규현 외교부 1차관 방미
2013.6.17	박근혜 대통령, Obama 대통령과 전화통화
2013.6.18-20	Haas 회장 등 미 외교협회(CFR) 대표단 방한
2013.7.1	ARF(브루나이) 계기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
2013.7.1	김규현 외교부 1차관, Moniz 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
2013.7.2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협의(워싱턴)
2013.7.4-6	Napolitano 국토안보부 장관 방한
2013.7.11-13	Campbell 前 미 국무부 동아 · 태차관보 방한
2013.7.22-26	Hubbard 이사장 등 코리아 소사이어티 대표단 방한
2013.7.24-25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협의(서울)
2013.7.25-30	김정훈 대통령 특사 방미
2013.7.30-31	제4차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 및 본회의 개최(서울)
2013.8.7	김장수 국가안보실장-Rice 미 국가안보보좌관 통화
2013.8.17-19	Menendez 미 상원 외교위원장 방한
2013.8.22-23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협의(서울)
2013.8.24-30	Rangel 미 하원의원 초청 방한
2013.8.25-26	McCain, Whitehouse 미 상원의원 방한
2013.8.28-9.4	Marsden 미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 방한
2013.9.3-5	Gillibrand 미 상원의원 등 상 · 하원 의원단 방한
2013.9.5-7	Russel 미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2013.9.10-12	Kausner 미 국무부 지역안보 · 무기이전 부차관보 방한
2013.9.25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방미
2013.9.25	유엔 총회 계기 한 · 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뉴욕)
2013.9.25-26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협의(워싱턴)
2013.10.2	제45차 한 · 미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2013.10.5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고위급협의(소인수협의) (인천)
2013.10.10	동아시아 정상회담(EAS : East Asia Summit) 계기 박근혜 대통령-Kerry 미 국무장관 접견
2013.10.12-15	미 외교정책위원회(NCAFP) 대표단 방한

Chapter 27 한 · 미 관계 주요일지

2013.10.13-19	제8차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 사업
2013.10.21-25	Wagner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초청 방한
2013.10.23-27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방미
2013.10.28-11.1	Shafer 조지아주 상원의원 대행 초청 방한
2013.10.30-31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고위급협의(서울)
2013.11.11-14	Armitage 前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13.11.11-15	Tsutsui 하와이주 부주지사 초청 방한
2013.11.13-17	Martin 알칸사주 국무장관 초청 방한
2013.11.18-19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협의(워싱턴)
2013.12.4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8차 고위급협의(워싱턴)
2013.12.5-7	Biden 미 부통령 방한
2013.12.10~17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9차 고위급협의(서울)
2013.12.12-14	Owen 워싱턴주 부지사 초청 방한
2013.12.15-18	김규현 외교부 1차관 방미
2014-	
2014.1.5-9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방미
2014.1.5-11	이병석 국회 부의장 방미
2014.1.8-11	국회의원단(황진하, 한기호, 김춘진 의원) 방미
2014.1.9-11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서울)
2014.1.11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타결(서울)
2014.1.20-21	Burns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14.1.23-25	Rubio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 방한
2014.1.26	Russe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2014.2.2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
2014.2.13-14	Kerry 미 국무장관 방한
2014.2.17-18	Royce 미 하원 외무위원장 등 외무위 대표단(의원 총 8명) 방한
2014.2.24-28	Hubbard 이사장 등 코리아 소사이어티 대표단 방한
2014.2.26-3.2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방미
2014.3.2-3	Bush 前 미 대통령 방한
2014.3.9-1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미
2014.3.12-16	정의화 의원 등 한 · 미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 방미
2014.3.19	조태용 외교부 1차관-Sherman 미 국무부 정무차관 전화 통화
2014.3.25	핵안보정상회의(네덜란드) 계기 한 · 미 · 일 정상회담
2014.4.9-12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방미
2014.4.15	조태용 외교부 1차관-Sherman 미 국무부 정무차관 전화 통화
2014.4.16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2014.4.16-17	제5차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 및 본회의 개최(워싱턴)
2014.4.21-23	Steinberg 前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014.4.22-23	Cantor 미 하원 공화당 대표 등 하원 의원단(의원 총 9명) 방한
2014.4.25	Obama 대통령 방한(4.25-26),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 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발표
2014.4.28-5.1	Rice 前 미 국무장관 방한
2014.5.6	윤병세 외교부 장관, Haas 미 CFR 회장 면담(뉴욕)
2014.5.13	Clapper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방한
2014.5.12-17	Kim 하와이 주상원의장 초청 방한
2014.5.17-20	DeMint 회장 등 미 헤리티지 재단 대표단 방한
2014.5.18-22	Hosemann 미시시피주 국무장관 초청 방한
2014.5.26-30	Hamre 소장 등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 방한
2014.6.16-20	Jannuzi 소장 등 맨스필드재단 대표단 방한
2014.6.24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방미, 제6차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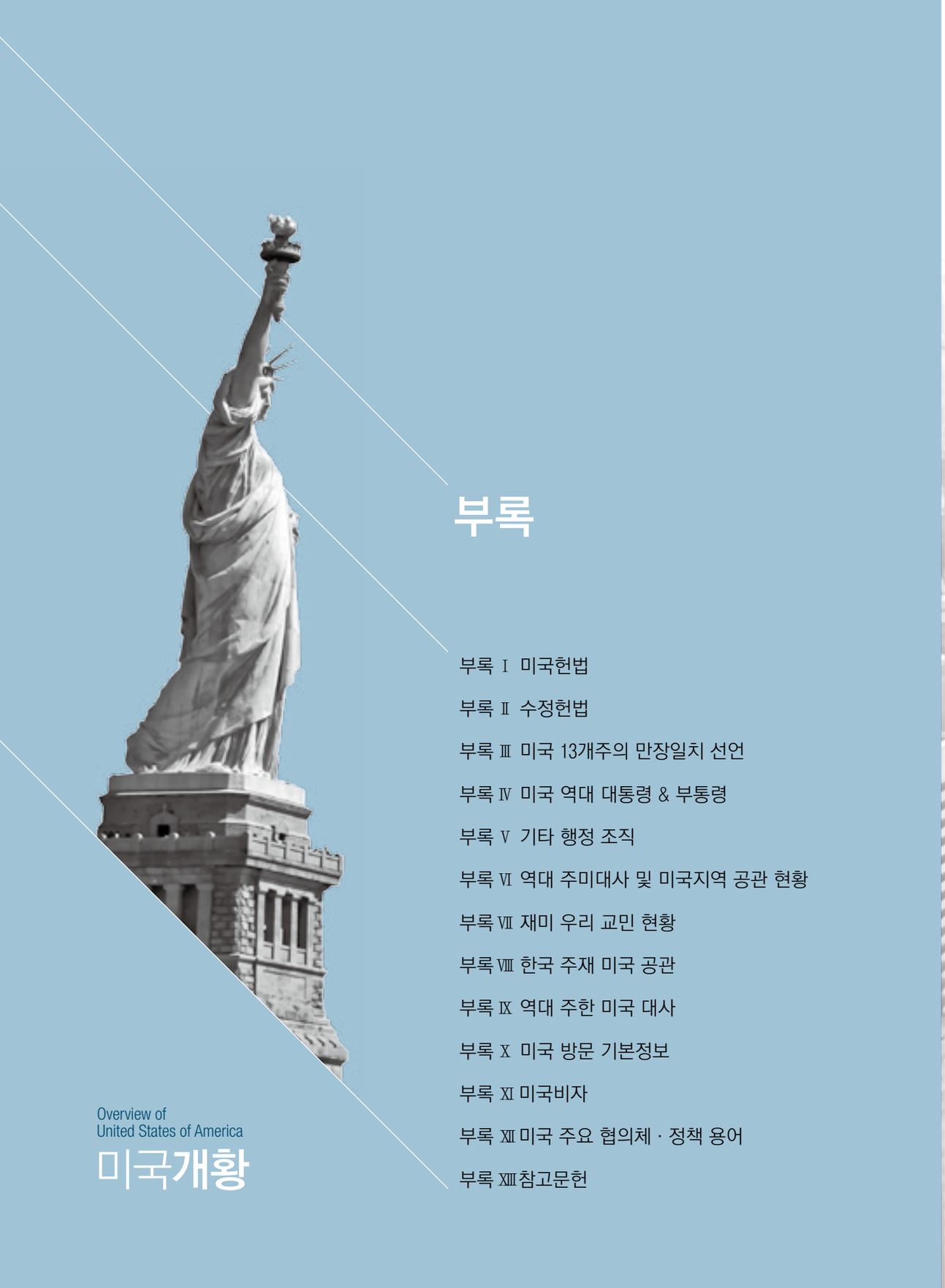

부록

부록 Ⅰ 미국헌법

부록 Ⅱ 수정헌법

부록 Ⅲ 미국 13개주의 만장일치 선언

부록 Ⅳ 미국 역대 대통령 & 부통령

부록 Ⅴ 기타 행정 조직

부록 Ⅵ 역대 주미대사 및 미국지역 공관 현황

부록 Ⅶ 재미 우리 교민 현황

부록 Ⅷ 한국 주재 미국 공관

부록 Ⅸ 역대 주한 미국 대사

부록 Ⅹ 미국 방문 기본정보

부록 Ⅺ 미국비자

부록 Ⅻ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부록 XIII 참고문헌

Overview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개황

부록 Ⅰ

미국헌법

부록 I 미국헌법

영국에 반기를 든 북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는 1776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결속을 위하여 연합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하고 이 헌장에 입각하여 연합 회의(Confederance Congress)라는 중앙 중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이 중앙 중부는 독립 이후에 일어난 사태에 대처하는 데 무력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1787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필라델피아에서 55명의 대표가 모여 제헌 회의가 열리고 드디어 현재의 연방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 헌법은 곧 각 주에 회부되어 13개의 주 중 9주가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 헌법에 의하여 1789년 독립 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99, 재임 1789~97)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의 본체는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7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 되었는데, 이 추가 조항을 수정(Amendment) 헌법 내지 수정 조항이라 한다. 이 중 1789년에 발의되어 1791년 발효한 수정 헌법 제 1조부터 제 10조까지를 보통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미국 헌법의 조와 절은 원문에 표시되어있으나 항은 원문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조 또는 절의 ( )안에 표시한 표제도 편의상 붙인 것이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끔 괄호 안에 원을 표시하였으며 수정 헌법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무효화된 부분을 〈 〉로써 표시했다. 또한 이 헌법의 역문은 미국 공보원이 발행한 시평 (1987.3)에 실린 것을 토대로 다소 수정한 것이다.

우리들 연합주(the United States)의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Union)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입법부)

제 1 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 의회(Congress of the United States)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한다.
제 2 절 (하원)	〈1항〉	하원은 각 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의원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연령이 만 25세에 미달한 자,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못 되는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3항〉	〈하원 의원의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 계약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의 총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구(흑인 노예-역주) 총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수정 제 13조, 제 14조 참조) 인구수의 산정은 제 1 회 연방 의회를 개최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 의원의 수는 인구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 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 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 주는 3명 매사추세츠 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 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니티컷 주는 5명, 뉴욕쥬는 6명, 뉴져지 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 주는 8명, 델라웨어 주는 1명, 메릴랜드 주는 6명, 버지니아 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 주는 3명의 의원을 각기 선출할 수 있다.
	〈4항〉	어떤 주에서든 그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 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전유한다.
제 3 절 (상원)	〈1항〉	상원은 〈각 주 주 의회에서 선출한〉(수정 제 7조로 개정) 6년 임기의 상원 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부록 I 미국헌법

제 3 절 (상원)	〈2항〉	상원 의원들의 제 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 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 1 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 2 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 3 부류의 의원은 6년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 의원의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든 주 의회의 후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 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 의회가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수정 제 17조)
	〈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 의원이 될 수 없다.
	〈4항〉	미국의 부통령(Vice President)은 상원 의장이 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항〉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을 심판할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Chief Justice)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을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보수를 수반하는 미국의 공직에 취임,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 4 절	〈1항〉	(연방 의회의 조직)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 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 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 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수정 제 17조로 개정)
	〈2항〉	연방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해야한다. 〈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한 12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수정 제 2조 참조)
제 5 절	〈1항〉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항〉	각 원은 의사 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항〉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각 원은 출석 의원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소속 의원의 찬반 투표를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4항〉	연방 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도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최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 6 절	〈1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미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아니한다.
	〈2항〉	상원 의원 또는 하원 의원은 재임 기간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국의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 7 절	〈1항〉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해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해야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른 의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하여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 일 이내(일요일은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 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부록 I 미국헌법

제 7 절	〈3항〉	상 · 하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해야 한다.
제 8 절 (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	〈1항〉	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국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을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2항〉	미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항〉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항〉	미국 전체에 공통되는 획일적인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한 획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5항〉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6항〉	미국의 유가 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항〉	우편 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항〉	연방 대법원 아래에 하급 법원을 조직한다.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 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취한 경비의 지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	육, 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 의회가 정한 군률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항〉	특정 주가 미국에 양도하고, 연방 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소재지가 되는 지역(1평방 마을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 의회의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 9 절 (연방 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	연방 의회는 기존의 각 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흑인 노예-역주)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인신 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정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항〉	개인의 권리 박탈법(Bill of Attainder) 또는 소급 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항〉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 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항〉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항〉	어떠한 통상 또는 세 수입 규정에 의하여도, 어느 주의 항구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 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항〉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축에 관한 정식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8항〉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국 정부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부록 I 미국헌법

제 10 절 (주에 금지된 권한)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절차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항〉	어느 주라도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 수입은 미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해야 한다. 또, 연방 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의 법률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3항〉	어느 주라도 군대나 군함을 보유할 수도 없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제2조 (행정부)

제 1 절	〈1항〉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2항〉	각 주는 그 주의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 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 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또는 미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3항〉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하되, 그 중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함하여 상원 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 의장은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들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한다.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 투표로 그 중의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 득표자 5명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주의 하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의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뒤에 최다수의 득표를 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 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1804년에 비준된 수정 헌법 제 2조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는 분리 실시되었으므로 이 항목은 사문화되었다. 또한 1828년 이후 정당 정치의 발달로 각 주는 대통령의 선거인을 일반 유권자가 선출하게 되었으므로 대통령의 선출은 실질적으로 일반 유권자의 투표로써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는 대통령의 선거인의 투표는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역주)
	〈4항〉	연방 의회는 선인들의 선임 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항〉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시에 미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 간 미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6항〉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 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의 면직, 사망, 사직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형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능이 제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수정 제 25조 참조)
	〈7항〉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항〉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한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부록 I 미국헌법

제 2 절	〈1항〉	대통령은 미국 육, 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 주의 민병이 미국의 현역에 복무할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 사항에 관하여 행정 각 부처 장관의 문서에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 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 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나, 이후에 법률로써 정해지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 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또는 법원에게 또는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3항〉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3 절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 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긴급시에는 대통령은 상, 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국의 모든 관리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 4절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제3조 (사법부)

제 1 절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대법원(Supreme Court)에, 그리고 연방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게 속한다. 연방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과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는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1항〉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국 법률과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된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국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한 주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수정 제 11조 참조), 상이한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 다른 주로부터 부여 받은 토지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외국 시민 도는 외국 신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 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서는 연방 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3항〉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해야 한다. 다만, 그 범죄자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 3 절	〈1항〉	미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를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연방 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 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선(Corruption of Blood)이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연방제)

제 1 절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 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부록 I 미국헌법

제 2 절	〈1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항〉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 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
	〈3항〉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수정 제 13조 참조)
제 3 절	〈1항〉	연방 의회는 신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 구역에서도 신주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 주의 주 의회와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형성할 수 없다.
	〈2항〉	연방 의회는 미국에 소속하는 영토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제 4 절		미국은 이 연방 내의 모든 주의 공화 정체(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 주의 주 의회 또는 행정부 (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 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5조 (헌법수정절차)

		연방 의회는 상, 하 양원의 3분의 2가 본 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 수정을 발의해야 하며, 또는 각 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 발의를 위한 헌법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서나 수정은 연방 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 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 헌법 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 1 조 제 9절 제 1 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국가의 최고의 법)

제 1 절 (채무와 조약)		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채무와 체결된 모든 조약은 본 헌법에서도 연합(The Confederation)(규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2 절 (연방 우위)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국의 법률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 국가의 최고의 법(the Supreme Law of the Land)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어느 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 헌법에 구속을 받는다.
제 3 절		전기한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 각 주의 주 의회 의원, 미국 및 각 주의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미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 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7조 (비준)

		9개 주의 헌법 회의가 비준하면 이 헌법은 비준을 마친 각 주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서기 1787년, 미국 독립 제 12년, 9월 17일, 헌법 회의에 참석한 각 주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서명 생략)

부록 I 미국헌법

Article I. [LEGISLATIVE BRANCH]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tion 1.	Clause 1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Section 2.	Clause 2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chosen every second Year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 No Person shall be a Representativ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wenty five Years, and been seven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in which he shall be chosen.
	Clause 3	Representatives and direct Tax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which may be included within this Un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o the whole Number of free Persons, including those bound to Service for a Term of Years, and excluding Indians not taxed, three fifths of all other Persons. (See Note 2) The actual Enumer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first Meeting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every subsequent Term of ten Years, in such Manner as they shall by Law direc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exceed one for every thirty Thousand, but each State shall have at Least one Representative; and until such enumeration shall be made, the State of New Hampshire shall be entitled to chuse three, Massachusetts eight, Rhode-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one, Connecticut five, New-York six, New Jersey four, Pennsylvania eight, Delaware one, Maryland six, Virginia ten, North Carolina five, South Carolina five, and Georgia three.
	Clause 4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from any State, the Executive Authority thereof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Clause 5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use their Speaker and other Officers; and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Section 3.	Clause 1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chosen by the Legislature thereof, (See Note 3)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Clause 2	Immediately after they shall be assembled in Consequence of the first Election, they shall be divided as equally as may be into three Classes. The Seats of the Senators of the first Class shall be vac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second Year, of the secon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fourth Year, and of the thir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sixth Year, so that one third may be chosen every second Year; and if Vacancies happen by Resignation, or otherwise, during the Recess of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the Executive thereof may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Legislature, which shall then fill such Vacancies. (See Note 4)
	Clause 3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Years, and been nine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for which he shall be chosen.
	Clause 4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esident of the Senate, but shall have no Vote, unless they be equally divided.
	Clause 5	The Senate shall chuse their other Officers, and also a President pro tempore, in the Absence of the Vice President, or when he shall exercis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lause 6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 be on Oath or Affirma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ried,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부록 I 미국헌법

Section 3.	Clause 7	Judgmen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but the Party convicted shall nevertheless be liable and subject to Indictment, Trial, Judgment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Section 4.	Clause 1	The Times, Places and Manner of holding Elections for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be prescribed in each State by the Legislature thereof; but the Congress may at any time by Law make or alter such Regulations, except as to the Places of chusing Senators.
	Clause 2	The Congress shall assemble at least once in every Year, and such Meeting shall be on the first Monday in December, (See Note 5) unless they shall by Law appoint a different Day.
Section 5.	Clause 1	Each House shall be the Judge of the Elections, Returns and Qualifications of its own Members, and a Majority of each shall constitute a Quorum to do Business; but a smaller Number may adjourn from day to day, and may be authorized to compel the Attendance of absent Members, in such Manner, and under such Penalties as each House may provide.
	Clause 2	Each House may determine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punish its Members for disorderly Behaviour, and, with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expel a Member.
	Clause 3	Each House shall keep a Journal of its Proceedings, and from time to time publish the same, excepting such Parts as may in their Judgment require Secrecy; and the Yeas and Nays of the Members of either House on any question shall, at the Desire of one fifth of those Present, be entered on the Journal.
	Clause 4	Neither House, during the Session of Congress,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adjourn for more than three days, nor to any other Place than that in which the two Houses shall be sitting.
Section 6.	Clause 1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receive a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to be ascertained by Law, and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See Note 6) They shall in all Cases, except Treason, Felony and Breach of the Peace, beprivileged from Arrest during their Attendance at the Session of their respective Houses, and in going to and returning from the same; and for any Speech or Debate in either House, they shall not be questioned in any other Place.
	Clause 2	No Senator or Representative shall, during the Time for which he was elected, be appointed to any civil Off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have been created, or the Emoluments whereof shall have been encreased during such time;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Member of either House during his Continuance in Office.
Section 7.	Clause 1	All Bills for raising Revenue shall origin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the Senate may propose or concur with Amendments as on other Bills.
	Clause 2	Every Bill which shall have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shall, before it become a Law,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he approve he shall sign it, but if not he shall return it, with his Objections to that House in which it shall have originated, who shall enter the Objections at large on their Journal, and proceed to reconsider it. If after such Reconsideration two thirds of that House shall agree to pass the Bill, it shall be sent, together with the Objections, to the other House, by which it shall likewise be reconsidered, and if approved by two thirds of that House, it shall become a Law. But in all such Cases the Votes of both Houses shall be determined by yeas and Nays, and the Names of the Persons voting for and against the Bill shall be entered on the Journal of each House respectively. If any Bill shall not be returned by the President within ten Days (Sundays excepted) after it shall have been presented to him, the Same shall be a Law, in like Manner as if he had signed it, unless the Congress by their Adjournment prevent its Return, in which Case it shall not be a Law.
	Clause 3	Every Order, Resolution, or Vote to which the Concurr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be necessary (except on a question of Adjournment)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before the Same shall take Effect, shall be approved by him, or being disapproved by him, shall be repassed by two thirds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Rules and Limitations prescribed in the Case of a Bill.

부록 I 미국헌법

Section 8.	Clause 1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Clause 2	To borrow Money on the credit of the United States;
	Clause 3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Clause 4	To establish an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 and uniform Laws on the subject of Bankruptc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Clause 5	To coin Money, regulate the Value thereof, and of foreign Coin, and fix the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Clause 6	To provide for the Punishment of counterfeiting the Securities and current Coin of the United States;
	Clause 7	To establish Post Offices and post Roads;
	Clause 8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Clause 9	To constitute Tribunals inferior to the supreme Court;
	Clause 10	To define and punish Piracies and Felonies committed on the high Seas, and Offences against the Law of Nations;
	Clause 11	To declare War,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and make 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
	Clause 12	To raise and support Armies, but no Appropriation of Money to that Use shall be for a longer Term than two Years;
	Clause 13	To provide and maintain a Navy;
	Clause 14	To make Rules for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 of the land and naval Forces;
	Clause 15	To provide for calling forth the Militia to execute the Laws of the Union, suppress Insurrections and repel Invasions;
	Clause 16	To provide for organizing, arming, and disciplining, the Militia, and for governing such Part of them as may 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reserving to the States respectively, the Appointment of the Officers, and the Authority of training the Militi a according to the discipline prescribed by Congress;
	Clause 17	To exercise exclusive Legislation in all Cases whatsoever, over such District (not exceeding ten Miles square) as may, byCession of particular States, and the Acceptance of Congress, become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exercise like Authority over all Places purchased by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in which the Same shall be, for the Erection of Forts, Magazines, Arsenals, dock-Yards, and ot her needful Buildings;--And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thereof.
Section 9	Clause 1	The Migration or Importation of such Persons as any of the States now existing shall think proper to admit, shall not be prohibited by the Congress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but a Tax or duty may be imposed on such Importation, not exceeding ten dollars for each Person.
	Clause 2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Clause 3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Clause 4	No Capitation, or other direct, Tax shall be laid, unless in Proportion to the Census or Enumeration herein before directed to be taken. (See Note 7)
	Clause 5	No Tax or Duty shall be laid on Articles exported from any State.
	Clause 6	No Preference shall be given by any Regulation of Commerce or Revenue to the Ports of one State over those of another: nor shall Vessels bound to, or from, one State, be obliged to enter, clear, or pay Duties in another.

부록 I 미국헌법

Section 9	Clause 7	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and a regular Statement and Account of the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all public Money shall be published from time to time.
	Clause 8	No Title of Nobility shall be gra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of Profit or Trust under them,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accept of any present, Emolument, Office, or Title, of any kind whatever, from any King, Prince, or foreign State.
Section 10.	Clause 1	No State shall enter into any Treaty, Alliance, or Confederation;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coin Money; emit Bills of Credit; make any Thing but gold and silver Coin a Tender in Payment of Debts;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 facto Law, or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or grant any Title of Nobility.
	Clause 2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lay any Imposts or Duties on Imports or Exports, except what may be absolutely necessary for executing it's inspection Laws: and the net Produce of all Duties and Imposts, laid by any State on Imports or Exports, shall be for the Use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nd all such Laws shall be subject to the Revision and Control of the Congress.
	Clause 3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Congress, lay any Duty of Tonnage, keep Troops, or Ships of War in time of Peace, enter into any Agreement or Compact with another State, or with a foreign Power, or engage in War, unless actually invaded, or in such imminent Danger as will not admit of delay.

Article II [EXECUTIVE BRANCH]

Section 1.	Clause 1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shall hold his office during the term of four years, and, together with the vice president, chosen for the same term, be elected, as follows:
	Clause 2	Each state shall appoint, in such manner as the legislature thereof may direct, a number of electors, equal to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to which the state may be entitled in the congress: but no senator or representative, or person holding an office of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ppointed an elector.
	Clause 3	The electors shall meet in their respective States, and vote by ballot for two persons, of whom one at least shall not be an inhabitant of the same state with themselves. And they shall make a list of all the persons voted for, and of the number of votes for each; which list they shall sign and certify, and transmit sealed to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irect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pen alle; A quorum for this purpose shall consist of a member or members from two thirds of the states, and a majority of all the states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In every case, after the choice of the president,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of the electors shall be the vice president. But if there should remain two or more who have equal votes, the senate shall chuse from them by ballot the vice president. (See Note 8)
	Clause 4	The Congress may determine the Time of chusing the Electors, and the Day on which they shall give their Votes; which Day shall be the sam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Clause 5	No Person except a natural born Citizen, 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neither shall any Person be eligible to that Offic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five Years, and been fourteen Years a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Clause 6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said Office, (See Note 9) the Same shall devolve on the VicePresident, and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of Removal,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both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declaring what Officer shall then act as President, and such Officer shall act accordingly, until the Disability be removed, or a President shall be elected.

부록 I 미국헌법

Section 1.	Clause 7	The President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his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either be encreased nor diminished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elected, and he shall not receive within that Period any other Emolument from the United States, or any of them.
	Clause 8	Before he enter on the Execution of his Office, he shall take the following Oath or Affirmation:-- "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2.	Clause 1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he may require the Opinion, in writing, of the principal Officer in each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upon any Subject relating to the Duties of their respective Offices, and he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c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Clause 2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nd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but the Congress may by Law vest the Appointment of such inferior Officers, as they think proper, in the President alone, in the Courts of Law, or in the Heads of Departments.
	Clause 3	The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fill up all Vacancies that may happen during the Recess of the Senate, by granting Commissions which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eir next Session.
Section 3.		He shall from time to time give to the Congress Information of the State of the Union, and recommend to their Consideration such Measures as he shall judge necessary and expedient; he may, on extraordinary Occasions, convene both Houses, or either of them, and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m, with Respect to the Time of Adjournment, he may adjourn them to such Time as he shall think proper; he shall receive Ambassadors and other public Ministers; he shall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and shall Commission all th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4.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Article III [JUDICIAL BRANCH]

Section 1.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ur, and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their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Section 2.	Clause 1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 (See Note 10)--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Clause 2	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 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부록 I 미국헌법

Section 2.	Clause 3	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such Trial shall be held in the State where the said Crimes shall have been committed; but when not committed within any State, the Trial shall be at such Place or Places as the Congress may by Law have directed.
Section 3.	Clause 1	Treas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consist only in levying War against them, or in adhering to their Enemies, giving them Aid and Comfort.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of Treason unless on the Testimony of two Witnesses to the same overt Act, or on Confession in open Court.
	Clause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the Punishment of Treason, but noAttainder of Treason shall work Corruption of Blood, or Forfeiture except during the Life of the Person attainted.

Article IV [FEDERAL AND STATE]

Section 1.	Clause 1	Full Faith and Credit shall be given in each State to the public Acts, Records, and judicial Proceedings of every other State. And the Congress may by general Laws prescribe the Manner in which such Acts, Records and Proceedings shall be proved, and the Effectthereof.
Section 2.	Clause 1	The Citizens of ea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Clause 2	A Person charged in any State with Treason, Felony, or other Crime, who shall flee from Justice, and be found in another State, shall on Demand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State from which he fled, be delivered up, to be removed to the State having Jurisdiction of the Crime.
	Clause 3	No Person held to Service or Labour in one State, under the Laws thereof, escaping into another, shall, in Consequence of any Law or Regulation therein, be discharged from such Service or Labour, but shall be delivered up on Claim of the Party to whom such Service or Labour may be due. (See Note 11)
Section 3.	Clause 1	New States may be admitted by the Congress into this Union; but no new State shall be formed or erec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any other State; nor any State be formed by the Junction of two or more States, or Parts of Stat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s of the States concerned as well as of the Congress.
	Clause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ispose of and mak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respecting the Territory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United States; and nothing in this Constitution shall be so construed as to Prejudice any Claims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particular State.
Section 4.		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nd shall protect each of them against Invasion; and on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 or of the Executive (when the Legislature cannot be convened) against domestic Violence.

Article. V [AMENDMENT PROCESS]

		The Congress, whenever two thirds of both Houses shall deem it necessary, shall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stitution, or, o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s of two thirds of the several States, shall call a Convention for proposing Amendments, which, in either Case, shall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is Constitution, when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ree 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or by Conventions in three fourths thereof, as the one or the other Mode of Ratification may be proposed by the Congress; Provided that no Amendment which may be made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shall in any Manner affect the first and fourth Clauses in the Ninth Section of the first Article; and that no State, without its Consent, shall be deprived of its equal Suffrage in the Senate.

부록 I 미국헌법

Article. VI [SUPREME LAW OF THE LAND]

Clause 1	All Debts contracted and Engagements entered into, before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as valid against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Constitution, as under the Confederation.
Clause 2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Judges in every State shall be bound thereby, any 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Clause 3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before mentioned, and the Members of the several State Legislatures, and all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both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everal States, shall be bound by Oath or Affirmation, to support this Constitution; but no religious Test shall ever be required as a Qualification to any Office or public Trust under the United States.

Article VII [RATIFICATION]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s of nine States, shall be suffici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Constitution between the States so ratifying the Same. Done in Convention by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States present the Seventeenth Day of September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seven hundred and Eighty seven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elfth In witness whereof We have hereunto subscribed our Names,

G. WASHINGTON--Presidt. and deputy from Virginia
[Signed also by the deputies of twelve States.]
Delaware : Geo : Read, Gunning Bedford jun, John Dickinson, Richard Bassett, Jaco: Broom
Maryland : James MCHenry, Dan of ST ThoS. Jenifer, DanL Carroll.
Virginia : John Blair--, James Madison Jr.
North Carolina : WM Blount, RichD. Dobbs Spaight, Hu Williamson
South Carolina : J. Rutledge, Charles 1ACotesworth Pinckney, Charles Pinckney, Pierce Butler.
Georgia : William Few, Abr Baldwin
New Hampshire : John Langdon, Nicholas Gilman
Massachusetts : Nathaniel Gorham, Rufus King
Connecticut : WM. SamL. Johnson, Roger Sherman
New York : Alexander Hamilton
New Jersey : Wil: Livingston, David Brearley., WM. Paterson., Jona : Dayton
Pennsylvania : B Franklin, Thomas Mifflin, RobT Morris, Geo. Clymer, ThoS. FitzSimons, Jared Ingersoll, James Wilson., Gouv Morris
Attest William Jackson Secretary

부록 II

수정헌법(Amendment)

부록 Ⅱ 수정헌법

수정 제 1조		(수정 제 1조로부터 수정 제 10조까지는 권리장전이라고 불려지며, 제 1차 연방 의회의 첫 회기에 제안되어, 각 주에 보내져서, 1791년 12월 15일 비준을 완료했다.)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 2조		(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 3조		(군인의 숙영)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수정 제 4조		(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 5조		(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대질 심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 7조		(민사 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위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 8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 제 9조		(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정 제 10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수정 제 11조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미국의 사법권은 미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시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794년 3월 5일 발의, 1795년 2월 7일 비준]

부록 Ⅱ 수정헌법

수정 제 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 선거인은 각각 가지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 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 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 의장은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의 참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 투표로 선거하여야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 하원은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 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의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 의원 총수의 3분의 2로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국 부통령의 직에도 취임할 자격이 없다. [1803년 12월 12일 발의, 1804년 9월 27일 비준]
수정 제 13조		(노예 제도 폐지) [1865년 2월 1일 발의, 1865년 12월 18일 비준]
	제 1절	노예 제도 또는 강제 노역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국 또는 그 관할하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4조		(공민권)
	제 1절	미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발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 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2절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 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사법관 또는 각 주 주의회의 인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강간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국 시민인 해당 주의 남성 주민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 의원 할당수의 기준을 그러한 남성 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 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 3절	과거에 연방 의회 의원, 미국 관리, 주 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 의회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 원의 3분의 2의 투표로써 그 실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 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또는 주의 미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는 채무를 떠맡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부록 Ⅱ 수정헌법

수정 제 14조	제 5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수정 제 15조		(흑인의 투표권)
	제 1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869년 2월 27일 발의, 1870년 3월 30일 비준]
수정 제 16조		(소득세) [연방 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도, 각 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 조사나 인구수 산정에 관계 업시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25일 비준]
수정 제 17조		(연방 상원 의원의 직접 선거)
	제 1절	미국의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원은 그 중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의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 2절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 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절	본 수정 사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 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1912년 5월 16일 발의, 1913년 5월 31일 비준]
수정 제 18조		(금주법)
	제 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국 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절	본 조는 연방 의회로부터 이를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각 주 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 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17년 12월 18일 발의, 1919년 1월 29일 비준, 수정 제 21조로 폐기]
수정 제 19조		(여성의 선거권)
	제 1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919년 6월 4일 발의, 1920년 8월 26일 비준]
수정 제 20조		(대통령과 연방 의회 의원의 임기)
	제 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했을 해의 1월 2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 때부터 시작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부록 Ⅱ 수정헌법

수정 제 20조	제 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 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 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 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도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절	연방 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원이 대통령으로 선정한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상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으로 선정한 인사 중 상망자가 생긴 경우를 대비하는 법률을 규정할 수 있다.
	제 5절	제 1절 및 제 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6절	본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32년 3월 2일 발의, 1933년 2월 6일 비준]
수정 제 21조		(금주법의 폐기)
	제 1절	연방 헌법 수정 제 18조는 이를 폐기한다.
	제 2절	미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 내에서 배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33년 2월 2일 발의, 1933년 12월 5일 비준]
수정 제 22조		(대통령의 임기의 제한)
	제 1절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
수정 제 23조		(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제 1절	미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구는 연방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특별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 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

부록 Ⅱ 수정헌법

수정 제 24조		(인두세)
	제 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 의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위한 예비 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미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962년 8월 27일 발의,1964년 1월 23일 비준]
수정 제 25조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제 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 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 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 3절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 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의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연방 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 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중이라도 연방 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1965년 7월 6일 발의, 1967년 2월 10일 비준]
수정 제 26조		(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제 1절	연령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연방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971년 3월 23일에 발의, 1971년 7월 1일 비준]
수정 제 27조		(의원 세비 변경) 상하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992년 5월 5일에 비준]

부록 Ⅱ 수정헌법

THE BILL OF RIGHTS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Amendment II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Amendment III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Amendment VI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Amendment VII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Amendment VIII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Amendment X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부록 Ⅱ 수정헌법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mendment XI (1798)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Amendment XII (1804)		The electors shall meet in their respective states and vote by ballot for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ne of whom, at least, shall not be an inhabitant of the same state with themselves; they shall name in their ballots the person voted for as President, and in distinct ballots the person voted for as Vice-President, and they shall make distinctlists of all persons voted for as President, and of all persons voted for as Vice-President, and of the number of votes for each, which lists they shall sign and certify, and transmit sealed to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irect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pen all the certificates and the votes shall then be counted;--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for President, shall be the 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no person have such majority, then from the persons having the highest numbers not exceeding three on the list of those voted for as Presiden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oose immediately, by ballot, the President. But in choosing the President, the votes shall be taken by states, the representation from each state having one vote; a quorum for this purpose shall consist of a member or members from two-thirds of the states, and a majority of all the states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And i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choose a President whenever the right of choice shall devolve upon them, before the fourth day of March next following, then the Vice-President shall act as President, as in the case of the death or other constitutional disability of the President.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as Vice-President, shall be the Vice-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no person have a majority, then from the two highest numbers on the list, the Senate shall choose the Vice-President; a quorum for the purpose shall consist of two-thirds of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But no person constitutionally in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shall be eligible to that of Vice-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mendment XIII (1865)	Section 1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where of the party shall have been duly convicted, shall exist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plac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Section 2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Amendment XIV (1868)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 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부록 Ⅱ 수정헌법

Amendment XIV (1868)	Section 2	Representativ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counting the whole number of persons in each state, excluding Indians not taxed. But when the right to vote at any election for the choice of elector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he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of a state, or the members of the legislature thereof, is denied to any of the male inhabitants of such state, being twenty-one years of age,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way abridged, except for participation in rebellion, or other crime, the basis of representation therein shall be reduced in the proportion which the number of such male citizens shall bear to the whole number of male citizens twenty-one years of age in such state.
	Section 3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or elector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r hold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or under any state, who, having previously taken an oath, as a member of Congress, or as an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s a member of any state legislature, or as an executive or judicial officer of any stat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same,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But Congress may by a vote of two-thirds of each House, remove such disability.
	Section 4	The validity of the public debt of the United States, authorized by law, including debts incurred for payment of pensions and bounties for services in suppressing insurrection or rebellion, shall not be questioned. Bu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any state shall assume or pay any debt or obligation incurred in aid of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any claim for the loss or emancipation of any slave; but all such debts, obligati ons and claims shall be held illegal and void.
	Section 5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mendment XV (1870)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race, color, or previous condition of servitude.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Amendment XVI (1913)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on incomes,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without apportionment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out regard to any census or enumeration.
Amendment XVII (1913)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elected by the people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s.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of any state in the Senate, the executive authority of such state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Provided, that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may empower the executive thereof to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people fill the vacancies by election as the legislature may direct. This amendment shall not be so construed as to affect the election or term of any Senator chosen before it becomes valid as part of the Constitution.

부록 Ⅱ 수정헌법

Amendment XVIII (1919)	Section 1	After one year from the ratification of this article the manufacture, sale, or transportation of intoxicating liquors within, the importation thereof into, or the exportation thereof from the United States and all territor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for beverage purposes is hereby prohibited.
	Section 2	The Congress and the several states shall have concurrent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Section 3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submission hereof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Amendment XIX (1920)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sex.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Amendment XX (1933)	Section 1	The terms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shall end at noon on the 20th day of January, and the terms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at noon on the 3rd day of January, of the years in which such terms would have ended if this article had not been ratified; and the terms of their successors shall then begin.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assemble at least once in every year, and such meeting shall begin at noon on the 3rd day of January, unless they shall by law appoint a different day.
	Section 3	If, at the time fixed for the beginning of the term of the President, the President elect shall have died, the Vice President elect shall become President. If a President shall not have been chosen before the time fixed for the beginning of his term, or if the President elect shall have failed to qualify, then the Vice President elect shall act as President until a President shall have qualified; and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wherein neither a President elect nor a Vice President elect shall have qualified, declaring who shall then act as President, or the manner in which one who is to act shall be selected, and such person shall act accordingly until a President or Vice President shall have qualified.
	Section 4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of the death of any of the persons from whom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choose a President whenever the right of choice shall have devolved upon them, and for the case of the death of any of the persons from whom the Senate may choose a Vice President whenever the right of choice shall have devolved upon them.
	Section 5	Sections 1 and 2 shall take effect on the 15th day of October following the ratification of this article.
	Section 6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 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Amendment XXI (1933)	Section 1	The eighteenth article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s hereby repealed.

부록 Ⅱ 수정헌법

Amendment XXI (1933)	Section 2	The transportation or importation into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for delivery or use therein of intoxicating liquors, in violation of the laws thereof, is hereby prohibited.
	Section 3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conventions in the several states,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submission hereof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Amendment XXII (1951)	Section 1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 and no person who has held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ed as President, for more than two years of a term to which some other person was elected President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once. But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when this article was proposed by the Congress, and shall not prevent any person who may be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term within which this article becomes operative from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remainder of such term.
	Section 2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 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Amendment XXIII (1961)	Section 1	The District constituting the seat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appoint in such manner as the Congress may direct: A number of electors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equal to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in Congress to which the District would be entitled if it were a state, but in no event more than the least populous state; they shall be in addition to those appointed by the states, but they shall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s of the election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to be electors appointed by a state; and they shall meet in the District and perform such duties as provided by the twelfth article of amendment.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Amendment XXIV (1964)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in any primary or other election for President or Vice President, for electors for President or Vice President, or for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by reason of failure to pay any poll tax or other tax.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Amendment XXV (1967)	Section 1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or resignation, the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Section 2	Whenever there is a vacancy in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a Vice President who shall take office upon confirmation by a majority vote of both Houses of Congress.

부록 Ⅱ 수정헌법

Amendment XXV (1967)	Section 3	Whenever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is written declaration that he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and until he transmits to them a written declaration to the contrary, such powers and duties shall be discharged by the Vice President as Acting President.
	Section 4	Whenever the Vice President and a majority of either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or of such other body as Congress may by law provide, transmit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ir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 Vice President shall immediately as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office as Acting President. Thereafter, when the President transmits to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is written declaration that no inability exists, he shall re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unless the Vice President and a majority of either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 or of such other body as Congress may by law provide, transmit within four days to the President protempore of the Senate and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ir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reupon Congress shall decide the issue, assembling within forty-eight hours for that purpose if not in session. If the Congress, within twenty-one days after receipt of the latter written declaration, or, if Congress is not in session, within twenty-one days after Congress is required to assemble, determines by two-thirds vote of both Houses that the President is unable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 Vice President shall continue to discharge the same as Acting President; otherwise, the President shall resume the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Amendment XXVI (1971)	Section 1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ho are 18 years of age or older,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on account of age.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th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Amendment XXVII (1992)		No law, varying the compensation for the services of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take effect, until an election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intervened.

부록 Ⅲ

미국 13개주의 만장일치 선언

부록 Ⅲ 미국 13개주의 만장일치 선언

THE UNANIMOUS DECLARATION OF THE THIRTEEN UNITED STATES OF AMERICA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one people to dissolve the political bands which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and to assume among the powers of the earth, the separate and equal station to which 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entitle them, a decent respect to the opinions of mankind requires that they should declare the causes which impel them to the separation.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Prudence, indeed, will dictate that Governments long established should not be changed for light and transient causes; and accordingly all experience hath shewn, that mankind are more disposed to suffer, while evils are sufferable, than to right themselves by abolishing the forms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But when a long train of abuses and usurpations, pursuing invariably the same Object evinces a design to reduce them under absolute Despotism, it is their right, it is their duty, to throw off such Government, and to provide new Guards for their future security.--Such has been the patient sufferance of these Colonies; and such is now the necessity which constrains them to alter their former Systems of Government. The history of the present King of Great Britain is a history of repeated injuries and usurpations, all having in direct object the establishment of an absolute Tyranny over these States. To prove this, let Facts be submitted to a candid world.

He has refused his Assent to Laws, the most wholesome and necessary for the public good.

He has forbidden his Governors to pass Laws of immediate and pressing importance, unless suspended in their operation till his Assent should be obtained; and when so suspended, he has utterly neglected to attend to them.

He has refused to pass other Laws for the accommodation of large districts of people, unless those people would relinquis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a right inestimable to them and formidable to tyrants only.

He has called together legislative bodies at places unusual, uncomfortable, and distant from the depository of their public Records, for the sole purpose of fatiguing them into compliance with his measures.

He has dissolved Representative Houses repeatedly, for opposing with manly firmness his invasions on the rights of the people.

He has refused for a long time, after such dissolutions, to cause others to be elected; whereby the Legislative powers, incapable of Annihilation, have returned to the People at large for their exercise; the State remaining in the mean time exposed to all the dangers of invasion from without, and convulsions within.

He has endeavoured to prevent the population of these States; for that purpose obstructing the Laws for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refusing to pass others to encourage their migrations hither, and raising the conditions of new Appropriations of Lands.

부록 Ⅲ 미국 13개주의 만장일치 선언

He has obstructe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refusing his Assent to Laws for establishing Judiciary powers.

He has made Judges dependent on his Will alone, for the tenure of their offices, and the amount and payment of their salaries.

He has erected a multitude of New Offices, and sent hither swarms of Officers to harrass our people, and eat out their substance.

He has kept among us, in times of peace, Standing Armies without the Consent of our legislatures.

He has affected to render the Military independent of and superior to the Civil power.

He has combined with others to subject us to a jurisdiction foreign to our constitution, and unacknowledged by our laws; giving his Assent to their Acts of pretended Legislation:

For Quartering large bodies of armed troops among us:

For protecting them, by a mock Trial, from punishment for any Murders which they should commit on the Inhabitants of these States:

For cutting off our Trade with all parts of the world:

For imposing Taxes on us without our Consent:

For depriving us in many cases, of the benefits of Trial by Jury:

For transporting us beyond Seas to be tried for pretended offences

For abolishing the free System of English Laws in a neighbouring Province, establishing therein an Arbitrary government, and enlarging its Boundaries so as to render it at once an example and fit instrument for introducing the same absolute rule into these Colonies:

For taking away our Charters, abolishing our most valuable Laws, and altering fundamentally the Forms of our Governments:

For suspending our own Legislatures, and declaring themselves invested with power to legislate for us in all cases whatsoever.

He has abdicated Government here, by declaring us out of his Protection and waging War against us.

He has plundered our seas, ravaged our Coasts, burnt our towns, and destroyed the lives of our people.

He is at this time transporting large Armies of foreign Mercenaries to complete the works of death, desolation and tyranny, already begun with circumstances of Cruelty & perfidy scarcely paralleled in the most barbarous ages, and totally unworthy the Head of a civilized nation.

He has constrained our fellow Citizens taken Captive on the high Seas to bear Arms against their Country, to become the executioners of their friends and Brethren, or to fall themselves by their Hands.

He has excited domestic insurrections amongst us, and has endeavoured to bring on the inhabitants of our frontiers, the merciless Indian Savages, whose known rule of warfare, is an undistinguished destruction of all ages, sexes and conditions.

부록 Ⅲ 미국 13개주의 만장일치 선언

In every stage of these Oppressions We have Petitioned for Redress in the most humble terms:
Our repeated Petitions have been answered only by repeated injury. A Prince whose character is thus marked by every act which may define a Tyrant, is unfit to be the ruler of a free people.

Nor have We been wanting in attentions to our British brethren. We have warned them from time to time of attempts by their legislature to extend an unwarrantable jurisdiction over us. We have reminded them of the circumstances of our emigration and settlement here. We have appealed to their native justice and magnanimity, and we have conjured them by the ties of our common kindred to disavow these usurpations, which, would inevitably interrupt our connections and correspondence. They too have been deaf to the voice of justice and of consanguinity. We must, therefore, acquiesce in the necessity, which denounces our Separation, and hold them, as we hold the rest of mankind, Enemies in War, in Peace Friends.

We, therefo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General Congress, Assembled, appealing to the Supreme Judge of the world for the rectitude of our intentions, do, in the Name, and by Authority of the good People of these Colonies, solemnly publish and declare, That these United Colonies are, and of Right ought to be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at they are Absolved from all Allegiance to the British Crown, and that all political connection between them and the State of Great Britain, is and ought to be totally dissolved; and that as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ey have full Power to levy War, conclude Peace, contract Alliances, establish Commerce, and to do all other Acts and Things which Independent States may of right do. And for the support of this Declaration, with a firm reliance on the protection of divine Providence, we mutually pledge to each other our Lives, our Fortunes and our sacred Honor.

John Hancock

GEORGIA, Button Gwinnett, Lyman Hall, George Walton NORTH-CAROLINA, William Hooper, Joseph Hewes, John Penn SOUTH-CAROLINA, Edward Rutledge, Thomas Heyward, Jr., Thomas Lynch, Jr., Arthur

Middleton

MARYLAND, Samuel Chase, William Paca, Thomas Stone, Charles Carroll, of Carrollton VIRGINIA, George Wythe, Richard Henry Lee, Thomas Jefferson, Benjamin Harrison, Thomas Nelson, Jr., Francis Lightfoot Lee, Carter BraxtonPENNSYLVANIA, Robert Morris, Benjamin Rush, Benjamin Franklin, John Morton, George Clymer, James Smith, George Taylor, James Wilson, George RossDELAWARE, Caesar Rodney, George ReadNEW-YORK, William Floyd, Philip Livingston, Francis Lewis, Lewis MorrisNEW-JERSEY, Richard Stockton, John Witherspoon, Francis Hopkinson, John Hart, Abraham

Clark

NEW-HAMPSHIRE, Josiah Bartlett, William Whipple, Matthew ThorntonMASSACHUSETTSBAY, Samuel Adams, John Adams, Robert Treat Paine, Elbridge Gerry RHODE-ISLAND AND PROVIDENCE, Stephen Hopkins, William Ellery

CONNECTICUT, Roger Sherman, Samuel Huntington, William Williams, Oliver Wolcott

IN CONGRESS, JANUARY 18, 1777

부록 Ⅳ

미국 역대 대통령 & 부통령

부록Ⅳ 미국 역대 대통령 & 부통령

대	대통령	생존 연도	재임 기간	소속 정당	부통령
1	조지 워싱턴 (George Washington)	1732~1799	1789~1797	없음	존 애덤스(John Adams)
2	존 애덤스 (John Adams)	1735~1826	1797~1801	연방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3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1743~1826	1801~1809	민주 공화당	아론 버(Aaron Burr) 조지 클린턴(G. Clinton)
4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	1751~1836	1809~1817	민주 공화당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
5	제임스 먼로 (James Monroe)	1758~1831	1817~1825	민주 공화당	다니엘 톰킨스(Daniel Tompkins)
6	존 퀸시 애덤스 (John Quincy Adams)	1767~1848	1825~1829	민주 공화당	존 캘훈(John Calhoun)
7	엔드루 잭슨 (Andrew Jackson)	1767~1845	1829~1837	민주당	마틴 밴뷰런(Martin Van Buren)
8	마틴 밴뷰런 (Martin Van Buren)	1782~1862	1837~1841	민주당	
9	윌리엄 해리슨 (William Henry Harrison)	1773~1841	1841~1841	휘그당	존 타일러(John Tyler)
10	존 타일러 (John Tyler) 해리슨 사망으로 계승	1790~1862	1841~1845	민주당 후에 공화당	
11	제임스 포크 (James Knox Polk)	1795~1849	1845~1849	민주당	조지 댈러스(George Dallas)
12	재커리 테일러 (Zachary Taylor)	1784~1850	1849~1850	휘그당	밀러드 필모어(Millard Fillmore)
13	밀러드 필모어 (Millard Fillmore) 테일러 사망으로 계승	1800~1874	1850~1853	휘그당	
14	프랭클린 퍼어스 (Franklin Pierce)	1804~1869	1853~1857	민주당	윌리엄 킹(William King)
15	제임스 뷰캐넌 (James Buchanan)	1791~1868	1857~1861	민주당	존 브레킨리지(John Breckinridge)

부록Ⅳ 미국 역대 대통령 & 부통령

대	대통령	생존 연도	재임 기간	소속 정당	부통령
16	에이브러햄 링컨 (Abraham Lincoln)	1809~1865	1861~1865	공화당	앤드루 존슨(Andrew Johnson)
17	앤드루 존슨 (Andrew Johnson) 링컨 사망으로 계승	1808~1875	1865~1869	공화당	
18	율리시스 그랜트 (Uiysses Grant)	1822~1885	1869~1877	공화당	슈일러 컬팩스(Schuyler Colfax) 헨리 윌슨(Henry Wilson)
19	러더퍼드 헤이즈 (Rutherford Hayes)	1822~1893	1877~1881	공화당	윌리엄 휠러(William Wheeler)
20	제임스 가필드 (James Garfield)	1831~1881	1881~1881	공화당	체스터 아서(Chester Arthur)
21	체스터 아서 (Chester Arthur) 가필드 사망으로 계승	1830~1886	1881~1885	공화당	
22	그로버 클리블랜드 (Grover Cleveland)	1837~1908	1885~1889	민주당	토머스 헨드릭스(Thomas Hendricks)
23	밴저민 해리슨 (Benjamin Harrison)	1833~1901	1889~1893	공화당	레비 모턴(Levi Morton)
24	그로버 클리블랜드 (Grover Cleveland)	1837~1908	1893~1897	민주당	아들라이 스티븐슨(Adlai Stevenson)
25	윌리엄 매킨리 (William McKinley)	1843~1901	1897~1901	공화당	개럿 호바트(Garrett Hobart)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26	시어도어 루스벨트 (Theodore Roosevelt) 매킨리 사망으로 계승	1858~1919	1901~1909	공화당	찰스 페어뱅크스(Charles Fairbanks)
27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William Howard Taft)	1857~1930	1909~1913	공화당	제임스 셔먼(James Sherman)
28	우드로 윌슨 (Woodrow Wilson)	1856~1924	1913~1921	민주당	토머스 마셜(Thomas Marshall)
29	워런 하딩 (Warren Harding)	1865~1923	1921~1923	공화당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
30	캘빈 쿨리지 (Calvin Coolidge)	1872~1933	1923~1929	공화당	찰스 도즈(Charles Dawes)

부록Ⅳ 미국 역대 대통령 & 부통령

대	대통령	생존 연도	재임 기간	소속 정당	부통령
31	허버트 후버 (Herbert C. Hoover)	1874~1964	1929~1933	공화당	찰스 커티스(Charles Curtis)
32	프랭클린 루스벨트 (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1933~1945	민주당	존 가너(John N. Garner) 헨리 윌리스(Henry A. Wallace)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33	해리 트루먼 (Harry S. Truman)	1884~1972	1945~1953	민주당	앨빈 바클리(Alben W. Barkley)
34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1890~1969	1953~1961	공화당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35	존 케네디 (John F. Kennedy)	1917~1963	1961~1963	민주당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36	린든 존슨 (Lyndon B. Johnson) 케네디 사망으로 계승	1908~1973	1963~1969	민주당	휴버트 험프리(Hubert H. Humphrey)
37	리처드 닉슨 (Richard Milhous Nixon)	1913~1994	1969~1974	공화당	스피로 에그뉴(Spiro T. Agnew)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38	제럴드 포드 (Gerald R. Ford) 닉슨 사임으로 계승	1913~2006	1974~1977	공화당	넬슨 록펠러(Nelson R. Rockefeller)
39	지미 카터 (Jimmy Carter)	1924~	1977~1981	민주당	월터 먼데일(Walter Mondale)
40	로날드 레이건 (Ronald Reagan)	1911~2004	1981~1989	공화당	조지 부시(George Bush)
41	조지 부시 (George Bush)	1924~	1989~1993	공화당	댄 퀘일(Daniel Quayle)
42	빌 클린턴 (Willam J. Clinton)	1946~	1993~2001	민주당	앨 고어(Al Gore)
43	조지 부시 2세 (George W. Bush Jr.)	1946~	2001~2009	공화당	딕 체니(Dick Cheney)
44	버락 오바마 (Barack H. Obama)	1961~	2009~현재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

부록Ⅴ

기타 행정 조직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4년 3월 기준)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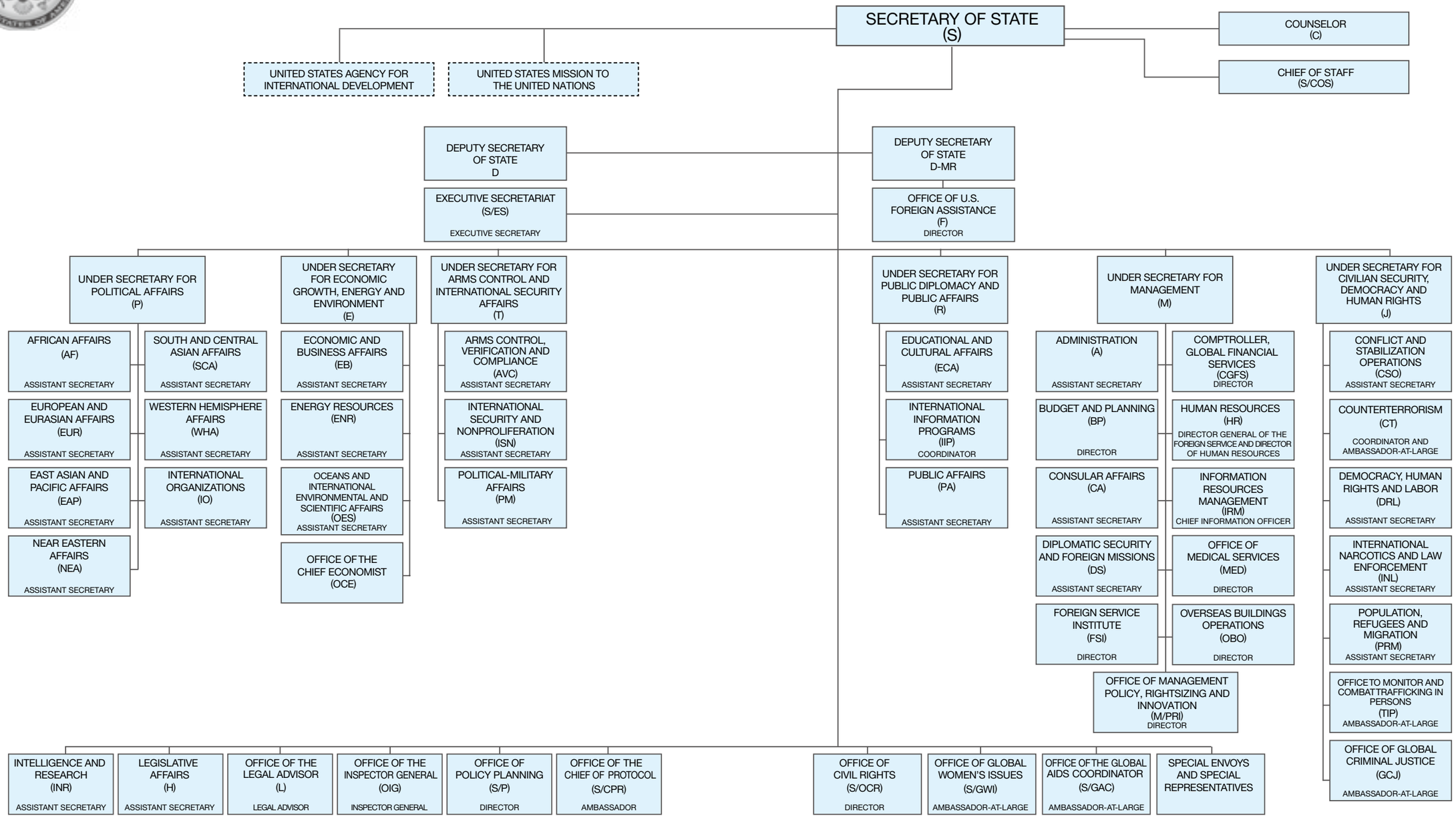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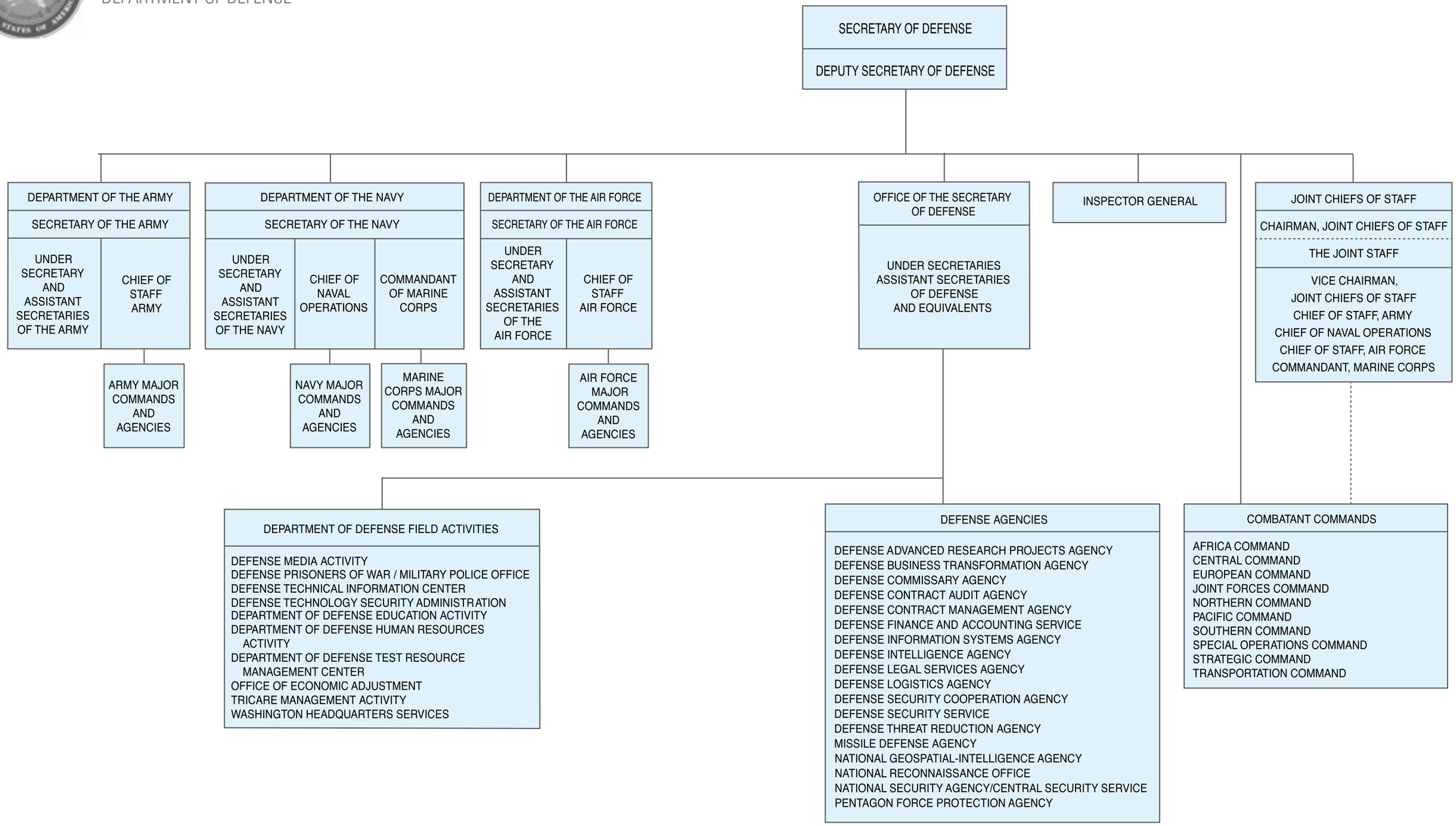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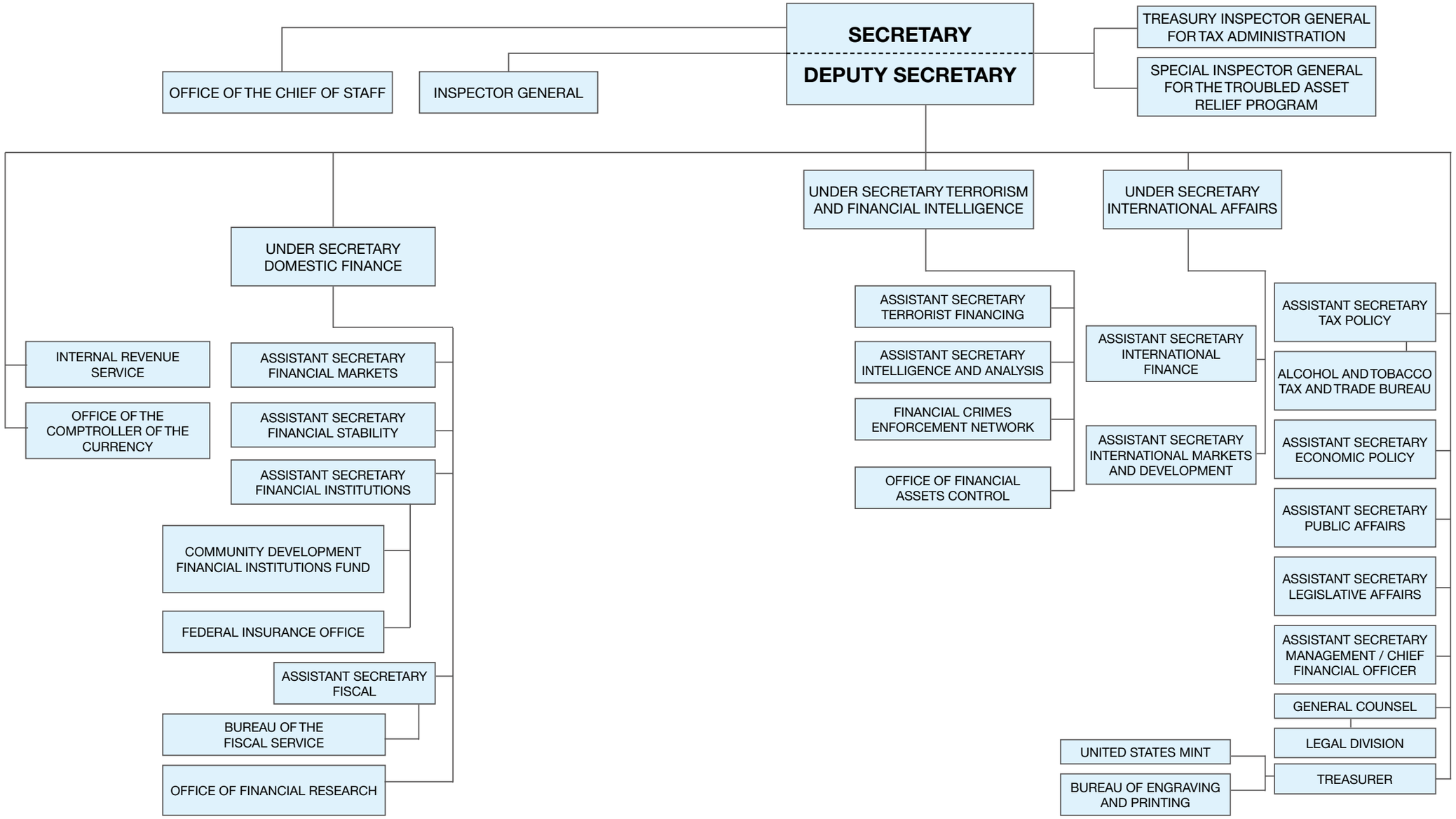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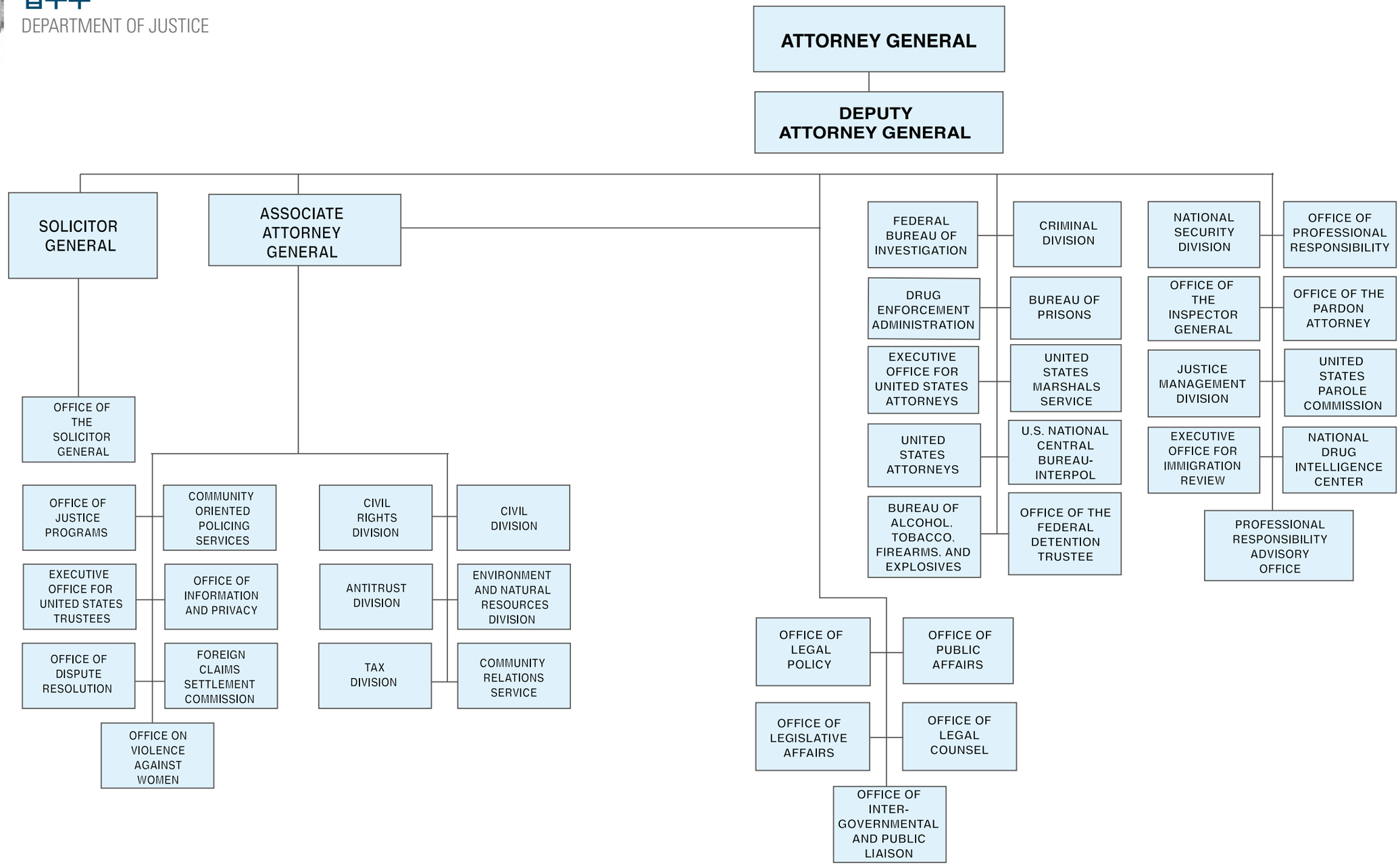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내무부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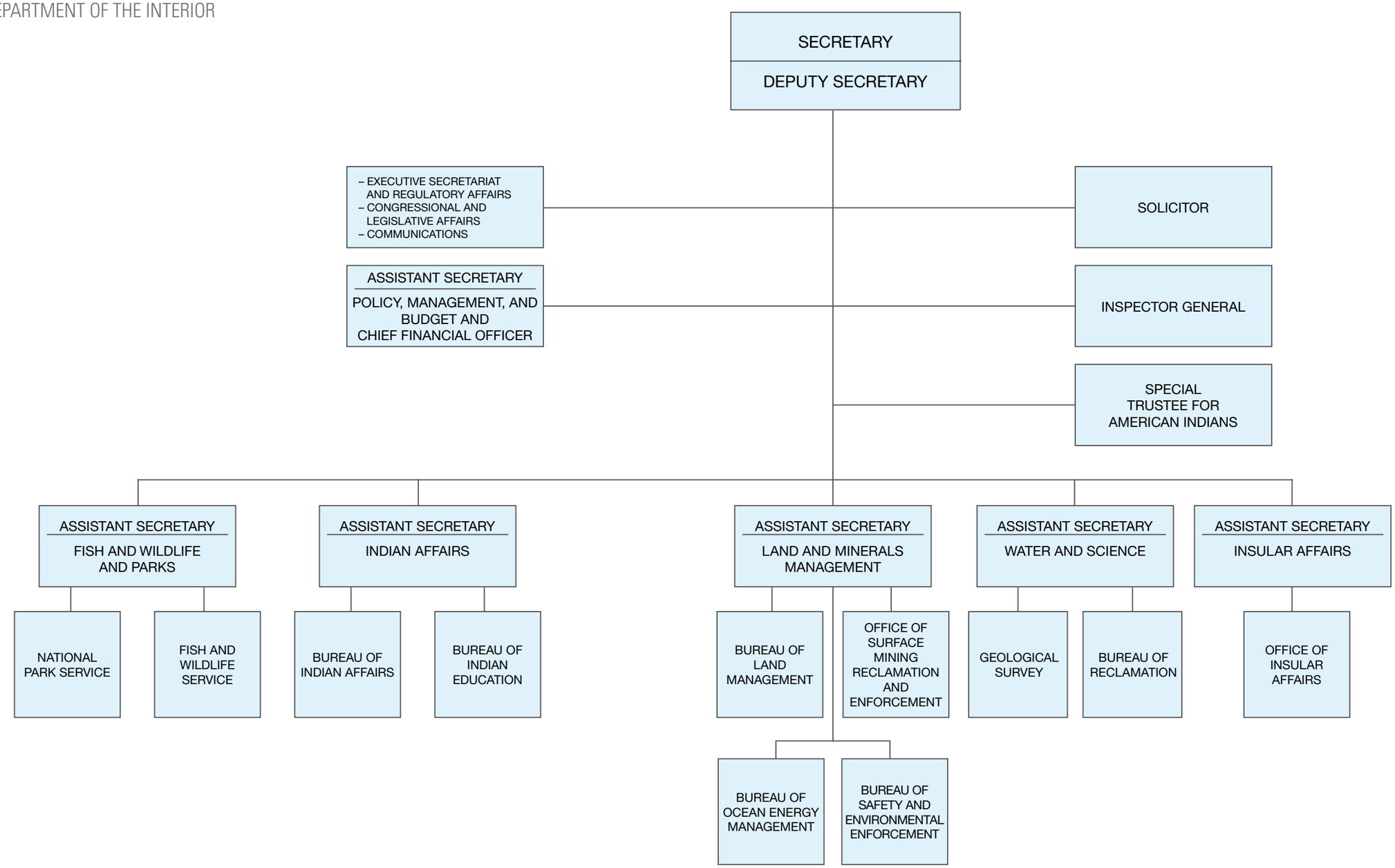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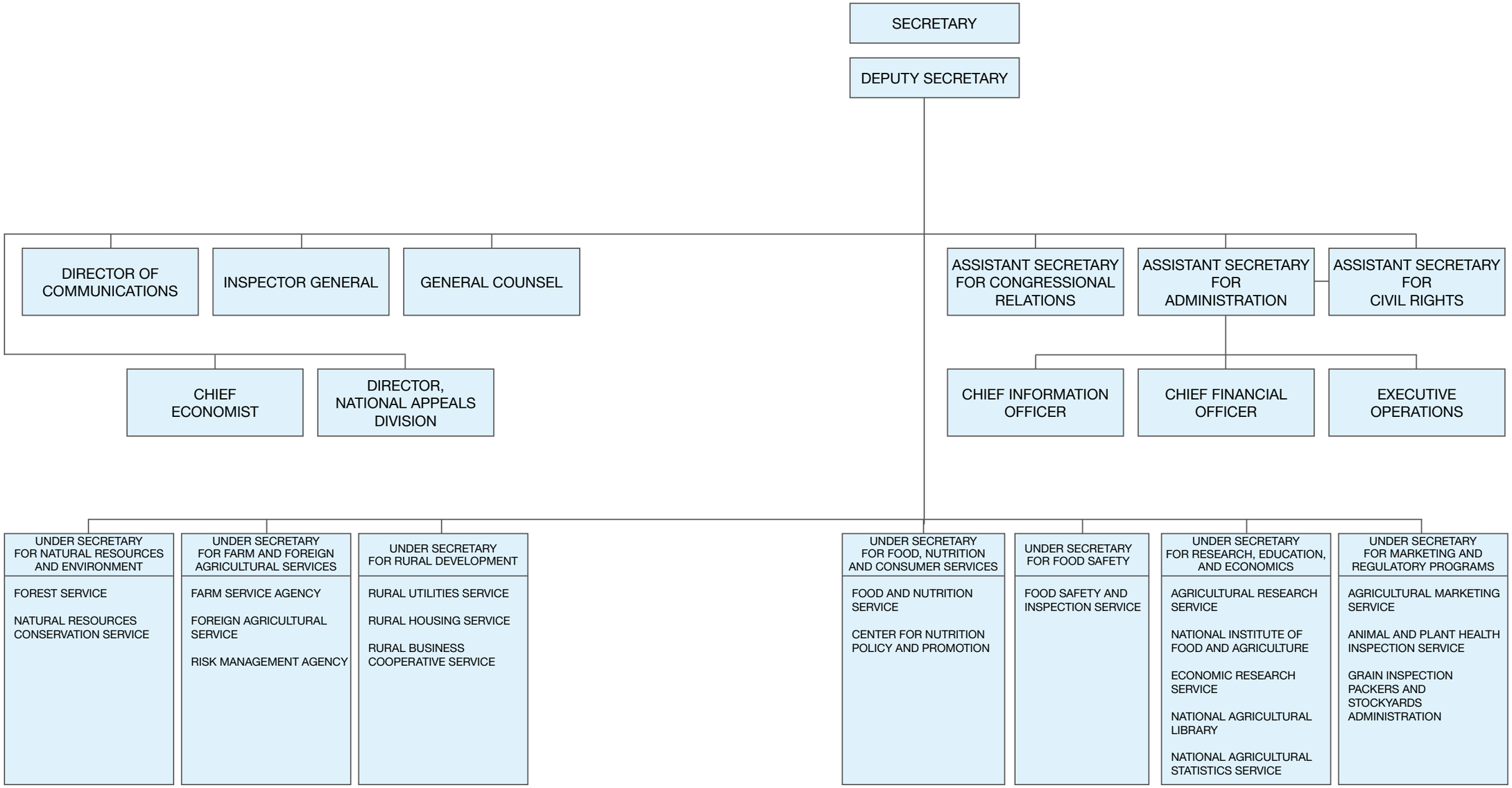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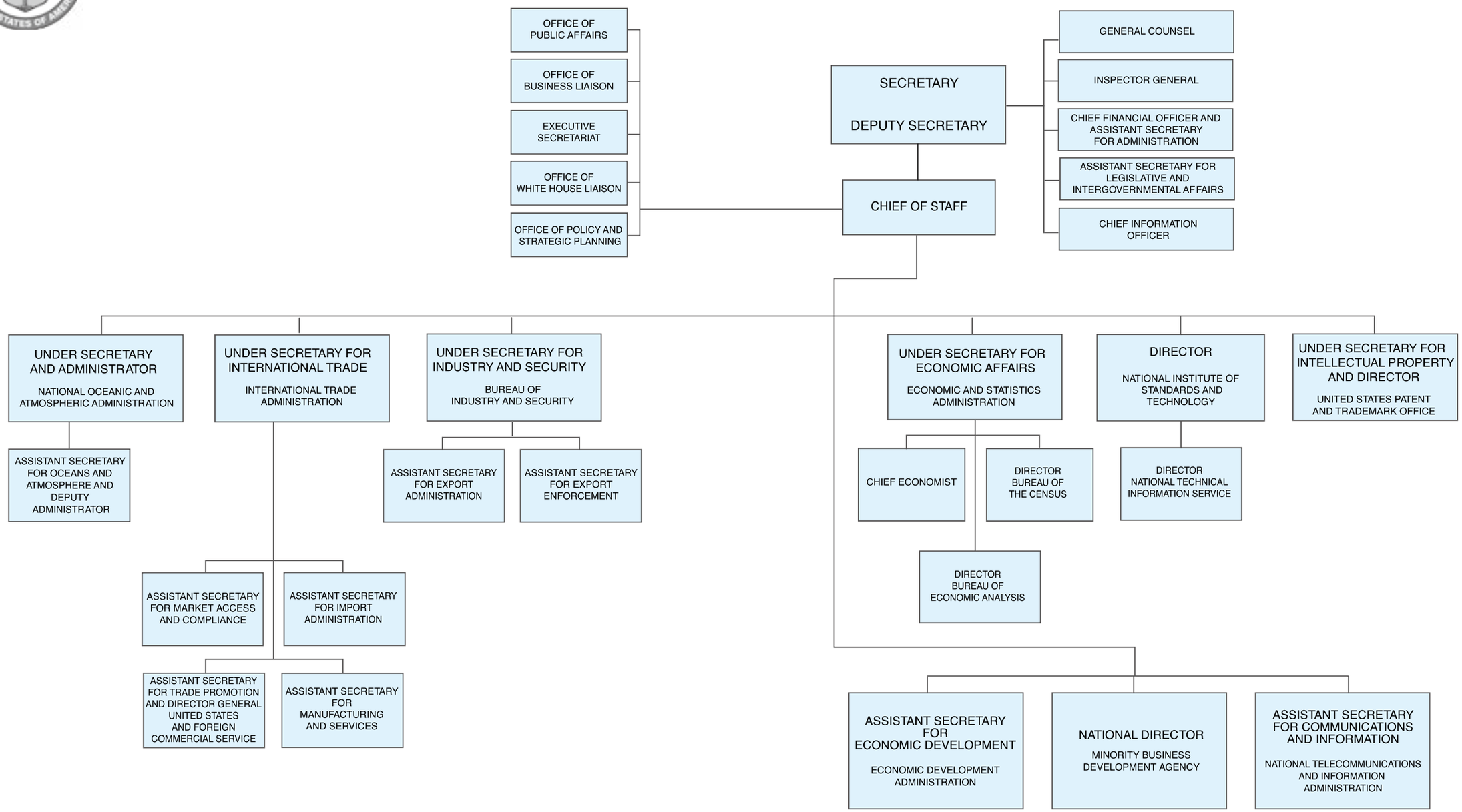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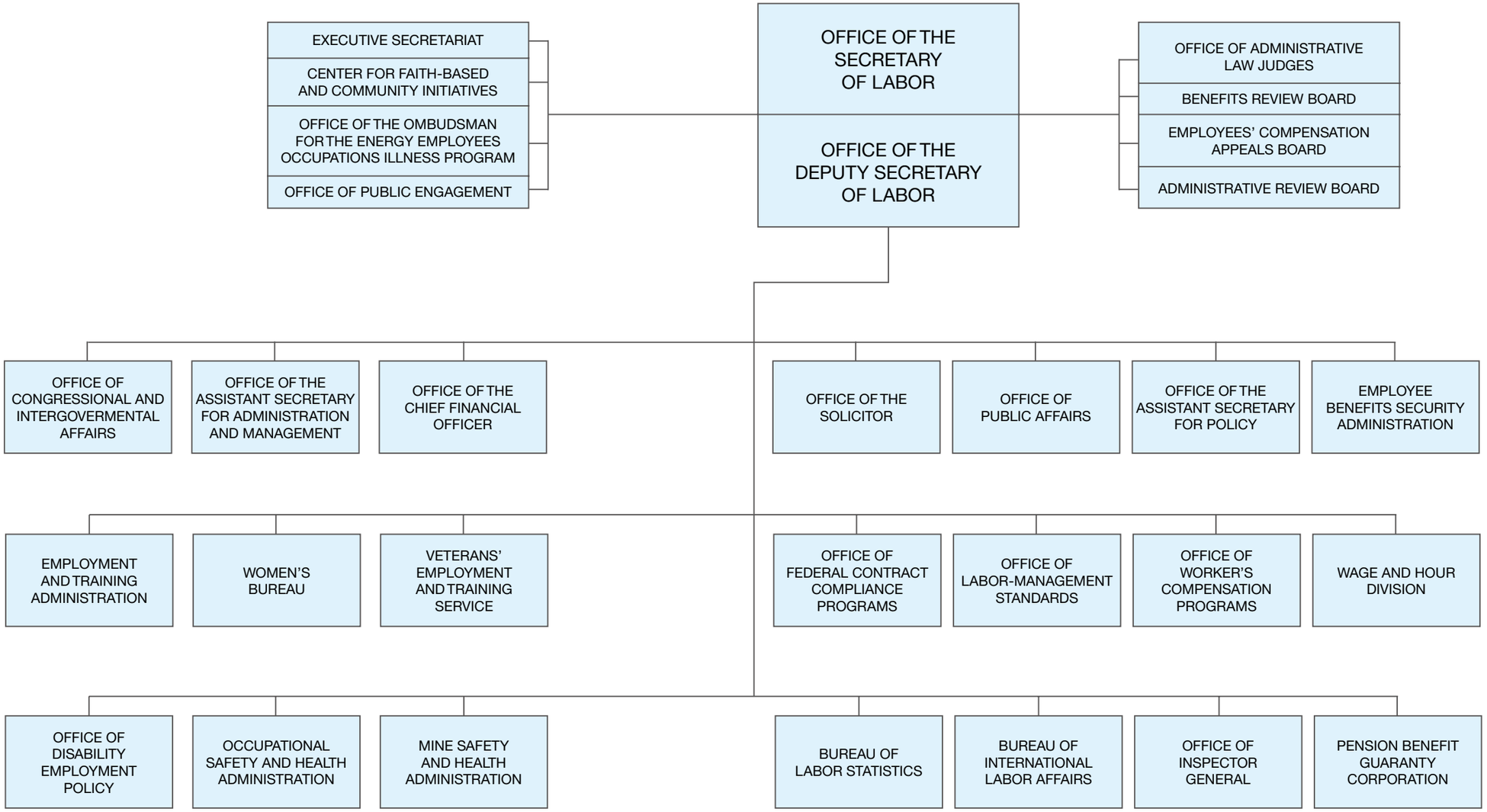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4년 6월 기준)

보건 · 후생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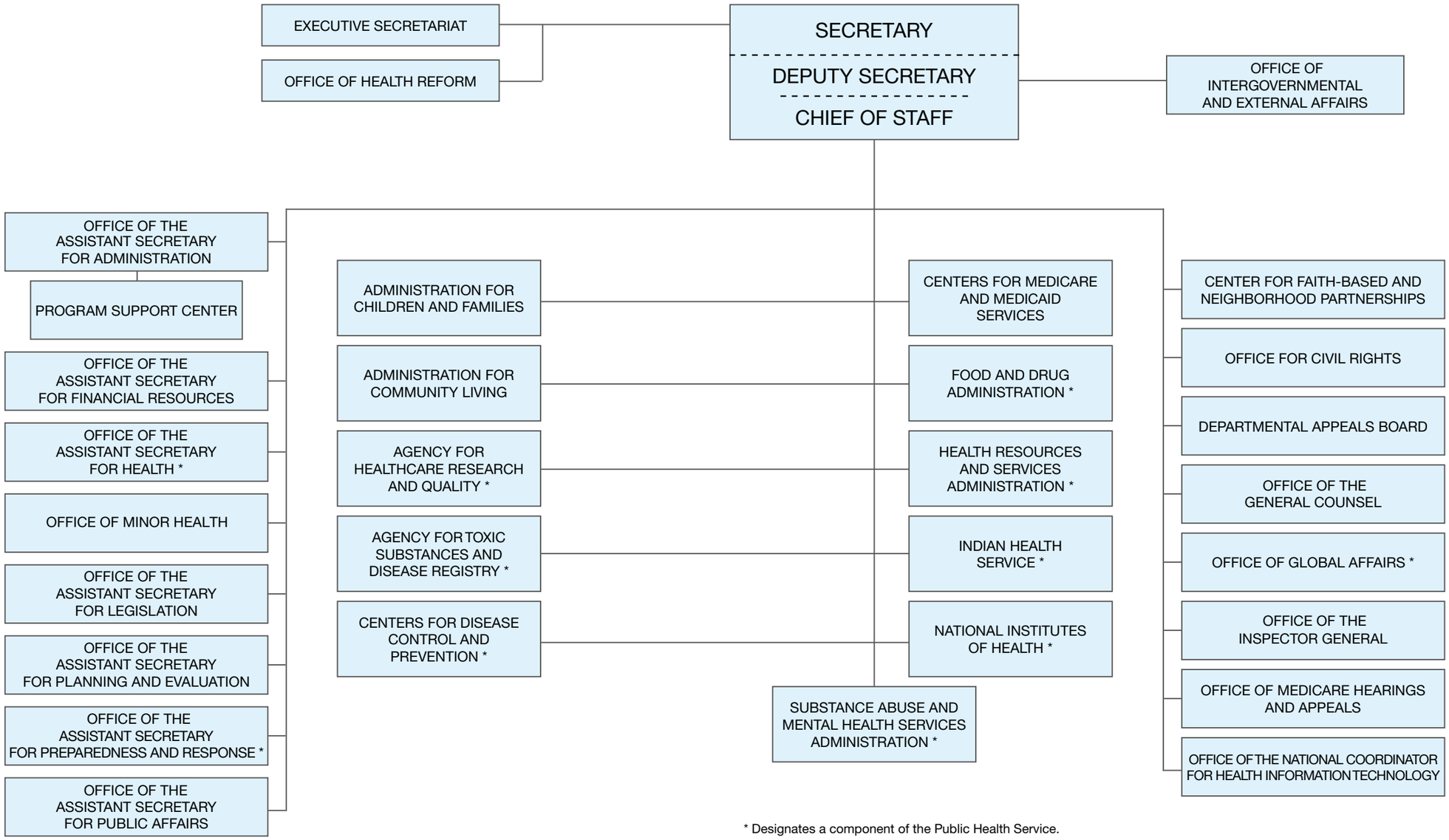

* Designates a component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주택 · 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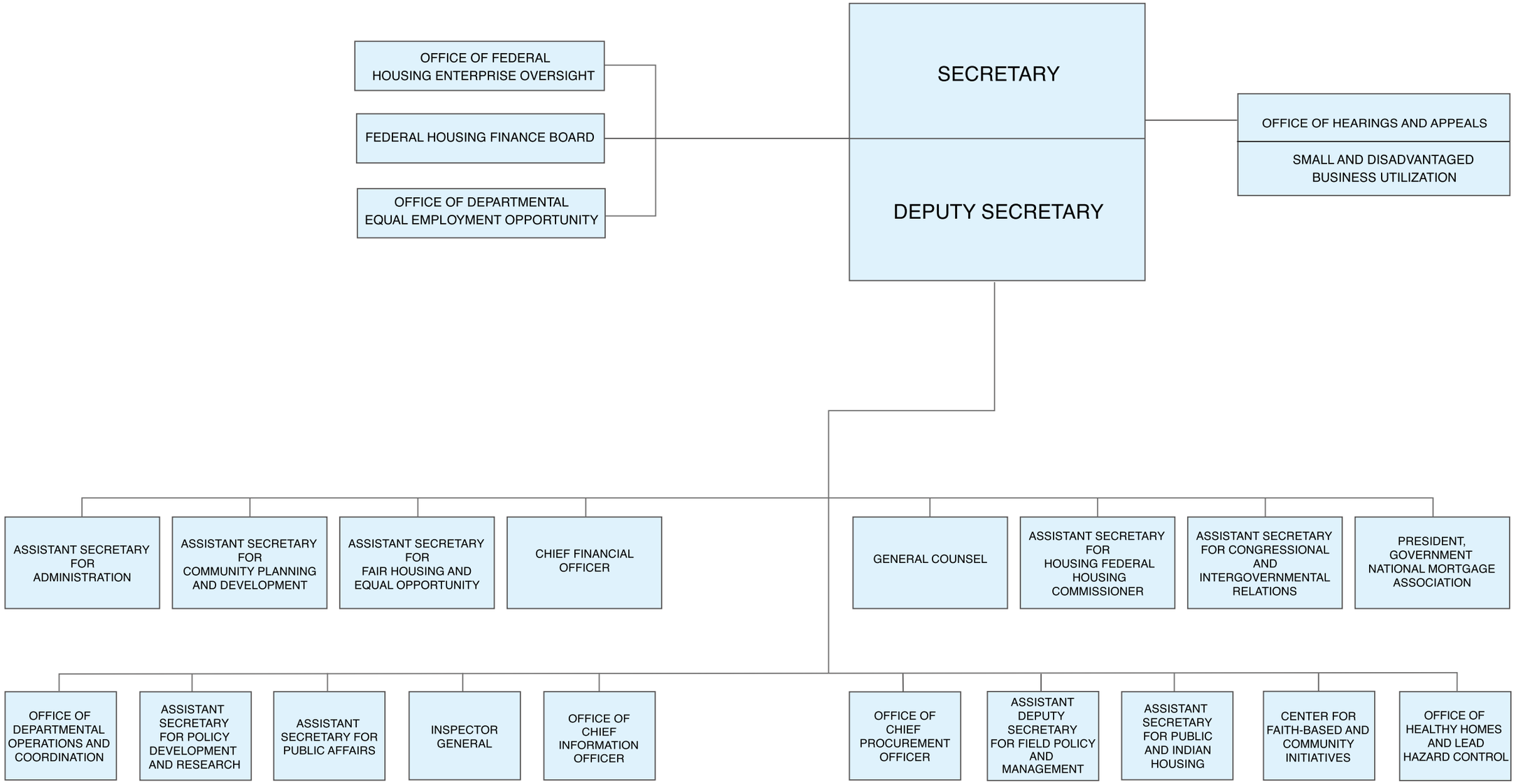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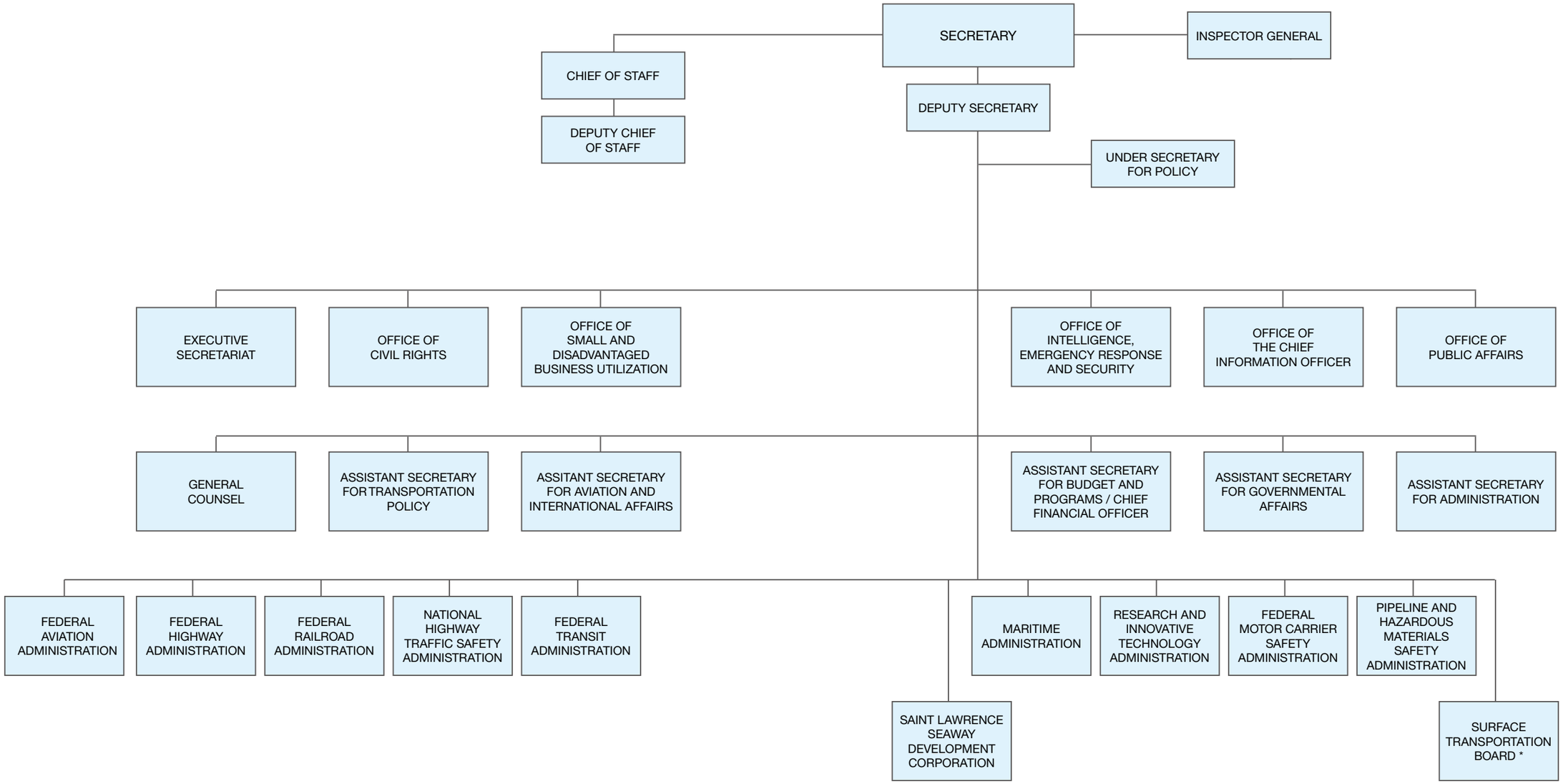

* The Surface Transportation Board is administratively affiliated with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4년 5월 기준)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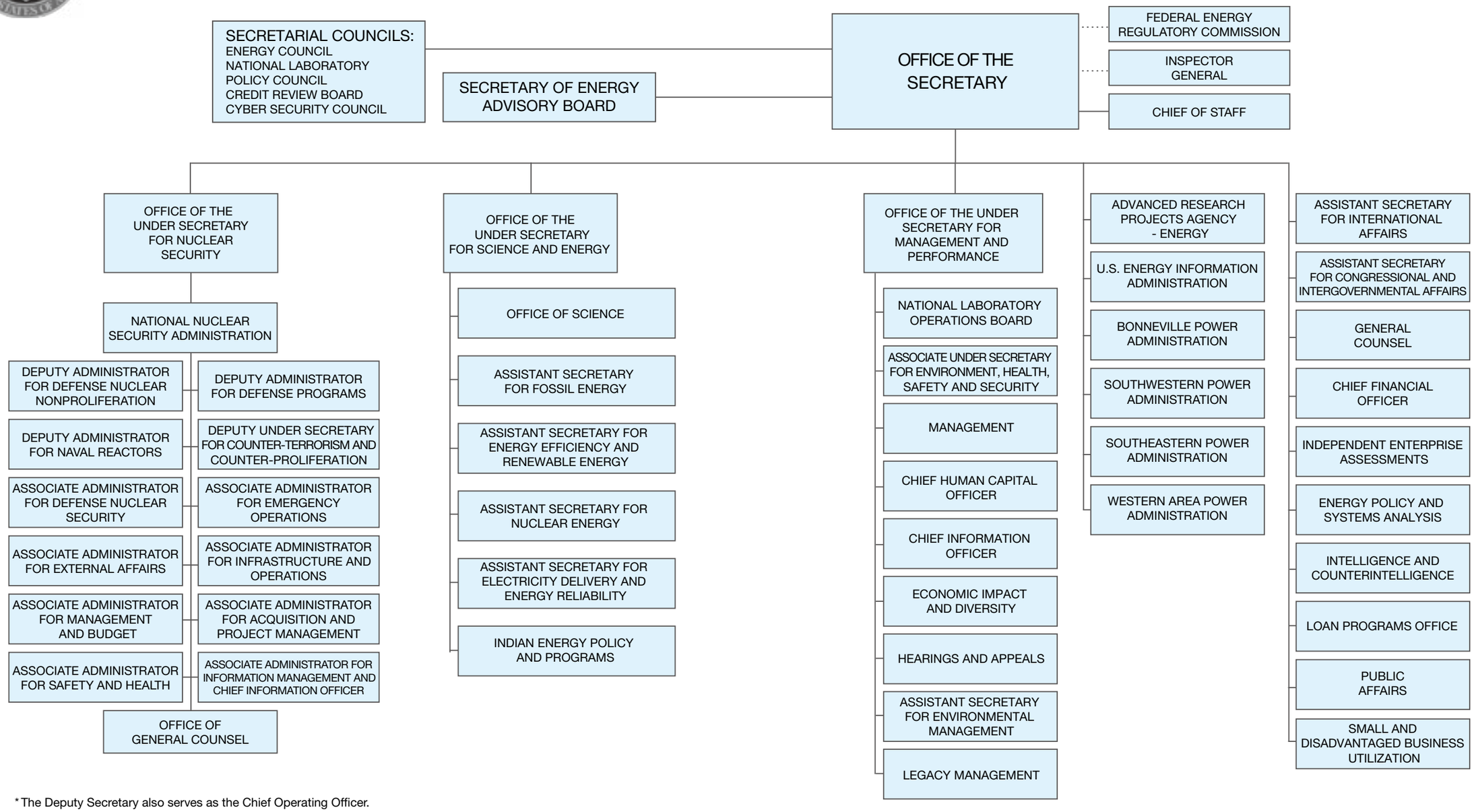

* The Deputy Secretary also serves as the Chief Operating Officer.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원호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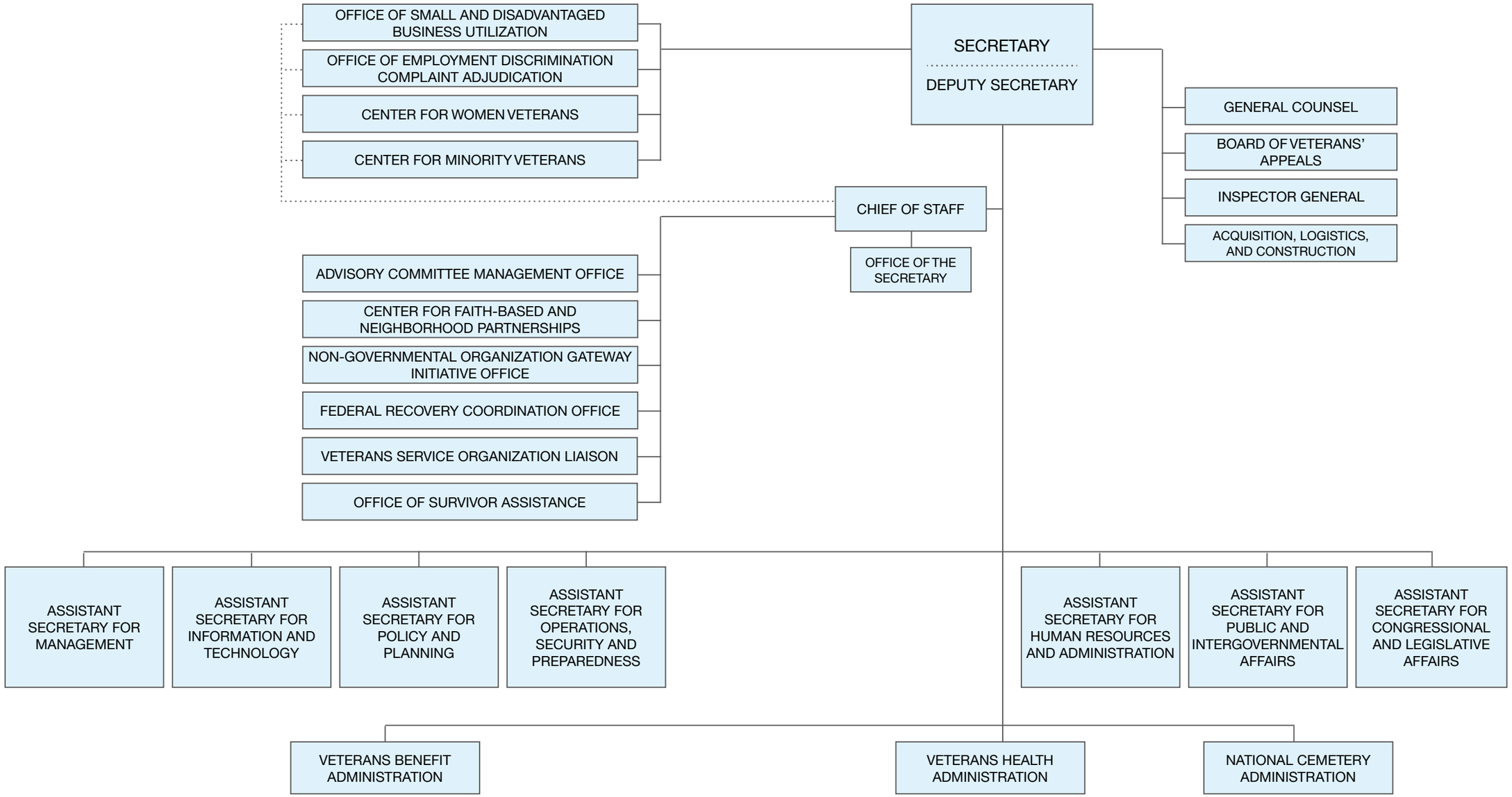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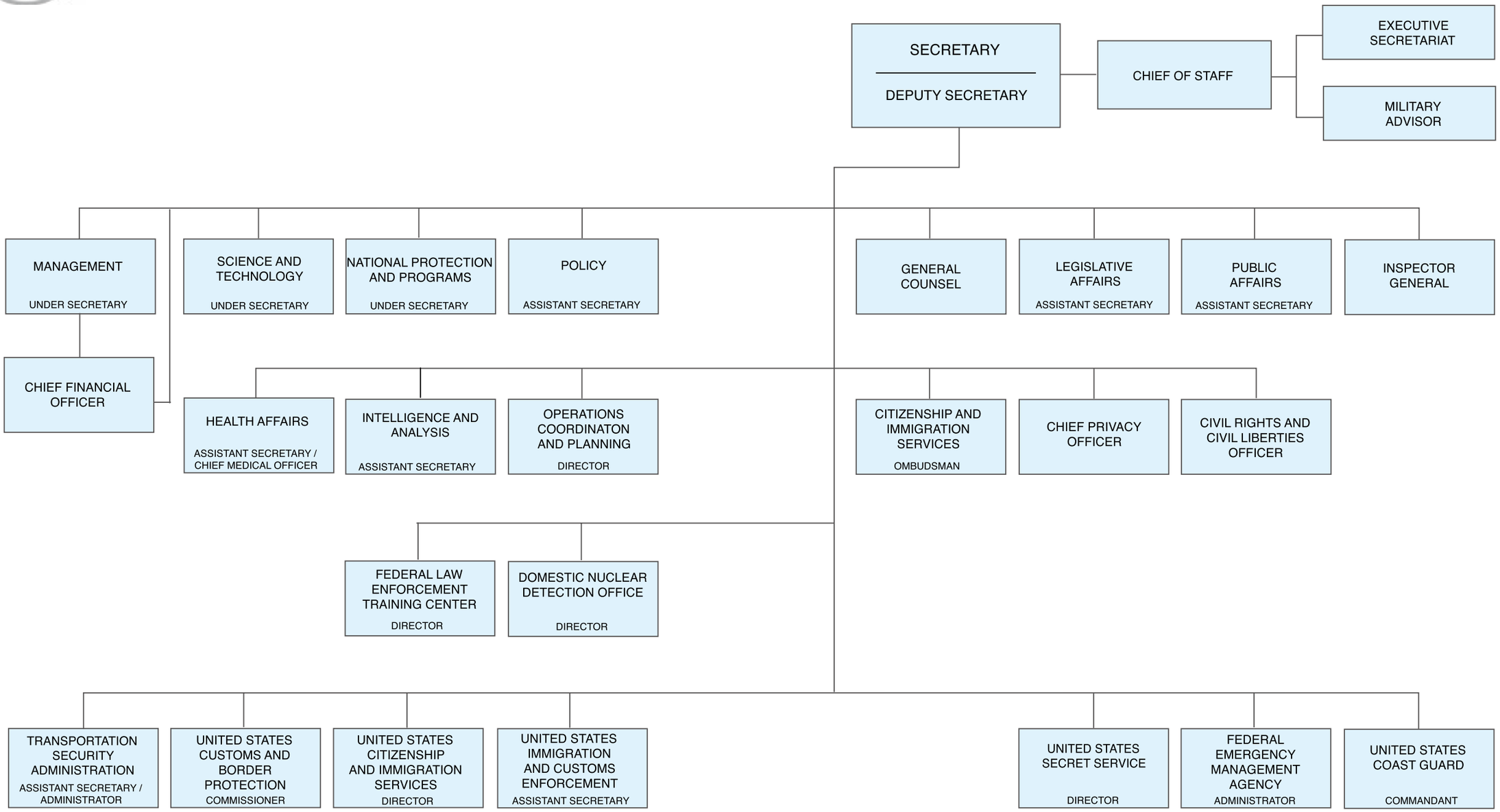

부록 V 기타 행정 조직

(2013년 11월 기준)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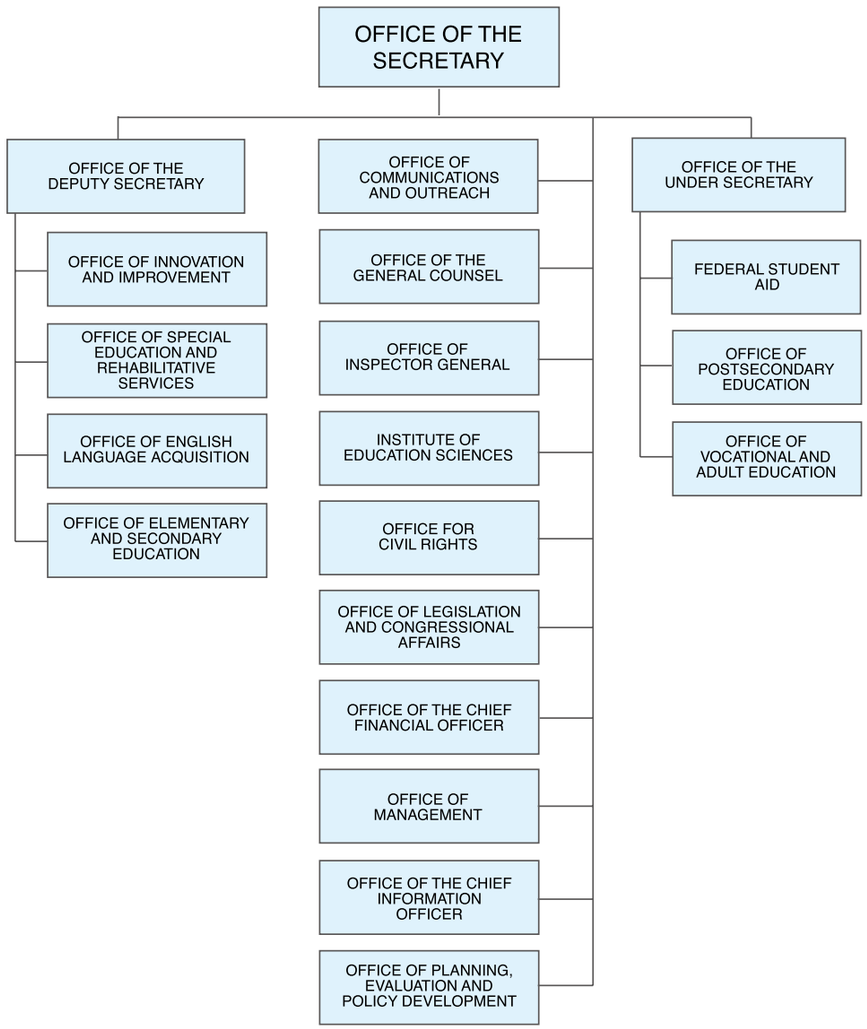

부록 VI

역대 주미대사 및 미국지역 공관 현황

부록 Ⅵ 역대 주미대사 및 미국지역 공관 현황

역대 주미대사

대	공관장	연도
초대	장 면	1949. 2 – 1951. 2
2대	양유찬	1951. 4 – 1960. 4
3대	정일권	1960. 5 – 1960. 9
4대	장이욱	1960.10 – 1961. 6
5대	정일권	1961. 6 – 1963. 4
6대	김정열	1963. 5 – 1964.10
7대	김현철	1964.12 – 1967.10
8대	김동조	1967.10 – 1973.12
9대	함병춘	1973.12 – 1977. 4
10대	김용식	1977. 4 – 1981. 6
11대	류병현	1981. 7 – 1985.11
12대	김경원	1985.11 – 1988. 4
13대	박동진	1988. 5 – 1991. 3
14대	현홍주	1991. 3 – 1993. 4
15대	한승수	1993. 4 – 1994.12
16대	박건우	1995. 1 – 1998. 4
17대	이홍구	1998. 5 – 2000. 8
18대	양성철	2000. 8 – 2003. 4
19대	한승주	2003. 4 – 2005. 2
20대	홍석현	2005. 2 – 2005. 9
21대	이태식	2005.10 – 2009. 3
22대	한덕수	2009. 3 – 2012. 2
23대	최영진	2012. 3 – 2013. 5
24대	안호영	2013. 6 – 현재

주미대사관 연혁

1949.3.25 청사 개설

1990 신청사 매입, 1992.11.20 청사 이전

※ 자료출처 : 주미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

부록 Ⅵ 역대 주미대사 및 미국지역 공관 현황

미국지역 공관 현황

공관명	공관장 (부임일)	개설일자	관할구역	교민 · 직원 (외교/주재관) 현황	주소/전화번호/FAX
미국 (대)	안호영 대사 (2013.6월)	1949.3월	워싱턴 D.C.,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메릴랜드	174,291 (36/39)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202)939-5600~3/(202) 797-0595
로스 엔젤레스 (총)	김현명 총영사 (2014.3월)	1948.11월	남가주,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559,838 (12/8)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213)385-9300/(213) 385-1849
뉴욕 (총)	손세주 총영사 (2012.10월)	1949.4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339,145 (12/12)	335 East 45th Street, New York, NY 10017/ (646) 674-6000/(646) 674-6023
시카고 (총)	김상일 총영사 (2013.7월)	1968.5월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켄터키, 미네소타, 위스콘신, 캔자스, 노스다코다	229,187 (8/4)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front Plaza Drive, Chicago, IL 60611/ (312) 822-9485/(312) 822-9849
샌프란 시스코 (총)	한동만 총영사 (2013.5월)	1949.6월	북가주, 유타, 와이오밍, 콜로라도	182,817 (8/2)	711 Van Ness Aye, Suite 320,330 CA/94012 (415) 921-2251~3/(415) 921-5946
시애틀 (총)	문덕호 총영사 (2014.3월)	1977.11월	워싱턴, 오레곤, 아이다호, 몬타나, 알래스카	168,671 (4/2)	2033 Sixth Avenue #1125, Seattle, WA 98121/ (206) 441-1011~4/(206) 441-7912
휴스턴 (총)	박석범 총영사 (2012.3월)	1968.5월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칸사,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165,525 (4/3)	1990 Post Oak Blvd. Suite 1250, Houston, TX 77056/ (713) 961-0186/(713) 961-3340
애틀랜타 (총)	김희범 총영사 (2011.10월)	1976.1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죠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180,200 (4/3)	229 Peachtree St. N.E. International Tower, Suite 2100, Atlanta, GA 30303/ (404) 522-1611 (C:(404) 964-1178, 964-7601)/ (404) 521-3169
호놀룰루 (총)	백기엽 총영사 (2013.9월)	1949.4월	하와이, 아메리칸사모아	46,603 (6/2)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808) 595-6109,6274/(808) 595-3046
보스턴 (총)	엄성준 총영사 (2014.3월)	1979.8월 개설 1982.3월 폐쇄 1989.1월 재개설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31,104 (5/1)	One Gateway Center 2nd Floor, Newton, MA 02458/ (617) 641-2830/(617) 641-2831
하갓냐 (출)	신재현 출장소장 (2012.8월)	1970.2월	괌, 북마리아나 제도연방(CNMI)	7,297 (2/0)	125C Tun Jose Camacho St., Tamuning, Guam 96931/ (671) 647-6488/(671) 649-1336
앵커리지 (출)	전승민 출장소장 (2013.7월)	1980.7월 총영사관 개설 1999.3월 총영사관 폐쇄 2008.6월 출장소 개설	알라스카	6,754 (1/0)	800 E. Dimond Blvd., STE 3-695, ANCHORAGE, AK 99515, U.S.A /(907) 339-7955/(907) 339-0411
댈러스 (출)	김동찬 출장소장 (2012.11월)	2012.11월	텍사스 DFW	8,600 (2/0)	14001 N Dalls Parkway Suite 450 Dallas TA 75240/ (972)701-0180/(972)701-0183

부록Ⅶ 재미 우리교민 현황

연도별 변화

지역별 \ 연도별	2007	2009	2011	2013
미 국 전 역	2,016,911	2,102,283	2,075,590	2,091,432
주 미 국(대)	153,868	177,803	171,574	174,291
주 로스앤젤레스(총)	482,006	518,300	547,576	559,838
주 뉴 욕(총)	426,255	380,100	345,900	339,145
주 시 카 고(총)	235,820	239,600	227,369	229,187
주 샌프란시스코(총)	177,450	178,560	179,933	182,817
주 시 애 틀(총)	158,405	172,167	171,757	168,671
주 휴 스 턴(총)	142,590	159,400	164,800	165,525
주 애 틀 란 타(총)	156,400	189,000	176,749	180,200
주 보 스 턴(총)	33,384	29,252	30,456	31,104
주 호 놀 룰 루(총)	43,718	44,589	45,542	46,603
주 하 갓 냐(출)	6,565	7,116	7,299	7,297
주 앵 커 리 지(출)	-	6,396	6,635	6,754

거주자격별 구성(2013년 기준)

지역별 \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영주권자	체류자		시민권자 (외국국적)	총 계
			일 반	유 학 생		
미 국 전 역	965,315	465,916	396,825	102,574	1,126,117	2,091,432
주 미 국(대)		36,278	17,507	9,201	111,305	174,291
주 로스앤젤레스(총)	207,731	117,639	74,236	15,856	352,107	559,838
주 뉴 욕(총)	177,775	51,225	100,460	26,090	161,370	339,145
주 시 카 고(총)	68,859	33,706	24,450	10,703	160,328	229,187
주 샌프란시스코(총)	105,332	35,042	61,383	8,907	77,485	182,817
주 시 애 틀(총)	94,790	82,832	8,445	3,513	73,881	168,671
주 휴 스 턴(총)	103,408	59,516	32,114	11,778	62,117	165,525
주 애 틀 란 타(총)	113,000	35,800	65,200	12,000	67,200	180,200
주 보 스 턴(총)	16,507	5,155	7,927	3,425	14,597	31,104
주 호 놀 룰 루(총)	6,000	3,969	1,328	703	40,603	46,603
주 하 갓 냐(출)	5,205	1,528	3,330	347	2,092	7,297
주 앵 커 리 지(출)	3,722	3,226	445	51	3,032	6,754

부록Ⅷ 한국 주재 미국 공관

대사관	대사	성김(Sung Y. Kim)
	총영사	폴 보이드(Paul Boyd)
	관할지역	한국 전역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32 주한미대사관 (우편번호 110-710)
	연락처	(대표전화) 02)397-4114 (홈페이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부산 영사관 (APP)	영사	조나단 리 유(Jonathan Lee Yoo)
	관할지역	부산 및 주변 지역 ※ 동 영사관은 부산 및 주변 지역에서의 주요기관 및 시민들과의 관계 조성을 담당하며, 비자 및 대 미국시민 서비스는 서울 대사관에서 제공
	주소	부산시 진구 양정동 150-3 롯데골드 로즈 빌딩 612호
	연락처	(대표전화) 051)863-0731 (홈페이지) http://korean.busan.usconsulate.gov

부록Ⅸ 역대 주한 미국 대사

역대 주한미국대사 (1949~)

Name	Appointment	Presentation of Credentials	Termination of Mission
Kathleen Stephens	Sep 8, 2008	Oct 6, 2008	Left post, October 2011
Alexander R. Vershbow	Oct 12, 2005	Oct 17, 2005	Left post, September 2008
Christopher R. Hill	May 12, 2004	Sep 1, 2004	Left post, Apr 12, 2005
Thomas C. Hubbard	Aug 3, 2001	Sep 12, 2001	Left post, Apr 17, 2004
Stephen W. Bosworth	Oct 24, 1997	Dec 15, 1997	Left post Feb 10, 2001
James T. Laney	Oct 15, 1993	Nov 2, 1993	Left post, Feb 5, 1997
Donald Phinney Gregg	Sep 14, 1989	Sep 27, 1989	Left post, Feb 27, 1993
James Roderick Lilley	Oct 16, 1986	Nov 26, 1986	Left post, Jan 3, 1989
Richard L. Walker	Jul 18, 1981	Aug 12, 1981	Left post, Oct 25 1986
William H. Gleysteen, Jr.	Jun 27, 1978	Jul 24, 1978	Left post, Jun 10, 1981
Richard L. Sneider	Aug 23, 1974	Sep 18, 1974	Left post, Jun 21, 1978
Philip C. Habib	Sep 30, 1971	Oct 10, 1971	Left post, Aug 19, 1974
William J. Porter	Jun 9, 1967	Aug 23, 1967	Left post, Aug 18, 1971
Winthrop G. Brown	Jul 31, 1964	Aug 14, 1964	Left post, Jun 10, 1967
Samuel D. Berger	Jun 12, 1961	Jun 27, 1961	Left post, Jul 10, 1964
Walter P. McConaughy	Oct 5, 1959	Dec 17, 1959	Left post, Apr 12, 1961
Walter C. Dowling	May 29, 1956	Jul 14, 1956	Left post, Oct 2, 1959
William S.B. Lacy	Mar 24, 1955	May 12, 1955	Left post, Oct 20, 1955
Ellis O. Briggs	Aug 25, 1952	Nov 25, 1952	Left post, Apr 12, 1955
John J. Muccio	Apr 7, 1949	Apr 20, 1949	Left Korea, Sep 8, 1952

※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내정(2014년 8월 예정)

부록 X 미국 방문 기본정보

1. 출입국 심사

1) 입국심사는 미국 첫기항지에서 이루어지며, 공항 입국심사대에 출입국 기록 카드(I-94), 세관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한다.

2) 2004. 1. 5.부터 시행된 US-VISIT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지문스캐너에 양손의 집게손가락을 차례로 올려 지문을 채취한 다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한다.

3) 이민국 직원이 출입국 기록카드(I-94)에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기간을 기입하고 나면,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 입국사증(Entry Visa)과 체류허가증(I-94)을 혼동하여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9.11 이후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에 대한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해 사증(visa)상의 입국목적과 다르게 대답하여 추방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미 이민국 직원의 입국목적에 대한 질문시 사증(visa)상의 입국목적과 동일하게 대답해야 억울한 추방을 방지할 수 있다.

4) 출국절차는 간단하여 별도로 서류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

* 공항내의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여권, 항공권, 미국 출입국카드 (입국시 여권에 붙여 놓음)를 제출하면, 항공사직원은 출입국 카드를 떼내고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를 발급하여준다.

2. 예방접종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나, 오염 지역을 통과하여 오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3. 통관

1) 통관은 미국에 처음 도착하는 지점(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행하여진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본인이 타고 온 항공기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수하물을 찾아 세관카운터로 가서,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파란불이 켜진 카운터로 가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반입금지 품목

- 동식물, 과일, 채소, 총기, 마약류, 도검, 등이다. 술은 1ℓ(리터), 담배는 궐련 200개피(10갑), 시거 50개, 파이프 담배 250g(그램), 향수는 2온스 이내인 경우에만 면세된다.
- 20세이하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술과 담배를 모두 신고하여야한다.

3) 토산품(선물)은 1인당 $100 이내의 것에 한한다. 단, 이 경우 미국 체류기간이 7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과거 6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토산품 반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총액이 US $1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액을 정확히 신고를 해야한다.

부록 XI

미국비자

부록 XI 미국비자

무비자 미국 방문 : 90일 이내 단기 출장 · 관광 · 경유

● 무비자 여행 요건

2008.11.17부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한국에 대해 시행됨에 따라, 단기 출장 · 관광 · 경유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러한 비자 면제는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 가능

- 단기 출장 · 관광 · 경유 목적으로 미국 방문
-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 등록된 항공 · 선박 이용 및 왕복항공권 소지
-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
-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 VWP 이용 방법

항공, 선박 이용 입국시

- 먼저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서 필요정보 입력 후, 승인을 받아야함
  - 대리 입력 가능하며, 늦어도 미국으로 출발전 72시간 전까지 여권 정보 및 여행 계획을 입력할 것을 권고
- 입력이 끝나면 실시간으로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 이때 ESTA 상에서 승인 거절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입국 가능(하기 B1/B2비자 참조)
  - ESTA 승인을 한 번 받으면, 향후 2년간 유효

육로 입국시

-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경에서 입국신고서(I-94W)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6불)를 지불한 후 미국에 입국 가능(ESTA 신청 불필요)

※ VWP로 경유하기

- 최초 미국 입국 시에는 위의 VWP 이용 방법과 동일
- 미국을 경유하여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 인접 지역을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해 출국할 경우 미국 인접 지역을 포함한 총 방문 기간이 90일 이내여야 함
- 미국 인접 지역이 아닌 곳을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총 방문 기간(90일) 제한은 없음

부록 XI 미국비자

B1/B2(관광/상용)

가. 개요

- 국제무역이나 회사일로 인한 사업방문, 관광, 가족 방문, 병원 입원 등 목적
- 가장 일반적인 비자로서 현재 보통 10년짜리가 발급
- 단, 한 번 방문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 (체류기간은 입국 시 이민국 직원의 재량으로 결정함)
- 비자 발급 시까지 통상 5일~10일 소요

나.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온라인 비(非)이민 비자신청서(DS-160)를 빠짐없이 기입
- 사진 1매(백색 배경, 5×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14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다. 예외절차

- 다음과 같은 예외 절차 존재
  (자세한 사항은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html 참조)
  - 만 80세 이상인 경우 인터뷰 면제
  - 만 55세~79세인 경우 서류 간소화
  - 만 14세 미만인 경우 인터뷰(단,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라. 비자 갱신

- 소지하고 있는 B1/B2(관광/상용) 비자를 갱신(기간연장)하려면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서류는 처음 신청자와 동일하며, 인터뷰 시 비자가 있는 구 여권을 같이 제출

마. 비자 분실/도난

-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일반 처음 신청자와 동일
- 그 외, 출입국증명서(출입국관리소 발급) 제출 후 인터뷰 신청(비자 또는 여권 분실신고서(경찰서 제출) 사본 및 분실 비자 복사본이 있을 경우 제출)

F1(유학생), F2(배우자/가족), M(직업교육) 비자

가. 개요

- 연령에 관계없이 인터뷰 필수
- F2, M2(동반가족) 비자는 직계자녀(18세 이하) 및 배우자에 한해서 발급하며 직계자녀는 미국내 공립학교에서 수학 가능
- 조기 유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동반비자는 無

나.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온라인 비자신청서(DS-160)를 빠짐없이 기입
- 사진 1매(백색 배경, 5×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14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SEVIS I-20 원본) 또는 DS-2019
- SEVIS 납부 영수증
- 적어도 처음 유학 1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재정서류

다. 참고사항

- 비자 유효기간은 졸업 시까지 부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
  예) 4년제 대학에 입학했더라도 1년~2년짜리 비자를 부여
- 모든 요건(I-20, 기타 재정사항)이 충족되어도 신청인의 과거 학업 성적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에는 공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종종 발생

라. J1(문화교류), J2(배우자/가족) 비자

- 인터뷰 필수

SEVIS 란?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의 이민세관국(ICE)은 2001.9.11 사태 이후 SEVIS(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F, M, J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 외국인 유학생 · 방문자 유치를 승인받은 미국내 교육기관은 SEVIS에 접수 학생의 정보를 등록하고 SEVIS 양식(고유 바코드 보유)에 따른 입학허가서 I-20 및 DS-2019를 발급해야함.

취업 관련 비자

- **구비서류 : F, M 비자와 유사**
- **인터뷰 필수**
- **종류**

언론인(I)	종교인(R)	숙련근로자 및 전문인 단기취업(H)
상사주재원(E1)	연예인 · 프로 운동선수(P)	국제문화교류행사 참가자(Q)
지사근무자(L	투자자(E2)	특수재능소유자(O) 등

- H, L, O, P, Q, R 비자의 경우 미국 소재 소속회사나 단체가 미국 이민국(CI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취업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고, CIS가 이를 승인한 후 발행한 I-797 사본과 함께 구비서류 제출 필요

공무 관련(A, G) 비자

-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비자신청서 및 사진1매
- 외교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수행 증명 비자노트
- **인터뷰 면제**
- **종류**

주미 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근무(A1)	공무상 출장(A2)
국제연합 등 미국 소재 국제기구로 출장(G2)	미국 경유(C3) 등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등 미국 소재 국제기구 파견근무(G1)	

비자 관련 FAQ

Q1.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 비자발급 담당 직원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송부

※ 주요 비이민 비자 거절(또는 보류) 사유

- 중요한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 주한미국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적인 확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신청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 경제적 기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신청인이 미국에서 단기 체류한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충분하게 설득되지 않는 경우
- 신청한 비이민 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국 입국 후 예정된 학업계획 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과거 미국 체류시 비이민비자의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미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범ㅁ죄 기록으로 인해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 과거 체포 또는 유죄판결 사실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등

추가 서류 준비 후, 비자발급 재신청 가능

- 단, 주한미국대사관은 신청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 경제적 상황이 현저히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면접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도록 권고

Q2.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여행할 경우, ESTA 없이 여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미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거부, 미국 입국 공항에서 입국 허가의 심각한 지연 또는 입국 거부 가능

부록 XI 미국비자

Q3.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와 함께 머물 수 있습니까?

자녀 방문을 목적으로 B-1/B-2 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이민, 취업 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함께 거주 불가

Q4. 학생비자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은 후 어느 시점부터 미국으로 여행 가능합니까?

비자 발행일과 무관하게 I-20 양식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에 앞서 30일 이내로만 미국에 입국 가능

Q5. H-1B 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F-1 자격으로 입학허가를 받았을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비자 발급은 미국 입국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 새로운 비자 신청은 불필요하나,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미 이민국에서 확인

• 단,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했을 경우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위해 학생비자 발급 필요

미국, 한국 공휴일에 따른 주한미국대사관 휴무일

일자	공휴일	국가
1.1.	신정	미국/한국
1.20.	마틴루터킹 기념일	미국
1.30.-31.	구정	한국
2.17.	대통령의 날	미국
5.5.	어린이날	한국
5.6.	석가탄신일	한국
5.26.	현충일	미국
6.6.	현충일	한국
7.4.	독립기념일	미국
8.15.	광복절	한국
9.1.	노동절	미국
9.8.-10.	추석	한국
10.3.	개천절	한국
10.9.	한글날	한국
10.13.	콜롬버스 데이	미국
11.11.	재향군인의 날	미국
11.27.	추수감사절	미국
12.25.	성탄절	미국/한국

출처 : 미국 비자 안내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

부록 XII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부록 XII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북미국 주요 용어

※ 항목별 가나다순

● 주요 회의 · 협의체 관련

- 한 · 미 군사위원회 회의 (MCM)
- 한 · 미 안보협의회의 (SCM)
- 한 · 미 외교 · 국방(2+2) 장관급 회의
- 한 · 미 전략대화
-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
-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 한 · 미 동맹 및 기타 한 · 미 관계 관련

- 공동환경평가절차서 (JEAP)
- 개정미사일지침 (RMG)
- 미2사단
- 미8군
- 미태평양사령부 (USPACOM)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SMA)
-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 유엔사 (UNC)
- 한국전쟁 정전협정
- 한 · 미 상호방위조약
- 한 · 미 연합군사령부 (CFC)
- 한 · 미 연합훈련

● 미국의 대외정책 관련

-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 (QDDR)
- 국가방위전략보고서 (NDS)
-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SS)
- 마약통제전략보고서 (INCSR)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인권 · 민주주의보고서 (Suppor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Report)
- 인권보고서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인신매매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종교자유보고서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 탄도미사일방어검토 (BMD Review)
- 테러보고서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 해외주둔 미군재편계획 (GPR)
- G2

● 미 의회 관련

- 결의안 (Resolution)
- 공동결의안 (Concurrent Resolution)
- 미 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
- 미 연방의원 초청 사업(CMEP)
- 법안 (Bill)
- 본회의 의사일정 (House Calendar)
- 사법안(私法案) 의사일정 (Private Calendar)
- 양원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
-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
-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Union Calendar)
- 정정의사일정 (Corrections Calendar)
- 조정절차 (Reconciliation)
- 한 · 미 의원외교협의회
-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 행정의사일정 (Executive Calendar)
- Caucus
- Filibuster & Cloture
- Korea Caucus
- President/President pro tempore (Senate)
- Ranking Member
- Speaker (House of Representative)
- Whip

부록 XII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 주요 회의 · 협의체 관련

한 · 미 군사위원회 회의 (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의미 한 · 미간 주요 군사정책과 작전지침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한 · 미 연합사령부에 하달하는 기구로, SCM 개최이전 한 · 미 합참의장간의 회의

한 · 미 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의미 한반도 안보관련 제반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 · 미 국방장관간 회의

한 · 미 외교 · 국방(2+2) 장관급 회의

의미 한 · 미 외교 ·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외교 ·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채널

한 · 미 전략대화

의미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장관 및 차관급 회의로서 양국간의 단순한 현안 협의를 넘어 지역 ·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적 논의를 하는 협의체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의미 SPI, EDPC 본회의, SA2015 공동실무단 회의 등 연계 개최를 통해 한 · 미간 안보협의체계의 효율성 및 고위급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협의체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의미 한 · 미간 실효성 · 신뢰성 있는 억제방안을 협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

● 한 · 미동맹 및 기타 한 · 미 관계 관련

공동환경평가절차서 (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의미 공여 ·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조사, 평가, 치유를 위한 절차서

개정미사일지침(RMG)

의미 한국의 탄도미사일 중량 · 사거리 제한 등에 대한 자율 규제 선언

미2사단

의미 의정부, 동두천 등 서부전선 주요 통로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미8군 소속 부대

미8군

의미 6.25전쟁 발발 이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 육군부대를 비롯해,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을 총칭

미태평양사령부 (USPACOM ;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의미 베링해부터 남극해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과 극동 · 동남아시아 · 아프리카 동부연안 일대에 배치된 미군을 통합 · 지휘하는 사령부로, 그 책임지역은 지구표면의 약 52%, 36개국

부록 XII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

의미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에 대한 우리측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 · 미간 특별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

의미
- (LPP 협정) 한 · 미 양측이 주한미군의 주둔환경 개선 및 기지운영 효율성 제고, 우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미측의 일부 기지 · 시설 반환 및 한측 대체부지 제공 등을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2002.10월 발효)
- (LPP 개정협정) 미측의 해외주둔미군배치계획(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2003.8월)에 의거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 필요성에 따라 반환예정 기지 등의 목록을 일부 개정한 협정(2004.12월 발효)

유엔사 (UNC ; United Nations Command)

의미 1950년 한국전쟁시 다국적군(유엔군)을 지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 제84호에 의거하여 창설된 조직

기능
- 한국전에 파병한 유엔회원국 군대의 통합사령부 기능
- 정전협정의 유엔군측 서명자로서 정전체제 유지, 집행기능(정전협정 제17항)
- 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통합사령부에서 취한 조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 · 보고

※ 북한의 천안함 · 연평도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 특별조사팀(SIT) 경과 보고서를 유엔안보리 공식문서로 채택

한국전쟁 정전협정

의미
-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협정으로서 국제법상 통상적인 종전절차인 평화협정과는 구별
- 원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서명일자 : 1953.7.27)

한 · 미 상호방위조약

의미 1953.10.1 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에 의해 서명된 한 · 미 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한 · 미 연합군사령부 (CFC ;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의미 주한 미군과 한국군으로 구성된 한 · 미연합군을 통합 · 지휘하는 연합 참모형태의 군사 지휘기관으로서 한 · 미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1978.11.7 창설

→ 한 · 미연합군사령부 창설로 한국전 이후 그동안 유엔군사령부가 수행해 온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한 · 미연합군사령부에게 위임(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

한 · 미 연합훈련

키리졸브/독수리연습 (KR/FE ; Key Resolve/Foal Eagle)

- Key Resolve 연습은 1994년 이래 매년 봄 실시해오는 지휘소연습(CPX : Command Post Exercise)으로서 전쟁 발발 초기 미 증원군의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전투력 통합(Integration) 절차에 관한 연습

  ※ 2008년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Incorporation ; 한 · 미 연합 전시증원연습) 명칭을 Key Resolve로 변경

- Foal Eagle 연습은 1961년 이래 매년 가을 실시되어 온 야외기동연습(FTX : Field Training Exercise)으로 적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한 방호 및 쌍방야외기동연습을 포함하는 현행 한 · 미 최대 연합 연습

  ⇒ 연합 연습의 질적 향상과 훈련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2년부터 두 연습 연계하여 매년 3월 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 Ulchi Freedom Guardian)

-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하에 실시되어 오던 군사연습(Focus Lense)과 1968년부터 실시되어온 정부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을지연습)이 통합된 연습으로 매년 8월 실시되는 정부 · 군사 분야 종합 지휘소 연습(CPX)

  ※ 2008년부터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명칭을 UFG로 변경

부록 XII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 미국의 대외정책 관련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 (QDR ;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의미 4개년 국방 정책 검토보고서(국방부)로, 1997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따라 의회가 국방부에 작성의무를 부과한 문서

4개년 외교개발정책보고서 (QDDR ;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의미 매4년 주기로 미국의 외교 및 해외 개발관련 단 · 중 · 장기 청사진을 분석 · 제시하도록 작성될 미 국무부의 보고서로, 2010.12.15.(수) 첫 QDDR(총 219 페이지 분량) 발표

국가방위전략보고서 (NDS ; National Defense Strategy Report)

의미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기초, 국방전략과 기타 전략적 지침의 기반을 제공하며, 미군의 전투대세와 미군과 동반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보고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SS ;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의미 미 행정부의 글로벌 국가안보전략, 미행정부의 향후 안보 및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문서로 최고통수권자의 전략의도(Commander's intent)를 정리한 것

※ 국방부재조직법(Goldwater-Nichols Defense Department Reorganization Act)에 의해 미 행정부가 의회에 1986년 이후 2-4년마다 작성 · 보고하며, 대통령 취임후 150일 이내에 의회에서 요구

마약통제전략보고서 (INCSR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s) ** 국무부 주요 4대 보고서 중 하나*

의미 전세계 각국의 마약범죄와 화폐위조, 돈세탁 등 금융관련 범죄 현황과 대처방안 등을 내용으로 매년 의회에 제출(발간시한 : 매년 3월1일)하는 보고서

※ 최근 2013.3.12 발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의미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1987년 미국을 포함한 서방 7개국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

인권 · 민주주의보고서 (Suppor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Report)

의미 의회의 요청에 따라 인권개선을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매년 미 국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인권보고서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국무부 주요 4대 보고서 중 하나*

의미
-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현황과 관련, 미국 원조 수원국 및 모든 유엔회원국에 대한 인권 상황을 보고서로서 1977년부터 매년 발간
- 미 국무장관이 매년 미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발간시한 매년 2월 25일)

※ 최근 2013.4.19. 발간

인신매매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국무부 주요 4대 보고서 중 하나*

의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2000년 제정)에 따라 2001년 이래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에 대해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발간시한 매년 6월 1일)하는 보고서

※ 최근 2013.6.19. 발간

부록 XII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종교자유보고서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s)

의미 종교자유 담당대사와 함께 세계 종교자유 현황에 관하여 미 국무장관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 최근 2013.5.20. 발간

탄도미사일방어검토 (BMD Review ;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의미 미 국방부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정책 종합 검토를 내용으로 발간한 보고서

테러보고서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 국무부 주요 4대 보고서 중 하나*

의미
- 2005년 이래 각국 테러 관련 현황 및 조치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로서, 국무장관은 매년 동 보고서를 미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발간시한 매년 4월 30일)
- 테러보고서는 1985~2004간 매년 발표되었던 '글로벌 테러리즘 동향(Patterns of Global Terrorism)' 보고서를 발전시켜 이를 대체

※ 최근 2013.5.30. 발간

해외주둔 미군재편계획 (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의미 미국 정부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둔미군의 전면적인 개편계획(미 국방부 발간, 2003)

G2 (The Group of Two)

의미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며,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라는 의미로 생겨난 용어

※ 유사한 말로 차이메리카(Chimerica)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공생관계를 의미

● 미 의회 관련

결의안 (Resolution)

의미 미 의회에서 보통 각 원의 내부문제 또는 각 원의 의사(sense of congress)를 표시할 때 사용됨(일반적인 결의안은 상 · 하원중 하나만 통과)

※ 하원에서는 "H Res", 상원에서는 "S Res"로 표시

공동결의안 (Concurrent Resolution)

의미 의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회 내부문제(내부예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확정되지도 않고 법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또한 양원 통과가 필요하나 대통령의 승인 불요

※ 하원에서는 "H Con Res", 상원에서는 "S Con Res"로 표시

미 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 ; Mutual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 Act)

의미 교육과 문화교류를 통해 미국인과 타국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되어 1961년 87대 의회에서 통과

부록 XII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미 연방의원 초청 사업 (CMEP ; 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

의미 11년부터 우리부가 미「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 : Mutual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 Act)에 의거,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 신규 실시한 미 연방의원 초청 사업

※ 미 의회 윤리규정은 현직의원이 외국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해당국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MECEA법에 의거 미 의원초청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방문하는 것이 가능

개요
- 대상 : 미 의원 본인
- 초청횟수 : 연평균 1-3회, 3-7일 체한
- 목적 : 우리나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전반 및 우리정책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한미 양국간 상호 이해 강화
- 내용 : 국회의원 · 장관 · 기업인 면담, 정부 부처 · 연구소 방문, 세미나 참석, 문화 유적 방문 등
- 지원내용 : 모든 프로그램 활동 및 관련 여행 비용 우리 정부지원

법안 (Bill)

의미 일반적인 목적의 법제정시 사용하며, 상 · 하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에 의해 법률로 확정

※ 하원에서는 "HR", 상원에서는 "S"로 표시

※ 공익법안(Public Bills) : 일반법안, 정부재정에 관계되는 법안으로서 대부분 행정부처로 부터 제안됨

※ 사익법안(Private Bills) : 주로 지역 및 개인에 관계되는 법안으로서 교량 건설 법안, 특정인에 대한 특허 법안 등이 해당

본회의 의사일정 (House Calendar)

의미 미 의회 하원의 의사일정 중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해당하며, 세입 및 세출 법안을 제외한 모든 공법안이 상정됨.

사법안(私法案) 의사일정 (Private Calendar)

의미 미 의회 하원의 의사일정 중 私法案 의사일정에 해당되며, 개인이나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등이 상정됨.

양원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

의미 미 의회의 특성인 양원제에 기인한 것으로 양원간 법안심의를 위한 협의체

개요
- 필요성 : 양원 중 어느 한 院에서 통과된 법안은 他 院에 송부되며, 만약 他 院이 극히 부분적인 수정을 하고 동 법안을 제출한 院이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송부함. 그러나 이 상호간 차이점에 대하여 완전합의를 보지 못할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원협의회에서 법안을 심의
- 구성 : 양원협의회는 법안을 취급하는 위원회의 중진의원들로 구성되며, 보통 각 院에서 지명된 3-9명의 의원들로 구성
- 법안 심의 : 심의과정에 있어서 양원이 일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입법조항을 삽입 불가하며, 협의회에서 양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기까지는 통상 수일 내지 수주일이 소요
- 보고서 채택 : 협의회의 참석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건의가 포함된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때 양원 참석자들은 보고서에 대한 설명문을 준비해야 하며, 이 보고서와 설명문은 양원에서 문서로 인쇄된 후, 양원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게 됨.

부록 XII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

의미
- 정당 후보자 지명을 일반유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는 미국의 선거제도로서, 직접예선이라고도 하며, 오늘날 대다수의 공직 후보자가 이 직접예선에 의해 지명됨. 대통령후보의 지명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이 예비선거를 채택
-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대의원 선출 과정

※ 본선거 (General Election) : 예비선거를 거치고 전당대회를 통해 확정된 각 당 대선 후보간 대결을 의미하며, 미 대통령 본선거는 '선거인단 제도'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

※ 보궐선거 (Special Election)

예비선거의 종류
- 폐쇄적 예비선거(closed primary) : 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 부여
- 개방적 예비선거(open primary) : 무소속 혹은 여타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투표권 부여(주민의 예비선거 참가를 1회로 제한하여 전략적 투표를 방지)
- 코커스(caucus) : (대선만 해당) 당원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후보자 등에 대해 지지 발언 및 토론 등을 한 후 대의원을 선출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Union Calendar)

의미 미 의회 하원의 의사일정 중 전원위원회의 의사일정에 해당하며, 재정지출 수반이 필요한 대부분의 법안이 상정됨

정정의사일정 (Corrections Calendar)

의미 미 의회 하원의 의사일정 중 정정의사일정에 해당되며, 주요 현행법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안건이 상정됨

조정절차 (Reconciliation)

의미 미국에서 예산관련 법안에 대해 양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양원 예산위원회에서 단일 통합법안을 마련, 양원이 단순과반수로 채택하는 절차

→ filibuster 등으로 인해 최종 예산안의 확정이 지연 또는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절차(1974년 도입)

※ 성격 : 20시간 이내로 토론 제한, 법안수정 불가, 조정절차는 양원의 결의안 채택으로 개시

한 · 미 의원외교협의회 (The Korea-US Inter-Parliamentary Council)

의미
- 1995.6월 한 · 미 양국 의회간의 협력 증진 및 상호 교류를 위해 결성된 한 · 미 의회의원들의 협의체

개요
- 구성 : △ 우리측 – 정의화 의원(회장) 및 임원진(9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
  △ 미 측 – 회장(Korea Caucus 공동의장 중 겸임)만 정해져 있으며, 동 회장이 공동회의 개최시 참석 가능한 회원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운영
- 회의 : 매년 개최 원칙(상호 교차 방문)

→ 별도 의원 교류사업인 한 · 미 · 일 3자 의원회의도 2003년 이래 지속 개최 : 통상 매년 2회[봄(워싱턴) · 가을(서울/동경)] 교대로 개최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의미 법안 제출형식과 유사하게 (상 · 하원을 모두 통과하는)절차가 진행되는 결의안으로, 법안과 유사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한정된 목적 또는 특수목적의 법 제정시 사용됨.

※ 하원에서는 "HJ", 상원에서는 "SJ"로 표시

부록 XII 미국 주요 협의체 · 정책 용어

행정의사일정 (Executive Calendar)

의미 미 의회 상원의 행정의사일정에 해당되며,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나 인사임명에 관한 안이 상정되며, 상원에는 'Executive Calendar'만 존재

Caucus

의미
① 미 의원들이 특정 주제 또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발적 연구모임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정당과 관계없이 토론 및 의견교환

② 당원대회(당 간부회의) : 미국의 특수한 형태의 정당집회를 일컫는 말로, 제한된 수의 정당 간부나 선거인단이 모여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지명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모임으로, 정당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예비경선의 방식으로는 Caucus 외에 Primary Election 존재)

→ (대선만 해당) 참가자들이 후보자 등에 대해 지지 발언 및 토론 등을 한 후 대의원을 선출

Filibuster & Cloture

의미
- Filibuster(의사진행방해발언) : 미 의회 본회의에서 법안 심의시 개별 상원의원에게 부여된 토론 권한으로, 소수당 상원의원은 동 권한을 활용하여 반대하는 법안의 진행을 최대한 저지 가능(상원에서만 가능)
- Cloture(토론종결투표) : Filibuster 저지를 위한 조치(재적의원 3/5인 60표 필요)

Korea Caucus (Congressional Caucus of Korea)

의미 미 의회내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한국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정당과 관계없이 토론 및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한국과 관련한 우호적인 의정활동의 기반이 됨.

구성 상 · 하원 내에 모두 구성
- 하원 : 2003.1월 결성, 2013년 현재 총 47명(민주 : 27명, 공화 : 20명)
- 상원 : 2007.3월 결성, 2013년 현재 총 5명(민주 : 3명, 공화 : 2명)

※ 의회내 특정 국가 Caucus는 해당 국가와의 친선 의지 표명 차원의 상징적 성격이나, 상 · 하원 모두에 Korea Caucus가 설립되어 있다는 것은 한 · 미 관계를 지원하는 확고한 지지세력이 존재함을 의미

President / President pro tempore (Senate)

의미 미 의회에서 President는 상원의장을 의미하며, 미 헌법에 의해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상원의장이 되나 실제 상시적으로 상원에 출석하여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을 두어 회의를 주재. 임시의장은 전통적으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수임하는 것이 관례

Ranking Member

의미 의회내 상임위원회 지도부 중 위원장(Chairman)을 다수당에서 차지하는 한편, 소수당은 간사(幹事)를 맡아서 양당의 견제 · 균형 · 의견조율을 담당하는데, 이 간사를 Ranking Member(또는 Ranking Minority Member)라고 칭함.

Speaker (House of Representatives)

의미 하원의장을 의미하며, 하원 본회의를 주재하는 의원으로 하원 다수당내에서 선출에 의해 임명되어 실질적으로 다수당의 당수 역할을 함. 특히, 하원의장은 대통령 유고시 계승 서열 2위로 부통령의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음.

Whip

의미 양 원, 각 당의 원내총무를 일컬으며, 각 당의 원내대표(Majority Leader / Minority Leader) 바로 다음 서열로 자당 소속의원의 원내 활동에 있어 당 방침과 규율 유지를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 의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독려하는 역할 수행

부록 XIII 참고문헌

주요 참고 저서

● 국문

김덕호 · 김연진, 『현대 미국의 사회운동』, 서울: 비봉출판사
김일영 · 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 쟁점 · 전망』, 서울: 한울
김준호, 『미국문화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2』, 서울: 오름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 정부와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박양근 · 정혜옥, 『미국문화의 이해』, 서울: 부경대학교출판부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서울: 창비
브링클리, 앨런,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3』, 서울: 휴머니스트
신욱희,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한울출판사
이삼성, 『세계와 미국』, 서울: 한길사
이현송, 『미국 문화의 기초』, 서울: 한울아카데미
임정규, 『역대 대통령 정상외교』, 서울: 해누리
장달중 · 이정철 · 임수호, 『북미 대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전웅,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한울출판사
전혜경, 『굿모닝! 한식입니다』, 서울: 모던플러스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서울: (주)생각의 나무
최웅 · 백창재,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구촌 한류현황 Ⅰ』,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 원서

Kantor, Jodi, 『The Obamas』, New York: Back Bay Books
Mauk, David, Oakland, John, 『American Civilizations』, London: Routledge

주요 참고 링크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미국학전공) www.cuk.ac.kr/~cukdis/as/
(경제협력개발기구) www.oecd.org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www2.khcu.ac.kr/english/
(국립외교원) www.knda.go.kr
(국제교류재단) www.kf.or.kr
(국제문제연구소) cis.snu.ac.kr
(국제통화기금) www.imf.org
(나라기록 포털) contents.archives.go.kr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http://naver.com
(동아시아연구원) www.eai.or.kr
(대진대학교 미국학과) usa.daejin.ac.kr/usaindex.do
(대통령 기록관) www.pa.go.kr
(미 교육부) www.ed.gov
(미 교통부) www.dot.gov
(미 국무부) www.state.gov
(미 국방부) www.defense.gov
(미 국토안보부) www.dhs.gov
(미 노동부) www.dol.gov
(미 농무부) www.usda.gov
(미 내무부) www.doi.gov
(미 법무부) www.justice.gov
(미 보건후생부) www.hhs.gov
(미 비자 홈페이지) www.ustraveldocs.com
(미 상무부) www.commerce.gov
(미 영사국) www.travel.state.gov
(미 에너지부) www.energy.gov
(미 원호부) www.va.gov
(미 주택도시개발부) www.hud.gov
(미 중앙정보국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미 재무부) www.treasury.gov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북미전공) myweb.pknu.ac.kr/dias
(브루킹스 연구소) www.brookings.edu
(백악관) www.whitehouse.gov
(서강대학교 미국문화전공) america.sogang.ac.kr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amstin.snu.ac.kr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www.sipri.org
(워싱턴 국립 공문서관) www.archives.gov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wikipedia.org
(주미대사관) usa.mofa.go.kr
(주한미국대사관) korean.seoul.usembassy.gov
(주한미국대사관 인포피디아) infopedia.usembassy.or.kr
(청와대) www.president.go.kr
(평택대학교 미국학전공) usa.ptu.ac.kr
(한국문화교류센터) www.ikorea.ac.kr
(한국미국사학회) www.americanhistory.or.kr
(한국아메리카학회) www.asak.or.kr
(한국은행) www.bok.or.kr

미국개황

Overview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209-14

발행일
2014년 6월

발행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

디자인
내담기획 031-421-8271